

1.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소관 예규(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등 31개)를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조번호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제1조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명 변경 ○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 무형문화재→무형유산, 매장문화재→매장유산, 문화재수리→국가유산수리 등
제2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제4조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5조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제6조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제7조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8조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9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충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0조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11조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제12조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3조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14조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5조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제16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7조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18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9조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21조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2조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23조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24조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25조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6조	방호원근무규정
제27조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28조	(문화재청)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9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30조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관리 규정
제3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나. 오탈자 등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예산에 기반영 되었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생략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등 31개 문화재청 예규 일괄개정안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등 31개 문화재청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3항”을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의 개정)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의 개정)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53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9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명칭”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유산 명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의 명칭”을 “문화유산의 명칭”으로, “문화재의 특징”을 “문화유산의 특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5조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 특성”을 “문화유산 특성”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조(「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개정)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6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문화재를”를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조 중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를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민

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 중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를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문화재가”를 각각 “문화유산이”로 한다.

제5조 중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를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 특성”을 “문화유산 특성”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조(「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의 개정)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을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산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를 ““동산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로, “문화재 중”을 “문화유산 중”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명“이란 문화재”를 ““문화유산명“이란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명칭”을 “문화유산명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

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3조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명”을 “문화유산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명은 문화재”를 “문화유산명은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 중 “동산문화재를”을 “동산문화유산을”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개정)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

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2조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문화재명)”를 “문화유산(문화유산명)”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명”을 “문화유산명”으로, “문화재 :”를 “문화유산 :”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 :”를 “문화유산 :”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 :”를 “문화유산 :”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 :”를 “문화유산 :”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문화재명칭”을 “문화유산명칭”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을 “(건조물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조문화재”를 “목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문화재”를 “대상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조문화재”를 “석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문화재명”을 각각 “문화유산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석탑 등)가”를 “문화유산(석탑 등)이”로, “문화재명”을 “문화유산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명”을 “문화유산명”으로 한다.

제7조(「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의 개정)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로, “중요문화재”를 “중요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이하 “긴급매입 문화재”)”를 “문화유산(이하 “긴급매입 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해당하는 문화재”를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있는 문화재”를 “있는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국외소재문화재 중 문화재적”을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적”으로, “높은 문화재”를 “높은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건의한 문화재”를 “건의한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국외소재문화재 중 문화재적”을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적”으로, “높은 문화재”를 “높은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높은 문화재”를 “높은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인정하는 문화재”를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바.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을 결정한 문화유산

제2조제3항 중 “문화재 긴급매입비“(이하 “문화재”를 “문화유산 긴급매입비“(이하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4조”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시행령」 제4조”로, “문화재보호기금 용도”를 “국가유산보호기금 용도”로, ““문화재 긴급매입비”를”을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 긴급매입”을 “문화유산 긴급매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원칙)”을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를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를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긴급매입을”을 “문화유산 긴급매입을”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 소유자”를 “문화유산 소유자”로, “문화재 매입여부”를 “문화유산 매입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외문화재”를 “국외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해당문화재”를 “해당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절차)”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

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국가유산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보존·관리”를 “문화유산 보존·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상문화재”를 “대상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재산소유권 등)”을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 매입 재산소유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를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를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 구입”을 “문화유산 구입”으로,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로 한다.

별지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8조(「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의 개정)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보호”를 “문화유산보호”로 한다.

제3조제4항제6호 중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적”을
“문화유산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문화유산
위원회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한다.

제9조(「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
분에 관한 세부지침」의 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
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무
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2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무
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0조(「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의 개정)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유산보호유공 포상”을 “국가유산보호유공 포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의 원형보존·관리와 문화재”를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관리와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의 학술적”을 “국가유산의 학술적”으로, “문화재의 보존”을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유산 현장에서의”를 “국가유산 현장에서의”로 하고,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며, “문화재 관련”을 “국가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유산보호유공”을 “국가유산보호유공”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유산보호유공”을 “국가유산보호유공”으로 한

다.

제11조(「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의 개정)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을 “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국가등록문화재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속문화재를”을 “민속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적”을 “문화유산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적”을 “문화유산적”으로, “문화재 등록”을 “문화유산 등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반복 또는 다량 제작·형성된 문화재)”를 “(반복 또는

다량 제작·형성된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가”를 각각 “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중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념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기념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 중”을 “문화유산 중”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 중”을 “문화유산 중”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문화재)”를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문화재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는 문화재적”을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적”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동일인이 설계·제작한 문화재)”를 “(동일인이 설계·제작한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생존인물 관련 문화재)”를 “(생존인물 관련 문화유

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문화재의 일괄·추가 등록)”을 “(문화유산의 일괄·추가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문화재가 한”을 “문화유산이 한”으로, “문화재가 복수”를 “문화유산이 복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속문화재가”를 “민속문화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제12조(「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6”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으로, “문화재 방재정보”를 “국가유산 방재정보”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현장”을 “국가유산 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방재시설의 사용 및”을 “국

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현장”을 “국가유산 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목조문화재”를 “목조문화유산”으로 한다.

①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유산 방재시설,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 현황, 국가유산 안전관리 인력 현황, 국가유산 방재예보 등 국가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 방재예보”를 “국가유산 방재예보”로, “문화재 지역별”을 “국가유산 지역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 방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국가유산 방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으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 방재정보를 지자체 문화재부서”를 “국가유산 방재정보를 지자체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 방재정보의 제공)”을 “(국가유산 방재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방재정보”를 “국가유산 방재정보”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 방재정보”를 각

각 “국가유산 방재정보”로 하고, 같은 호 중 “문화재 피해예방”을 “국가유산 피해예방”으로 한다.

제12조 중 “문화재 방재정보”를 “국가유산 방재정보”로 한다.

제13조 중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를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로,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을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으로, “문화재 피해”를 “국가유산 피해”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재 방재정보”를 “국가유산 방재정보”로 한다.

제13조(「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의 개정)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주변시설물’이라 함은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주변시설물’이라 함은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면단위문화재”를 ““면단위국가유산’이”로, “다수 문화재가”를 “다수의 국가유산이”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점단위문화재”를 ““점단위국가유산’이”로 하며, 같은 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를”을 각각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인문유산”을 ““인문국가유산”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를 포함한다)와”를 “국가지정유산(국가등록유산을 포함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유산”으로, “미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단위문화재”를 “면단위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단위문화재”를 “점단위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점단위문화재를”을 “점단위국가

유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별 기준)”을 “(국가유산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문유산”을 “인문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색채”를 “국가유산 색채”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문화재 유형별 공공디자인 상세 기준”을 “국가유산 유형별 공공디자인 상세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 성격상 문화재”를 “국가유산 성격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 유형별”을 “국가유산 유형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 주변에”를 “국가유산 주변에”로, “문화재 주변 시설물”을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문화재 주변 시설물의 종류(제2조 제2호 관련)”을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의 종류(제2조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14조(「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의 개정)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을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명칭”으로, “문화재 지식”을 “국가유산 지식”으로, “문화재 관리”를 “국가유산 관리”로, “문화재 영문”을 “국가유산 영문”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명칭”으로 한다.

1. “국가유산 명칭”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의 지정 또는 등록 시 부여된 국가유산의 이름을 말함.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유산”과 “등록유산”의 영문 명칭

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명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을 “국가유산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고유한 문화재 이름의 표기)”를 “(고유한 국가유산 이름의 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가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나목 중 “문화재를”를 “국가유산을”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명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 이름 및”을 “국가유산의 이름 및”으로, “문화재의 이름은”을 “국가유산의 이름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적류 문화재)”를 “(전적류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비석류문화재)”를 “(비석류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회화 및 서예류 문화재)”를 “(회화 및 서예류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석조각류 문화재)”를 “(석조각류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토도자 공예류 문화재)”를 “(토도자 공예류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금속, 목조, 나전 공예류 문화재)”를 “(금속, 목조, 나전 공예류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도구, 물품, 의복류 문화재)”를 “(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무형 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지명이 포함된 문화재 명칭”을 “지명이 포함된 국가유산 명칭”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문화재 명칭이”를 “국가유산 명칭이”로, “문화재 명칭의”를 “국가유산 명칭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문화재)”를 “(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명+행정구역명””을 ““국가유산명+행정구역명””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상하 행정구역명이 있는 문화재)”를 “(상하 행정구역명이 있는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명칭”으로, “문화재명+하위”를 “국가유산명+하위”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유적지명이 있는 문화재)”를 “(유적지명이 있는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명칭”으로, ““문화재명+유적지명””을 ““국가유산명+유적지명””으로, ““문화재명+하위”를 ““국가유산명+하위”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인명이 포함되는 문화재 명칭”을 “인명이 포함되는 국가유산 명칭”으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인명, 문화재명의 순서로 된 문화재 명칭)”을 “(인명, 국가유산명의 순서로 된 국가유산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 명칭이 “인명+문화재명“순”을 “국가유산 명칭이 “인명+국가유산명“순”으로, ““문화재명+인명“순”을 ““국가유산명+인명“순”으로, ““인명+문화재명“으로”를 ““인명+국가유산명“으로”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인명에 시대명, 지명이 복합된 문화재 명칭)”을 “(인명에 시대명, 지명이 복합된 국가유산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 명칭이 “지명(행정구역명/유적지명)+인명+문화재명“순”을 “국가유산 명칭이 “지명(행정구역명/유적지명)+인명+국가유산명“순”으로, ““문화재명+인명+지명“순”을 ““국가유산명+인명+지명“순”으로, ““인명+문화재명+지명“을 ““인명+국가유산명+지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에”를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에”로,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국가자문위원회’를”을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국가자문위원회’를”로,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시·군·구”를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시·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문화재위원회 검토와 자문)”을 “(문화유산위원회 검토와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

위원회”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를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문화재 명칭 명명 요소 목록)”을 “(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 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15조(「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의 개정)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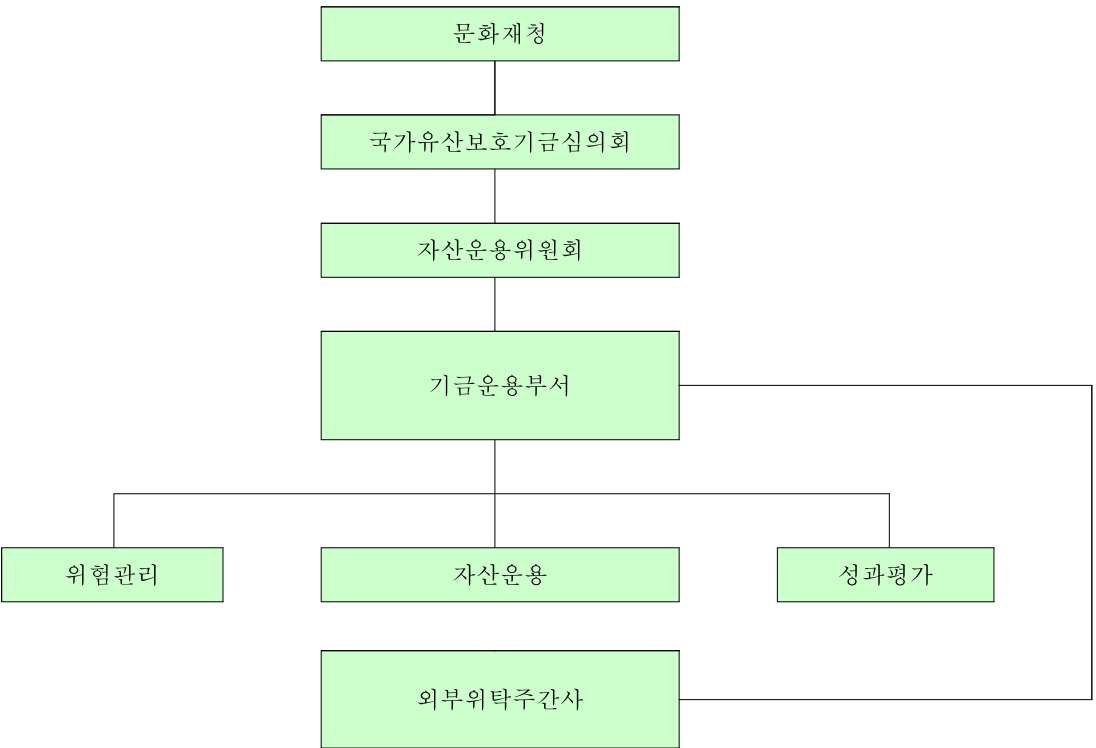
제명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을 “국가유산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으로 한다.

제1조 1.1 1) 중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하고, 같은 1.1 2) 중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를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1.3 1) 중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보호기금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정책기반구축”을 “국가유산정책기반구축”으로, “문화재 교육연구”는 “국가유산 교육연구”로, “문화재보호등”을 “국가유산보호 등”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1.3 2)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은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3.1 중 “문화재보호기금의”를 “국가유산보호기금의”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3.2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4.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4.1 1)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1) 가) ①부터 ④까지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를 각각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로 하고, 같은 4.1 4) 가)목 ①부터 ⑥까지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제5조 5.1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 자금수지 항목의 분류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수입항목	지출항목
정부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 납부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주요사업비,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제6조 6.3 중 “문화재보호기금의”를 “국가유산보호기금의”로 한다.

제7조 7.1 중 “문화재보호기금의 목표수익률은”을 “국가유산보호기금의 목표수익률은”으로, 같은 7.1 중 “문화재보호기금의 사업목적은”을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사업목적은”로 하며, 같은 7.1 중 “문화재보호기금의”를 “국가유산보호기금의”로 한다.

제8조 8.1 2) 가) 후단 중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8.2 중 “문화재보호기금의”를 “국가유산보호기금의”로 한다.

제9조 9.1 중 “문화재보호기금은”을 “국가유산보호기금은”으로 한다.

제11조 11.4 중 “문화재보호기금이”를 “국가유산보호기금이”로 한다.

제14조 중 “문화재보호기금의”를 “국가유산보호기금의”로 한다.

별표 2 중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제16조(「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4”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로,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2조4”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로 한다.

제17조(「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으로, “문화재수리 기술지도”를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에 관한”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으로, “문화재수리에 필요한”을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국가유산수리의 품질”로, “문화재수리과정에서 당해 문화재의 고증·양식,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과정에서 당해 국가유산의 고증·양식,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 보존·관리”

를 “국가유산 보존·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정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따른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동산문화재는”을 “국가지정유산(동산문화유산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위원 또는”을 “문화유산위원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 계약조건”을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으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회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18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 수리의 기본방향)”을 “(국가유산 수리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를”를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을 “국가유산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으로, “건조물문화재는”을 “건조물 국가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별”을 “국가유산별”로, “문화재를”를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를”를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 시대 적용 원칙)”을 “(국가유산 시대 적용 원

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 수리”로,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 수리의 절차)”를 “(국가유산 수리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 수리의”를 “국가유산 수리의”로, “문화재 수리과정”을 “국가유산 수리과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재 수리 필요성 검토)”를 “(국가유산 수리 필요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문화재보호법 제51조”를 “국가유산수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의 연혁·가치·특성”을 “국가유산의 연혁·가치·특성”으로, “문화재의 특징”을 “국가유산의 특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 주변현황”을 “국가유산 주변현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정문화재를”을 “지정유산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문화재수리(시공)”를 “국가유산수리(시공)”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 수리과정에서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적”을 “국가유산적”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8조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로 한다.

제29조 중 “문화재수리보고서에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수리의 이력,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의 이력,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문화재 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문화재 전자행정”을 “국가유산 전자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제32조 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부재의 교체 필요의 분리 보존 부재(B)의 자체보존부재(B2)의 분류 세부 내용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그 외 부재의 자체 활용 부재(C)의 타부재 활용부재(C1)의 분류 세부 내용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표 중 “문화재명”을 “국가유산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각주 3)의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각주의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해체부재 보존관리 및 활용현황[문화재별]”을 “해체부재 보존관리 및 활용현황[국가유산별]”으로 하며, “문화재명”을 “국가유산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로 하며, 표 중 “문화재명”을 “국가유산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국가

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로 하고, 표 중 “문화재명”을 “국가유산명”으로 하고, 기호(※) 중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로 한다.

제19조(「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을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서식 1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20조(「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의 개정)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 공사”를 “국가유산수리 공사”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으로, “문화재실측설계업의”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로, “문화재실측설계업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의 원가(이하 “문화재수리원가”라 한다)는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의 원가(이하 “국가유산수리원가”라 한다)는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원가)”를 “(국가유산수리원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원가라 함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원가라 함은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원가 계산”을 “국가유산수리원가 계산”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문화재수리원가계산서”를 각각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 원형보존”을 “국가유산 원형보존”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국가유산수리 품질향상”으로, “분야의 문화재위원”을 “분야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으로, “문화재수리원

가계산서”를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수리원가”를 “국가유산수리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재수리원가”를 “국가유산수리원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 공정별”을 “국가유산수리 공정별”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문화재수리원가”를 “국가유산수리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각각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유물)운송비”를 “국가유산(유물)운송비”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

재 또는”을 “국가유산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같은 항 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1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문화재수리안내판”을 “국가유산수리안내판”으로, “문화재수리틀”을 “국가유산수리틀”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같은 항 제21호 전단, 같은 항 제22호, 같은 항 제23호, 같은 항 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보통인부·현장사무소직원”을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통인부·현장사무소직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화”를 “국가유산수리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원가”를 “국가유산수리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원가”을 “국가유산수리원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의 총문화재수리원가”를 “국가유산수리의 총국가유산수리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부분의 총문화재수리원가”를 “국가유산수리 부분의 총국가유산수리원가”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

재수리 표준품셈」”을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2)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목 (4)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문화재수리 기타경비 계산방법”을 “국가유산수리 기타경비 계산방법”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문화재수리 일반관리비 계산방법”을 “국가유산수리 일반관리비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21조(「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정)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대상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업의”를 “국가유산수리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말한다.

제2조의2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의 입찰등급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수리의 난이도”를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로, “문화재수리계획을”을 “국가유산수리계획을”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은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 분류표”를 “국가유산수리 분류표”로, “문화재수리 코드번호”를 “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으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로,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로, “문화재수리만”을 “국가유산수리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목 2) 중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을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을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으로, “문화재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계획 점수(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를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로,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문화

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계획”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를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일”을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계획심사”를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계획”을 각각 “국

가유산수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표 3의1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 11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12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 13과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 17과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 18과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 1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1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2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23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24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25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26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27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28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2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3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31과 같이 한다.

제22조(「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정)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위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서식 (2) 중 “대상문화재명”을 “대상국가유산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대상문화재”를 “대상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재수리기술위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서식 (2) 중 “대상문화재명”을 “대상국가유산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대상문화재”를 “대상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가”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의 개정)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을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옴부즈만”을 “국가유산옴부즈만”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옴부즈만”을 “국가유산옴부즈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 문화재수리, 무형문화재”를 “매장유산, 국가유산수리,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옴부즈만”을 “국가유산옴부즈만”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을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24조(「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정)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을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재 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로, “문화재 현상변경,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 현상변경,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별표 1]

제4조의2 중 “문화재현상변경”을 “문화유산 현상변경”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 문화재위원”을 “범위 내에서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위원”을 각각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3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서식 (2) 중 “대상문화재명”을 “대상문화유산명”으로, “대상문화재”를 “대상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5조(「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6조(「방호원근무규정」의 개정) 방호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7조(「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의 개정) 사적의 지

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8조(「(문화재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7호가목 중 “문화재보호구역 및”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대책”을 “국가유산 보호대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33과 같이 한다.

제29조(「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1제5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로, “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목록”을 “무형유산 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 중”을 “무형유산 중”으로, “무형문화재 목록”을 “무형유산 목록”으로 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무형유산

제3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 중”을 “무형유산 중”으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무형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분야”를 각각 “국가유산분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서 식]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대상 선정 심의결과¹⁾ (심의 제 - 호)						
1. 문화유산 개요						
2. 제안사항						
3. 제안사유						
4. 주요골자						
5. 현지조사 의견						
6. 참고사항						
7. 검토의견						
아래와 같이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대상 선정을 심의함						
년 월 일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구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매입가치			평가결과 종합
			상	중	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백상지(80g/㎡)

1) 각 항목은 별지로 작성 가능하며, 도면 등 필요사항을 추가 할 수 있음

[별지 2]

[별표 2]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제9조 관련)

1. 안내판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국가유산을 안내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국가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반영하여 이질감을 해소하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배치	· 국가유산과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휠체어 · 보행보조기기 · 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국가유산과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안내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분산된 안내시설 또는 관련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종류	·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국가유산안내판의 기본 종류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안내판으로 구분하며, 해설안내판은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등으로 분류하되,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합안내판은 국가유산의 규모가 크고 다수 건축물이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되, 규모가 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설판 및 해당 국가유산의 주요 연표, 조감도나 안내지도, 주요 국가유산, 관람정보 등이 담긴 지도판의 2종으로 구성한다.
수량	· 권역안내판은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국가유산 안의 여러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권역의 규모에 따라 해설판과 지도판 2종으로 하거나, 해설과 지도가 하나의 안내판으로 통합된 1종으로 구성한다. 단, 통합 1종의 안내판을 제작할 때에는 해당 권역의 지도를 함께 삽입한다.
	· 적정 안내에 필요한 최소의 국가유산안내판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유산 규모와 관람자의 편의, 필요성을 정밀 분석하여 적정한 안내판 수량을 결정한다.
크기	· 하나의 국가유산에 하나의 안내판이 아닌 관람자의 시선을 고려한 권역 중심의 안내판을 도입, 권역별로 통합할 수 있는 구역은 통합하여 안내판 수량을 줄인다.
	· 안내판은 인간체격기준척도를 지향하고 관람객에게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국가유산을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형태	· 면단위국가유산 안에 안내판이 다수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한다.
	· 전반적인 안내판 형태는 가능한 한 장식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형태로 하여, 국가유산이나 건축물 자체가 더 돋보이도록 한다.
	· 해당 국가유산 유형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택하되 국가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 해당 국가유산의 안내판은 각각의 안내판 종류와 위계에 따라 형태를 달리 적용하되 디자인의 일관

구분	디자인 기준
	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성격이 비슷한 안내판은 가급적 형태를 일치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색상	· 색상 스펙트럼을 분석해 대상 국가유산 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한다.
	· 저명도·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 원색 위주의 자극적 색상을 지양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며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 경고, 주의 등에는 진출색(붉은색, 노란색) 등의 원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소화한다.
	· 2~3가지 색상 이내로 색을 최소한만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의 기본 색상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안내판의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글자색과 바탕색의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	· 대상 국가유산 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가장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한다.
	· 기존의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 재질을 지양하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며, 인공소재를 사용할 경우 자연소재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 해당 국가유산 안의 안내판은 같은 재질을 사용하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안내판은 재질을 달리 할 수 있다.
기타	· 국가유산 안내 에 관한 시설물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 」의 기준에 따라 디자인한다.
	· 관할 지자체의 로고나 후원기업과 관련된 상징그림 또는 문구는 삽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삽입해야 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정면 오른쪽 아래 또는 옆면의 적정 위치에 작게 표기하여 안내정보의 습득이나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정리 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해당 국가유산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되, 수록되는 정보는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한다. - 위치: 안내판 오른쪽 윗부분 적정한 곳에 부착한다. - 크기: 가능한 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작한다. - 재질 및 색상: 안내판과 조화되어 도드라지지 않도록 한다.
	· 시설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크기가 적정한 서체로 계획하며 문자표기는 한 가지 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해설안내판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1-1. 안내문안 기본원칙

구분	디자인 기준								
안내문안 작성 기본 원칙	· 안내문안은 핵심정보 위주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주관적인 내용이 라 할지라도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관람객이 해당 국가유산 에 대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첨가할 수 있다.								
	·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국가유산대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안내문안은 해당 국가유산 을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 및 내용으로 작성하 며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이 경우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및 구성·배열에 부 합되도록 한다.								
	·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내용을 첫 문장에 작성한 다. 이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첫 문장은 해당 국가유산 을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해당 국가유산 의 기능, 유래, 특징, 역사적·국가유산적 가치 등 국가유산 이 지정된 사유를 포함하여 설명한다.								
	· 해당 국가유산 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								
	· 해당 국가유산 과 관련된 설화, 전설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근래의 사실이나 이야 기라 할지라도 관람객에게 재미나 감동 또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첨가한다.								
	· 안내문안 안에서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앞 에서 풀이하여 설명한 후에 기술한다.								
	· 국가유산 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생략한다.								
	·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문안은 국립국어원 또는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거친다.								
안내문안 번역	·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국어문안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히 의역한다.								
	· 필요할 경우 외국어번역을 위한 문안을 별도로 작성한다.								
	·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 국문 작성자와 외국어 번역자가 충분히 교감하여 의역상 오류를 최소화한다.								
	·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배열 구성	· 글자 크기는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하되, 각각의 안내판 유형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다. (단위: 포인트)								
	구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 찾기안내판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서체 급수								
	(최소한)	100	50	80	40	70	35	150	110
	· 가독성을 높이는 정직한 서체가 바람직하며, 장식적 서체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한다. ※ 추천 서체: 제목(윤고딕 패밀리) / 본문(윤명조 패밀리)								

1-2. 안내문안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세부내용
종합안내판	제목 부분	· 국문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유형의 영문 번역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 국가유산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국가유산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권역안내판	제목 부분	·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유형의 영문 번역 (권역명칭이 지정 국가유산명인 경우 또는 그 외 필요시)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 권역의 특징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 국가유산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국가유산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개별안내판	제목 부분	·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유형의 영문 번역 (비지정유산인 경우나 전설, 설화, 민담 등의 이야기 안내판의 경우는 생략)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 국가유산의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 및 건립연도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 국가유산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1-3. 안내 문안 구성 요소별 세부 기준

구분	디자인 기준
제목	· 종합안내판의 제목은 국가유산 지정 명칭으로 하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명칭에 지명이 먼저 나오거나 지정 범위 등을 덧붙인 때에는 지명이나 지정 범위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국가유산안내판의 제목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며, 이 경우 한자는 국문 명칭과 같은 줄이나 국문 명칭 다음 줄에 표기한다. 다만, 글자 크기는 한자가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 · 안내판 제목의 한자는 대상 단어를 음운의 변동 없이 변환 가능한 경우에만 한자로 변환해서 표기하며, 음운이 변동하는 우리말은 변환하지 않고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다. · 안내판 제목에 두 개 개체가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로 이어진 경우, 한자 표기에서는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를 쉼표(.)로 바꾼다. 이때 가운뎃점(·)은 허용하지 않는다. · 안내판의 제목 중 영문은 국문과 한자에 이어 같은 줄에 나열하거나 줄 바꿈 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글자 크기는 영문이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 · 권역(영역)안내판의 제목은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권역의 이름으로 한다. · 개별안내판의 제목은 국가유산 지정 명칭으로 하되, 상위 위계의 종합안내판을 따로 세운 경우에 지명 등은 생략할 수 있다. · 유적지 안에 있는 비지정유산과 설화, 전설 등에 대한 개별안내판 명칭도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명칭을 따르며, 유적지명 등은 생략한다. · 안내판 제목에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문안의 첫머리에서 풀이하여 설명한다.
지정 종별 및 지정 번호, 소재지	· 안내판에는 국가유산의 지정 종별은 표시하되, 지정번호와 소재지는 표시하지 않는다. 특히, 종합안내판이 있는 유적지 안 권역안내판과 개별안내판의 국가유산 소재지는 반드시 생략한다. 이 때 지정 종별은 제목보다 작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정 종별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영문 번역 표기만 한다. 이때 해당 영문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 방법과 같다.
규모와 건립연도	· 석물, 전각 등의 개별안내판(필요시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도 포함)에는 각각 국가유산의 규모(크기, 높이 등), 건립연도(시대 포함)를 표기할 수 있다. · 지정 종별, 줄을 같이하거나 다음 줄에 달리 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모와 건립 연도 모두 표기할 수 있다. · 한자 표기 없이 영문 번역 표기만 하며, 이때 해당 영문 번역의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 방법과 같다.
언어(국어, 영어)의 표기	· 안내 문안 본문은 두 개 언어(국어/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부 내용과 용어에 한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안내 문안의 언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어문 규정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지킨다. · 국가유산 명칭과 용어의 세부적인 영문 표기는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다. · 안내 문안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에서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경우, 즉 군신, 사제, 부자지간 등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안내 문안의 국문은 지정 서체로 통일해서 표기하며, 일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굵게 표기할 수 없다. · 본문에 직접 풀어 쓴 설명이 아닌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은 안내문 아래에 각주로 표기하거나 해당 글자 오른쪽 윗부분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한다. · 본문에 외래어가 나올 경우 외래어의 어원을 따로 밝히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영문 문안에만 원어를 표기한다. · 영문표기의 경우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한자의 표기	· 한자는 안내판의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와 인물, 지명, 국가유산 명칭 등 특별한 경우 말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를 전달하고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의 표기 여부는 안내 문안

구분	디자인 기준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국문 문안 본문에서 한자를 표기할 때는 해당 글자의 오른쪽 소괄호(()) 안에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할 수도 있다. · 모든 한자는 같은 안내판에서 처음 나온 단어에 한 번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목과 동일한 단어는 본문에 한자 표기를 할 수 없다. · 유적과 직접 관련된 인물명에만 한자를 병기하며 사망 연도와 출생 연도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 · 인물의 호는 되도록 표기하지 않으며, 호가 성명과 함께 쓰여 인물을 부연 설명하거나 성명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다. 이때 한자는 해당 단어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와 성명을 모두 표기할 때는 성명 뒤에 한꺼번에 적는다. · 영문 본문에는 오직 영문만을 표기하며 한자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숫자의 표기	· 연도, 연대, 물량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국가유산 명칭과 고유명사에 포함된 숫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 수목안내판에 수령을 표기하는 경우는 해마다 수령이 늘어나므로 대략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목을 심은 연도를 정확히 알 때는 절대 연도를 직접 표기할 수 있다. · 날짜는 ○○○○년 ○○월 ○○일로 표기하되, 10이하의 숫자에는 0을 표기하지 않는다.
연대 표기	· 연도는 확실히 아는 경우에만 절대 연도로 표기하며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세기로, 정확한 세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시대로 표기한다. ·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절대 연도 뒤에 ‘무렵’, ‘즈음’, ‘경’ 등을 붙여서 표기할 수 있다. · 왕조 연대와 왕명 다음에 서기를 표시하며 같은 왕조 연대, 재위 기간에는 국호와 연호를 거듭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왕조 연대나 왕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또한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 왕의 재위 연호를 쓰는 경우에도 정확한 연도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로 없이 작게 표시할 수도 있으며, 연도 뒤에 ‘재위’ 라고 쓴다. · 국가유산안내판에는 역사 인물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유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만 표기하되, 이 경우에도 주변 인물들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다. 생몰연도를 표기할 때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할 수도 있다. 한자와 함께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자 다음에 표기한다.
도량형의 표기	· 도량형은 미터법에 따라 표기하며, 단위는 기호로 표기한다. · 규모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단위를 통일하여 가로, 세로, 높이, 두께 순으로 표기하되, 그 표현은 달리할 수 있다. · 한 문장(복문, 중문 포함)에서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위로 통일하되,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가능한 다른 단위로 적는다. · 서화는 가로, 세로 순으로 표기한다.
고어	· 안내 문안에서 고어가 고유명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현대어로 바꾼다.
방향	· 안내 문안에서 방향 표시는 국가유산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국가유산을 직접 가리는 위치에 안내판이 놓이지 않도록 관람 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안내판을 둘 경우에는 현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 방위(동서남북)는 날씨에 따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안내 문안에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지형이나 이론 등 일반적인 확설을 설명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방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판

구분	디자인 기준
	과 권역안내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유산이 다수 밀집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권역안내판 지도에 각각의 명칭을 구분해 표기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2. 관광안내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국가유산 에 대한 관광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주요 거점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며, 해당 국가유산 의 정체성을 반영한 이미지를 연출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배치	· 국가유산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관광안내소는 가급적 외부 공간에 배치한다.
	· 관람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배치한다.
	· 기념품판매소,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 비슷한 기능의 건축물과 통합한다.
	· 생활시설물이 드러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가려지도록 배치한다.
규모	· 국가유산 을 압도하는 과도한 규모의 장식 요소 설치를 금한다.
	· 면적 및 높이를 최소화하여 개방성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형태	· 국가유산 이 부각되도록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 관광안내소와 주변 시설물이 일관성 있는 형태가 되도록 계획한다.
	· 국가유산 에 순응하도록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도록 연출한다.
	· 부속시설물 및 부가적인 시설물로 본래 구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	· 국가유산 과 같거나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한다.
	· 주변 시설물과 비슷하거나 통일감 있는 마감 재료를 적용한다.
	· 국가유산 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색채	· 여러 계열의 색 사용을 지양하여 단일건물의 통일감을 높인다.
	· 건축물 안에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여 간결하게 연출한다.
	·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명도 대비를 최소화한다.
기타	· 높낮이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안전과 편의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한다.
	· 관광안내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을 따른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안내창구의 높이를 설정한다.
	· 외부 간판 및 부착물은 지역별 ‘광고시설물 지침’을 따른다.

3. 화장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이용자의 위생 및 편의를 위해 관람 동선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되는 건축물로 주변에 순응하는 형태와 내부노출을 완화하는 디자인을 한다.
배치	· 국가유산 과 중첩되는 배치를 지양하며, 가급적 독립적 위치에 배치한다.
	· 관람 동선과 연계하여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 보행로에서 정면진입을 지양하고 우회진입을 유도한다.
	· 건축외장과 조화되는 낮은 가림 벽 등을 설치하여 내부 공간이 시각적으로 보호되도록 한다.
규모	· 규모가 지나쳐 국가유산 을 압도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입면 등에 규모가 과도한 장식적 요소 도입을 지양한다.
	· 건물 길이가 긴 경우 분절로 변화감을 주어 시각적 지루함을 해소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고려한 면적으로 설치한다.
형태	· 임시 또는 가설 형식의 건축물 설치를 지양한다.
	· 국가유산 과 이질적인 외관 디자인을 지양한다.
	· 국가유산 과 형태적 충돌이 없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가림 벽 등은 본체와 조화되도록 하고 투박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남녀 화장실 진입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동선이 분리되도록 한다.
재료	· 석재, 목재 등 자연적인 재료를 도입해 국가유산 과 조화롭게 연출한다.
	· 이질적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국가유산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 가림 벽에 넝쿨 식물 등을 심어 녹화할 수 있다.
색채	· 국가유산 에 사용된 단청 등과 같은 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주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 단일건물 안에서 비슷한 계열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여 균형감 있는 색채를 연출한다.
	· 창틀과 같은 국소 부위에 원색 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기타	·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세부 기준을 따른다.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화장실 출입구 벽면에는 화장실 내부 배치 등을 알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를 권장한다.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4. 기념품판매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해당 국가유산 과 관련된 기념품 판매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국가유산 내 편의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출한다.
배치	· 관람 동선에서 접근하기 쉽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한다.
	· 간이시설물의 산발적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휴게 공간을 확보한다.
	· 기념품판매소는 가급적 외부 공간에 배치한다.
규모	·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 국가유산 을 압도하는 대규모 건축물은 지양한다.
형태	· 국가유산 의 위상을 훼손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를 추구한다.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고 복잡한 형태를 지양한다.
	· 옥외광고물 및 안내시설은 최소의 수량과 규모로 설치하며 건축물의 입면 형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일체감 있게 설치한다.
재료	· 국가유산 과 비슷한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국가유산 과 어우러지도록 한다.
	· 투명한 입면 재료를 사용하여 판매소 안에 비치된 판매 물품이 보이도록 한다.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심한 이질적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
색채	· 사인물이 강조된 색채 계획을 규제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연출한다.
	· 상품이 부각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여 간결한 이미지로 연출한다.
	· 주변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계획한다.
	· 명도 차가 크지 않게 하고, 원색 사용을 지양한다.
기타	· 외부 간판 및 부착물은 지역별 ‘광고시설물 지침’을 따른다.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기념품 판매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을 따른다.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5. 매표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국가유산 의 입장권을 판매하기 위해 진입부에 설치되는 건축물로, 단순한 외관 디자인과 개방감을 확보하여 국가유산 의 배경으로 인지되도록 연출한다.
배치	· 주 진입로에서 건축물의 정면성이 확보되도록 배치한다.
	· 주변 시설물과 중첩하여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독립적 위치에 배치한다.
	· 안내시설은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도록 배치한다.
	· 매표소는 외부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규모	·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여 점유 면적을 줄인다.
	· 비 가림시설, 차양시설 등 부속시설물은 기능에 적합하면서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최소의 규모로 설치한다.
형태	· 외관 디자인을 간결하게 하여 주변 국가유산 을 강조한다.
	· 진입부에 설치되는 매표소는 가급적 내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지붕 및 외관 등의 과도한 장식 요소를 지양한다.
재료	· 자연적 이미지의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국가유산 과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 국가유산 과 이질감 있는 마감 재료(반사율이 높은 스틸프레임 등)의 혼용을 지양한다.
	· 국가유산 의 재료와 대비가 심한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 국가유산 의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선정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 인접한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 국가유산 과 비슷한 계열의 조화로운 색채로 계획한다.
	· 사인, 부착물 등에 원색 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약자를 위하여 높낮이 차이를 없애고 편안한 높이를 설정하되 매표창구 전면에는 반드시 수평면을 확보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매표창구의 높이를 설정한다.
	· 매표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을 따른다.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6. 관리사무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해당 국가유산 및 부속 토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건축물로, 국가유산 의 품격에 순응하고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한다.
배치	· 지형을 살려서 배치하고 경사지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수평성을 확보한다.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 주변 건축물 또는 국가유산과 중첩하여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규모	· 불필요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변의 개방감을 확보한다.
	· 국가유산을 압도하는 대규모 건축물을 지양하고, 2층 미만을 권장한다.
	· 가까이에 있는 기능이 비슷한 건축물과 통합하여 건축물의 수량을 줄인다.
형태	· 국가유산 에 순응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연출해 국가유산 의 품격을 살리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 주변 공공시설물과 연계성 있는 외관 형태로 디자인한다.
	· 지붕 및 외관 등의 과도한 장식 요소를 지양한다.
재료	· 국가유산과 인접할 경우 국가유산 과 비슷한 마감 재료를 사용한다.
	· 자연적 이미지의 마감 재료를 도입해 국가유산과 조화롭게 연출한다.
색채	· 한 건물에 사용하는 색상 차와 명도 차를 규제하여 경관을 조화롭게 연출한다.
	· 다른 시설물과 비슷한 색상과 색조로 계획하여 시설 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 주변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된 공간 이미지를 연출한다.
기타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 경사로는 ‘경사로 기본지침’을 따른다.

7. 주차요금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주차요금을 징수·관리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는 소규모 건축물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가유산 과 비슷한 이미지의 마감재를 사용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배치	· 폐쇄감을 주는 배치를 지양하고 개방감 있는 배치를 지향한다.
	· 차량이 들어올 때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 차량의 진출입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운전자의 조망을 고려하여 세로 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진입성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진입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 교통 혼잡을 방지한다.
규모	· 자동화 주차요금소를 도입하여 규모를 최소화한다.
	· 기능을 벗어나는 과도한 시설물을 지양한다.
	· 규모가 과도한 장식 요소 도입을 지양한다.
형태	·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과 연계성 있는 외관 형태를 디자인한다.
	· 외관을 간결하게 디자인해 주변 국가유산 이 강조되도록 한다.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여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차양 등의 부가기능 시설물은 일체감 있게 디자인한다.
	· 국가유산 에서 도출된 형태 또는 양식을 사용하여 연계성을 확보한다.
	· 주변에 식재 공간 또는 화분대를 두어 인공 경관을 완화한다.
재료	· 주차 공간 안에 설치되는 다른 공공시설물과 비슷한 재질을 도입한다.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재료를 도입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고광택의 금속재 사용을 지양하며,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 처리를 한다.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심한 현대적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
색채	· 고채도의 색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이미지로 연출한다.
	· 연접한 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균형감 있는 색채를 연출한다.
	· 시설물 안의 다른 재료의 색채도 같거나 비슷한 계열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기타	· 허가된 광고물이나 홍보물 이외에는 외부에 부착물 설치를 금지한다.
	· 사전 무인 요금 정산소를 설치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사용자 등의 접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8. 경비초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국가유산 지역의 경비 업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소규모 건축물로, 순찰 및 감시가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국가유산 에 순응하는 형태와 색채로 연출한다.
배치	· 도보순찰과 기동순찰 등의 중점 업무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관람 동선에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나무 등을 심어 시각적 돌출을 완화할 수 있다.
	· 국가유산 또는 다른 시설물과 중첩되는 배치를 지양한다.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한다.
	· 국가유산 조망을 확보하도록 과도하지 않은 규모를 설정한다.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여 절제된 규모로 계획한다.
형태	· 국가유산 에 순응하는 형태가 되도록 디자인을 간결하게 연출한다.
	· 폐쇄감을 주는 입면 형태를 지양하고 개방감을 주도록 한다.
	· 연결한 공공시설과 형태적으로 연계해 일체감이 있도록 한다.
재료	· 안과 밖에서 서로 잘 보이도록 투명도가 높은 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 국가유산 과 어우러지도록 자연적 이미지의 재질을 사용한다.
	· 고풍택 금속재 사용을 지양하며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 처리를 한다.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심한 현대적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예를 들어 지붕은 초가를 사용하고 벽체는 패널을 사용하는 등)
색채	· 원색 사용을 지양하여 이질적 이미지의 색채 연출을 방지한다.
	· 다양한 계열의 여러 가지 색을 쓰지 않도록 하여 주변과 조화를 도모한다.
	· 인접 공공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저채도색 사용을 권장하여 색채를 조화롭게 연출한다.

9. 수표시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입장권을 확인하기 위해 진입부에 설치하는 소규모 건축물로, 규모 및 배치를 최소화한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해 국가유산 조망을 확보한다.
배치	· 이용자의 진출입 및 조망을 고려하여 가로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개방된 공간 연출을 도모한다.
	· 국가유산 조망을 고려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 가급적 외부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안내시설을 부가할 경우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게 배치한다.
규모	· 불필요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권장한다.
	· 과도한 장식 및 부속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 국가유산 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추구한다.
	· 연결한 시설물과 형태적으로 연계하여 일체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재료	· 국가유산 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폴리카보네이트, 스틸프레임, 덮지붕(캐노피) 천막 등)의 혼용을 지양한다.
	· 연결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과 마감 재료를 연계하여 경관을 일체감 있게 연출한다.
	· 국가유산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선정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 가까이에 있는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중·저채도색을 사용한다.
	· 창틀 색은 구조 색과 같은 색상이나 비슷한 계열의 색채로 계획한다.
	· 부착물이 있을 경우 건물과 같은 색상으로 계획한다.
	· 소규모 시설에 다양한 색채의 사용을 지양한다.
기타	· 높낮이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수표시설 진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 경사로는 ‘경사로 기본치침’을 따른다.
	· 수표 창구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한 높이로 설정한다.
	· 자동화 수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통과유효폭 최소 0.9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0. 휴게의자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휴게시설로,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며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배치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배치	· 동선 중앙에 배치하거나 수직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보행로와 평행하게 배치하여 관람객의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등)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휴게의자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 공간 특성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식재 공간 아랫부분에 설치하여 그늘이 제공되는 것을 권장한다.
	·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을 위하여 바닥의 높낮이 차이, 재질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의 휴게를 고려하여 휴게의자 주변에는 빈 공간을 설치한다.
규모	· 불필요하게 큰 규모 또는 연속된 규모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한다.
	· 점유 면적 및 높이를 최소화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
	· 기능 위주의 최소 규모로 계획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 규모가 과도한 장식 요소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 국가유산 과 조화되는 형태가 되도록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한 공간 안의 시설물 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게 디자인한다.
	· 정체성 없는 기성제품 사용을 지양하며, 개방감 있는 형태를 연출한다.
	· 산책로처럼 조망과 휴게를 동시에 하는 공간은 양방향으로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부분적으로 등받이와 팔걸이를 적용한다.
재료	· 국가유산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한다.
	· 유지성 · 관리성을 고려하여 오염 및 부식을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국가유산 품격에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 한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색채 사용을 규제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 기타 시설물과 비슷한 색상과 색조를 사용하여 조화로운 색채 계획을 한다.
	· 주변 환경의 색채를 최대한 사용하여 조화로운 공간 이미지를 연출한다.

11. 그늘시렁(피걸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이용자의 휴식 및 편의를 위해 휴게 공간 안에 설치하는 편의시설로, 국가유산 을 압도하지 않는 규모와 형태를 설정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재료와 색채를 연출한다.
배치	· 국가유산 지역 안에 있는 다른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용자의 조망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전통 건축물이 가까이 있는 경우 인공적 형태를 지양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규모	· 불필요하게 규모가 커서 국가유산 을 압도하거나 위압적인 경관 연출은 지양한다.
	· 국가유산 조망을 저해하지 않는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 장식 요소를 최대한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여 국가유산 이 돋보이도록 디자인한다.
	· 국가유산 과 가까이 배치할 때는 국가유산 의 디자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할 수 있다.
	· 단순한 구조와 개방감 있는 형태로 연출한다.
	· 그늘시렁(피걸러) 안의 휴게의자와 형태적으로 연계하여 경관을 일관성 있게 연출한다.
재료	· 휴게의자와 함께 설치할 때는 두 시설물을 통일감 있는 재료로 연출한다.
	· 가급적 자연적인 느낌이 드는 재료를 도입하여 국가유산 과 어우러지도록 한다.
	· 연결한 편의시설과 재질을 연계해 경관을 일관성 있게 연출한다.
색채	· 주변 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색채로 계획하여 순응되도록 연출한다.
	· 주변과 비슷한 소재와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로운 색채 계획을 한다.
	· 고채도의 사인과 부착물의 사용을 지양한다.

12. 음수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이용자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관람 동선과 휴게 공간 안에 설치하는 편의시설로,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규모를 설정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배치	·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다.
	· 배수를 재사용하는 방안(예를 들어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등) 등을 추구한다.
	· 이용자가 많은 광장에 설치할 경우, 다양한 방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규모	·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줄인다.
	· 설치 위치(산책로, 광장 등)에 따라 규모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형태	· 국가유산 특성을 살린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주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 국가유산 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거나 지나친 장식적 요소의 도입을 금한다.
재료	· 청결 및 유지, 보수를 고려하여 녹슬지 않거나 잘 썩지 않는(내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바닥면은 평탄하며 미끄럼을 방지하는 재료로 가공할 것을 권장한다.
	· 철재 사용 시 무광 처리를 하여 주변 경관과 이질감을 완화한다.
	· 연결한 공공시설물과 재료를 연계해 통일감을 연출한다.
색채	· 음수대가 설치되는 위치를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 석재 등 자연 소재를 사용할 경우 도장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고유 색채를 연출한다.
	· 음수대에 설치하는 바가지, 덮개 등의 색채는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사용한다.
기타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음수구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한 형태로 연출하고 지면과 높낮이 차이를 없앤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의 세부 기준을 따른다.

13. 자전거보관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기본	· 자전거의 거치 및 보관을 위한 편의시설로, 위압감을 주지 않는 적절한 규모로 설정하고 장식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국가유산 과 어우러지도록 연출한다.
배치	·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동선 및 결절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가로등 및 감시카메라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외부 공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배치한다.
	· 자전거보관대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규모	· 자전거 이용객을 파악하여 적절한 규모와 수량으로 계획한다.
	· 차양, 비 가림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여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국가유산 을 압도하지 않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형태	· 시야를 가리는 차양시설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형태를 지양하고 디자인을 간결하게 연출해 국가유산 에 순응하도록 한다.
	·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 설치되는 자전거보관대는 공기주입기 등 간단한 자전거 정비가 가능한 시설물과 연계한다.
재료	· 연결한 공공시설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 자전거 보관 및 회수 시 시설물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사용을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무채색 사용을 권장한다.
	·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가급적 도장을 하지 않고,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눈부시지 않게 마감 처리를 한다.
색채	· 주변의 여러 시설물과 일체감 있는 색채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 보관대가 놓이는 장소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과 색채를 적용한다.
	· 시설물에 부착되는 요소들의 위치와 크기를 고려한 색채를 적용한다.
	· 주변 환경에 순응하도록 배경과 비슷한 색 또는 저채도색으로 연출한다.

14. 휠체어 · 유모차보관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휠체어나 유모차를 보관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접근이 쉬운 진입부에 설치하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간결한 함 형태를 연출한다.
배치	· 관람객이 접근하기 쉬운 진입부, 주요 건축물, 휴게시설 주변 등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휠체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조명시설 또는 감시카메라 주변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 장애인 동선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를 설정한다.
	· 휠체어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를 설정한다.
형태	· 간결한 함 형태로 디자인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바닥과 높낮이 차이를 없앤다.
	· 휠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과도한 안내문구 설치를 지양하며, 주변 시설물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한다.
재료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 투과성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 무색의 투명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유리를 사용할 경우 투명도가 높으며, 파손의 우려가 적고 강도가 높은 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 국가유산과 연결하여 설치할 때 국가유산과 보관대의 재질을 연계하여 국가유산에 순응하도록 한다.
색채	· 휠체어보관대는 국가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경 색을 적용한다. 부득이할 경우 저채도색을 적용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다른 시설물들과 일체감을 주도록 비슷한 색채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을 배경으로 할 경우 건축물 재료와 같은 색채를 사용한다.
	· 보관대에 부착 또는 설치되는 사인물에 고채도색 및 원색의 사용을 지양한다.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보관대 전면부 잘 보이는 곳에 담당자 연락처를 기입하거나 호출벨을 설치한다.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15. 경사로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높낮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물로, 건축물의 진입부 계단,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는 공간에 설치하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배치	· 지나친 수직 이동의 동선 계획을 지양한다.
	· 경사로 위치를 유도·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규모	· 경사로의 유효 폭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다닐 수 있도록 1.2m 이상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보행약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1/12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손잡이의 높이는 0.8m 이상 0.9m 이하로 설치하며,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형태	·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x1.5m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에는 연석이나 울타리 등 보행 공간과 주행 공간을 분리하는 공작물을 설치한다. 공작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면의 재질을 달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 경사로 설치 시 시작지점과 끝 지점에는 1.2m 이상의 수평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접점 부분에는 반드시 수평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재료	· 사용자 안전을 위해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 불규칙하거나 면이 거칠어 돌출되는 것을 피하고, 평탄하게 마감한다.
	· 국가유산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 주변과 조화되며 전통적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색채로 계획한다.
	· 고채도색 사용을 금하고 배경과 조화로운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 일정한 형태나 그래픽의 적용을 금한다.

16. 휴지통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이용자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위생시설로, 휴지통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게 연출하고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색채 및 형태의 마감재를 적용한다.
배치	· 휴게시설과 연결하여 배치할 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확보한다.
	· 휴지통을 여러 개 배치할 때, 산발적인 개별 배치를 지양하고, 한 장소에 밀착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 연결한 공공시설물과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 휴지통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한다.
	· 규모를 최소화하여 통합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쓰레기가 나오는 예상 지역을 검토한 뒤 설치하여 수량을 최소화한다.
	·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로 인한 규모 확대를 지양한다.
형태	· 쓰레기 투입, 수거, 청소 등 관리가 쉽도록 디자인한다.
	· 동물이 내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디자인한다.
	·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휴지통 안의 수분이 쉽게 배출되도록 디자인한다.
	· 분리배출이 가능한 휴지통으로 계획하고, 그림문자(픽토그램)*를 도입하여 분리배출이 쉽게 한다.
	·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휴지통의 투입구 높이를 설정한다.
재료	·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빗물 등으로 오염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휴지통 주변의 편의시설과 비슷하거나 같은 재료를 적용하여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 마감재는 광택을 줄여 인공적 느낌을 없애고 국가유산과 주변 환경에 순응하도록 한다.
색채	· 휴지통은 갈색 계열의 저채도색이나 무채색으로 계획하고, 여러 개가 있을 경우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여 계획한다.
	· 다른 시설물과 같이 설치할 경우 색상은 단색으로 통일하고 그림문자(픽토그램)*를 도입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안내 문구는 시설물과 일체화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17. 공중전화함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공중전화를 설치하기 위해 진입부와 주요 결절부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며 형태, 색채,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의 표시를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배치	· 통행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한다.
	· 휴게시설물과 연계하여 휴게 공간 안에 공중전화함을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 산발적으로 분리된 배치를 지양하고 밀착 배치하여 복잡한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 공중전화함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최소한의 기능만을 고려하여 단순화하고,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한다.
	· 수요에 따라 적정 수량의 시설을 설치한다.
형태	· 복잡한 장식 요소를 지양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정체성 없는 기성품 사용을 지양하며,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일체감이 있도록 한다.
재료	· 국가유산 과 연계성 있는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 경관을 일관되게 연출한다.
	· 방음형 함(문이 닫히는 구조)의 경우 내부가 보이는 재질을 권장한다.
	· 고풍택 금속재의 사용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광택을 완화하는 도장 또는 표면 가공을 한다.
색채	· 주변 시설물을 고려하여 일체감을 유지하는 색채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 국가유산을 배경으로 설치될 경우 명도·채도 차가 큰 색채는 지양한다.
	·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설치할 경우 강조색의 사용 면적을 최소화한다.
	· 시설물이 연속되어 설치될 경우 같은 색채를 적용하여 통일성을 유도하도록 권장한다.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공중전화는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8호의 기준을 따른다.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18. 자동판매기합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음료수, 커피 등의 자동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시설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휴게 및 편의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고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한다.
배치	· 자동판매기의 산발적인 분산 배치를 금하고 한 장소에 밀집하여 배치한다.
	· 휴게의자와 휴지통 등의 편의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 건축물 또는 담장을 배경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규모	· 품목이 중복되는 자판기 설치를 지양하여 점유 면적을 최소화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자판기 조작부의 높이와 규모를 설정한다.
	· 자동판매기의 규모를 과도하게 하여 국가유산을 압도하거나 혼돈되지 않도록 한다.
형태	· 국가유산과 조화되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자동판매기를 통합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장식이 과도한 차양이나 지붕 형태를 제한하고 수평적 이미지를 살린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 자동판매기는 가급적 같은 형태로 설치한다.
	· 음료수 병, 강통 등을 분리배출하기 위해 분리배출함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재료	· 국가유산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나 반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금한다.
	· 국가유산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선정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 주변 시설물의 색채와 같거나 비슷한 색채를 함과 자판기에 조화롭게 적용한다.
	· 국가유산 공간의 배경 색채를 반영하여 외장 색채를 적용하고 기성제품의 원색적인 색채 사용을 금한다.
	· 자동판매기가 나열되어 있을 경우 같은 색채를 적용한다.
	· 그래픽 사용을 금한다.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도입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자동판매기는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의 기준을 따른다.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19. 광고시설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국가유산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외관에 부착하는 간판, 사인물 등과 같은 옥외광고물로서, 국가유산 이미지와 조화롭고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규모, 색채, 서체로 연출한다.
배치	·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배치를 금하며, 동일선상에 광고물을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 지주를 이용한 사인물의 배치를 지양한다.
	·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규모	· 건축물의 규모를 압도하는 과도한 규모를 지양하여 광고시설이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과도한 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설치 수량을 최소화한다.
	· 광고물 유형별로 같은 규격을 설정하여 정리된 경관을 구현한다.
형태	·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을 권장한다.
	·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여 국가유산 이미지에 순응하도록 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재료	· 국가유산과 인접한 안내시설은 국가유산과 비슷하거나 조화로운 재질을 적용한다.
색채	·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 사용 비중을 줄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글자 색과 배경 색의 차이를 줄여 자극적인 색채를 완화한다.
	· 회갈색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국가유산 이미지에 순응하도록 한다.

20. 차량통제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하는 관리시설물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국가유산 과 어우러지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배치	· 점자블록과 연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충돌을 방지한다.
	· 자전거, 휠체어 등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 간격을 적절히 둔다.
	· 시설물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차량통제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공간에는 화분대를 설치하여 차량통제대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규모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낮은 차량통제대 설치에 지양하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높이로 계획한다.
	· 공간 특성 및 보행 공간의 확보 정도를 고려하여 차량통제대의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 보행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보행자가 많고 좁은 공간에서는 가는 형태로 설치하여 보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비상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일정 구간은 분리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 국가유산 의 이미지를 직접 사용한 조잡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재료	· 차량통제대는 방향성이 있는 형태를 지양하고 원기둥 형태를 기본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 고팡택 금속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팡택을 줄이는 도장이나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바닥 포장재와 재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연계성이 있도록 한다.
색채	· 한 공간에 설치되는 차량통제대는 색채를 통일하여 적용한다.
	· 같은 차량통제대에 일부 패턴이나 색채를 적용할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국가유산 의 특성은 살리되 무리한 색채 적용은 지양하고, 강조색은 5% 미만의 면적에 기능성을 살려 최소한으로 적용한다.
	· 보도 포장과 연계성을 고려한 색채를 적용해 통일성을 부여한다.
기타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시설 기준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21. 보호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유산 주변에 설치하는 보호시설물로, 국가유산의 위상을 저해하지 않는 간소한 형태와 연속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배치	· 보호울타리의 기초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지주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 경사지에서는 보호울타리의 지주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배치한다.
	·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해 주변 공간을 확보한다.
규모	· 지나치게 굵은 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되도록 가는 지주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같은 높이와 규모의 보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 국가유산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높이를 설정한다.
형태	· 과도한 장식 요소나 판상 구조를 지양하여 국가유산 조망을 확보한다.
	· 지주 형태는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파손되거나 훼손될 경우 단위별 보수가 쉽게 디자인한다.
	· 복잡한 체결 구조 및 접속부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일체감 있게 연출한다.
	· 획일적인 기성품 사용을 지양하고 간결한 디자인 연출로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 형태가 다른 2개 이상의 다른 울타리가 이어지는 것을 지양하여 연속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재료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또는 도장을 한다.
	· 자연적 특성이 강한 국가유산에는 자연 소재(대나무, 짚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 보호울타리의 재료가 다를 경우 색채를 맞춰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보호울타리 설치되는 장소의 시설물과 동질감이 있는 이미지로 색채 계획을 한다.
	· 다른 시설물과 색채 조화를 고려하고, 원색 사용을 금지한다.
	· 마감재는 광택을 줄여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국가유산과 주변 환경에 순응하도록 한다.

22. 안전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시설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 방지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며 간결한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배치	· 독립된 형태의 배치를 지양하고 체결 구조를 규격화하여 지주 간의 연계 배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국가유산 바닥 환경(높낮이 차이, 경사, 포장 재료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울어짐 등의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 구조와 안전성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크기를 최소화하고 얇게 디자인한다. · 안전 확보가 우선시되는 위험 지역에서는 높이를 충분히 확보한다.
형태	· 국가유산을 상징하는 특정 이미지를 안전울타리의 형태 또는 문양에 적용하는 장식적 개념의 디자인을 지양하며, 기능 중심의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조망을 막는 면적인 형태보다는 선적인 형태를 지향한다. ·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용접 방식의 시공을 지양하고, 볼트를 이용한 체결 및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 차량이 빈번하게 주행하는 구간에 한하여 야간에 명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사판이나 반사시트를 부분적으로 부착한다. ·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마감 처리를 한다. · 보도울타리에 적용되는 재료는 미관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사용한다. · 보도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의 표면 이미지는 주변 공간과 조화를 고려하여 반사도가 높은 광택 재료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반광택 또는 무광택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서는 친환경 마감 재료의 도입을 권장한다.
색채	· 한 가지 색을 울타리에 사용하여 연결성을 유지한다. · 외부 환경의 색채를 고려하여 국가유산 공간과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 국가유산 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재료보다 저채도색을 적용하여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한다. · 국가유산 의 특징을 고려한 제품 색을 적용하고 적합한 색이 없을 경우 제작할 것을 권장한다.

23. 경계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국가유산 및 부속 공간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유산 경계부에 설치하는 보호시설물로,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색채를 반영하고 개방감 있는 형태를 연출하여 조화되도록 한다.
배치	· 보행 공간을 침해하는 배치를 지양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치한다.
	· 경계부의 수목이나 시설물에 감춰져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규모	· 지주를 최소한만 설치하여 조망성을 높인다.
	· 한 공간에서는 높이가 같은 시설물을 사용한다.
	· 외부에서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높이를 확보한다.
형태	· 경계울타리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지양한다.
	· 경계울타리가 설치되는 다양한 지형 특성(평지, 언덕, 모퉁이)에 영향이 적은 디자인을 연출한다.
	· 가급적 기성품 울타리(메시형 등)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저채도 색을 적용한다.
	· 면적인 형태보다 선적인 형태를 연출해 위압감이나 단절감을 완화한다.
	·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설치한다.
	· 경계울타리가 높게 조성되는 경우 수목을 식재하여 시각적 높이를 완화한다.
재료	· 국가유산과 연결하게 설치되는 경우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슷한 재질이나 색채를 적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한다.
	· 고광택 재료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색채	· 외부 환경 색채를 고려하여 국가유산 공간과 조화되는 색채를 연출한다.
	· 국가유산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같은 재료를 적용하여 경계울타리의 거부감을 줄인다.
	· 기성품을 사용할 때는 국가유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품 색을 적용하고 적합한 색이 없으면 제작하여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24. 화분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기본	· 가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생육 기간이 짧은 초화류를 식재하는 조경시설물로, 국가유산 지역 공공시설물과 일관성 있는 형태와 색채를 적용하여 경관을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배치	· 휴게시설,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다른 공공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 관람객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통행을 막는 용도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여건상 차량통제대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화분대를 활용하여 대체할 수도 있다.
규모	· 화분대 지면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줄인다.
	· 필요 이상의 수량을 설치하여 혼잡한 경관을 연출하지 않도록 한다.
	· 규모가 과도해 배후 경관을 가리지 않게 연출한다.
형태	· 연결한 공공시설물의 형태와 연계하여 디자인한다.
	· 전통문화 이미지를 단순 모방한 과도한 디자인의 적용은 지양한다.
	· 물 공급과 배수가 잘되게 디자인한다.
재료	· 플라스틱 등 인공 재료는 지양하고, 국가유산 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재료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목재 등 자연 재료를 인위적으로 모방해 이질감을 형성하는 것을 지양한다.
	· 목재 사용 시 방수·방부·방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권장한다.
	· 목재 사용 시 유색 페인트 도장은 지양한다.
색채	· 국가유산 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한다.
	· 주변의 시설물과 건축물의 색채 연계성을 고려하여 색채를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 한 공간이나 인접 시설의 화분대는 같거나 비슷한 색채를 사용한다.
기타	· 화분대의 입면을 활용한 광고물 또는 안내물 부착을 금한다.
	· 국가유산 의 특징과 계절을 고려하여 외래수종의 식재를 지양하고, 국내 자생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조화롭게 연출한다.

25. 소화시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국가유산 지역 안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물로, 함 디자인으로 소화기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과 이질감이 없는 색채를 연출한다.
배치	· 소화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긴급 상황에 사용하기 쉽게 배치한다.
	· 담장 및 건축물 벽면에 밀착 배치하여 보행과 동선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소화시설 여러 개를 한 공간에 설치할 경우 하나의 함 형태로 통합하여 배치한다.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되,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 덮개 기능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여 시설물 규모를 최소화한다.
	· 소화시설 주변에 규모가 과도한 보호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 함 디자인을 적용해 소화기의 외관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간결하게 디자인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고 국가유산 의 부속시설물로 인지되도록 한다.
재료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 도장 또는 마감 처리로 광택을 줄여 인공적 느낌을 없애고 국가유산 과 조화되도록 한다.
	· 소화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내부 확인이 가능한 투명 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색채	· 주변 건축물의 배경 색과 비슷한 계열의 저명도·저채도색을 사용한다.
	· 기능성을 강조한 고채도색은 작은 면적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저채도색, 저명도색을 사용한다.

26. 분전함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국가유산 안의 전기, 조명 등 전기장치를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시설물로, 배경과 조화되는 재질과 색채를 적용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배치	· 가로 배치를 권장하여 외부에서 조망되는 면적을 최소화한다.
	· 관람 동선에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주변 시설물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정돈된 경관을 연출한다.
	·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무 등을 심어 가릴 것을 권장한다.
	· 분전함을 가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여건상 가리기 어려울 경우 ‘부속시설 가림막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가린다.
규모	· 분리된 배치를 지양하며, 비슷한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한다.
	· 조작성을 고려하되 최대한 낮게 설치하여 돌출 이미지를 완화한다.
형태	· 국가유산과 조화되도록 간결한 함 형태로 디자인한다.
	· 보행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한 공간 안에서 시설물 간에 일관성 있도록 통일감 있게 디자인한다.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재료	·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도장을 적용해 주변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 국가유산과 연계된 조화로운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배경 색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한다.
	· 여러 개를 나열하여 설치할 때에는 같은 재질과 색채로 통일한다.
	· 색채는 단색으로 계획하며 그래픽 사용은 지양한다.
	· 분전함의 기초부가 노출될 경우 분전함과 같은 색상으로 계획한다.

27. 점검용 덮개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바닥 점검구 등을 덮는 관리시설물로, 바닥 포장 패턴과 연계하고 지면과 일치하도록 하여 보행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규모	· 덮개 경계부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포장 면과 이질감을 최소화한다.
	· 기능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도록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 포장 방식과 덮개의 표면은 같은 형태를 도입하여 이질감을 없애고, 연속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문자는 보행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한다.
재료	·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마감 처리를 한다.
	·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빗물 등으로 오염 및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자연환경과 연접하거나 녹지 안에 설치할 경우 목재 또는 석재 등 자연친화적 소재를 도입한다.
	· 마감재는 인공적 느낌을 없애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한다.
색채	· 주변 지면의 색채와 같은 패턴과 색채로 통일한다.
	· 녹지와 인접해 있을 때에는 녹지와 비슷한 명도의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여 조화되도록 한다.
	· 보도블록 위에 설치할 때에는 주변 보도블록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여 순응하도록 한다.
	· 한 공간 안에서는 같은 형태와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부여한다.

28. 우수용 집수정덮개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비가 올 때 배수 기능을 목적으로 바닥에 설치하는 관리시설물로, 바닥 포장과 연계 또는 은폐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연출한다.
배치	· 보행 공간 내 설치를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동선(방향)과 수직으로 배치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보조이동수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한다.
형태	· 테두리를 두껍게 하지 않고 주변과 어울리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인접한 시설물과 조화롭게 디자인을 연출한다.
	· 시설물과 지면의 접속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기성제품의 이질적인 사용을 지양하고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한다.
재료	· 철재를 사용할 경우 부식 방지 처리를 한다.
	· 석재와 같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주변 경관과 연계한다.
색채	· 집수정덮개가 설치된 지면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한다.
	· 지면과 색 대비가 강한 색상의 사용을 금지한다.
	· 단색으로 계획하여 색채 사용을 최소화한다.

29. 수목보호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수목의 물 공급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수목 아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지면과 높낮이 차이가 없도록 설치하고 바닥 포장과 이질감을 줄이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하여 연출한다.
	· 자연환경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하부 식재를 적용해 수목보호대의 기능을 대신할 것을 권장한다.
형태	· 낙엽 등이 쌓이지 않도록 구조를 단순화하고 유지·보수가 쉽게 한다.
	· 수목이 숨 쉴 수 있도록 폐쇄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한다.
	· 보호대 주변 포장의 색채와 패턴을 고려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디자인한다.
	· 국가유산 이미지의 직접적인 도용과 문자 기입을 지양하며, 최대한 간결하게 디자인하여 주변과 조화를 연출한다.
	· 보도 면과 높낮이 차이를 없애는 것을 권장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수목지주대 설치를 고려하여 형태를 디자인한다.
재료	·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부식 방지 처리를 하여 빗물 등으로 오염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마감 처리를 하도록 권장한다.
색채	· 설치되는 지면의 색채를 고려하여 같은 계열 색채로 조화롭게 계획한다.
	· 색상은 단색으로 계획하고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때에는 같은 색상을 사용한다.
	· 다른 시설과 복합 설치될 때에는 같거나 비슷한 색상으로 계획한다.

30. 수목지주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수목이 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시설물로,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배치	· 기능적 측면을 만족하면서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주를 배치한다.
	· 가급적 수목보호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주를 배치한다.
규모	· 규모가 과도한 지주 설치를 지양한다.
	· 지주대의 기능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늘게 연출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형태	· 수목의 규모에 따라 지주 형태를 다르게 연출한다.
	·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지주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수목보호대를 벗어나지 않게 기울기를 설정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재료	· 가급적 수목과 조화로운 소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철재를 사용할 경우 마감으로 광택을 줄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도록 연출한다.
색채	·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수목과 조화를 이루며 주변 환경에 순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인공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저명도 ·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 주변과 수목 색채를 고려하여 갈색 계열의 저채도 · 저명도 색채를 사용한다.
	· 부득이하게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한다.

31. 부속시설 가림막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외부로 노출되는 에어컨 실외기 등 부속시설을 가리기 위해 설치하는 차폐시설물로, 건축물 뒤쪽에 배치하거나 나무 등을 심어 가리고 관람객의 조망이 적은 공간에 설치한다.
배치	· 국가유산과 인접한 배치를 금하며, 가급적 건축물의 옆이나 뒤쪽에 배치하여 노출을 최소화한다.
규모	·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 공간만 확보하고,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한다.
	· 높이가 과도한 가림시설 설치를 지양하여 위압감을 줄인다.
형태	· 부속시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형태를 디자인하며,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로 연출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과도하게 일정한 형태와 그래픽 요소의 도입을 지양한다.
재료	· 배경과 비슷하거나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한다.
	· 자연환경이 우세한 공간에서는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가린다.
색채	· 고채도 원색과 같은 화려한 색상의 사용을 지양한다.
	· 설치 위치에 따라 배경과 비슷한 색채를 적용하여 돌출 이미지를 방지한다.
	·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자연색과 비슷한 색을 사용한다.

32. 지주시설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전깃줄을 포함하는 기둥 형태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물로, 관람객의 동선을 배려하여 배치하고 지주를 가늘게 하여 개방감을 연출한다.
배치	· 관람 동선상의 설치를 지양하고 국가유산 조망과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국가유산과 중첩 또는 인접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한다.
형태	· 불필요한 장식 요소 또는 형태를 지양한다.
	· 최대한 좁고 가는 형태로 디자인하여 조망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연접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을 지주에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색채	· 전신지주와 결합되는 시설물과 통합된 색채 계획을 실시한다.
	·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이 돋보이도록 한다.
	· 위험 표시를 위한 안전, 경고 등 사인물을 부착할 때에는 저채도색을 사용한다.
	· 부득이하게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한다.

33. 보안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국가유산 내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조명시설물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인접한 방 송, 안내, 보안시설과 통합하는 것을 권장한다.
배치	·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 국가유산과 인접하거나 조망을 훼손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전선 등의 위험 요소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조명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규모	· 등기구에 과도한 장식을 지양하여 국가유산에 순응하도록 한다.
	· 인접 시설물끼리 통합하여 규모를 줄인다.
형태	· 국가유산과 디자인 요소를 공유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복잡한 디자인으로 국가유산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연접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 등의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보안등 지주에 통합하여 복잡한 경관을 완화한다.
	· 시설물 통합 시 매립 가능한 시설은 지주 내에 매입하여 외부로의 돌출을 최소화한다.
재료	· 배경과 비슷한 마감재를 도입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 고광택 마감재 사용을 지양하며, 사용할 경우 도장 또는 마감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연출하도 록 권장한다.
색채	· 국가유산과 인접한 조명시설의 색채는 무채색이나 갈색 계열의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적용한다.
	· 마감재는 최대한 광택을 줄여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국가유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 연속되는 보안등은 같은 색으로 통일하여 보행 경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 부득이하게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한 다.

34. 경관조명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보도 및 녹지 공간 안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물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과도한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배치	· 보행로 경계부에 평행하게 배치하며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다른 시설물과 인접할 경우 통합하거나 선형을 맞추어 설치한다.
	· 바닥에 설치되는 조명은 보도 면과 일치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경관조명등 주변에 나무 등을 심어 가리도록 한다.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규모	· 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형태	· 부가적인 장식 요소를 배제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게 연출한다.
	· 주변 조명시설과 형태를 연계하여 일관된 디자인을 연출한다.
재료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인공적 느낌을 완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또는 도장 처리를 한다.
색채	· 자연환경에 설치할 경우 갈색 계열의 저채도 · 저명도 색채를 적용한다.
	· 보행 공간에 설치할 경우 무채색 계열로 주변과 조화롭도록 한다.

35. 보행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야간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1m 이하의 낮은 높이로 설치하는 조명시설물로, 관람 동선 경계부에 설치하고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규모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배치	· 야간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 끝단에 배치한다.
	· 관람 동선 경계부에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 낮은 보행등은 바닥에 밀착하여 조망과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형태	· 지나치게 장식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디자인 연출을 권장한다.
	· 주변 조명시설과 공통된 디자인과 형태적 연계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 보행등 주변에 나무 등을 심어 가리도록 한다.
	· 울타리와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울타리 지주와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간결한 경관을 연출한다.
재료	· 녹지 공간에 설치되는 보행등은 석재 등 자연적 재질을 도입하여 이질감을 완화하도록 연출한다.
	· 무광택 재질을 사용하여 위화감을 완화하는 마감을 연출한다.
색채	· 자연환경에 설치할 때 갈색 계열의 저채도 · 저명도 색채를 적용한다.
	· 보행 공간에 설치할 때 무채색 계열로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 마감재는 최대한 광택을 줄여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한다.
	· 연속적인 보행등은 같은 색채로 통일하여 보행 경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6. 벽부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야간에 건축물 · 시설물에 부가적으로 부착하여 일반 조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시설로, 배경이 되는 시설물과 비슷한 색을 적용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배치	· 편의시설의 형태를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 시설물의 간격과 비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국가유산 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한다.
규모	· 기능을 벗어나는 과도한 장식 요소로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한다.
	· 필요한 조명 수량만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 편의시설 디자인과 연계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형태적 이질감과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해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색채	· 국가유산 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 부착 위치의 배경 색을 고려하여 배경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계획한다.
	· 색채 계획 시 단색으로 계획한다.

37. 공사용 가설건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공사 중 설치하는 가설 덧집 등의 시설물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국가유산과 조화롭게 배치 되도록 형태를 연출하여 국가유산 의 품격을 높인다.
배치	· 현장 관리사무소, 창고 시설 등 가설울타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태	· 과도한 그래픽 요소를 지양하고, 국가유산 의 특성을 반영한 입면 디자인을 연출하되, 국가유산 의 정체성을 살리도록 한다.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지양하고 기능을 고려한 간결한 형태로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재료	· 금속성의 고광택 소재 사용을 지양하고 도장하거나 무광 재질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색채	· 원색 사용을 금하며 여러 색상의 배색을 지양한다.
	· 국가유산과 비슷한 색채를 계획해 통일감 있는 공간 이미지를 연출한다.
	· 단색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돌출되지 않는 경관을 형성한다.

38. 공사용 가설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공사 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계부에 설치하는 공사시설물로, 국가유산 과 조화로운 색채 및 형태 이미지를 입면에 부여하여 조화롭도록 연출한다.
배치	· 보행가도와 주변 지역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게 배치한다.
	· 점자블록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불가피할 경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점자블록 동선을 벌려 놓는다.
	· 시설물 주변에 불필요한 시설물 배치를 금한다.
규모	· 높낮이가 다르거나 복잡한 형태의 시설물 연출을 지양하며, 간결한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로에서 공사 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설정한다.
	· 주변 인접 시설물을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 형태가 서로 다른 가설울타리가 접속하지 않도록 하여 연속성을 연출한다.
	· 국가유산 지역 내부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내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용자가 많이 조망하는 곳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면에 국가유산 이미지와 조화로운 그래픽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재료	· 표면을 무광택으로 처리해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마감 연출을 권장한다.
	· 관람객의 외부 조망이 빈번하거나 장기간 설치되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다른 재질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색채	· 설치 위치에 따라 주변 색채를 고려하여 비슷한 색이나 저채도색을 사용한다.
	· 국가유산을 고려하여 따뜻한 느낌이 드는 갈색 계열 색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복합적인 재료를 사용할 때는 각 재료의 색채를 통일한다.

39. 이동식 통제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공사 현장 또는 임시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는 공간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공사 시설물로, 국가유산 과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배치	· 보행동선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배치를 권장한다.
규모	· 면적 시설물이 주변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 규격화된 형태로 분리하거나 결합하여 적정 규모를 연출한다.
형태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가유산 의 품격을 높이는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권장한다.
	· 규격화된 형태로 분리하거나 결합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디자인을 권장한다.
재료	· 고광택 재질의 사용을 지양하며, 도장 마감 처리 또는 무광 소재를 적용하여 주변 경관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이동과 설치가 쉽도록 가벼운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국가유산 과 조화로운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순응하는 경관을 연출한다.
색채	· 위험·안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주의 표시색(노랑, 빨강, 검정 등)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원색의 비중을 줄인다.
	· 서체는 시각적 인지성을 고려하되 시설물 규모와 조화되는 크기로 적용한다.(적용 면적 대비 70% 이내)
	· 원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채도를 낮추며, 명도 대비를 줄여 이질적 이미지를 최소화한다.
기타	· 부가적인 안내시설 등의 부착을 지양하여 복잡한 경관을 완화한다.

40. 임시건축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국가유산 안에 일정 기간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국가유산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와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하여 이질감을 해소한다.
배치	· 국가유산과 인접하게 설치하여 국가유산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 창고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규모	·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국가유산을 압도하지 않도록 한다.
형태	· 전통문화 이미지의 직접적 연출을 지양하며 간결한 형태로 연출한다.
	· 과도한 장식 요소를 지양하여 국가유산과 충돌되지 않도록 한다.
	· 불필요한 안내시설의 부착을 지양한다.
재료	· 폴리카보네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등 반사성이 높고 주변과 이질감을 형성하는 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 창틀이나 노출되는 부속시설물은 도장을 하여 시각적 돌출을 완화한다.
색채	· 전통적 이미지의 건축물과 조화되게 비슷하거나 같은 색으로 계획한다.
	· 지붕은 원색 사용을 금하고 회색, 회갈색 계열의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 창틀, 출입문 등은高明도 색채를 지양하고 건축물과 같은 계열의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기타	· 건물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과 부속시설은 감추는 것을 권장한다.

41. 천막시설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국가유산 안에 일정 기간 임시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배치	· 국가유산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국가유산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 천막시설은 통합하여 한 장소에 밀집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배치를 금하며,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규모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여 기능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규모를 연출한다.
	· 국가유산을 압도하는 규모의 천막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 간결한 뼈대 구조의 천막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경관을 연출한다.
	·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재료	· 반사율이 높은 비닐류의 천막 대신 천 재질을 사용하여 배경의 국가유산에 순응하도록 한다.
	· 철제 틀과 천막을 제외한 다양한 재료의 복합적 사용을 금한다.
	· 철제 틀은 도장 처리를 하여 인공적인 느낌을 완화한다.
색채	· 주변과 조화되며 전통적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색채로 계획한다.
	·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금하고 전통 색과 조화로운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 형태나 그래픽, 글씨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연속된 시설물은 단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을 준다.
기타	· 전선 등의 부속시설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감춘다.

42. 현수막시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행사와 홍보를 하기 위해 진입부에 설치하는 임시 안내시설물로, 현수막의 색채 및 서체를 국가유산 이미지와 어우러지도록 연출한다.
배치	· 주 관람 동선에서 국가유산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현수막 여러 개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두어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규모	· 가급적 가로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규격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연출한다.
	· 다른 시설물에 부착할 경우 시설물의 폭과 길이를 고려하여 일체감을 준다.
형태	· 현수막 내용에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필요한 사항만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재료	· 국가유산과 이질감이 있는 비닐 재질이 아니라 천 재질 현수막을 사용하여 국가유산과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색채	· 한 시설물에 다양한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배경 색과 글자 색을 포함하여 2~3가지 이내의 색채로 계획한다.
	·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저채도색으로 계획하고 일관된 디자인 형식을 갖춰 통일감을 준다.
	·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금하고, 전통 색과 조화로운 저채도색으로 계획한다.
	· 시설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크기가 적절한 서체로 계획한다.
기타	· 현수막의 서체는 한 가지로 통일하고 간결한 내용을 권장한다.

[별지 3]

[별표 3]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제12조 관련)

1. 안내판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국가유산과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되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 가?	☐	☐ ☐ ☐
	· 국가유산과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국가유산을 압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연출하였는가?	☐	☐ ☐ ☐
	·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 및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사인물 간의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여 형태가 통일되도록 하였는가?	☐	☐ ☐ ☐
	·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	☐ ☐ ☐
	· 인간체격기준척도 및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	☐ ☐ ☐
재료	· 국가유산과 인접한 안내시설은 단일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고광택 금속재의 노출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표면 처리를 하였는가?	☐	☐ ☐ ☐
	· 자연 소재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여 국가유산과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색채	· 사인시설물은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 사용의 비중을 최소화하였는 가?	☐	☐ ☐ ☐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사용하여 인지성을 높이며 복잡하지 않은 색채를 사용 하였는가?	☐	☐ ☐ ☐
	·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글자색과 바탕색의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 ☐
기타	· 국가유산 안내에 관한 사인시설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안내판 가이드라 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을 준수하여 디자인하였는가?	☐	☐ ☐ ☐

2. 관광안내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국가유산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 관광안내소는 외부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	☐ ☐ ☐
	· 관람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배치하였는가?	☐	☐ ☐ ☐
	· 기념품판매소,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 비슷한 기능의 건축물과 통합하였는가?	☐	☐ ☐ ☐
규모	· 국가유산을 압도하지 않는 규모의 장식 요소를 설정하였는가?	☐	☐ ☐ ☐
	· 개방성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이 부각되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하였는가?	☐	☐ ☐ ☐
	· 인접한 시설물과 일관성 있는 형태가 되도록 하였는가?	☐	☐ ☐ ☐
	· 부속시설물에 기존 구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재료	· 국가유산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	☐ ☐ ☐
	· 주변 시설물과 비슷하거나 통일감 있는 마감 재료를 적용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색채	· 건축물 안에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여 간결하게 연출하였는가?	☐	☐ ☐ ☐
	·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명도 대비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기타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는가?	☐	☐ ☐ ☐
	· 관광안내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세부기준을 따랐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안내창구의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	☐ ☐ ☐
	· 외부 간판 및 부착물은 ‘광고시설물 지침’ 을 준수하였는가?	☐	☐ ☐ ☐

3. 화장실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국가유산과 중첩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관람객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곳에 배치하였는가?	☐	☐ ☐ ☐
	· 가림 벽 등을 설치하여 내부 공간이 시각적으로 보호되도록 하였는가?	☐	☐ ☐ ☐
규모	· 국가유산을 압도하지 않는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
	·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의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면적으로 설치하였는가?	☐	☐ ☐ ☐
형태	· 임시 또는 가설 형식의 건축물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을 압도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남녀 화장실 진입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동선을 분리하였는가?	☐	☐ ☐ ☐
	· 가림 벽 등은 본체와 조화되도록 하고 투박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재료	· 석재 및 목재 등 자연적인 마감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이질적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국가유산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국가유산과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에 순응하는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 창틀 등 국소 부위에 원색 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기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세부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 ☐ ☐
	· 그림문지(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 ☐

4. 기념품판매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관람 동선에서 접근 및 인지가 쉽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 기념품판매소는 가급적 외부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	☐ ☐ ☐
	· 옥외광고물 및 안내시설물은 최소의 수량과 규모로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여 설치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을 압도하지 않는 건축물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의 위상을 훼손하지 않도록 간결한 형태를 설정하였는가?	☐	☐ ☐ ☐
	· 불필요한 장식적 디자인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재료	· 국가유산과 비슷한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 투명한 입면 재료를 사용하여 판매소 안에 배치된 판매 물품이 보이도록 하였는가?	☐	☐ ☐ ☐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사인물이 강조된 색채 계획을 지양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 판매 상품이 부각되도록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였는가?	☐	☐ ☐ ☐
	· 명도 차가 크지 않게 하고,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	☐ ☐ ☐
기타	· 외부 간판 및 광고물은 ‘광고시설물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 ☐ ☐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는가?	☐	☐ ☐ ☐
	· 기념품판매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 ☐ ☐

5. 매 표 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주 진입로에서 건축물의 정면성을 확보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 또는 주변 시설물과 중첩되는 배치를 지양하였는가?	☐	☐ ☐ ☐
	· 외부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불필요한 면적을 줄이고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부속시설물은 기능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최소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이 강조되도록 외관 디자인을 간결하게 연출하였는가?	☐	☐ ☐ ☐
	· 지붕 및 외관의 형태는 과도하지 않게 디자인하였는가?	☐	☐ ☐ ☐
재료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간결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과 비슷한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조화를 연출하였는가?	☐	☐ ☐ ☐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인접한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과 비슷한 계열로 계획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 사인, 부착물의 원색 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는가?	☐	☐ ☐ ☐
	· 보행약자를 위하여 높낮이 차이를 없애고 편안한 높이를 설정하되 매표창구 전면 에 수평면을 확보하였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매표창구의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	☐ ☐ ☐
	· 매표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세부기준을 따랐는가?	☐	☐ ☐ ☐

6. 관리사무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주변 건축물 또는 국가유산과 중첩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불필요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변의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을 압도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
	·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접한 건축물과 통합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에 순응하고 품격을 살리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 주변 공공시설물과 연계성 있는 외관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개방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재료	· 국가유산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자연적인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국가유산과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색채	· 한 건물에서 색상 계열과 명도 차를 규제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 다른 시설물과 비슷한 색상과 색조를 사용하여 시설 간에 연계성을 유지하였는가?	☐	☐ ☐ ☐
	· 주변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여 경관을 통일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	☐ ☐ ☐
기타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는가?	☐	☐ ☐ ☐
	· 경사로는 ‘경사로 기본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 ☐ ☐

7. 주차요금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여 개방감과 진입성을 확보하였는가?	☐	☐ ☐ ☐
	·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진입로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기능 및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 절제된 규모와 최소한의 규모로 계획하였는가?	☐	☐ ☐ ☐
	· 규모가 과도한 장식 요소를 지양하였는가?	☐	☐ ☐ ☐
형태	·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과 연계성 있는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 이 강조되도록 외관 디자인을 간결하게 연출하였는가?	☐	☐ ☐ ☐
	· 차양 같은 부속시설물은 일체감 있게 디자인하였는가?	☐	☐ ☐ ☐
재료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 고풍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완화하였는가?	☐	☐ ☐ ☐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고채도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이미지로 연출하였는가?	☐	☐ ☐ ☐
	· 연접한 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 과 조화되는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기타	· 허가된 광고물이나 홍보물을 제외하고 다른 부착물의 설치를 금하였는가?	☐	☐ ☐ ☐
	· 사전 무인 요금 정산소를 설치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사용자 등의 접근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	☐ ☐ ☐

8. 경비초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도보순찰과 기동순찰 등의 중점 업무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 관람 동선에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건축물 또는 국가유산과 중첩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규모를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여 국가유산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	☐ ☐ ☐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여 절제된 규모로 계획하였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에 순응하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폐쇄감을 주는 입면 형태를 지양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였는가?	☐	☐ ☐ ☐
	· 연결한 공공시설과 형태적으로 연계해 일체감이 있는가?	☐	☐ ☐ ☐
재료	· 안과 밖에서 서로 잘 보이도록 투명도가 높은 유리를 사용하였는가?	☐	☐ ☐ ☐
	·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 처리를 하였는가?	☐	☐ ☐ ☐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적은 마감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원색 사용을 규제하고 국가유산과 조화롭게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 다양한 계열의 색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과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 인접한 공공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9. 수표시설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국가유산 조망을 고려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외부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	☐ ☐ ☐
	·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부가시설물을 부착하였는가?	☐	☐ ☐ ☐
규모	· 불필요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 장식 요소 및 부속시설은 건축물의 규모를 압도하지 않도록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주변 건축물과 디자인을 연계하여 일체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재료	· 국가유산과 조화되는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인접한 건축물 및 시설물과 재료를 연계하였는가?	☐	☐ ☐ ☐
색채	· 인접한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 고채도색 사용을 지양하고 중·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 부착물이 있을 경우 건물과 같은 색상으로 계획하였는가?	☐	☐ ☐ ☐
기타	· 높낮이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수표시설 진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는가?	☐	☐ ☐ ☐
	· 경사로는 ‘경사로 기본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 ☐ ☐
	· 수표 창구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한 높이로 설정하였는가?	☐	☐ ☐ ☐
	· 자동화 수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통과유효폭을 최소 0.9m 이상 확보하였는가?	☐	☐ ☐ ☐

10. 휴게의자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관람객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로에 평행하게 배치하였는가?	☐	☐ ☐ ☐
	· 휴게의자는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식재 공간 아랫부분에 배치하여 그늘을 제공하는가?	☐	☐ ☐ ☐
	·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을 위하여 바닥의 높낮이 차이, 재질에 유의하여 설치하였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의 휴게를 고려하여 휴게의자 주변에는 빈 공간을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기능과 편의를 고려한 최소의 규모를 설정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과 조화되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시설물 간에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통일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	☐ ☐ ☐
	· 기성제품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가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였는가?	☐	☐ ☐ ☐
	· 산책로처럼 조망과 휴게를 동시에 하는 공간은 양방향으로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부분적으로 등받이와 팔걸이를 적용하였는가?	☐	☐ ☐ ☐
재료	· 국가유산 이미지와 조화로운 마감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다양한 재료의 적용을 지양하고 조화로운 마감재로 연출하였는가?	☐	☐ ☐ ☐
	· 유지 및 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국가유산에 순응하는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원색 또는 돌출되는 색채의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주변 공공시설물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11. 그늘시렁(피결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국가유산 지역의 다른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았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불필요하게 규모가 커서 국가유산을 압도하거나 위압적이지 않은가?	☐	☐ ☐ ☐
	· 국가유산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장식 요소를 최소화하여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	☐ ☐ ☐
	·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개방감 있는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	☐ ☐ ☐
	· 그늘시렁(피결리) 안에 설치되는 휴게의자와 형태적으로 연계하였는가?	☐	☐ ☐ ☐
재료	· 연접한 편의시설과 통일감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자연적인 느낌이 드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주변 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색채 계획을 연출하였는가?	☐	☐ ☐ ☐
	· 사인 및 부착물은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12. 음수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이용객의 접근성과 이용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 배수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구하였는가?	☐	☐ ☐ ☐
	· 다양한 방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가능한 한 줄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 설치 위치에 따라 규모를 다르게 연출하였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에 순응하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장식적 요소의 과도한 도입을 지양하였는가?	☐	☐ ☐ ☐
재료	· 청결 및 유지, 보수를 고려하여 녹슬지 않거나 잘 썩지 않는(내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바닥면은 평탄하며 미끄럼을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인접한 시설물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석재 등 자연 소재를 사용할 경우 마감에 따른 색채 이미지를 통일하였는가?	☐	☐ ☐ ☐
	· 고채도 색은 음수대 면적의 5% 이하가 되도록 사용하였는가?	☐	☐ ☐ ☐
기타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를 편의를 고려하여 음수대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설치하였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한 형태로 연출하고 지면과 높낮이 차이를 없앴는가?	☐	☐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2호의 세부 기준을 따랐는가?	☐	☐ ☐ ☐

13. 자전거보관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이용자의 이용 및 인지가 양호한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	☐ ☐ ☐
	· 외부 공간 또는 주차장에 배치하였는가?	☐	☐ ☐ ☐
	·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자전거 이용객을 파악하여 적절한 규모와 수량을 설정하였는가?	☐	☐ ☐ ☐
	· 규모를 최소화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형태	· 시야를 가리는 차양시설 등의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 ☐ ☐
	· 디자인을 간결하게 연출해 국가유산 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
	· 공기주입기 등 간단한 자전거 정비가 가능한 시설물과 연계하였는가?	☐	☐ ☐ ☐
재료	· 연접한 공공시설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 유리 및 판리를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가급적 도장을 하지 않고 무광택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과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 ☐
	· 시설물에 부착되는 부착 요소가 돌출되지 않도록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 배경 색채와 비슷한 저채도색으로 연출하였는가?	☐	☐ ☐ ☐

14. 휠체어 · 유모차보관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접근이 쉬운 진입부, 주요 건물들과 연결점, 휴게시설 주변에 설치하였는가?	☐	☐ ☐ ☐
	· 휠체어를 관리하기 위해 조명시설 또는 감시카메라 주변에 설치하였는가?	☐	☐ ☐ ☐
	·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장애인 동선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 휠체어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함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휠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 ☐ ☐
	· 인접한 시설물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하였는가?	☐	☐ ☐ ☐
재료	· 고풍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과 연결하여 설치할 때 국가유산과 재질을 연계하였는가?	☐	☐ ☐ ☐
	· 유리를 사용할 때 투명도가 높으며, 파손의 우려가 적고 강도가 높은 유리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휠체어보관대는 국가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 ☐
	· 다른 시설물들과 일체감을 주도록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건축물을 배경으로 할 경우 건축물과 같은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 ☐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 ☐
	· 보관대 전면부 잘 보이는 곳에 담당자 연락처가 기입되어있거나 호출벨을 설치하였는가?	☐	☐ ☐ ☐

15. 경사로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지나친 수직 이동의 동선 계획을 지양하였는가?	☐	☐ ☐ ☐
	· 경사로 위치를 유도·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	☐ ☐ ☐
	·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경사로의 폭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다닐 수 있도록 1.2m 이상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 ☐ ☐
	· 보행약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기울기는 1/18 이하로 설정하였는가?	☐	☐ ☐ ☐
	· 손잡이는 높이 0.8~0.9m 이내, 지름 3.2~3.8cm 이내로 설치하였는가?	☐	☐ ☐ ☐
형태	· 경사로의 길이가 50m가 넘을 경우 1.5mx1.5m 이상의 참을 설치하였는가?	☐	☐ ☐ ☐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에는 연석이나 울타리 등 보행 공간과 주행 공간을 분리하는 공작물을 설치하였는가?	☐	☐ ☐ ☐
	·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을 설치하였는가?	☐	☐ ☐ ☐
	· 경사로 설치 시 시작지점과 끝 지점에 1.2m 이상의 수평참을 설치하였는가?	☐	☐ ☐ ☐
	· 경사로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점점 부분에 반드시 수평참을 설치하였는가?	☐	☐ ☐ ☐
재료	· 사용자 안전을 위해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불규칙하거나 면이 거칠어 돌출되는 것을 피하고 평탄하게 마감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를 도모하였는가?	☐	☐ ☐ ☐
색채	· 주변과 조화되며 전통적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	☐ ☐ ☐
	· 고채도색 사용을 금하고 전통 색과 조화로운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	☐ ☐ ☐
	· 일정한 형태나 그래픽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	☐ ☐ ☐

16. 휴지통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휴게시설과 연결하여 배치할 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확보하였는가?	☐	☐ ☐ ☐
	· 밀착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 디자인을 통합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로 인한 규모 확대를 지양하였는가?	☐	☐ ☐ ☐
형태	· 비가 올 때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 ☐ ☐
	· 재활용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 ☐ ☐
	·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휴지통의 투입구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	☐ ☐ ☐
재료	· 주변과 비슷하거나 같은 재질을 적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	☐ ☐ ☐
	· 광택을 줄여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주변 환경에 순응하였는가?	☐	☐ ☐ ☐
색채	· 갈색 계열의 저채도색 또는 무채색으로 색채를 계획하였는가?	☐	☐ ☐ ☐
	· 다른 시설물과 같이 설치할 경우 색상은 단색으로 통일하였는가?	☐	☐ ☐ ☐
	· 안내 문구에는 원색의 사용을 금하고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17. 공중전화함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통행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 휴게시설물과 연계하여 휴게 공간 안에 배치하였는가?	☐	☐ ☐ ☐
	· 분리된 배치를 지양하고 밀착 배치를 하였는가?	☐	☐ ☐ ☐
	· 공중전화함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 기능과 이용을 고려하여 단순화하고,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였는가?	☐	☐ ☐ ☐
	· 수요에 따라 적정 수량의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 ☐ ☐
형태	· 과도한 장식 요소를 지양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인접한 공공시설물과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여 통일감이 있도록 하였는가?	☐	☐ ☐ ☐
재료	· 국가유산 과 연계성 있는 마감 재질을 사용하여 일관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 고광택 금속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광택을 완화하는 도장 또는 표면 가공을 하였는가?	☐	☐ ☐ ☐
색채	· 주변 시설물과 일체감 있는 색채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을 배경으로 설치될 경우 명도·채도 차가 적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시설물이 연속되어 설치되면 같은 색채를 적용하여 통일성을 유도하였는가?	☐	☐ ☐ ☐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 ☐
	· 공중전화는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28호의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 ☐ ☐

18. 자동판매기 합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산발적인 분산 배치를 금하고 한 장소에 밀집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 휴게의자와 휴지통 등의 편의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품목이 중복되는 자판기 설치를 지양하여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인간체격기준척도를 고려하여 자판기 조작부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에 순응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가급적 자동판매기의 형태를 같은 것으로 설치하였는가?	☐	☐ ☐ ☐
재료	· 이질적인 재료 또는 반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금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주변 시설물 색채와 비슷한 색채를 함과 자판기에 적용하였는가?	☐	☐ ☐ ☐
	· 자동판매기가 나열되어 있을 경우 같은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 ☐
	· 그래픽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 ☐
	· 자동판매기는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의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 ☐ ☐

19. 광고시설물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동일선상에 광고물을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 지주를 이용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 ☐ ☐
	·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였는가?	☐	☐ ☐ ☐
규모	· 건축물 크기를 압도하지 않는 규모를 설정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 과도한 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수량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광고물 유형별로 같은 규격을 설정하여 정리된 경관을 구현하였는가?	☐	☐ ☐ ☐
형태	·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을 사용하였는가?	☐	☐ ☐ ☐
	·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재료	· 국가유산과 인접한 안내시설은 국가유산과 비슷하거나 조화로운 재질을 적용하였는가?	☐	☐ ☐ ☐
색채	·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 사용 비중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글자 색과 배경 색의 차이를 줄여 조화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
	· 회갈색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국가유산 이미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

20. 차량통제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 간격을 확보하였는가?	☐	☐ ☐ ☐
	· 시설물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규모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낮은 차량통제대 설치는 지양하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높이로 계획하였는가?	☐	☐ ☐ ☐
	· 공간 특성 및 보행 공간의 확보 정도를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과도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하였는가?	☐	☐ ☐ ☐
	· 비상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일정 구간 분리 기능을 갖추었는가?	☐	☐ ☐ ☐
재료	· 고품택 금속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도장 또는 표면 가공을 하였는가?	☐	☐ ☐ ☐
	·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바닥 포장재와 재질적 특성을 연계하여 일체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색채	· 한 공간 안에 설치되는 차량통제대는 색채를 통일하여 적용하였는가?	☐	☐ ☐ ☐
	· 강조색은 5% 미만의 면적에 사용하였는가?	☐	☐ ☐ ☐
	· 보도 포장과 연계성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해 통일성을 부여하였는가?	☐	☐ ☐ ☐
기타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시설 기준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세부기준을 따랐는가?	☐	☐ ☐ ☐

21. 보호울타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울타리의 기초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
	· 경사 지형에서 지주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해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	☐ ☐ ☐
규모	· 지나치게 굵은 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되도록 가는 지주를 설치하였는가?	☐	☐ ☐ ☐
	· 같은 높이와 규모의 보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정돈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높이로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장식 요소 또는 판상 구조를 지양하여 국가유산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	☐ ☐ ☐
	·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단위별 보수가 쉽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 ☐ ☐
	· 디자인을 간결하게 계획해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
재료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또는 도장을 하였는가?	☐	☐ ☐ ☐
	· 자연적 특성이 강한 국가유산 에 자연 소재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보호울타리의 재료가 다른 경우 색채를 통일하여 일체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	☐ ☐ ☐
	· 인접한 시설물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다른 시설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원색 사용을 금하였는가?	☐	☐ ☐ ☐

22. 안전울타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체결 구조를 표준화하여 지주 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는가?	☐	☐ ☐ ☐
	· 지형과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크기를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안전 확보가 우선시되는 공간에서는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 ☐ ☐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기능을 고려한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개방감을 주는 선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재료	· 차량이 빈번하게 주행하는 구간에 한하여 야간에 명시성을 확보하기위해 반사판이나 반사시트를 부분적으로 부착하였는가?	☐	☐ ☐ ☐
	· 미관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가공을 하였는가?	☐	☐ ☐ ☐
색채	· 연속된 시설물은 같은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 공간과 조화되는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 저채도색을 적용해 시각적 돌출을 완화하였는가?	☐	☐ ☐ ☐

23. 경계울타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 경계부에 수목을 도입하여 은폐되도록 하였는가?	☐	☐ ☐ ☐
	·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주를 최소한만 설치하였는가?	☐	☐ ☐ ☐
	· 연결한 시설물은 같은 높이로 설정하였는가?	☐	☐ ☐ ☐
	· 외부에서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높이를 확보하였는가?	☐	☐ ☐ ☐
형태	·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	☐ ☐ ☐
	· 다양한 지형 특성(평지, 언덕, 모퉁이)에 영향이 적은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 면적인 형태보다 선적인 형태를 연출해 폐쇄감을 완화하였는가?	☐	☐ ☐ ☐
재료	· 국가유산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슷한 재질을 적용하였는가?	☐	☐ ☐ ☐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하였는가?	☐	☐ ☐ ☐
색채	· 외부 환경 색채를 고려하여 국가유산 공간과 조화되는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의 색채를 반영하여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품 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24. 화분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 연접한 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	☐ ☐ ☐
	· 관람객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화분대 지면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줄였는가?	☐	☐ ☐ ☐
	· 경관이 혼잡하지 않도록 필요 수량만 설치하였는가?	☐	☐ ☐ ☐
	· 규모가 과도해 배후 경관을 가리지 않게 연출하였는가?	☐	☐ ☐ ☐
형태	· 연접한 공공시설물의 형태를 연계하여 디자인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을 단순 모방하거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였는가?	☐	☐ ☐ ☐
	· 물 공급과 배수가 쉽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 ☐ ☐
재료	· 인공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가유산과 비슷한 재료를 적용하였는가?	☐	☐ ☐ ☐
	· 자연 재료의 인위적 모방을 지양하고 이질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 목재 사용 시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 ☐ ☐
색채	· 국가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 인접한 시설물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한 공간에 설치되는 화분대는 같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기타	· 화분대의 입면을 활용한 광고물 또는 안내물 부착을 금하였는가?	☐	☐ ☐ ☐
	· 화분대 안에 한국 자생종을 식재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25. 소화시설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소화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긴급 상황에 사용하기 쉽게 배치하였는가?	☐	☐ ☐ ☐
	· 보행 및 동선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되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덮개 기능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 소화시설 주변의 보호시설은 과도하지 않은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함 디자인을 적용해 소화시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 간결하게 디자인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고 국가유산의 부속시설물로 인지되도록 하였는가?	☐	☐ ☐ ☐
재료	· 고광택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
	· 도장 또는 마감 처리할 때 광택을 줄여 국가유산과 조화되도록 하였는가?	☐	☐ ☐ ☐
색채	· 주변 건축물 색과 비슷한 계열의 저명도색·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 기능을 고려한 고채도색은 일부에만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저채도색, 저명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26. 분전함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가로 배치를 원칙으로 하여 외부에서 조망되는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관람 동선에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 식재로 은폐하였는가?	☐	☐ ☐ ☐
규모	· 가까이 있는 비슷한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	☐ ☐ ☐
	· 조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로 설치하고 돌출 이미지를 완화하였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과 조화되도록 간결한 함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
재료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재를 사용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과 연계된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배경 색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여러 개를 나열하여 설치할 때 같은 색채로 통일하였는가?	☐	☐ ☐ ☐
	· 분전함의 기초부가 노출될 경우 분전함과 같은 색상으로 계획하였는가?	☐	☐ ☐ ☐

27. 점검용 덮개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규모	· 덮개 경계부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포장 면과 이질감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덮개의 규모는 기능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포장 방식과 덮개의 표면은 같은 형태를 도입하여 이질감을 없애고, 연속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 이미지와 조화로운 형태를 연출하였는가?	☐	☐ ☐ ☐
	·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문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하였는가?	☐	☐ ☐ ☐
재료	·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마감 처리를 하였는가?	☐	☐ ☐ ☐
	· 빗물 등으로 오염 및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 경계부와 포장의 재질을 통일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색채	· 보도의 색채와 같은 색채를 사용해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 녹지 안에 설치할 때 녹지와 비슷한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 같은 공간 안에서는 색채를 통일하여 일체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28. 우수용 집수정 덮개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 공간 내 설치를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 방향과 수직으로 배치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보조이동수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형태	· 테두리를 두껍게 하지 않고 주변에 순응하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 이미지와 조화로운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	☐ ☐ ☐
	· 시설물과 연결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였는가?	☐	☐ ☐ ☐
재료	· 철재를 사용할 경우 부식 방지 처리를 하였는가?	☐	☐ ☐ ☐
	· 석재와 같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시각적 돌출을 완화하였는가?	☐	☐ ☐ ☐
색채	· 지면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 지면과 색 대비가 적은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	☐ ☐ ☐
	· 단색으로 계획하여 색채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29. 수목 보호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수목 하단부에 식재를 도입하여 수목 보호대의 기능을 대신하였는가?	☐	☐ ☐ ☐
형태	· 유지·보수가 쉽도록 구조를 단순화하였는가?	☐	☐ ☐ ☐
	· 수목이 숨 쉴 수 있도록 폐쇄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하였는가?	☐	☐ ☐ ☐
	· 보도 면과 높낮이 차이를 없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재료	· 빗물 등으로 오염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마감 처리를 하였는가?	☐	☐ ☐ ☐
색채	· 지면의 색채를 고려하여 같은 계열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단색으로 계획하고 연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같은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	☐ ☐ ☐
	· 인접한 시설물과 비슷한 색상으로 계획하였는가?	☐	☐ ☐ ☐

30. 수목지주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주를 배치하였는가?	☐	☐ ☐ ☐
	· 수목보호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규모가 과도한 지주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 ☐ ☐
	· 지주대의 기능과 안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늘게 연출하였는가?	☐	☐ ☐ ☐
형태	· 수목의 규모에 따라 지주 형태를 다르게 연출하였는가?	☐	☐ ☐ ☐
	· 지주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재료	· 철재 재료를 사용할 때 도장을 하여 광택을 줄였는가?	☐	☐ ☐ ☐
	· 수목과 조화로운 소재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자연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수목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였는가?	☐	☐ ☐ ☐
	· 인공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저명도색 ·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	☐ ☐ ☐
	· 수목을 고려하여 갈색 계열의 저채도색 · 저명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하였는가?	☐	☐ ☐ ☐

31. 부속시설 가림막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건축물 옆이나 뒤쪽에 배치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규모	· 기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위압감을 주는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형태	·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를 연출해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 과도한 형태와 그래픽 요소의 도입을 지양하였는가?	☐	☐ ☐ ☐
재료	· 배경과 비슷하거나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자연환경이 우세한 공간에서는 자연적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고채도 원색 또는 고채도의 화려한 색채 사용을 금하였는가?	☐	☐ ☐ ☐
	· 배경과 비슷하거나 같은 색채를 적용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설치할 때 자연색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32. 지주시설물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국가유산을 조망하고 보행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 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과 인접하거나 중첩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형태	· 불필요한 장식 요소 또는 형태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 날씬하게 디자인하여 조망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 연결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을 지주에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	☐ ☐ ☐
색채	· 전신지주와 결합되는 시설물은 같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이 돋보이도록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 위험, 안전, 경고 등의 사인물은 돌출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하였는가?	☐	☐ ☐ ☐

33. 보안등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과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
	· 조명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국가유산을 압도하는 과도한 규모를 지양하고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에 순응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복잡한 디자인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연결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 등을 지주에 통합하였는가?	☐	☐ ☐ ☐
재료	· 배경과 비슷한 재료를 도입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
	· 고풍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색채	· 무채색이나 갈색 계열의 저명도색·저채도색을 적용하였는가?	☐	☐ ☐ ☐
	· 연속되는 보안등은 같은 색으로 통일하여 연속성을 부여하였는가?	☐	☐ ☐ ☐
	·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하였는가?	☐	☐ ☐ ☐

34. 경관조명등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동선의 경계부에 평행 배치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 ☐ ☐
	· 경관조명등 주변에 식재 등을 이용하여 은폐되도록 유도하였는가?	☐	☐ ☐ ☐
	· 바닥에 설치되는 조명은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규모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주변 V경관에 순응하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 주변 조명시설과 형태를 연계하여 일관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 외부로 노출되는 복잡한 조명시설은 덮개를 사용하여 가렸는가?	☐	☐ ☐ ☐
재료	· 고광택 재료를 사용할 때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또는 도장 처리를 하였는가?	☐	☐ ☐ ☐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자연환경에 설치할 경우 갈색 계열의 저채도색·저명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 보행 공간에 설치할 때 저명도의 무채색 계열을 사용하여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

35. 보행등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야간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 경계부에 배치하였는가?	☐	☐ ☐ ☐
	· 보행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지나치게 장식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국가유산과 조화롭게 디자인하였는가?	☐	☐ ☐ ☐
	· 조명시설에 공통된 디자인을 적용해 일관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 보행등 주변에 나무 등을 심어 은폐되도록 하였는가?	☐	☐ ☐ ☐
재료	· 녹지 공간 안에 설치되는 보행등은 자연 재료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무광택 재질을 사용하여 이질감을 완화하는 마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색채	· 자연환경에 설치할 때 갈색 계열의 저채도색·저명도색을 적용하였는가?	☐	☐ ☐ ☐
	· 보행 공간에 설치할 때 저명도의 무채색 계열로 주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
	· 연속적인 보행등은 같은 색채로 통일하여 연속성을 부여하였는가?	☐	☐ ☐ ☐

36. 벽부등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시설물의 간격과 비례를 고려하여 일체감이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에 직접 부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규모	· 과도한 장식 요소의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 기능 및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배경에 순응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형태적 이질감과 부조화를 완화하고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색채	· 부착 위치의 배경 색을 고려하여 배경과 같거나 비슷한 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과 조화되는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	☐ ☐ ☐

37. 공사용 가설건물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공사용 가설시설은 가설울타리 안에 설치하였는가?	☐	☐ ☐ ☐
형태	· 기능을 고려한 간결한 형태로 연출해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도하지 않은 입면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 ☐
재료	· 도장하거나 무광 재질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
색채	· 원색 사용을 금하고 색상 수를 최소화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과 비슷한 색채를 계획해 통일감 있는 공간 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	☐ ☐ ☐
	· 단색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돌출되지 않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38. 공사용 가설울타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점자블록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점자블록의 동선을 벌려 놓았는가?	☐	☐ ☐ ☐
	· 시설물 외부에 불필요한 시설물 배치를 금하였는가?	☐	☐ ☐ ☐
규모	· 시설물 간 높낮이를 통일하여 일체감 있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 보행로에서 노출되지 않는 적정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형 태	· 형태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접속하지 않도록 하여 연속성을 확보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 내부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내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가?	☐	☐ ☐ ☐
재료	· 표면을 무광택으로 처리해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	☐ ☐ ☐
	· 관람객의 외부 조망이 빈번하거나 장기간 설치되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다른 재질로 변화를 주었는가?	☐	☐ ☐ ☐
색채	·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비슷한 색이나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을 고려하여 따뜻한 느낌이 드는 갈색 계열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재료의 색채는 통일되도록 하였는가?	☐	☐ ☐ ☐

39. 이동식 통제울타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동선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규모가 과도해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 서체는 인지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규모와 조화되는 크기로 적용하였는가?	☐	☐ ☐ ☐
형태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	☐ ☐ ☐
	· 유지 및 관리를 고려하여 결합이 쉬운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	☐ ☐ ☐
	· 규격화된 형태로 분리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연출하였는가?	☐	☐ ☐ ☐
재료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 이동과 설치가 쉽도록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자연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강조 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원색 사용 비중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원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채도를 낮추고 명도 대비를 줄였는가?	☐	☐ ☐ ☐
기타	· 부가적인 안내 사인과 광고물 등의 부착을 금하였는가?	☐	☐ ☐ ☐

40. 임시건축물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국가유산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창고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국가유산을 압도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국가유산에 순응하는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	☐ ☐ ☐
	· 장식 요소를 최소화하여 국가유산에 순응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 ☐ ☐
	· 불필요한 안내시설의 부착을 지양하였는가?	☐	☐ ☐ ☐
재료	·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창틀이나 노출되는 부속시설물은 도장을 하여 시각적 돌출을 완화하였는가?	☐	☐ ☐ ☐
색채	· 국가유산과 조화되게 비슷하거나 같은 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 지붕은 원색 사용을 피하고 회색, 회갈색 계열의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	☐ ☐ ☐
	· 창틀, 출입문 등은 건축물과 같은 계열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	☐ ☐ ☐
기 타	· 건물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과 부속시설을 은폐하였는가?	☐	☐ ☐ ☐

41. 천막시설물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국가유산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	☐ ☐ ☐
	· 천막시설은 통합하여 한 장소에 밀집 배치하였는가?	☐	☐ ☐ ☐
규모	· 기능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 국가유산을 압도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였는가?	☐	☐ ☐ ☐
형태	·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프레임 구조로 천막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 ☐ ☐
	· 개방된 구조로 연출하여 주변의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	☐ ☐ ☐
재료	· 반사율이 높은 비닐류 대신 천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	☐ ☐ ☐
	· 다양한 재료의 복합적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철제 구조 틀은 마감 처리를 하여 인공적 느낌을 완화하였는가?	☐	☐ ☐ ☐
색채	· 국가유산에 순응하는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	☐ ☐ ☐
	·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금하고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	☐ ☐ ☐
	· 연속된 시설물은 단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	☐ ☐ ☐
기타	· 전선 등의 부속시설물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42. 현수막시설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주 관람 동선에서 국가유산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 현수막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두었는가?	☐	☐ ☐ ☐
규모	· 가로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규격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연출하였는가?	☐	☐ ☐ ☐
	· 다른 시설물에 부착할 경우 시설물의 폭과 길이를 고려하여 일체감이 들도록 하였는가?	☐	☐ ☐ ☐
	·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필요한 사항만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	☐ ☐ ☐
	·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지양하고,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서체를 사용하였는가?	☐	☐ ☐ ☐
재료	· 국가유산과 이질감 있는 비닐 재질 대신 천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	☐ ☐ ☐
색채	· 배경 색과 글자 색을 포함하여 2~3가지 이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	☐ ☐ ☐
	· 시설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크기가 적절한 서체로 계획하였는가?	☐	☐ ☐ ☐

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 목록(제36조 관련)
일러두기

1. 이 목록은 **국가유산**의 명칭에 쓰인 용어(이하 '**국가유산** 명명 요소'라고 합니다.)와 그 용어들을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에 사용하는 방법 및 예시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 이 목록의 **국가유산** 명명 요소는 단일 어휘뿐 아니라, **국가유산** 명칭 속에서 하나의 용어처럼 쓰이는 복합어(여러 어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용어)를 포함합니다. 또한 국문 명칭 상에서는 고유한 이름이지만, 영문 명칭상에서 의미역을 덧붙여 표기하는 용어들도 포함하였습니다.
3. **국가유산** 명명 요소는 '**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의 16개 유형, '**무형유산**'(국가무형유산), '**자연유산**'(명승·천연기념물) 등 18개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영역별 목록에서는 아래와 같은 3종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1) 영문 명칭 표기 방법 해당 영역 명명 요소 용어들을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에 사용하는 방법 설명
 - 2) 명명 요소 해당 영역 **국가유산** 명칭의 명명 요소 어휘와 영문 대역어
 - 3) 사용 용례 해당 영역 **국가유산** 명칭에 쓰인 복합어, 로마자 표기에 의미역 표기를 덧붙이는 사용 용례 등
4. 각 영역의 목록의 일부는 **국가유산**의 하위 유형별로 범주화하였습니다. 목록상에서 **국가유산**의 유형 구분은 【 】 기호로 표시합니다. 유형별 명명 요소와 사용 용례는 우리말의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다수의 명명 요소의 조합으로 이름이 만들어지는 **국가유산**의 경우(불상, 도자기 등), 명명 요소를 유형별로 묶어서 제시하였습니다. 명명 요소의 범주 이름은 { } 기호로 표시합니다.
6. 하나의 우리말 용어에 대해 2가지 이상의 번역어가 있어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거나, 용어의 사용을 특정한 의미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용어에 내포된 의미를 [] 기호를 사용하여 병기하였습니다.

예)	성당[성공회]	聖堂	Anglican Church
	성당[천주교]	聖堂	Catholic Church
	성당[주교좌 성당]	聖堂	Cathedral

1. 문화유산

1-A. 전통 건조물

† 전통시대의 건조물 가운데 궁궐의 전각과 부속 건조물, 지방 관아의 건조물, 서원, 향교 등 학교시설과 부속 건조물, 누정과 정원의 건조물 등의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건조물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후부 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괄호 없이 덧붙입니다.

[보기]

· 경복궁	景福宮	Gyeongbokgung Palace
· 도산서원	陶山書院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 전주향교	全州鄉校	Jeon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 종묘	宗廟	Jongmyo Shrine
· 광한루	廣寒樓	Gwanghallu Pavilion

† 건조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를 지명, 인명 등의 고유한 이름에 부가하여 만든 국가유산 명칭은 고유한 이름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용어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보기]

· 공민왕 사당	恭愍王 祠堂	King Gongmin's Shrine
· 조령 관문	鳥嶺 關門	Gates of Joryeong Path

§ 명명 요소

ㄱ자집	ㄱ字집	L-shaped House
감영	監營	Provincial Office
강당	講堂	Auditorium
강당[강학당]	講堂	Lecture Hall
강학당	講學堂	Lecture Hall
객주집	客主집	Merchant's House
고택	古宅	Historic House
[지명, 가문 + 고택]	古宅	House

[건물명, 인명 + 고택]

골목		Alley
관문	關門	Gate
관아	官衙	Government Office
관천대	觀天臺	Gwancheondae Observatory
굴뚝		Chimney
굴피집		House with an Oak Bark Roof
까치구멍집		House with “Magpie Holes”
너와 투막집		Shingled Log Cabin
너와집		Shingled House
다리		Bridge
담장		Wall
대나무 서까래집		Bamboo Rafter House
대문	大門	Main Gate
대성전	大成殿	Daeseongjeon Shrine
대장간집		Blacksmith’s House
동무	東廡	Dongmu Shrine
들마루집		Wooden Bench House
띄창집	띄窓 집	House with Calling Windows
마루방집		House with Wooden-floored Room
마을제당	마을祭堂	Village Shrine
명륜당	明倫堂	Myeongnyundang Lecture Hall
문묘	文廟	Munmyo Confucian Shrine
민속유물	民俗遺物	Folk Artifacts
별당	別堂	Detached Quarters
병영성	兵營城	Military Headquarters
사고	史庫	National History Archives
사고지	史庫址	National History Archives Site
사당	祠堂	Shrine
사직단	社稷壇	Sajikdan Altar
삼문	三門	Main Gate
상엿집	喪輿 집	Bier Hut
생가	生家	Birthplace
서무	西廡	Seomu Shrine
서원	書院	Confucian Academy
석교	石橋	Stone Bridge
석빙고	石氷庫	Stone Ice Storage
성균관	成均館	Seonggyungwan National Academy
수군통제영	水軍統制營	Navy Headquarters
수영성	水營城	Navy Headquarters
신단	神壇	Altar
십장생굴뚝	十長生 굴뚝	Chimney with Ten Symbols of Longevity in Relief
억새 투막집		Thatched-roof Log Cabin

옛 담장	옛 담牆	Old Walls
원지	苑址	Garden Site
재사	齋舍	Ritual House
재실	齋室	Tomb Keeper's House
전교당	典敎堂	Jeongyodang Lecture Hall
정자각	丁字閣	Ritual House
정전	正殿	Main Hall
제방	堤防	Embankment
종택	宗宅	Head House
주막집	酒幕집	Tavern House
주초	柱礎	Plinths
태실	胎室	Placenta Chamber
투막집		Log Cabin
행각	行閣	Corridor
행궁	行宮	Temporary Palace
향교	鄉校	Local Confucian School
홍교	虹橋	Arched Bridge

§ 사용 용례

【궁궐】

경복궁	景福宮	Gyeongbokgung Palace
경운궁	慶運宮	Gyeongungung Palace
경회루	慶會樓	Gyeonghoeru Pavilion
경훈각	景薰閣	Gyeonghungak Hall
경희궁지	慶熙宮址	Gyeonghuigung Palace Site
고려궁지	高麗宮址	Goryeo Palace Site
근정문	勤政門	Geunjeongmun Gate
근정전	勤政殿	Geunjeongjeon Hall
금천교	錦川橋	Geumcheongyo Bridge
낙선재	樂善齋	Nakseonjae Hall
대조전	大造殿	Daejojeon Hall
덕수궁	德壽宮	Deoksugung Palace
돈화문	敦化門	Donhwamun Gate
동궁	東宮	Donggung Palace
명정문	明政門	Myeongjeongmun Gate
명정전	明政殿	Myeongjeongjeon Hall
부용정	芙蓉亭	Buyongjeong Pavilion
사정전	思政殿	Sajeongjeon Hall
선원전	璿源殿	Seonwonjeon Hall
선정전	宣政殿	Seonjeongjeon Hall

수정전	修政殿	Sujeongjeon Hall
아미산	峨嵋山	Amisan Garden
연경당	演慶堂	Yeongyeongdang Hall
옥천교	玉川橋	Okcheongyo Bridge
운현궁	雲峴宮	Unhyeongung Royal Residence
인정문	仁政門	Injeongmun Gate
인정전	仁政殿	Injeongjeon Hall
자경전	慈慶殿	Jagyeongjeon Hall
주합루	宙合樓	Juhamnu Pavilion
중화문	中和門	Junghwamun Gate
중화전	中和殿	Junghwajeon Hall
창경궁	昌慶宮	Changgyeonggung Palace
창덕궁	昌德宮	Changdeokgung Palace
통명전	通明殿	Tongmyeongjeon Hall
함녕전	咸寧殿	Hamnyeongjeon Hall
향원정	香遠亭	Hyangwonjeong Pavilion
홍화문	弘化門	Honghwamun Gate
희정당	熙政堂	Huijeongdang Hall

【관아/시설】

경상감영지	慶尙監營址	Gyeongsanggamyeongji Provincial Office Site
경상좌도병영성	慶尙左道兵營城	Military Headquarters of East Gyeongsang-do Province
관덕정	觀德亭	Gwandeokjeong Hall
광통교	廣通橋	Gwangtonggyo Bridge
능파교	凌波橋	Neungpagyo Bridge
동점문	東漸門	East Gate
만년교	萬年橋	Mannyeonggyo Bridge
벽제관지	碧蹄館址	Byeokjegwan Guesthouse Site
북망문	北望門	North Gate
살곳이 다리	箭串橋	Salgoji Bridge
서성문	西城門	West Gate
선화당	宣化堂	Seonhwadang Hall
세병관	洗兵館	Sebyeonggwan Hall
수표교	水標橋	Supyogyo Bridge
영은문	迎恩門	Yeongeunmun Gate
오대산사고	五臺山史庫	Odaesan National History Archives
월정교지	月精橋址	Woljeonggyo Bridge Site
육송정 홍교	六松亭 虹橋	Arched Bridge of Yuksongjeong Pavilion
임영관	臨瀛館	Imyeonggwan Guesthouse
재매정		Jaemaejeong Well
전라우수영	全羅右水營	Navy Headquarters of West Jeolla-do Province

조령 관문	鳥嶺 關門	Gates of Joryeong Path
진남관	鎭南館	Jinnamgwan Hall
첨성대	瞻星臺	Cheomseongdae Observatory
춘양교지	春陽橋址	Chunyanggyo Bridge Site
충청수영성	忠淸水營城	Navy Headquarters of Chungcheong-do Province
태백산사고지	太白山史庫址	Taebaeksan National History Archives Site
풍패지관	豐沛之館	Pungpaejigwan Guesthouse
혜음원지	惠蔭院址	Hyeeumwon Inn Site

【서원/향교】

강릉향교	江陵鄉校	Gangneu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경주향교	慶州鄉校	Gyeong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나주향교	羅州鄉校	Na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남계서원	濫溪書院	Namgyeseowon Confucian Academy
노강서원	魯岡書院	Nogangseowon Confucian Academy
도동서원	道東書院	Dodongseowon Confucian Academy
도산서원	陶山書院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돈암서원	遯巖書院	Donamseowon Confucian Academy
무성서원	武城書院	Museongseowon Confucian Academy
문성공묘	文成公廟	Munseonggong Shrine
병산서원	屏山書院	Byeongsanseowon Confucian Academy
상덕사	尙德祠	Sangdeoksa Shrine
성주향교	星州鄉校	Seong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소수서원	紹修書院	Sosuseowon Confucian Academy
송곡서원	松谷書院	Songgokseowon Confucian Academy
심곡서원	深谷書院	Simgokseowon Confucian Academy
영천향교	永川鄉校	Yeongcheo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옥동서원	玉洞書院	Okdongseowon Confucian Academy
옥산서원	玉山書院	Oksanseowon Confucian Academy
응도당	凝道堂	Eungdodang Lecture Hall
임고서원	臨臯書院	Imgoeowon Confucian Academy
장수향교	長水鄉校	Jangs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전주향교	全州鄉校	Jeon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제주향교	濟州鄉校	Je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중정당	中正堂	Jungjeongdang Lecture Hall
필암서원	筆巖書院	Piramseowon Confucian Academy

【사우/제당/재사】

경기전	慶基殿	Gyeonggijeon Shrine
경모궁지	景慕宮址	Gyeongmogung Shrine Site
공민왕 사당	恭愍王 祠堂	King Gongmin's Shrine

국사당	國師堂	Guksadang Shrine
금계재사	金溪齋舍	Geumgyejaesa Ritual House
금성당	錦城堂	Geumseongdang Shrine
내왓당	내왓堂	Naewatdang Shrine
동관왕묘	東關王廟	Donggwanwangmyo Shrine
빈동재사	賓洞齋舍	Bindongjaesa Ritual House
소등재사	所等齋舍	Sodeungjaesa Ritual House
승렬당	崇烈堂	Sungnyeoldang Shrine
숭의전지	崇義殿址	Sunguijeon Shrine Site
영녕전	永寧殿	Yeongnyeongjeon Hall
영모재	永慕齋	Yeongmojae Ritual House
옥천재사	玉川齋舍	Okcheonjaesa Ritual House
육상궁	毓祥宮	Yuksanggung Shrine
육상묘	毓祥廟	Yuksangmyo Shrine
종묘	宗廟	Jongmyo Shrine
종묘 영녕전	永寧殿	Yeongnyeongjeon Hall of Jongmyo Shrine
중악단	中嶽壇	Jungakdan Shrine
창녕위궁 재사	昌寧尉宮 齋舍	Changnyeongwigung Ritual House
충렬사	忠烈祠	Chungnyeolsa Shrine
충민사	忠愍祠	Chungminsa Shrine
칠머리당		Chilmeoridang Shrine
칠의사묘	七義士墓	Tombs of Seven Patriotic Martyrs
태사묘	太師廟	Taesamyo Shrine
화령전	華寧殿	Hwaryeongjeon Shrine
희이재사	希夷齋舍	Huiijaesa Ritual House

【누정/정원】

광한루	廣寒樓	Gwanghallu Pavilion
궁남지	宮南池	Gungnamji Pond
금사정	錦沙亭	Geumsajeong Pavilion
낙수정	樂壽亭	Naksujeong Pavilion
방화수류정	訪花隨柳亭	Banghwasuryujeong Pavilion
보신각	普信閣	Bosingak Pavilion
서석지	瑞石池	Seoseokji Garden
서출지	書出池	Seochulji Pond
소류정	小流亭	Soryujeong Pavilion
수운정	水雲亭	Suunjeong Pavilion
심수정	心水亭	Simsujeong Pavilion
안락정	安樂亭	Allakjeong Pavilion
야옹정	野翁亭	Yaongjeong Pavilion
열화정	悅話亭	Yeolhwajeong Pavilion
영남루	嶺南樓	Yeongnamnu Pavilion

월지	月池	Wolji Pond
이견대	利見臺	Igyeondae Pavilion
포석정지	鮑石亭址	Poseokjeong Pavilion Site
피향정	披香亭	Pihyangjeong Pavilion
학사대	學士臺	Haksadae Pavilion
학사루	學士樓	Haksaru Pavilion
한벽루	寒碧樓	Hanbyeongnu Pavilion
해운정	海雲亭	Haeunjeong Pavilion

【가옥】

건재고택	建齋古宅	Geonjae House
겸암정사	謙菴精舍	Gyeomamjeongsa House
경교장	京橋莊	Gyeonggyojang House
계서당 종택	溪西堂 宗宅	Gyeseodang Head House
계은고택	溪隱古宅	Gyeeun House
고령댁	古靈宅	Goryeongdaek House
고창환 고택	高昌煥 古宅	Go Jang-hwan's House
고평오 고택	高平五 古宅	Go Pyeong-o's House
공산정 고택	公山亭 古宅	Gongsanjeong House
공재고택	恭齋古宅	Gongjae House
관가정	觀稼亭	Gwangajeong House
괴헌고택	槐軒古宅	Goeheon House
궁집	宮집	Gungjip House
귀봉종택	龜峰宗宅	Gwibong Head House
규당고택	圭堂古宅	Gyudang House
근암고택	謹庵古宅	Geunam House
근재재사	近齋齋舍	Geunjaejaesa Ritual House
김명관 고택	金命寬 古宅	Kim Myeong-gwan's House
김참판댁	金參判宅	Kim Gi-hyeon's House
낙선당 고택	樂善堂 古宅	Nakseondang House
난고종택	蘭阜宗宅	Nango Head House
남악종택	南嶽宗宅	Namak Head House
남파고택	南坡古宅	Nampa House
녹우단	綠雨壇	Nogudan House
녹우당	綠雨堂	Nogudang House
능동재사	陵洞齋舍	Neungdongjaesa Ritual House
도암종택	陶庵宗宅	Doam Head House
독락당	獨樂堂	Dongnakdang House
동계종택	桐溪宗宅	Donggye Head House
동관댁	東官宅	Donggwandaek House
동춘당	同春堂	Dongchundang Hall
동춘당 종택	同春堂 宗宅	Dongchundang Head House

두곡고택	杜谷古宅	Dugok House
만산고택	晩山古宅	Mansan House
만취당	晩翠堂	Manchwidang House
만취당 고택	晩翠堂 古宅	Manchwidang House
만화정	萬和亭	Manhwajeong Pavilion
만회고택	晩悔古宅	Manhoe House
매간당 고택	梅澗堂 古宅	Maegandang House
매산고택	梅山古宅	Maesan House
맹씨 행단	孟氏 杏壇	House of the Maeng Clan
명재고택	明齋古宅	Myeongjae House
몽심재 고택	夢心齋 古宅	Mongsimjae House
무기연당	舞沂蓮塘	Mugyeondang Pond
무첨당	無忝堂	Mucheomdang House
묵와고택	默窩古宅	Mugwa House
물체당 고택	勿替堂 古宅	Mulchedang House
백불암 고택	百弗庵 古宅	Baekburam House
백일헌 종택	白日軒 宗宅	Baegilheon Head House
번남고택	樊南古宅	Beonnam House
빈연정사	賓淵精舍	Binyeonjeongsa House
사운고택	士雲古宅	Saun House
사월종택	沙月宗宅	Sawol Head House
사호당 고택	沙湖堂 古宅	Sahodang House
산수정	山水亭	Sansujeong Pavilion
삼가헌 고택	三可軒 古宅	Samgaheon House
삼성당 고택	三省堂 古宅	Samseongdang House
상춘헌 고택	賞春軒 古宅	Sangchunheon House
서문성벽집	西門城壁집	House by the West Gate
서설당 고택	瑞雪堂 古宅	Seoseoldang House
서지재사	西枝齋舍	Seojjaesa Ritual House
선교장	船橋莊	Seongyojang House
성천택	星川宅	Seongcheondaek House
소대헌·호연재 고택	小大軒·浩然齋 古宅	Sodaheon-Hoyeonjae House
소석고택	少石古宅	Soseok House
소우당 고택	素宇堂 古宅	Soudang House
소호헌	蘇湖軒	Sohoheon House
송석헌 고택	松石軒 古宅	Songseokheon House
송소 고택	松韶 古宅	Songso House
송소종택	松巢宗宅	Songso Historic House
송첨종택	松簷宗宅	Songcheom Head House
수곡고택	樹谷古宅	Sugok House
수당고택	修堂古宅	Sudang House
수졸당 고택	守拙堂 古宅	Sujoldang House
시은고택	市隱古宅	Sieun House

신와고택	新窩古宅	Sinwa House
신재효 고택	申在孝 古宅	Sin Jae-hyo's Historic House
심우장		Simujang House
쌍벽당 종택	雙碧堂 宗宅	Ssangbyeokdang Head House
쌍암고택	雙巖古宅	Ssangam House
양오당 고택	養吾堂 古宅	Yangodang House
양진당	養眞堂	Yangjindang House
양참사댁	梁參事宅	Yang Jae-hyeong's House
연정고택	蓮亭古宅	Yeonjeong House
염행당 고택	念行堂 古宅	Yeomhaengdang House
오류헌	五柳軒	Oryuheon House
오죽헌	烏竹軒	Ojukheon House
오헌고택	梧軒古宅	Oheon House
옥연정사	玉淵精舍	Ogyeonjeongsa House
용궁댁	龍宮宅	Yonggungdaek House
우남고택	愚南古宅	Unam House
우당고택	愚堂古宅	Udang House
운강고택	雲岡故宅	Ungang House
운림고택	雲林古宅	Ullim House
운조루 고택	雲鳥樓 古宅	Unjoru House
원지정사	遠志精舍	Wonjijeongsa House
월암종택	月菴宗宅	Woram Head House
윤보선가	尹潯善家	Yun Po-sun's House
이방댁	吏房宅	Local Personnel Clerk's House
이향정 고택	二香亭 古宅	Ihyangjeong House
이화장	梨花莊	Ihwajang House
일두고택	一蠹古宅	Ildu House
일성당 고택	日省堂 古宅	Ilseongdang House
임청각	臨淸閣	Imcheonggak House
작천고택	鵲泉古宅	Jakcheon House
제호정 고택	霽湖亭 古宅	Jehojeong House
존재고택	存齋古宅	Jonjae House
참판댁	參判宅	Champandaek House
최감찰댁	報恩 崔監察宅	Choe Ik-su's House, Boeun
최부자댁	崔富者宅	Choe Jun's House
충효당	忠孝堂	Chunghyodang House
충효당 종택	忠孝堂 宗宅	Chunghyodang Head House
탁청정	濯淸亭	Takcheongjeong Pavilion
태고정	太古亭	Taegojeong House
하동고택	河東古宅	Hadong House
학암고택	鶴巖古宅	Hagam House
학재고택	鶴齋古宅	Hakjae House
한봉일 고택	韓奉日 古宅	Han Bong-il's House

향단	香壇	Hyangdan House
향리택	鄉吏宅	Local Clerk's House
향산고택	響山古宅	Hyangsan House
허백당 종택	虛白堂 宗宅	Heobaekdang Head House
화경당 고택	和敬堂 古宅	Hwagyeongdang House
후송당 고택	後松堂 古宅	Husongdang House
후조당 종택	後彫堂 宗宅	Hujodang Head House

1-B. 불교 건조물

† 전통시대의 건조물 가운데 사찰, 사찰의 전각과 부속 건조물 및 불탑, 승탑 등의 조형물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사찰, 암자, 사찰의 전각 등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불교 건조물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후부 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괄호 없이 덧붙입니다.

[보기]

· 불국사	佛國寺	Bulguksa Temple
· 석굴암	石窟庵	Seokguram Grotto
· 대웅전	大雄殿	Daeungjeon Hall
· 장경판전	藏經板殿	Janggyeongpanjeon Depositories
· 승선교	昇仙橋	Seungseongyo Bridge

† 형태, 층수, 재질 등을 나타내는 용어와 사찰 이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불탑 국가유산의 이름 및 승려의 존호와 사찰 이름의 조합으로 지어진 승탑 국가유산의 이름은 국문 명칭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역을 같은 방식으로 조합하여 표기합니다.

[보기]

· 분황사 모전석탑	芬皇寺 模塹石塔	Stone Brick Pagoda of Bunhwangsa Temple
· 불국사 삼층석탑	佛國寺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
· 금산사 육각 다층석탑	金山寺 六角 多層石塔	Hexagonal Multi-story Stone Pagoda of Geumsansa Temple
· 보림사 보조선사탑	寶林寺 普照禪師塔	Stupa of Master Bojo at Borimsa Temple
· 봉암사 지증대사탑	鳳巖寺 智證大師塔	Stupa of Buddhist Monk Jijeung at Bongamsa Temple

§ 명명 요소

【사찰 건조물】

가구식 석축	架構式 石築	Stone Elevation
구층석탑	九層石塔	Nine-story Stone Pagoda
국사전	國師殿	Guksajeon Shrine
극락보전	極樂寶殿	Geungnakbojeon Hall
극락전	極樂殿	Geungnakjeon Hall
금강계단	金剛戒壇	Ordination Platform

길상탑	吉祥塔	Gilsangtap Pagoda
나한전	羅漢殿	Nahanjeon Hall
다보탑	多寶塔	Dabotap Pagoda
다층석탑	多層石塔	Multi-story Stone Pagoda
다층전탑	多層塼塔	Multi-story Brick Pagoda
대광명전	大光明殿	Daegwangmyeongjeon Hall
대광보전	大光寶殿	Daegwangbojeon Hall
대광전	大光殿	Daegwangjeon Hall
대웅보전	大雄寶殿	Daeungbojeon Hall
대웅전	大雄殿	Daeungjeon Hall
대장전	大藏殿	Daejangjeon Hall
대적광전	大寂光殿	Daejeokgwangjeon Hall
모전석탑	模塼石塔	Stone Brick Pagoda
무량수전	無量壽殿	Muryangsujeon Hall
미륵전	彌勒殿	Mireukjeon Hall
법당	法堂	Main Buddha Hall
법보전	法寶殿	Beopbojeon Hall
보광명전	普光明殿	Bogwangmyeongjeon Hall
보광전	普光殿	Bogwangjeon Hall
봉발탑	奉鉢塔	Alms Bowl Pagoda
부도	浮屠	Stupa
사리탑	舍利塔	Stupa
사사자	四獅子	Four Lion
사자 주악장식	獅子 奏樂裝飾	Lion and Musician in Relief
사자탑	獅子塔	Lion Pagoda
사지	寺地	Temple Site
삼층석탑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석관	石棺	Stone Coffin
석굴암	石窟庵	Seokguram Grotto
석탑	石塔	Stone Pagoda
선원[암자]	禪院	Hermitage
선원[사찰]	禪院	Temple
세존사리탑	世尊舍利塔	Sakyamuni Stupa
수마노탑	水瑪瑙塔	Sumanotap Pagoda
승탑	僧塔	Stupa
십삼층석탑	十三層石塔	Thirteen-story Stone Pagoda
십이지상	十二支像	Twelve Zodiac Animal Deities
십층석탑	十層石塔	Ten-story Stone Pagoda
암지	庵地	Hermitage Site
약사전	藥師殿	Yaksajeon Hall
연화 운룡장식	蓮花 雲龍裝飾	Lotus, Cloud and Dragon Design
영산전	靈山殿	Yeongsanjeon Hall
오층모전석탑	五層模塼石塔	Five-story Stone Brick Pagoda

오층석탑	五層石塔	Five-story Stone Pagoda
오층전탑	五層塼塔	Five-story Brick Pagoda
원지	院址	Temple Site
원통보전	圓通寶殿	Wontongbojeon Hall
원통전	圓通殿	Wontongjeon Hall
원형	圓形	Cylindrical
육각	六角	Hexagonal
응진당	應眞堂	Eungjindang Hall
응진전	應眞殿	Eungjinjeon Hall
장경판전	藏經板殿	Janggyeongpanjeon Depositories
적광전	寂光殿	Jeokgwangjeon Hall
전탑	塼塔	Brick Pagoda
조사당	祖師堂	Josadang Shrine
종루	鍾樓	Bell Tower
지장전	地藏殿	Jijangjeon Hall
천불전	千佛殿	Cheonbuljeon Hall
칠층모전석탑	七層模塼石塔	Seven-story Stone Brick Pagoda
칠층석탑	七層石塔	Seven-story Stone Pagoda
칠층전탑	七層塼塔	Seven-story Brick Pagoda
팔상전	八相殿	Palsangjeon Hall
팔상전[목탑]	捌相殿	Palsangjeon Wooden Pagoda

§ 사용 용례

【사찰 건조물】

각황전	覺皇殿	Gakhwangjeon Hall
금당	金堂	Geumdang Hall
상 대웅전	上 大雄殿	Upper Daeungjeon Hall
승선교	昇仙橋	Seungseongyo Bridge
연화교 및 칠보교	蓮華橋 및 七寶橋	Yeonhwagyo and Chilbogyo Bridges
우화루	雨花樓	Uhwaru Pavilion
조계문	曹溪門	Jogyemun Gate
청운교 및 백운교	靑雲橋 및 白雲橋	Cheongungyo and Baegungyo Bridges
하 대웅전	下 大雄殿	Lower Daeungjeon Hall
하사당[승방]	下舍堂	Hasadang Dormitory
해탈문	解脫門	Haetalmun Gate
회전문	廻轉門	Hoejeonmun Gate

【불탑/승탑】

남 삼층석탑	南 三層石塔	South Three-story Stone Pagoda
남·북 삼층석탑	南·北 三層石塔	South and North Three-story Stone Pagodas

동 삼층석탑	東 三層石塔	East Three-story Stone Pagoda
동 승탑	東 僧塔	East Stupa
동·서 삼층석탑	東·西 三層石塔	East and West Three-story Stone Pagodas
북 삼층석탑	北 三層石塔	North Three-story Stone Pagoda
북 승탑	北 僧塔	North Stupa
사사자 구층석탑	四獅子 九層石塔	Four Lion Nine-story Stone Pagoda
사사자 삼층석탑	四獅子 三層石塔	Four Lion Three-story Stone Pagoda
서 삼층석탑	西 三層石塔	West Three-story Stone Pagoda
서 승탑	西 僧塔	West Stupa
서 오층석탑	西 五層石塔	West Five-story Stone Pagoda
원형 다층석탑	圓形 多層石塔	Cylindrical Multi-story Stone Pagoda
육각 다층석탑	六角 多層石塔	Hexagonal Multi-story Stone Pagoda
중앙 삼층석탑	中央 三層石塔	Central Three-story Stone Pagoda
팔각구층석탑	八角九層石塔	Octagonal Nine-story Stone Pagoda
팔각오층석탑	八角五層石塔	Octagonal Five-story Stone Pagoda
팔각칠층석탑	八角七層石塔	Octagonal Seven-story Stone Pagoda

【사찰】

가섭암지	迦葉庵址	Gaseobam Hermitage Site
각연사	覺淵寺	Gagyeonsa Temple
간월사지	澗月寺址	Ganwolsa Temple Site
갈항사지	葛項寺址	Galhangsa Temple Site
감산사	甘山寺	Gamsansa Temple
감은사지	感恩寺址	Gameunsa Temple Site
갑사	甲寺	Gapsa Temple
강락사지	江洛寺址	Gangnaksa Temple Site
개령암지	開嶺庵址	Gaeryeongam Hermitage Site
개목사	開目寺	Gaemoksa Temple
개선사지	開仙寺址	Gaeseonsa Temple Site
개심사	開心寺	Gaesimsa Temple
개심사지	開心寺址	Gaesimsa Temple Site
개암사	開岩寺	Gaeamsa Temple
개운사	開運寺	Gaeunsa Temple
개천사	開天寺	Gaecheonsa Temple
개태사지	開泰寺址	Gaetaesa Temple Site
거둔사지	居頓寺址	Geodonsa Temple Site
거조암	居祖庵	Geojoam Hermitage
건봉사	乾鳳寺	Geonbongsa Temple
경국사	慶國寺	Gyeongguksa Temple
경천사지	敬天寺址	Gyeongcheonsa Temple Site
경청선원	境淸禪院	Gyeongcheongseonwon Hermitage
경흥사	慶興寺	Gyeongheungsa Temple

계승사	桂承寺	Gyeseungsa Temple
고견사	古見寺	Gogyeonsa Temple
고달사지	高達寺址	Godalsa Temple Site
고방사	古方寺	Gobangsa Temple
고산사	高山寺	Gosansa Temple
고선사지	高仙寺址	Goseonsa Temple Site
고성사	高聲寺	Goseongsa Temple
고운사	孤雲寺	Gounsa Temple
골굴암	骨窟庵	Golguram Hermitage
관룡사	觀龍寺	Gwallyongsa Temple
관음사	觀音寺	Gwaneumsa Temple
관음선원	觀音禪院	Gwaneumseonwon Hermitage
관촉사	灌燭寺	Gwanchoksa Temple
광덕사	廣德寺	Gwangdeoksa Temple
광흥사	廣興寺	Gwangheungsa Temple
구룡사	龜龍寺	Guryongsa Temple
국청사	國淸寺	Gukcheongsa Temple
굴불사지	掘佛寺址	Gulbulsa Temple Site
굴산사지	崛山寺址	Gulsansa Temple Site
귀신사	歸信寺	Gwisinsa Temple
금곡사	金谷寺	Geumgoksa Temple
금당사	金塘寺	Geumdangsa Temple
금당암	金堂庵	Geumdangam Hermitage
금둔사지	金苾寺址	Geumdunsa Temple Site
금산사	金山寺	Geumsansa Temple
금탑사	金塔寺	Geumtapsa Temple
기림사	祇林寺	Girimsa Temple
김룡사	金龍寺	Gimnyongsa Temple
낙산사	洛山寺	Naksansa Temple
남간사지	南澗寺址	Namgansa Temple Site
남계원지	南溪院址	Namgyewon Temple Site
남장사	南長寺	Namjangsa Temple
내소사	來蘇寺	Naesosa Temple
내원사	內院寺	Naewonsa Temple
능가사	楞伽寺	Neunggasa Temple
다보사	多寶寺	Dabosa Temple
다솔사	多率寺	Dasolsa Temple
단속사지	斷俗寺址	Dansoksa Temple Site
단호사	丹湖寺	Danhosa Temple
대각암	大覺庵	Daegagam Hermitage
대곡사	大谷寺	Daegoksa Temple
대둔사	大苾寺	Daedunsa Temple
대비사	大悲寺	Daebisa Temple

대성암	大聖庵	Daeseongam Hermitage
대승사	大乘寺	Daeseungsa Temple
대원사	大原寺	Daewonsa Temple
대원사	大源寺	Daewonsa Temple
대적사	大寂寺	Daejeoksa Temple
대전사	大典寺	Daejeonsa Temple
대조사	大鳥寺	Daejosa Temple
대흥사	大興寺	Daeheungsa Temple
덕주사	德周寺	Deokjusa Temple
도갑사	道岬寺	Dogapsa Temple
도리사	桃李寺	Dorisa Temple
도림사	道林寺	Dorimsa Temple
도솔암	兜率庵	Dosoram Hermitage
도천사지	道川寺址	Docheonsa Temple Site
도피안사	到彼岸寺	Dopiansa Temple
동국사	東國寺	Dongguksa Temple
동불암지	東佛庵址	Dongburam Hermitage Site
동사지	桐寺址	Dongsa Temple Site
동학사	東鶴寺	Donghaksa Temple
동화사	桐華寺	Donghwasa Temple
마곡사	麻谷寺	Magoksa Temple
만기사	萬奇寺	Mangisa Temple
만복사지	萬福寺址	Manboksa Temple Site
만어사	萬魚寺	Maneosa Temple
만연사	萬淵寺	Manyeonsa Temple
망덕사지	望德寺址	Mangdeoksa Temple Site
망해사지	望海寺址	Manghaesa Temple Site
명봉사	鳴鳳寺	Myeongbongsa Temple
묘엄사지	妙嚴寺址	Myoeomsa Temple Site
무량사	無量寺	Muryangsa Temple
무봉사	舞鳳寺	Mubongsa Temple
무위사	無爲寺	Muwisa Temple
무장사지	鑿藏寺址	Mujangsa Temple Site
문수사	文殊寺	Munsusa Temple
미륵대원지	彌勒大院址	Mireukdaewon Stone Temple Site
미륵사지	彌勒寺址	Mireuksa Temple Site
미타암	彌陀庵	Mitaam Hermitage
미탄사지	味呑寺地	Mitansa Temple Site
미황사	美黃寺	Mihwangsa Temple
반야사	般若寺	Banyasa Temple
반야사지	般若寺址	Banyasa Temple Site
백담사	百潭寺	Backdamsa Temple
백련사	白蓮寺	Baengnyeonsa Temple

백률사	栢栗寺	Baengnyulsa Temple
백양사	白羊寺	Baegyangsa Temple
백운암	白雲庵	Baegunam Hermitage
백장암	百丈庵	Backjangam Hermitage
백흥암	百興庵	Backheungam Hermitage
범어사	梵魚寺	Beomeosa Temple
법계사	法界寺	Beopgyesa Temple
법수사지	法水寺址	Beopsusa Temple Site
법인사	法印寺	Beobinsa Temple
법주사	法住寺	Beopjusa Temple
법천사지	法泉寺址	Beopcheonsa Temple Site
법흥사지	法興寺址	Beopheungsa Temple Site
벽송사	碧松寺	Byeoksongsa Temple
보경사	寶鏡寺	Bogyeongsa Temple
보광사	普光寺	Bogwangsa Temple
보광사지	普光寺址	Bogwangsa Temple Site
보리사지	菩提寺址	Borisa Temple Site
보림사	寶林寺	Borimsa Temple
보문사	普門寺	Bomunsa Temple
보문사지	普門寺址	Bomunsa Temple Site
보살사	菩薩寺	Bosalsa Temple
보석사	寶石寺	Boseoksa Temple
보성선원	寶聖禪院	Boseongseonwon Temple
보안사	寶安寺	Boansa Temple
보원사지	普願寺址	Bowonsa Temple Site
보천사지	寶泉寺址	Bocheonsa Temple Site
보타사	普陀寺	Botasa Temple
보현사	普賢寺	Bohyeonsa Temple
복천암	福泉庵	Bokcheonam Hermitage
봉림사	鳳林寺	Bongnimsa Temple
봉림사지	鳳林寺址	Bongnimsa Temple Site
봉서사	鳳棲寺	Bongseosa Temple
봉선사	奉先寺	Bongseonsa Temple
봉선홍경사	奉先弘慶寺	Bongseonhonggyeongsa Temple
봉암사	鳳巖寺	Bongamsa Temple
봉업사지	奉業寺址	Bongeopsa Temple Site
봉은사	奉恩寺	Bongeunsa Temple
봉인사	奉印寺	Bonginsa Temple
봉정사	鳳停寺	Bongjeongsa Temple
봉정암	鳳頂庵	Bongjeongam Hermitage
부도암지	浮圖庵址	Budoam Hermitage Site
부석사	浮石寺	Buseoksa Temple
북미륵암	北彌勒庵	Bungmireugam Hermitage

북장사	北長寺	Bukjangsa Temple
북지장사	北地藏寺	Bukjijangsa Temple
분황사	芬皇寺	Bunhwangsa Temple
불갑사	佛甲寺	Bulgapsa Temple
불곡사	佛谷寺	Bulgoksa Temple
불국사	佛國寺	Bulguksa Temple
불굴사	佛窟寺	Bulgulsa Temple
불영사	佛影寺	Buryeongsa Temple
불탑사	佛塔寺	Bultapsa Temple
불회사	佛會寺	Bulhoesa Temple
비래사	飛來寺	Biraesa Temple
비로사	毘盧寺	Birosa Temple
비로암	毘盧庵	Biroam Hermitage
빙산사지	氷山寺址	Bingsansa Temple Site
사자빈신사지	獅子頻迅寺址	Sajabinsinsa Temple Site
삼랑사지	三郎寺址	Samnangsa Temple Site
삼선암	三仙庵	Samseonam Hermitage
삼천사지	三川寺址	Samcheonsa Temple Site
삼화사	三和寺	Samhwasa Temple
상원사	上院寺	Sangwonsa Temple
서경사	西慶寺	Seogyeongsa Temple
서동사	瑞洞寺	Seodongsa Temple
서봉사	瑞鳳寺	Seobongsa Temple
서봉사지	瑞鳳寺址	Seobongsa Temple Site
서운암	瑞雲庵	Seounam Hermitage
서혈사지	西穴寺址	Seohyeolsa Temple Site
석남사	石南寺	Seongnamsa Temple
석남암사지	石南巖寺址	Seongnamamsa Temple Site
선국사	善國寺	Seonguksa Temple
선림원지	禪林院址	Seollimwon Temple Site
선봉사	僊鳳寺	Seonbongsa Temple
선석사	禪石寺	Seonseoksa Temple
선암사	仙巖寺	Seonamsa Temple
선운사	禪雲寺	Seonunsa Temple
선원사	禪院寺	Seonwonsa Temple
성거사지	聖居寺址	Seonggeosa Temple Site
성주사	聖住寺	Seongjusa Temple
성주사지	聖住寺址	Seongjusa Temple Site
성풍사지	聖風寺址	Seongpungsa Temple Site
성혈사	聖穴寺	Seonghyeolsa Temple
소림원	少林院	Solimwon Hermitage
송광사	松廣寺	Songgwangsa Temple
송림사	松林寺	Songnimsa Temple

수국사	守國寺	Suguksa Temple
수다사	水多寺	Sudasa Temple
수덕사	修德寺	Sudeoksa Temple
수도사	修道寺	Sudosa Temple
수도암	修道庵	Sudoam Hermitage
수종사	水鍾寺	Sujongsa Temple
수타사	壽陀寺	Sutasa Temple
숙수사지	宿水寺址	Suksusa Temple Site
송림사	崇林寺	Sungnimsa Temple
승가사	僧伽寺	Seunggasa Temple
승안사지	昇安寺址	Seungansa Temple Site
신둔사	薪茆寺	Sindunsa Temple
신록사	神勒寺	Silleuksa Temple
신복사지	神福寺址	Sinboksa Temple Site
신선사	神仙寺	Sinseonsa Temple
신선암	神仙庵	Sinseonam Hermitage
신암사	申庵寺	Sinamsa Temple
신원사	新元寺	Sinwonsa Temple
신흥사	新興寺	Sinheungsa Temple
실상사	實相寺	Silsangsa Temple
심곡사	深谷寺	Simgoksa Temple
심복사	深福寺	Simboksa Temple
심우사	尋牛寺	Simusa Temple
심원암	深源庵	Simwonam Hermitage
심향사	尋香寺	Simhyangsa Temple
쌍계사	雙溪寺	Ssanggyesa Temple
쌍봉사	雙峯寺	Ssangbongsa Temple
안국사	安國寺	Anguksa Temple
안국사지	安國寺址	Anguksa Temple Site
안심사	安心寺	Ansimsa Temple
안정사	安靜寺	Anjeongsa Temple
약사암	藥師庵	Yaksaam Hermitage
약수암	藥水庵	Yaksuam Hermitage
억정사지	億政寺址	Eokjeongsa Temple Site
연곡사	鸞谷寺	Yeongoksa Temple
연화사	蓮花寺	Yeonhwasa Temple
영국사	寧國寺	Yeongguksa Temple
영수사	靈水寺	Yeongsusa Temple
영암사지	靈岩寺址	Yeongamsa Temple Site
영월암	映月庵	Yeongworam Hermitage
영전사지	令傳寺址	Yeongjeonsa Temple Site
영탑사	靈塔寺	Yeongtapsa Temple
오덕사	五德寺	Odeoksa Temple

오어사	吾魚寺	Oeosa Temple
옥룡사	玉龍寺	Ongnyongsa Temple
옥천사	玉泉寺	Okcheonsa Temple
옥천암	玉泉庵	Okcheonam Hermitage
왕룡사원	王龍寺院	Wangnyongsawon Temple
왕흥사지	王興寺址	Wangheungsa Temple Site
용담사지	龍潭寺址	Yongdamsa Temple Site
용두사지	龍頭寺址	Yongdusa Temple Site
용문사	龍門寺	Yongmunsa Temple
용봉사	龍鳳寺	Yongbongsa Temple
용암사	龍岩寺	Yongamsa Temple
용암사지	龍巖寺址	Yongamsa Temple Site
용연사	龍淵寺	Yongyeonsa Temple
용장사지	茸長寺址	Yongjangsa Temple Site
용주사	龍珠寺	Yongjusa Temple
용천사	湧泉寺	Yongcheonsa Temple
용화사	龍華寺	Yonghwasa Temple
용흥사	龍興寺	Yongheungsa Temple
운문사	雲門寺	Unmunsa Temple
운부암	雲浮庵	Unbuam Hermitage
운수사	雲水寺	Unsusa Temple
운장암	雲藏庵	Unjangam Hermitage
운주사	雲住寺	Unjusa Temple
운흥사	雲興寺	Unheungsa Temple
원각사지	圓覺寺址	Wongaksa Temple Site
원당암	願堂庵	Wondangam Hermitage
원원사지	遠願寺址	Wonwonsa Temple Site
월광사지	月光寺址	Wolgwangsa Temple Site
월남사지	月南寺址	Wollamsa Temple Site
월명암	月明庵	Wolmyeongam Hermitage
월정사	月精寺	Woljeongsa Temple
위봉사	威鳳寺	Wibongsa Temple
유금사	有金寺	Yugeumsa Temple
유마사	維摩寺	Yumasa Temple
율곡사	栗谷寺	Yulgoksa Temple
은수사	銀水寺	Eunsusa Temple
은해사	銀海寺	Eunhaesa Temple
응석사	凝石寺	Eungseoksa Temple
의곡사	義谷寺	Uigoksa Temple
인각사	麟角寺	Ingaksa Temple
인양사	仁陽寺	Inyangsa Temple
자운사	紫雲寺	Jaunsa Temple
자장암	慈藏庵	Jajangam Hermitage

장곡사	長谷寺	Janggoksa Temple
장륙사	莊陸寺	Jangnyuksa Temple
장안사	長安寺	Jangansa Temple
장연사지	長淵寺址	Jangyeonsa Temple Site
장의사지	莊義寺址	Janguisa Temple Site
적천사	積川寺	Jeokcheonsa Temple
전등사	傳燈寺	Jeondeungsa Temple
정광사	淨光寺	Junggwangsa Temple
정도사지	淨兜寺址	Jeongdosa Temple Site
정림사지	定林寺址	Jeongnimsa Temple Site
정수사	淨水寺	Jeongsusa Temple
정암사	淨岩寺	Jeongamsa Temple
정토사지	淨土寺址	Jeongtosa Temple Site
정혜사	定慧寺	Jeonghyesa Temple
정혜사지	淨惠寺址	Jeonghyesa Temple Site,
조계사	曹溪寺	Jogyesa Temple
죽림사	竹林寺	Jungnimsa Temple
중초사지	中初寺址	Jungchosa Temple Site
증심사	證心寺	Jeungsimsa Temple
지보사	持寶寺	Jibosa Temple
지장암	地藏庵	Jijangam Hermitage
직지사	直指寺	Jikjisa Temple
진관사	津寬寺	Jingwansa Temple
진구사지	珍丘寺址	Jingusa Temple Site
진전사지	陳田寺址	Jinjeonsa Temple Site
참당암	懺堂庵	Chamdangam Hermitage
창림사지	昌林寺址	Changnimsa Temple Site
창성사지	彰聖寺址	Changseongsa Temple Site
천곡사지	泉谷寺址	Cheongoksa Temple Site
천관사	天冠寺	Cheongwansa Temple
천룡사지	天龍寺址	Cheollyongsa Temple Site
천은사	泉隱寺	Cheoneunsa Temple
천자암	天子庵	Cheonjaam Hermitage
천황사	天皇寺	Cheonhwangsa Temple
천흥사지	天興寺址	Cheonheungsa Temple Site
청계사	淸溪寺	Cheonggyesa Temple
청곡사	靑谷寺	Cheonggoksa Temple
청량사	淸涼寺	Cheongnyangsa Temple
청량사지	淸涼寺址	Cheongnyangsa Temple Site
청련사	靑蓮寺	Cheongnyeonsa Temple
청룡사	靑龍寺	Cheongnyongsa Temple
청룡사지	靑龍寺址	Cheongnyongsa Temple Site
청송사지	靑松寺址	Cheongsongsa Temple Site

청암사	靑巖寺	Cheongamsa Temple
청원사	淸源寺	Cheongwonsa Temple
청평사	淸平寺	Cheongpyeongsa Temple
축서사	鷲棲寺	Chukseosa Temple
칠불암	七佛庵	Chilburam Hermitage
칠장사	七長寺	Chiljangsa Temple
태고사	太古寺	Taegosa Temple
태안사	泰安寺	Taeansa Temple
태자사	太子寺	Taejasa Temple
태화사지	太和寺址	Taehwasa Temple Site
통도사	通度寺	Tongdosa Temple
파계사	把溪寺	Pagyesa Temple
표충사	表忠寺	Pyochungsa Temple
한계사지	寒溪寺址	Hangyesa Temple Site
한송사지	寒松寺址	Hansongsa Temple Site
한천사	寒天寺	Hancheonsa Temple
해인사	海印寺	Haeinsa Temple
향성사지	香城寺址	Hyangseongsa Temple Site
향천사	香泉寺	Hyangcheonsa Temple
현등사	懸燈寺	Hyeondeungsa Temple
홍제암	弘濟庵	Hongjeam Hermitage
화계사	華溪寺	Hwagyesa Temple
화방사	花芳寺	Hwabangsa Temple
화암사	花巖寺	Hwaamsa Temple
화엄사	華嚴寺	Hwaeomsa Temple
환성사	環城寺	Hwanseongsa Temple
황룡사		Hwangnyongsa Temple
황복사지	皇福寺址	Hwangboksa Temple Site
회암사지	檜巖寺址	Hoeamsa Temple Site
흑석사	黑石寺	Heukseoksa Temple
흥국사	興國寺	Heungguksa Temple
흥녕사지	興寧寺址	Heungnyeongsa Temple Site
흥법사지	興法寺址	Heungbeopsa Temple Site
흥천사	興天寺	heungcheonsa Temple

1-C. 근현대 건조물

† 근현대에 축조된 건조물의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역, 학교, 관공서, 종교시설 등 근현대 건조물의 이름은 고유한 이름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는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보기]

· 추풍령역	秋風嶺驛	Chupungnyeong Station
·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工業高等學校	Seoul Technical High School
· 대한의원	大韓醫院	Daehan Hospital
· 나주경찰서	羅州警察署	Naju Police Station
· 명동성당	明洞聖堂	Myeongdong Cathedral

† 근현대에 축조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용도, 종류 및 그 이름의 조성 방식이 전통적인 건조물과 유사한 경우에는 이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후부 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괄호 없이 덧붙입니다.

[보기]

· 돈암장	敦岩莊	Donamjang House
· 용호당	龍虎堂	Yonghodang Hall
· 영양사	瀛陽祠	Yeongyangsa Shrine
· 하천재	荷泉齋	Hacheonjae Ritual House
· 호룡보루	虎龍堡壘	Horyongboru Watchtower

† 이미 통용되고 있는 영문 명칭이 있는 건조물의 경우, 국가유산 명칭에서도 그 이름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보기]

· 나바위성당	나바위聖堂	Nabawi Shrine
·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Korea University
· 이화여자대학교	梨花女子大學校	Ewha Womans University
· 유엔기념공원	在韓UN紀念公園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 명명 요소

1호관	一號館	Building No. 1
가옥	家屋	House

감금실	監禁室	Detention Rooms
개통 기념비	開通 紀念碑	Monument for the Opening of
건물	建物	Building
건재 약방	乾材 藥房	Herbal Medicine Shop
검수차고	檢修車庫	Inspection Depot
검시실	檢屍室	Autopsy Lab
격납고	格納庫	Aircraft Hangar
경찰서	警察署	Police Station
고로	高爐	Furnace
고사포진지	高射砲陣地	Anti-aircraft Emplacement
공과대학		Engineering College
공사관	公使館	Legation
공소	公所	Chapel
관개수로	灌溉水路	Irrigation Canal
관사	官舍	Official Residence
광산	鑛山	Mine
광산학과		Mining Engineering Department
교	橋	Bridge
교구청	教區廳	Building of Catholic Diocese
교당	教堂	Temple
교도소	矯導所	Prison
교사		School Building
구	舊	Former
구관	舊館	Old Building
국회의사당	國會議事堂	National Assembly Building
군사시설	軍事施設	Igyodong Military Facility of Imperial Japan, Jeju
근대	近代	Modern
근대 한옥	近代 韓屋	Modern Korean-style House
근대역사문화거리		Modern History and Culture Street
근대역사문화공간		Modern History and Culture District
금융조합	金融組合	Financial Association
급수탑	給水塔	Water Tower
기념관	記念館	Memorial Hall
남장로교회	南長老教會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농산물검사소		Agricultural Products Inspection Center
농장	農場	Plantation
농협	農協	Agricultural Cooperative
대교구	大教區	Archdiocese
대방	大房	Daebang Hall
대온실	大溫室	Grand Greenhouse
대전보급소	大田補給所	Daejeon Branch
대통령관저	大統領官邸	Presidential Residence

대학교	大學校	University
대한성공회	大韓聖公會	Anglican Church of Korea
도정공장	搗精工場	Rice Mill
도지사	道知事	the Governor of Province
동관	東館	East Building
동굴진지	洞窟陣地	Tunnel Fortification
동부	東部	East
등대	燈臺	Lighthouse
등탑	燈塔	Light Tower
막사	幕舍	Barracks
망루	望樓	Watchtower
미곡창고	米穀倉庫	Granary
방어벙커	防禦벙커	Defense Bunker
배수시설	配水施設	Water Supply Facilities
배수지	配水池	Reservoir
배수펌프장	配水펌프場	Drainage Pumping Station
범종	梵鐘	Bell
별관	別館	Annex
별원	別院	Branch
별장	別莊	Villa
병원	病院	Hospital
병원장	病院長	Director of Hospital
보급창고	補給倉庫	Storehouse
보존	保存	Preserved
본관	本館	Main Building
본부법회당	本部法會堂	Main Prayer Hall
본부사무실	本部事務室	Headquarters Office
본부영대	本部靈臺	Yeongdae Tomb
본점	本店	Head Office
부속창고	附屬倉庫	Auxiliary Storehouse
분견대	分遣隊	Detachment
비행기	飛行機	Aircraft
비행장	飛行場	Airfield
사령부	司令部	Command Headquarters
사무동	事務棟	Office Building
사무본관	事務本館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사무소	事務所	Office
사옥	社屋	Building
사제관	司祭館	Presbytery
사택	舍宅	Residence
산업장려관	産業獎勵館	Industrial Promotion Center
상가	商街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상수시설	上水施設	Water Supply Facility

생활관	生活館	Dormitory
서관	西館	West Building
선광장	選鑛場	Ore Concentration Plant
선교교육원	宣敎教育院	Missionary Training Center
선교사	宣敎師	Missionary
선탄시설	選炭施設	Coal Preparation Plant
성결교회	聖潔教會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성당[성공회]	聖堂	Anglican Church
성당[주교좌 성당]	聖堂	Cathedral
성당[천주교]	聖堂	Catholic Church
소금창고	소금倉庫	Salt Storehouse
수납취급소	收納取扱所	Warehouse
수력발전소	水力發電所	Hydropower Plant
수리조합	水利組合	Irrigation Association
수원지	水源地	Reservoir
수준원점	水準原點	Original Vertical Datum
시설	施設	Facility
시청사		City Hall
식량창고	食糧倉庫	Food Storehouse
신사	神社	Shinto Shrine
신학교	神學校	Theological School
아틀리에		Atelier
약방	藥房	Medicine Shop
양곡창고	糧穀倉庫	Granary
양수장	揚水場	Pumping Station
양식	洋式	Western-style
양조장	釀造場	Brewery
얼음창고	얼음倉庫	Ice Storehouse
여관	旅館	Inn
역사	驛舍	Station Building
염전	鹽田	Salt Farm
엽연초	葉煙草	Leaf Tobacco
영사관	領事館	Consulate
예배당	禮拜堂	Chapel
오름가마		Climbing Kiln
옹기가마	甕器가마	Earthenware Kiln
외국인	外國人	Foreign
우체국	郵遞局	Post Office
원불교	圓佛敎	Won-Buddhism
원장	院長	Director
유고	遺稿	Manuscript Collection
육군제1훈련소	陸軍第一訓練所	the 1st Army Training Camp
의원	醫院	Hospital

의학대학	醫學大學	College of Medicine
이발관		Barber Shop
이중교	二重橋	Double-tier Bridge
인문대학	人文大學	College of Humanities
인천지점	仁川支店	Incheon Branch
일·양 절충식	日·洋 折衷式	Eclectic-style
일본식	日本式	Japanese-style
일본인	日本人	Japanese
일제	日帝	Imperial Japan
일출봉	日出峯	Ilchulbong Peak
임시수도	臨時首都 政府廳舍	Provisional Capital
임업시험장	林業試驗場	Forestry Experiment Station
저장탱크		Storage Tank
저포조합	紵布組合	Ramie Weavers' Association
전기철도교량	電氣鐵道橋梁	Electric Railroad Bridge
전투비	戰鬪碑	Monument for ~ Battle
정미소		Rice Mill
정부청사	政府廳舍	Government Building
정수장	淨水場	Filtration Plant
제수변실	制水弁室	Water Quality Control Facility
제철소	製鐵所	Steel Mill
종각	鐘閣	Bell Tower
주교좌성당	主教座聖堂	Cathedral
중국인	中國人	Chinese
중앙도서관	中央圖書館	Central Library
중앙정보부	中央情報部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
지소	支所	Branch
지역사무소	地域事務所	Regional Office
지점	支店	Branch
지하벙커	地下벙커	Underground Bunker
지휘소	指揮所	Command Center
차량정비고	車輛整備庫	Vehicle Maintenance Depot
창고	倉庫	Storehouse
철교	鐵橋	Railroad Bridge
청년회관	青年會館	Youth Center
청사		Building
체육관	體育館	Gymnasium
큰법당	큰法堂	Main Buddha Hall
터		Site
터널		Tunnel
파출소	派出所	Police Substation
포목상점	布木商店	Dry Goods Store
포치		Porch

한·일 절충식	韓·日 折衷式	Eclectic-style
한옥	韓屋	Korean-style House
합숙소	合宿所	Employee Residence
합죽교	合築橋	Hapchukgyo Bridge
해병	海兵	Marine Corp
해안	海岸	Coast
해저터널		Undersea Tunnel
헌병	憲兵	Military Police
호안시설		Shore Protection Facilities
화교학교	華僑學校	Korean Chinese School
화교협회	華僑協會	Korean Chinese Association
화실	畫室	Atelier
화장장	火葬場	Cremation
회관	會館	Assembly Hall
훈련시설	訓練施設	Training Camp

§ 사용 용례

【공공시설】

경의선	京義線	Gyeongui Railroad Line
소록도갱생원	小鹿島更生院	Sorokdo Rehabilitation Center
신아일보	서울 舊 新亞日報 別館	Annex Building of Former Sina ilbo (New Asia Daily) in Seoul
연천역	漣川驛	Yeoncheon Station
영암선	榮巖線	Yeongam Railroad Line
장단역	長湍驛	Jangdan Station
제주도청사		Jeju-do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철암역	鐵岩驛	Cheoram Station
통영청년단 회관	統營青年團 會館	Tongyeong Youth Center

【교육시설】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Korea University
공업전습소	工業傳習所	National Industrial Institute
서울대학교	서울大學校	Seoul National University
심슨기념관		Simpson Memorial Hall
양이재	養怡齋	Yangijae Hall
이화여자대학교	梨花女子大學校	Ewha Womans University

【군사시설】

4·3 수악주둔소	四·三 水嶽駐屯所	Suak April 3rd Military Garrison
-----------	-----------	----------------------------------

인민군사령부	人民軍司令部	People's Army Command Headquarters
제1야전군사령부	第1野戰軍司令部	the First Republic of Korea Army
죽음의 다리		Bridge of Death
진해방비대 사령부	舊 鎮海防備隊 司令部	Jinhae Defense Unit Command Headquarters
진해요항부 사령부	鎮海要港部 司令部	Jinhae Naval Port Command Headquarters
진해해군통제부	鎮海海軍統制府	Jinhae Naval Station
최동북단 감시초소	最東北端 監視哨所	Northernmost Guard Post in DMZ
호룡보루	虎龍堡壘	Horyongboru Watchtower

【상업시설】

공화춘	共和春	Gonghwachun Restaurant
대화조	大和組	Daehwa Corporation
동아부인상회		Former Donga Married Women's Trading Company, Mokpo Branch
박다옥	博多屋	Bakdaok Restaurant
보성여관	寶城旅館	Boseong Inn
부국원	富國園	Bugukwon Corporation
조양식당	兆陽食堂	Joyang Restaurant

【종교시설】

나바위성당	나바위聖堂	Nabawi Shrine
단군전	檀君殿	Dangunjeon Shrine
대각전	大覺殿	Daegakjeon Hall
봉령각	鳳靈閣	Bongnyeonggak Hall
삼청전	三清殿	Samcheongjeon Hall
영산대각전	靈山大覺殿	Yeongsandaegakjeon Hall
영양사	瀛陽祠	Yeongyangsa Shrine
용호당	龍虎堂	Yonghodang Hall
진산성지성당	天主教 珍山聖地聖堂	Jinsan Catholic Shrine
하천재	荷泉齋	Hacheonjae Ritual House

【기념물/공원/가옥】

독립문	서울 獨立門	Dongnimmun Arch
돈암장	敦岩莊	Donamjang House
탑골공원	塔골公園	Tapgol Park
효창공원	孝昌公園	Hyochang Park

1-D. 유적지, 성, 도요지 등

† 성지(城址), 유물산포지 등 넓은 범위의 유적지 및 도요지, 다양한 형태의 인물, 사건 관련 유적지의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유적지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후부 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괄호 없이 덧붙입니다.

[보기]

· 산천단	山川壇	Sancheondan Altar
· 양화나루	楊花나루	Yanghwanaru Ferry Dock
· 고창읍성	高敞邑城	Gochangupseong Walled Town
· 몽촌토성	夢村土城	Mongchontoseong Earthen Fortification

† 유적지의 성격이나 유래에 대한 설명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보기]

- 항몽 유적 抗蒙 遺蹟 Historic Site of Anti-Mongolian Struggle
- 항일의병 유적 抗日義兵 遺蹟 Historic Site of Anti-Japanese Army
- 목면시배 유지 木棉始培 遺址 The First Cotton Farm Site
- 고려청자 요지 高麗靑瓷 窯址 Goryeo Celadon Kiln Site
- 송시열 유적 槐山 宋時烈 遺蹟 Historic Site Related to Song Si-yeol, Goesan

§ 명명 요소

고려백자 요지	高麗白磁 窯址	Goryeo White Porcelain Kiln Site
고려청자 요지	高麗靑瓷 窯址	Goryeo Celadon Kiln Site
나성	羅城	Outer City Wall
녹청자 요지	綠靑瓷 窯址	Green Celadon Kiln Site
백자 요지	大都里 白磁 窯址	White Porcelain Kiln Site
보루군	堡壘群	Forts
분묘군	墳墓群	Tombs
분청사기 요지	粉靑砂器 窯址	Buncheong Kiln Site
사적지대	史蹟地帶	Archaeological Area
산성	山城	Fortress

석보	石堡	Stone Fortress
선소유적	船所遺蹟	Shipbuilding Site
성	城	Fortress
성지	城址	Fortress Site
와요지	瓦窯址	Roof Tile Kiln Site
외성	外城	Outer Wall
요지	窯址	Kiln Site
유배지	流配地	Home in Exile
유적[선사유적]	遺蹟	Archaeological Site
유적[역사유적]	遺蹟	Historic Site
유지	遺址	Site
유허	遺墟	Historic Site (Related to ~)
읍성	邑城	Walled Town
전랑지	殿廊址	Mansion Site
전적	戰蹟	Battlefield
조선백자 요지	朝鮮白磁 窯址	Joseon White Porcelain Kiln Site
청자 요지	靑瓷 窯址	Celadon Kiln Site
청자와 백자 요지	靑瓷와 白磁 窯址	Celadon and White Porcelain Kiln Site
탄생지	誕生地	Birthplace
토성	土城	Earthen Fortification
패총	貝塚	Shell Mound
항일의병	抗日義兵	Anti-Japanese Army
해저유물 매장해역	海底遺物 埋藏海域	Sea Area with Sunken Relics
회유토기 요지	灰釉土器 窯址	Ash-glazed Pottery Kiln Site

§ 사용 용례

【유적지】

3·1운동 순국 유적	3·1운동 순국 유적	Historic Site of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계림	鷄林	Gyerim Forest
구지봉	龜旨峰	Gujibong Peak
목면시배 유지	木棉始培 遺址	The First Cotton Farm Site
산천단	山川壇	Sancheondan Altar
삼성혈	三姓穴	Samseonghyeol Shrine
선농단	先農壇	Seonnongdan Altar
양화나루	楊花나루	Yanghwanaru Ferry Dock
잠두봉	蠶頭峰	Jamdubong Peak

진흥왕 순수비지	眞興王 巡狩碑址	Site of the Monument Commemorating the Border Inspection by King Jinheung
참성단	暫星壇	Chamseongdan Altar
천제단	天祭壇	Cheonjedan Altars
청해진	淸海鎭	Cheonghaejin Fort
항몽 유적	抗蒙 遺蹟	Historic Site of Anti-Mongolian Struggle
항일의병 유적	抗日義兵 遺蹟	Historic Site of Anti-Japanese Army
황산대첩비지	荒山大捷碑址	Site of the Stele for the Victory at Hwangsan Battle

【성곽/성곽방어시설】

가림성	加林城	Garimseong Fortress
가산산성	架山山城	Gasansanseong Fortress
갑곶돈	甲串墩	Gapgotdon Outpost
강화산성	江華山城	Ganghwasanseong Fortress
건지산성	乾芝山城	Geonjisanseong Fortress
검단산성	檢丹山城	Geomdansanseong Fortress
경주읍성	慶州邑城	Gyeongjueupseong Walled Town
계족산성	鷄足山城	Gyejoksanseong Fortress
고사부리성	古沙夫里城	Gosaburiseong Fortress
고소성	姑蘇城	Gososeong Fortress
고창읍성	高敞邑城	Gochangupseong Walled Town
공산성	公山城	Gongsanseong Fortress
관문성	關門城	Gwanmunseong Fortress
광성보	廣城堡	Gwangseongbo Fort
금성산성	金城山城	Geumseongsanseong Fortress
금정산성	金井山城	Geumjeongsanseong Fortress
나주읍성	羅州邑城	Najueupseong Walled Town
낙안읍성	樂安邑城	Naganeupseong Walled Town
남고루	南古壘	Namgoru Embankment
남고산성	南固山城	Namgosanseong Fortress
남도진성	南桃鎭城	Namdojinseong Fortress
남산신성	南山新城	Namsansinseong Fortress
남원읍성	南原邑城	Namwoneupseong Walled Town
남한산성	南漢山城	Namhansanseong Fortress
노성산성	魯城山城	Noseongsanseong Fortress
달성	達城	Dalseong Fortress
당성	唐城	Dangseong Fortress
당포성	堂浦城	Dangposeong Fortress

대모산성	楊州 大母山城	Daemosanseong Fortress
덕진산성	德津山城	Deokjinsanseong Fortress
덕진진	德津鎭	Deokjinjin Fort
덕포진	德浦鎭	Deokpojin Fort
독산성	秃山城	Doksanseong Fortress
둔덕기성	屯德岐城	Dundeokgiseong Fortress
마로산성	馬老山城	Marosanseong Fortress
명활성	明活城	Myeonghwalseong Fortress
목마산성	牧馬山城	Mongmasanseong Fortress
몽촌토성	夢村土城	Mongchontoseong Earthen Fortification
문수산성	文殊山城	Munsusanseong Fortress
미륵산성	彌勒山城	Mireuksanseong Fortress
반월성	半月城	Banwolseong Fortress
백산성	白山城	Baeksanseong Fortress
부산성	富山城	Busanseong Fortress
부소산성	扶蘇山城	Busosanseong Fortress
북한산성	北漢山城	Bukhansanseong Fortress
분산성	盆山城	Bunsanseong Fortress
사근산성	沙斤山城	Sageunsanseong Fortress
삼년산성	三年山城	Samnyeonsanseong Fortress
삼랑성	三郎城	Samnangseong Fortress
상당산성	上黨山城	Sangdangsanseong Fortress
석성산성	石城山城	Seokseongsanseong Fortress
석주관성	石柱關城	Seokjugwanseong Fortress
설봉산성	雪峯山城	Seolbongsanseong Fortress
성산산성	城山山城	Seongsansanseong Fortress
아차산성	阿且山城	Ahasanseong Fortress
양천고성	陽川古城	Yangcheongoseong Fortress
언양읍성	彦陽邑城	Eonyangeupseong Walled Town
영원산성	領願山城	Yeongwonsanseong Fortress
오두산성	烏頭山城	Odusanseong Fortress
온달산성	溫達山城	Ondalsanseong Fortress
용장성	龍藏城	Yongjangseong Fortress
월성	月城	Wolseong Palace Site
위봉산성	威鳳山城	Wibongsanseong Fortress
은대리성	隱垞里城	Eundaeriseong Fortress
이성산성	二聖山城	Iseongsanseong Fortress
임존성	任存城	Imjonseong Fortress

입암산성	笠岩山城	Ibamsanseong Fortress
장기읍성	長鬐邑城	Janggieupseong Walled Town
장미산성	薔薇山城	Jangmisanseong Fortress
적상산성	赤裳山城	Jeoksangsanseong Fortress
적성	赤城	Jeokseong Fortress
정양산성	寧越 正陽山城	Jeongyangsanseong Fortress
주산성	主山城	Jusanseong Fortress
증산성	甞山城	Jeungsanseong Fortress
진주성	晋州城	Jinjuseong Fortress
청마산성	靑馬山城	Cheongmasanseong Fortress
청산성	靑山城	Cheongsanseong Fortress
초지진	草芝鎭	Chojijin Fort
추성산성	柎城山城	Chuseongsanseong Fortress
칠중성	七重城	Chiljungseong Fortress
파사성	婆娑城	Pasaseong Fortress
평양성	平壤城	Pyeongyangseong City Wall
하동읍성	河東邑城	Hadongeupseong Walled Town
한양도성	漢陽都城	Hanyangdoseong, the Seoul City Wall
해미읍성	海美邑城	Haemieupseong Walled Town
행주산성	幸州山城	Haengjusanseong Fortress
호로고루	瓠蘆古壘	Horogoru Embankment
호암산성	虎巖山城	Hoamsanseong Fortress
홍주읍성	洪州邑城	Hongjueupseong Walled Town
화성	華城	Hwaseong Fortress
화왕산성	火旺山城	Hwawangsanseong Fortress
황석산성	黃石山城	Hwangseoksanseong Fortress

1-E. 능묘

† 지석묘, 고분, 능원, 역사적인 인물의 묘소 등의 국가유산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고유한 이름과 함께 성격이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능묘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보기]

· 천마총	天馬塚	Cheonmachong Tomb
· 금관총	金冠塚	Geumgwanchong Tomb
· 건원릉	健元陵	Geonwolleung Royal Tomb
· 정릉	靖陵	Jeongneung Royal Tomb
· 소령원	昭寧園	Soryeongwon Royal Tomb

† 능묘의 성격이나 피장자에 대한 설명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보기]

· 서삼릉	西三陵	West Three Royal Tombs
· 칠의사묘	七義士墓	Tombs of Seven Patriotic Martyrs
· 선덕여왕릉	善德女王陵	Tomb of Queen Seondeok
· 구례손씨 묘	求禮孫氏 墓	Tomb of Lady Son
· 안동김씨 묘	安東金氏 墓	Tombs of the Andong Kim Clan

§ 명명 요소

고분	古墳	Ancient Tombs
고분군	古墳群	Ancient Tombs
남분	南墳	South Mound
묘	墓	Tomb
묘소	墓所	Tomb
방형분	方形墳	Square Tomb
벽화 고분	壁畫 古墳	Mural Tomb
벽화묘	壁畫墓	Mural Tomb
북분	北墳	North Mound
주거지	住居址	Dwelling Site
지석묘	支石墓	Dolmen
지석묘군	支石墓群	Dolmens

§ 사용 용례

【신라/백제/가야 왕릉】

경덕왕릉	景德王陵	Tomb of King Gyeongdeok
경순왕릉	敬順王陵	Tomb of King Gyeongsun
경애왕릉	景哀王陵	Tomb of King Gyeongae
구형왕릉	仇衡王陵	Tomb of King Guhyeong
금관총	金冠塚	Geumgwanchong Tomb
금령총	金鈴塚	Geumnyeongchong Tomb
금조총	金鳥塚	Geumjochong Tomb
내물왕릉	奈勿王陵	Tomb of King Naemul
대릉원	大陵園	Daereungwon Ancient Tomb Complex
무령왕릉	武寧王陵	Tomb of King Muryeong
무열왕릉	武烈王陵	Tomb of King Muyeol
문무대왕릉	文武大王陵	Tomb of King Munmu
문성왕릉	文聖王陵	Tomb of King Munseong
미추왕릉	味鄒王陵	Tomb of King Michu
민애왕릉	閔哀王陵	Tomb of King Minae
법흥왕릉	法興王陵	Tomb of King Beopheung
부부총	夫婦塚	Bubuchong Tomb
삼릉	三陵	Three Royal Tombs
서봉총	瑞鳳塚	Seobongchong Tomb
선덕여왕릉	善德女王陵	Tomb of Queen Seondeok
성덕왕릉	聖德王陵	Tomb of King Seongdeok
수로왕릉	首露王陵	Tomb of King Suro
수로왕비릉	首露王妃陵	Tomb of Queen Consort of King Suro
신무왕릉	神武王陵	Tomb of King Sinmu
신문왕릉	神文王陵	Tomb of King Sinmun
쌍릉	雙陵	Twin Tombs
오릉	五陵	Five Royal Tombs
원성왕릉	元聖王陵	Tomb of King Wonseong
일성왕릉	逸聖王陵	Tomb of King Ilseong
정강왕릉	定康王陵	Tomb of King Jeonggang
지마왕릉	祗摩王陵	Tomb of King Jima
진덕여왕릉	眞德女王陵	Tomb of Queen Jindeok
진지왕릉	眞智王陵	Tomb of King Jinji
진평왕릉	眞平王陵	Tomb of King Jinpyeong

진흥왕릉	眞興王陵	Tomb of King Jinheung
천마총	天馬塚	Cheonmachong Tomb
탈해왕릉	脫海王陵	Tomb of King Talhae
헌강왕릉	憲康王陵	Tomb of King Heongang
헌덕왕릉	憲德王陵	Tomb of King Heondeok
헌안왕릉	憲安王陵	Tomb of King Heonan
호우총	壺杆塚	Houchong Tomb
황남대총	皇南大塚	Hwangnamdaechong Tomb
효공왕릉	孝恭王陵	Tomb of King Hyogong
효소왕릉	孝昭王陵	Tomb of King Hyoso
흥덕왕릉	興德王陵	Tomb of King Heungdeok
희강왕릉	僖康王陵	Tomb of King Huigang

【고려/조선 왕릉】

가릉	嘉陵	Gareung Royal Tomb
강릉	康陵	Gangneung Royal Tomb
건릉	健陵	Geolleung Royal Tomb
건원릉	健元陵	Geonwolleung Royal Tomb
곤릉	坤陵	Golleung Royal Tomb
공양왕릉	恭讓王陵	Tomb of King Gongyang
광릉	光陵	Gwangneung Royal Tomb
광해군묘	光海君墓	Tomb of King Gwanghaegun
동구릉	東九陵	East Nine Royal Tombs
명빈묘	明嬪墓	Tomb of Queen Consort Myeongbin
목릉	穆陵	Mongneung Royal Tomb
사릉	思陵	Sareung Royal Tomb
서삼릉	西三陵	West Three Royal Tombs
서오릉	西五陵	West Five Royal Tombs
석릉	碩陵	Seongneung Royal Tomb
선릉	宣陵	Seolleung Royal Tomb
성묘	成墓	Seongmyo Royal Tomb
소령원	昭寧園	Soryeongwon Royal Tomb
수길원	綏吉園	Sugirwon Royal Tomb
순강원	順康園	Sungangwon Royal Tomb
송릉	崇陵	Sungneung Royal Tomb
송인원	崇仁園	Sunginwon Royal Tomb
안빈묘	安嬪墓	Tomb of Queen Consort Anbin
연산군묘	燕山君墓	Tomb of King Yeonsangun

영경묘	永慶墓	Yeonggyeongmyo Royal Tomb
영릉	寧陵	Nyeongneung Royal Tomb
영릉	英陵	Yeongneung Royal Tomb
영빈묘	寧嬪墓	Tomb of Queen Consort Yeongbin
영회원	永懷園	Yeonghoewon Royal Tomb
영취원	永徽園	Yeonghwiwon Royal Tomb
온릉	溫陵	Olleung Royal Tomb
유릉	裕陵	Yureung Royal Tomb
융릉	隆陵	Yungneung Royal Tomb
의릉	懿陵	Uireung Royal Tomb
인릉	仁陵	Illeung Royal Tomb
장릉	章陵	Jangneung Royal Tomb
장릉	莊陵	Jangneung Royal Tomb
장릉	長陵	Jangneung Royal Tomb
정릉	貞陵	Jeongneung Royal Tomb
정릉	靖陵	Jeongneung Royal Tomb
준경묘	濬慶墓	Jungyeongmyo Royal Tomb
태릉	泰陵	Taereung Royal Tomb
헌릉	獻陵	Heolleung Royal Tomb
홍릉	洪陵	Hongneung Royal Tomb
효종대왕릉(영릉)	孝宗大王陵(寧陵)	Yeongneung Royal Tomb
취경원	徽慶園	Hwigyeongwon Royal Tomb

【무덤】

구례손씨 묘	求禮孫氏 墓	Tomb of Lady Son
김흠조 부부 묘	金欽祖 夫婦 墓	Tomb of Kim Heum-jo and His Wife
박장군 묘	朴將軍 墓	Tomb of General Bak
안동김씨 묘	安東金氏 墓	Tombs of the Andong Kim Clan
영인정씨묘	令人鄭氏墓	Tomb of Lady Jeong
의원군 이혁 일가 묘	義原君 李愨 一家 墓	Tombs of Prince Uiwon and His Family
이응해장군 묘	李應獬將軍 墓	Tomb of General Yi Eung-hae
장흥임씨 묘	長興任氏 墓	Tomb of Lady Im
최원립장군 묘	崔元立將軍 墓	Tomb of General Choe Won-rip
최진 일가 묘	崔縝 一家 墓	Tombs of Choe Jin and His Family
평산신씨 묘	平山申氏 墓	Tomb of Lady Sin
학성 이천기 일가 묘	鶴城 李天機 一家 墓	Tombs of Yi Cheon-gi and His Family

【합장묘/묘역】

만인의총	萬人義塚	Tomb of Ten Thousand Patriotic Martyrs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忘憂 獨立有功者 墓域	Mangu Cemetary for Independence Patriots
석주관 칠의사묘	石柱關 七義士墓	Tombs of Seven Patriotic Martyrs in Seokjugwan Fortress
의병총	義兵塚	Tomb of Righteous Army
의사총	義士塚	Tomb of Patriotic Martyrs
재한유엔기념공원	在韓UN紀念公園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칠백의총	七百義塚	Tomb of Seven Hundred Patriotic Martyrs

1-F. 명승

† 역사문화 명승 및 자연 명승의 명칭에 사용된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명승지의 고유한 이름은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후부 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괄호 없이 덧붙입니다.

[보기]

· 삼각산	三角山	Samgaksan Mountain
· 태종대	太宗臺	Taejongdae Cliffed Coast
· 어라연 일원	魚羅淵 一圓	Eorayeon Meandering Stream
· 의림지와 제림	義林池와 堤林	Uirimji Reservoir and Jerim Woods
·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靈室奇巖과 五百羅漢	Yeongsilgiam Cliff and Obaengnahan Rock Pillars

† 명승지의 고유한 이름에 그 장소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를 덧붙여 만들어진 명칭은 고유한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포함하는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보기]

· 지족해협 죽방렴	只族海峽 竹防簾	Jukbangnyecom Fishing Facility at Jijok Strait
· 대관령 옛길	大關嶺 옛길	Old Path of Daegwallyeong Pass
· 진도의 바닷길	珍島의 바닷길	Jindo Sea Parting
· 가천마을 다랑이 논	加川마을 다랑이 논	Terraced Paddy Fields of Gacheon Village

§ 명명 요소

계곡	溪谷	Valley
나루		Ferry Dock
능선	稜線	Ridge
옛길		Old Path
오름		Volcanic Cone
원림	園林	Garden
죽방렴	竹防簾	Jukbangnyecom Fishing Facility
폭포	瀑布	Falls
협곡	峽谷	Gorge

§ 사용 용례

【역사 문화 명승】

개호송 숲	開湖松	Gaehosongsup Pine Grove
검룡소	儉龍沼	Geomnyongso Spring
고마나루		Gomanaru Ferry Dock
구담봉	龜潭峰	Gudambong Peak,
구드래		Gudeurae Ferry
다랑이 논		Terraced Paddy Fields
대관령 옛길	大關嶺 옛길	Old Path of Daegwallyeong Pass
도담삼봉	島潭三峰	Dodamsambong Peaks
문경새재	聞慶새재	Mungyeongsaejae Pass
법성진 숲쟁이	法聖鎭 숲쟁이	Beopseongjin Wooded Fort
사인암	舍人巖	Sainam Rock
석문	石門	Seongmun Natural Arch
수승대	搜勝臺	Suseungdae Rock
수심대	水心臺	Susimdae Precipice
옥순봉	玉荀峰	Oksunbong Peaks
의림지	義林池	Uirimji Reservoir
일사대	一士臺	Ilsadae Precipice
제림	堤林	Jerim Woods
주산지	注山池	Jusanji Reservoir
청령포	淸冷浦	Cheongnyeongpo Meandering Stream
탄금대	彈琴臺	Tangeumdae Height
토끼비리		Tokkibiri Cliffside Road
파회	巴洄	Pahoe Whirlpool
하늘재		Haneuljae Pass
하조대	河趙臺	Hajodae Rock Beach
홍련암	紅蓮庵	Hongnyeonam Hermitage
화양구곡	華陽九曲	Hwayanggugok Valley

【자연 명승】

공룡능선	恐龍稜線	Gongnyong Ridge
구계등	九階燈	Gugyedeung Pebble Beach
금산	錦山	Geumsan Mountain
대승폭포	大乘瀑布	Daeseungpokpo Falls
도솔계곡	兜率溪谷	Dosolgyegok Valley
두무진	頭武津	Dumujin Coast
등대섬	燈臺섬	Deungdaeseom Islet

마이산	馬耳山	Maisan Mountain
만경대	萬景臺	Mangyeongdae Cliff
망주봉	望主峰	Mangjubong Peak
멍우리 협곡	멍우리 峽谷	Meonguri Gorge
무릉계곡	武陵溪谷	Mureunggyegok Valley
바닷길		Sea Parting
방선문	訪仙門	Bangseonmun Natural Arch
백록담	白鹿潭	Baengnokdam Crater
백악산 일원	白岳山 一圓	Baegaksan Mountain
불영사 계곡	佛影寺 溪谷	Buryeongsagyegok Valley
비룡폭포 계곡	飛龍瀑布 溪谷	Biryongpokpo Falls
비선대	飛仙臺	Biseondae Flat Rock
사라오름		Saraoreum Volcanic Cone
산방산	山房山	Sanbangsan Mountain
삼각산	三角山	Samgaksan Mountain
상백도·하백도	上白島·下白島	Sangbaekdo and Habaekdo Islets
선돌	立石	Seondol Rock Pillar
선작지왓		Seonjakjiwat Plain
소금강	小金剛	Sogeumgang Mountain
쇠소깍		Soesokkak River Pool
수렴동·구곡담 계곡	水簾洞·九曲潭 溪谷	Suryeomdonggyegok and Gugokdamgyegok Valleys
순천만	順天灣	Suncheonman Bay
십이선녀탕	十二仙女湯 一圓	Sibiseonnyeotang Potholes
어라연	魚羅淵	Eorayeon Meandering Stream
영실기암	靈室奇巖	Yeongsilgiam Cliff
오륙도	五六島	Oryukdo Islets
오백나한	五百羅漢	Obaengnahan Rock Pillars
외돌개		Oedolgae Sea Stack
용아장성	龍牙長城	Yongajangseong Ridge
용연계곡	龍淵溪谷	Yongyeonggyegok Valley
용추폭포	龍湫瀑布	Yongchupokpo Falls
울산바위	蔚山바위	Ulsanbawi Rock
적벽	赤壁	Jeokbyeok Cliff
정방폭포	正房瀑布	Jeongbangpokpo Falls
주왕계곡	周王溪谷	Juwanggyegok Valley
지공너덜	指空너덜	Jigong Stony Slope
채석강·적벽강	彩石江·赤壁江 一圓	Chaeseokgang and Jeokbyeokgang Clifed Coasts
천불동계곡	千佛洞溪谷	Cheonbuldonggyegok Valley

태종대	太宗臺	Taejongdae Clifed Coast
토왕성폭포	土王城瀑布	Towangseongpokpo Falls
한반도 지형	韓半島 地形	Miniature Shape of the Korean Peninsula
한신계곡	韓信溪谷	Hansingyegok Valley
할미 할아비 바위		Halmibawi and Harabibawi Rocks
해금강	海金剛	Haegeumgang Islets
화적연	禾積淵	Hwajeogyeon Pool
회룡포	回龍浦	Hoeryongpo Meandering Stream

【누정/원림】

거연정	居然亭	Geoyeonjeong Pavilion
경포대	鏡浦臺	Gyeongpodae Pavilion
고려선원	高麗禪園	Goryeoseonwon Buddhist Garden
광한루원	廣寒樓苑	Gwanghalluwon Garden
덕동숲	德洞 숲	Deokdongsup Grove
만휴정 원림	晩休亭 園林	Manhyujeong Garden
명옥헌 원림	鳴玉軒 園林	Myeongokheon Garden
백석동천	白石洞天	Baekseokdongcheon Garden
백운정	白雲亭	Baegunjeong Pavilion
선몽대	仙夢臺	Seonmongdae Pavilion
성락원	城樂園	Seongnagwon Garden
소쇄원	瀟灑園	Soswaewon Garden
식영정	息影亭	Sigyeongjeong Pavilion
용계정	龍溪亭	Yonggyejeong Pavilion
용암정	龍巖亭	Yongamjeong Pavilion
운림산방	雲林山房	Ullimsanbang Villa and Garden
월연대	月淵臺	Woryeondae Pavilion
윤선도 원림	尹善道 園林	Yun Seon-do's Garden
의상대	義湘臺	Uisangdae Pavilion
임대정 원림	臨對亭 園林	Imdaejeong Garden
죽서루	竹西樓	Jukseoru Pavilion
채미정	採薇亭	Chaemijeong Pavilion
청암정	靑巖亭	Cheongamjeong Pavilion
초간정 원림	草澗亭 園林	Choganjeong Garden
초연정 원림	超然亭 園林	Choyeonjeong Garden
환벽당	環碧堂	Hwanbyeokdang Pavilion

1-G. 전적류

† 도서, 지도, 고문서, 판목, 현판, 유묵, 악보, 영화 등 기록물 성격의 국가유산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도서나 지도는 그것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도서나 지도 제목의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는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 도서, 지도, 회화 작품 제목의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 기준이 다른 국가유산 이름에 대한 기준(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과 다른 것은 해외의 도서관, 박물관, 학술지 등에서 한국어 도서명, 작품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적용해 온 관행을 고려한 것입니다.

[보기]

· 삼국사기	三國史記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 동의보감	東醫寶鑑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Joseon wangjo 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Aguk yeojido (Map of the Russia-Korea Borderland)
· 금보	琴譜	Geumbo (Scores for Geomungo)

† 고문서 등과 같이 종류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명칭은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합니다.

[보기]

· 김희련 고신왕지	金懷鍊 告身王旨	Royal Edict of Appointment Issued to Kim Hoe-ryeon
·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扶安金氏 宗中 古文書	Documents of the Buan Kim Clan
· 대한의원 개원 칙서	大韓醫院 開院 勅書	Imperial Edict on the Opening of Daehan Hospital
· 3·1 독립선언서	3·1 獨立宣言書	March 1s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 도서류 국가유산의 명칭에 저자 이름이 포함된 경우, 영문 표기 명칭에서는 전치사(by)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보기]

· 김용 호종일기	金涌 扈從日記	Hojong ilgi (Diary of Royal Attendant) by Kim Yong
· 이탁영 정만록	李擢英 征蠻錄	Jeongmallok (Record of the Conquest of Barbarians) by Yi Tak-yeong

† 도서명 등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는 분야(학술 논문, 언론 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보기]

· 삼국유사
· 김용 호종일기

三國遺事
金涌 扈從日記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Hojong ilgi (Diary of Royal Attendant) by Kim Yong

§ 명명 요소

가옥허여문기	家屋許與文記	Records of Property Inheritance
간찰	簡札	Letters
고문서	古文書	Documents
고본	稿本	Manuscripts
고신왕지	告身王旨	Royal Edict of Appointment
고신제서	告身制書	Royal Edict of Appointment
고지도	古地圖	Old Map
고화첩	古畫帖	Painting Albums
공신	功臣	Meritorious Subject
공신교서	功臣敎書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공신녹권	功臣錄券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관방지도	關防地圖	Borderland Map
국문	國文	Written in Hangeul
국문유서	國文諭書	Royal Edict Written in Hangeul
권선문	勸善文	Words to Encourage Good Deeds
금보	琴譜	Scores for Geomungo
노비허여문기	奴婢許與文記	Documents Related to Slave Inheritance
대한의원	大韓醫院	Daehan Hospital
동요	童謠	Nursery Song
목판	木板	Printing Woodblocks
무과	武科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무과홍패	武科紅牌	Red Certificate of Passing the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문무잡과	文武雜科	State Examination
문서	文書	Documents
문적	文籍	Documents
밀찰첩	密札帖	Letters
방목	榜目	Roster of Successful State Examination Candidates
백패	白牌	White Certificates
백패·홍패	白牌·紅牌	Red and White Certificates
법규	法規	Regulations
보고서	報告書	Report

복식부기 장부	複式簿記 帳簿	Double-entry Account Books
복음서	福音書	The Gospel
부록	附錄	Addenda
사마방목	司馬榜目	Roster of Successful Licentiate Examination Candidates
사패왕지	賜牌王旨	Royal Edict Awarding Land and Slaves
서관	書館	Publishing Company
선서문		Written Oath
선언문서	宣言文書	Proclamation Document
성황대신	城隍大神	Tutelary Deity
수고본	手稿本	Manuscript
시권		State Examination Paper
시지	試紙	Competition Records
시집	詩集	Book of Poems
악보	樂譜	Sheet Music
악보 원판	樂譜 圖板	Original Sheet Music Plate
악보집	樂譜集	Collection of Songs
어필	御筆	Calligraphy
역훈	譯訓	with Korean Translation and Commentaries
예서	隸書	Calligraphy
완문	完文	Official Document
원고	原稿	Manuscript
유묵	遺墨	Calligraphy
유서	諭書	Royal Confidential Order
의병진	義兵陳	Righteous Army
일기	日記	Diary
임란	壬亂	Imjin War
임시의정원	臨時議政院	Provisional Assembly
임시정부	臨時政府	Provisional Government
자료	資料	Documents
자료첩		Materials Collection Related to Hwang Hyeon
자필악보	自筆樂譜	Hand-written Sheet Music
전서	篆書	Calligraphy
전예	篆隸	Calligraphy
전적	典籍	Books
제중원	濟衆院	Jejungwon Infirmary
조선말	朝鮮말	Korean Language
족자	簇子	Scroll
진단서	診斷書	Diagnosis

진료 기록물	晴崗 金永勳 診療 記錄物	Medical Records
찬송가	讚頌歌	Hymnal
찬양가	讚揚歌	Hymnal
초고본		Draft
초서	草書	Calligraphy
초안		Draft
칙서	勅書	Imperial Edict
친필원고	親筆原稿	Handwritten Manuscript
티베트문	티베트文	Written in the Tibetan Language
필적	筆蹟	Calligraphy
해서	楷書	Calligraphy
행서	行書	Calligraphy
행초	行草	Calligraphy
향약	鄉約	Village Code
현판	懸板	Hanging Board
호소문	呼訴文	Letter of Appeal
호적	戶籍	Family Register
홍패	紅牌	Red Certificate
화회문기	和會文記	Records of Property Inheritance
회맹축	會盟軸	Scroll of Oath-taking Rites

§ 사용 용례

【문헌】

23인 필묵		Pen and Ink Document by 23 Signers
3·1 독립선언서	3·1 獨立宣言書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간이벽온방	簡易辟瘟方	Simple Prescriptions to Prevent Epidemics
간호교과서	看護教科書	Nursing Textbook
격몽요결	擊蒙要訣	The Secret of Expelling Ignorance
경국대전	經國大典	National Code
경진년대통력	庚辰年大統曆	Calendar of Gyeongjin Year
고금운회거요	古今韻會舉要	Condensed Version of Ancient and Modern Collection of Rhymes
과학조선	科學朝鮮	Science Magazine
관동창의록	關東倡義錄	Righteous Army Activities in Gangwon-do Province
구급간이방	救急簡易方	Prescriptions for Emergency Treatment
구약전서	舊約全書	Old Testament

국문연구안	國文研究案	Research Report on Korean Letters
국문정리	國文正理	Research Report on Korean Grammar
국어문법	國語文法	Korean grammar
국조정토록	國朝征討錄	Records of Wars in the Early Joseon Period
국한회어	國漢會語	Korean Language Dictionary
권근 응제시주	權近 應制詩註	Annotated Poems by Gwon Geun
근사록	近思錄	Reflections on Things at Hand
금계일기	錦溪日記	Diary of No In
급암선생시집	及菴先生詩集	Anthology of Poems by Min Sa-pyeong
기묘제현수첩	己卯諸賢手帖	Album of Letters Compiled by An Cheo-sun
기묘제현수필	己卯諸賢手筆	Album of Poems and Essays Compiled by An Cheo-sun
난중일기	亂中日記	War Diary
남명천화상송증도가	南明泉和尚頌證道歌	Song of Enlightenment with Commentaries by Buddhist Monk Nammyeong
노자권재구의	老子虜齋口義	Lao-tzu with Colloquial Commentaries
누가복음전서	누가福音傳書	The Gospel of St. Luke of the New Testament
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	Encyclopedia of Korea, Arranged by the Rhymes of the Entries
대명률	大明律	The Great Ming Code
대악후보	大樂後譜	Later Edition of Scores of the Great Music
대조선독립협회회보	大朝鮮獨立協會會報	Magazine Published by the Independence Club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Daehan maeil sinbo (The Korea Daily News)
도산 안창호 일기		Diary of An Chang-ho
도은선생시집	陶隱先生詩集	Collected Poems of Yi Sung-in
도은선생집	陶隱先生集	Collected Works of Yi Sung-in
도화임본	圖畫臨本	Drawing Textbook
독립신문	獨立新聞	The Independent
동국정운	東國正韻	Standard Rhymes of the Eastern State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Commentary on the History of the Northern Dynasties
동의보감	東醫寶鑑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동인시화	東人詩話	Remarks on Poetry by a Man from the East
동인지문사육	東人之文四六	Anthology of Poems of Silla and Goryeo Literati
동인지문오칠	東人之文五七	Collected Poems of the Goryeo Dynasty
둔촌잡영	遁村雜詠	Collected Works of Yi Jip
마가전	마가傳	The Gospel of St. Mark
만사집	輓詞集	Collection of Eulogies
말모이		The First Korean Dictionary
매일신문	每日新聞	Daily Newspaper

매천야록	梅泉野錄	Unofficial Records by Hwang Hyeon
명림답부전	明臨答夫傳	Biography of Goguryeo General Myeongnimdapbu
무예제보번역속집	武藝諸譜翻譯續集	Sequel to the Book of Martial Arts
문무과전시방목	文武科殿試榜目	Roster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State Examination
문무잡과 방목	文武雜科 榜目	Roster of Successful State Examination Candidates
문자보급교재	文字普及教材	Textbook for Hangeul Literacy
미암일기	眉巖日記	Diary of Yu Hui-chun
미암집	眉巖集	Collected Works of Yu Hui-chun
바다의 마음		Heart of the Sea
발해태조건국지	渤海太祖建國誌	King Taejo's Foundation of Balhae
배자예부운락	排字禮部韻略	Concise Rhymes of the Ministry of Rites
백범일지	白凡逸志	Diary of Kim Gu
벽역신방	辟疫神方	Prescriptions to Prevent Epidemics
봉래유묵	蓬萊遺墨	Calligraphy by Yang Sa-eon
봉사조선창화시권	奉使朝鮮倡和詩卷	Poems Shared by Envoys in Joseon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Records of the Border Defense Council
비해당 소상팔경시첩	匪懈堂 瀟湘八景詩帖	Album of Poems Compiled by Prince Anpyeong
산거사요	山居四要	Essential Knowledge for Mountain Life
삼강행실효자도	三綱行實孝子圖	Illustrations of Filial Sons from Conduct of the Three Bonds
삼국사기	三國史記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삼국유사	三國遺事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삼봉선생집	三峯先生集	Collected Works of Jeong Do-jeon
삼현수간	三賢手簡	Letters of Three Wise Men
상설고문진보대전전집	詳說古文眞寶大全前集	Collection of Literary Treasures
서간첩	書簡帖	Letters
서결	書訣	Essence of Calligraphy
서천견록	書淺見錄	Shallow Views on Book of Documents
석보상절	釋譜詳節	Episodes from the Life of Sakyamuni Buddha
석씨원류응화사적	釋氏源流應化事蹟	Life and Activities of Sakyamuni Buddha Incarnate
설곡시고	雪谷詩藁	Anthology of Poems by Jeong Po
성리대전서절요	性理大全書節要	Essentials of the Great Collection of Neo-Confucianism
세의득효방	世醫得效方	Efficacious Remedies of the Physicians
소원화개첩	小苑花開帖	Calligraphy by Prince Anpyeong
송조표전총류	宋朝表牋總類	Collection of Appeals and Letters to the Emperors of the Song Dynasty
쇄미록	吳希文 瑣尾錄	Diary of O Hui-mun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	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	Collection of Meng Haoran's Poems Highlighted by Yu Jin-hong
숙명신한첩	淑明宸翰帖	Letters to Princess Sukmyeong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시용향악보	時用鄉樂譜	Contemporary Music Scores
시천견록	詩淺見錄	Shallow Views on Book of Poetry
식물본초	食物本草	Pharmacopeia
신간상명산법	新刊詳明算法	Book of Arithmetic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 대책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 對策	Refined Literature from the State Examinations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Sayings of Confucius with Commentaries
신약	新約	The New Testament
신약 마가전 복음서 연해	新約 마가傳 福音書 諺解	Korean Translation of the Gospel of Mark from the New Testament
신응경	神應經	Book of Acupuncture
신편산학계몽	新編算學啓蒙	Introduction to Arithmetic
신편유취대동시림	新編類聚大東詩林	Anthology of Korean Poems
신한첩	宸翰帖	Letters to Princess Sukhwi
십칠사찬고금통요	十七史纂古今通要	Essentials of Seventeen Dynastic Histories
약포유고	藥圃遺稿	Manuscript of Jeong Tak
양휘산법	楊輝算法	Arithmetic Book Compiled by Yang Hui
역옹패설	櫟翁稗說	Scribblings of Old Man Oak
예수성교	예수聖敎	The Gospel
예수성교	예수聖敎	Gospel of Luke in the New Testament
누가복음전서	누가福音傳書	The New Testament
예수성교전서	예수聖敎全書	Unofficial Historical Records Under the Paulownia Tree
오하기문	梧下記聞	Song of Dragons Flying in Heaven
용비어천가	龍飛御天歌	Du Fu's Poems Annotated by Yu Ji
우주두울	虞註杜律	Episodes from the Life of Sakyamuni Buddha
월인석보	月印釋譜	Songs of the Moon's Reflection on a Thousand Rivers
월인천강지곡	月印千江之曲	Diary of Yun Bong-chun
윤봉춘 일기		Lyrics of Righteous Army
윤희순 의병가사집		Zuozhuan with Commentaries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 좌전구독직해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 左傳句讀直解	Patriotic Funds Remission Certificate
의거자금 송금증서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의방유취	醫方類聚	Yi Ja-hae's Autobiography
이자해자전		Collected Works of Yi Je-hyeon
익재난고	益齋亂藁	Vision of Five Supreme Patriarchs
인천안목	人天眼目	

일성록	日省錄	Daily Records of the Royal Court and Important Officials
임시정부 법규	臨時政府 法規	Regulations of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임진장초	壬辰狀草	Drafts of the Imjin War Reports
입학도설	入學圖說	Diagrammatic Treatises for the Commencement of Learning
자치통감	資治通鑑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	Itemized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장효근 일기	張孝根 日記	Diary of Jang Hyo-geun
전보장정	電報章程	Regulations for Telegraphic Communication
절명시첩	絶命詩帖	Death Poems
정만록	征蠻錄	Record of the Conquest of Barbarians
정조 어찰첩	正祖 御札牒	Calligraphy by King Jeongjo
제왕운기	帝王韻紀	Songs of Emperors and Kings
조선건축	朝鮮建築	Architecture Magazine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Administrative Code of the Joseon Dynasty
조선말 큰사전	朝鮮말 큰辭典	The Comprehensive Korean Language Dictionary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조선왕조 의궤	朝鮮王朝儀軌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조선요리제법	朝鮮料理製法	Cuisine of Joseon
조일관계사료집	朝日關係史料集	Collection of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Joseon-Japan Relations
주역삼동계	周易參同契	The Kinship of the Three in Accordance with the Book of Changes
주역천견록	周易淺見錄	Shallow Views on the Book of Changes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Main Surveillance Target Profile Cards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 본초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 本草	Revised Zhenghe Edition of Classified and Practical Basic Materia Medica Based on Historical Classics
중용주자혹문	中庸朱子或問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Doctrine of the Mean
증급유방	拯急遺方	Collection of Prescriptions for Emergency Treatment
지영록	知瀛錄	Collected Works of Yi Ik-tae
지청천 일기		Diary of Ji Cheong-cheon
진달래꽃		Azalea Flowers
진산세고	晉山世稿	Collected Works of the Three Generations of Jinsan
진일유고	眞逸遺稿	Posthumous Works of Seong Gan
징비록	懲毖錄	The Book of Correction
찬도방론맥결집성	纂圖方論脈訣集成	Collection of Essays and Charts on Taking Pulses for Diagnoses
천로역정	天路歷程	The Pilgrim's Progress

천자문	千字文	Thousand Character Classic
초간일기	草澗日記	Diary of Gwon Mun-hae
충재일기	沖齋日記	Diary of Gwon Beol
치도규칙	治道規則	Treatise on the Road Management
친목회회보	親睦會會報	Quarterly Magazine Published by the Korean Students' Association in Japan
태산요록	胎産要錄	Book of Obstetrics
태산집요	胎産集要	Book of Obstetrics
토끼와 원숭이		A Rabbit and a Monkey
통감속편	通鑑續編	Supplement to the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퇴계선생문집	退溪先生文集	Collected Works of Yi Hwang
퇴우이선생진적	退尤二先生眞蹟	Manuscript of Yi Hwang and Song Si-yeol
풍아익	風雅翼	Selected Chinese Poems
필아정 시지	必也亭 試紙	Competition Records of Piryajeong Archery Ground
한국독립운동사략		Condensed History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한성순보	漢城旬報	Hanseong Ten-Daily
해서암행일기	海西暗行日記	Record of Secret Inspection in Hwanghae-do Province
해양조사연보	海洋調査年報	Annual Report of Hydrographical Observations
향약제생집성방	鄉藥濟生集成方	Collection of Native Prescriptions for Saving Lives
협성회회보	協成會 會報	Weekly Newspaper Published by the Mutual Friendship Society of Pai Chai School
협주명현십초시	夾注名賢十抄詩	Annotated Collection of Poems by Worthies
호종일기	扈從日記	Diary of Royal Attendant
홍무예제	洪武禮制	Rituals from the Hongwu Reign
홍무정운역훈	洪武正韻譯訓	Correct Rhymes from the Hongwu Reign with Korean Translation and Commentaries
훈민정음	訓民正音	The Proper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지도】

곤여만국전도	坤輿萬國全圖	Map of the Myriad Countries of the World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Map of the Great East
대한지질도	大韓地質圖	Geologic Map of Korea
도성도	都城圖	Map of the Capital
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	Great Map of the Eastern State
동여도	東輿圖	Atlas of the Eastern State
동여비고	東輿備考	Reference Atlas of Korea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	Comprehensive Map for Defense of West and

지도	之圖	North Border
여지도	輿地圖	Atlas of Korea
완산부지도	完山府地圖	Map of Wansan-bu
요계관방지도	遼薊關防地圖	Borderland Map of Liaodong and Beijing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Map of the Korean Territory
조선지도	朝鮮地圖	Atlas of Korea
조선지질도	朝鮮地質圖	Geologic Map of Joseon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總攬圖	Comprehensive Map of the Eight Provinces of Korea of Past and Present
지질도	地質圖	Geological Map
채색필사본	彩色筆寫本	Hand-colored Copy
천하여지도	天下輿地圖	Map of the World
청구관해방총도	靑丘關海方摠圖	Comprehensive Map of Land and Sea Borders of Korea
청구도	靑邱圖	Map of Korea
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	Atlas of Korea
해동지도	海東地圖	Atlas of Korea
화동고지도	華東古地圖	Old Map of China and Korea

【악보】

광복군가집	光復軍歌集	Collection of Marching Songs of the Liberation Army
대한국애국가	大韓國愛國歌	National Anthem of Korea
애국창가	愛國唱歌	Patriotic Songs
찬송가	讚頌歌	Union Hymnal
한국애국가	韓國愛國歌	National Anthem of Korea

【영화】

검사와 여선생	檢事와 女先生	A Prosecutor and a Teacher
마음의 고향	마음의 故鄉	Home of the Heart
미몽	迷夢	Delusion
시집가는 날	媳집가는 날	Wedding Day
자유만세	自由萬世	Long Live Freedom!
자유부인	自由夫人	Madame Freedom
청춘의 십자로	靑春의 十字路	Turning Point of the Youngsters
피아골		Piagol Valley

1-H. 불교 전적

† 불경을 비롯한 불교 관련 전적과 사찰 고문서 등의 국가유산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불교 관련 전적은 다른 도서류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 제목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 불경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 제목이 있으면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영어 의미역 표기를 병기합니다. 이 경우, 「산스크리트어」의 로마자 표기에 사용되는 특별기호를 생략합니다. 국문 명칭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줄여서 핵심만 표현합니다.

※ 도서, 지도, 회화 작품 제목의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 기준이 다른 국가유산 이름에 대한 기준(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과 다른 것은 해외의 도서관, 박물관, 학술지 등에서 한국어 도서명, 작품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적용해 온 관행을 고려한 것입니다.

[보기]

· 묘법연화경	妙法連華經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紺紙銀泥 大方廣佛華嚴經	Transcription of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in Silver on Indigo Paper
·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Seonjong yeonggajip	(Essence of Zen Buddhism)

† 전적이거나 문서의 명칭이 그것의 내용 또는 성격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는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합니다.

[보기]

· 광덕사 고려사경	廣德寺 高麗寫經	Goryeo Transcription of Buddhist Sutras in Gwangdeoksa Temple
· 쌍봉사 감역교지	雙峰寺 減役教旨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Ssangbongsa Temple
· 송광사 고려고문서	松廣寺 高麗古文書	Documents of the Goryeo Dynasty in Songgwangsa Temple

§ 명명 요소

감역교지	減役教旨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	------	--------------------------------

감지금니	紺紙金泥	in Gold on Indigo Paper
감지은니	紺紙銀泥	in Silver on Indigo Paper
고려고문서	高麗古文書	Documents of the Goryeo Dynasty
고려목판	高麗木板	Printing Woodblocks of Miscellaneous Buddhist Scriptures
대장경판	大藏經板	Printing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동제	銅製	Copper
백지금니	白紙金泥	in Gold on White Paper
백지묵서	白紙墨書	in Ink on White Paper
백지은니	白紙銀泥	in Silver on White Paper
복장전적	腹藏典籍	Excavated Documents
불복장 전적	佛腹藏 典籍	Excavated Documents
삼가해	三家解	Commentaries by Three Masters
상교정본	詳校正本	Revised Version
상지금니	橡紙金泥	in Gold on Oak Paper
상지은니	橡紙銀泥	in Silver on Oak Paper
석경	石經	Stone Scriptures
신역	新譯	Korean Translation
언해[한글 번역]	諺解	Korean Translation
언해[한글 주석]	諺解	with Commentaries in Korean
재조본	再雕本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Edition
정원본	貞元本	Zhenyuan Version
조선글		Korean Translation
조선어	朝鮮語	Korean Translation
주본	周本	Zhou Version
진본	晉本	Jin Version
초조본	初雕本	The First Tripitaka Koreana Edition
탑지	塔誌	Stupa Record of Buddhist Monk Yeomgeo
한글본	한글本	Korean Translation

§ 사용 용례

【불경 - 산스크리트어】

금강반야바라밀경	集註金剛般若波羅蜜經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대반야바라밀다경	大般若波羅蜜多經	Maha prajnaparamita Sutra
대반열반경	大般涅槃經	Maha parinirvana Sutra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Avatamsaka Sutra
대방광원각경	大方廣圓覺經	Mahavaipulya purnabudha Sutra

대보적경	大寶積經	Maharatnakuta Sutra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Shurangama Sutra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疏	Mahayana sraddhotpada Sastra
대승아비달마잡집론	大乘阿毗達磨雜集論	Mahayana abhidharma samucchaya vyakhya
대지도론	大智度論	Maha prajnaparamita Sastra
묘법연화경삼매참법	妙法蓮華經三昧懺法	Saddharmapundarika Samadhi
반야바라밀다심경	般若波羅蜜多心經	Prajnaparamita hridaya Sutra
반야심경	般若心經	Maha prajnaparamita hridaya Sutra
범망경	注梵網經	Brahmajala Sutra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	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	Manjusrinamastasataka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Nilakantha dharani
불정최승다라니경	佛頂取勝陀羅尼經	Usnisa Vijaya Dharani
사분율	四分律	Dharmaguptaka vinaya
십주비바사론	十住毗婆沙論	Dasabhumika vibhasa Sastra
정명경	淨名經	Vimalakirti nirdesa Sutra
지장보살본원경	地藏菩薩本願經	Ksitigarbha pranidhana Sutra
현양성교론	顯揚聖教論	Prakaranaryavaca Sastra

【불경 - 의미역】

금강반야경	金剛般若經	The Diamond Sutra
금장요집경	金藏要集經	Collection of the Essentials of Sutras
나옹화상어록	懶翁和尚語錄	Sermons by Buddhist Monk Naong
달마대사관심론	達磨大師觀心論	Treatise on Contemplation of the Mind by Buddhist Monk Bodhidharma
달마대사혈맥론	達磨大師血脈論	Treatise on the Bloodstream Sermon by Buddhist Monk Bodhidharma
대반야바라밀다경	大般若波羅蜜多經	Perfection of Transcendental Wisdom
대반열반경	大般涅槃經	The Nirvana Sutra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The Flower Garland Sutra
대방광원각경	大方廣圓覺經	The Complete Enlightenment Sutra
대보적경	大寶積經	Sutra of the Great Accumulation of Treasures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The Sutra of the Heroic One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대승아비달마잡집론	大乘阿毗達磨雜集論	Collection of the Mahayana Abhidharma
대장일람집	大藏一覽集	Essentials of Buddhist Sutras
대혜보각선사서	大慧普覺禪師書	Letters of Master Bogak
도가논변모자리혹론	道家論辨牟子理惑論	Master Mou's Treatise Settling Doubts

목우자수심결	牧牛子修沁訣	Golden Teachings on Mind Cultivation
몽산화상법어약록	蒙山和尚法語略錄	Sermons of Buddhist Monk Mongsan
몽산화상육도보설	蒙山和尚六道普說	Preachings on Six Realms by Buddhist Monk Mongsan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The Lotus Sutra
묘법연화경삼매참법	妙法蓮華經三昧懺法	Meditation on the Lotus Sutra
반아바라밀다심경	般若波羅蜜多心經	The Heart Sutra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Anthology of Great Buddhist Priests' Zen Teachings
번역명의집	翻譯名義集	Dictionary of Sanskrit-Chinese Translation of Buddhist Terms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Ritual Proceedings for the Cultivation of Water and Land Ceremony
법원주림	法苑珠林	A Grove of Pearls in the Garden of the Dharma
법집별행록절요	法集別行錄節要	Excerpts from the Dharma Collection and Special Practice Records
불과환오선사벽암록	佛果圓悟禪師碧巖錄	The Blue Cliff Record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Sakyamuni's Teaching on Parental Love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	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	Sanskrit Praises of the One Hundred and Eight Names of Manjusri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The Great Compassion Mantra
불정최승다라니경	佛頂取勝陀羅尼經	Supreme Sacrosanct Dharani
불조삼경	佛祖三經	The Three Sutras
불조역대통재	佛祖歷代通載	Biographies of Great Buddhists Since the Birth of Sakyamuni Buddha
사기	私記	Personal Notes
사분율	四分律	Four-Part Vinaya
삼십분공덕소경	三十分功德小經	Buddhist Invocations Reciting Names of 30 Bodhisattvas
선림보훈	禪林寶訓	Teachings of Zen Buddhism
선문삼가염송집	禪門三家拈頌集	Book of Reciting of Zen Buddhism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Essence of Zen Buddhism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Ritual Text for the Water and Land Ceremony
수용삼수요행법	受用三水要行法	Essential Actions for the Use of Water
십주비바사론	十住毗婆沙論	Commentary on the Ten Stages Sutra
아비달마계신족론	阿毗達磨界身足論	Treatise on Body Elements According to the Abhidharma Path
아비달마식신족론	阿毗達磨識身足論 初雕本	Discourse on Consciousness Body
아비담비파사론	阿毗曇毗婆沙論 卷十一, 十七	Explanatory of the Abhidharma
영가진각대사증도가	永嘉眞覺大師證道歌	Song of Enlightenment
예념미타도량참법	禮念彌陀道場懺法	Contrition in the Name of Amitabha Buddha

오대진언	五大眞言	Five Great Mantras
용감수경	龍龕手鏡	The Handy Mirror in the Dragon Shrine
유가사지론	瑜伽師地論	Discourse on the Stages of Yogic Practice
육경합부	六經合部	The Six Sutras
자비도량참법	慈悲道場懺法	Repentance Ritual of the Great Compassion
잡아비담심론	雜我毘曇心論	Heart of Scholasticism
장승법수	藏乘法數	Index of Buddhist Sutras
정명경	淨名經	Holy Teachings of Vimalakirti
제진언집	諸眞言集	Collection of Mantras
종경찰요	宗鏡撮要	Essentials of Reflections on the Essential Truth
종문원상집	宗門圓相集	Rules of Zen Buddhism
주범망경	注梵網經	The Sutra of Brahma's Net
주인왕호국반야경	注仁王護國般若經	Annotated Humane King Sutra
지장보살본원경	地藏菩薩本願經	Great Vows of Ksitigarbha Bodhisattva
진실주집	眞實珠集	Book of True Pearls
진언관공	眞言勸供	Buddhist Rituals
천지명양수륙잡문	天地冥陽水陸雜文	Miscellaneous Writings on the Dharma Function for the Spirits of Heaven and Earth, Darkness and Brightness, Water and Land
천태사교의	天台四敎儀	Essentials of the Four Stages of Teaching in Tientai
청량답순종심요법문	淸涼答順宗心要法門	Dialogue between Qingliang and Emperor Shunzong on Buddhist Teaching of the Mind
해동조계복암화상잡저	海東曹溪必庵和尚雜著	Miscellaneous Writings of Buddhist Monk Bogam
현양성교론	顯揚聖敎論	Acclamation of the Holy Teaching
호법론	護法論	Treatise in Support of Buddhism

1-1. 비석류

† 돌에 글을 새긴 비석류의 국가유산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고유한 이름을 가진 비석은 이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 후부요소 “비(碑)”는 사건이나 행사를 기념하는 기념비 성격의 조형물이나 금석문인 경우 “Monument“, 신도비, 승탑비, 정려비, 사적비 등 인물의 생애와 업적, 공간의 역사를 기술한 경우 “Stele”로 번역합니다.

[보기]

· 고구려비	高句麗碑	Goguryeobi Monument
· 삼전도비	三田渡碑	Samjeondobi Monument
· 오작비	塢作碑	Ojakbi Monument
· 타루비	墮淚碑	Tarubi Stele

† 승탑비, 사적비, 정려비, 신도비 등과 같이 비석의 성격을 설명하는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명칭은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합니다.

[보기]

·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雙磎寺 眞鑑禪師塔碑	Stele of Master Jingam at Ssanggyesa Temple
·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統制李公 水軍大捷碑	Monument for the Naval Victories of Yi Sun-sin
· 효자 손시양 정려비	孝子 孫時揚 旌閭碑	Stele of Son Si-yang for His Filial Devotion
· 윤문효공 신도비	尹文孝公 神道碑	Stele of Yun Hyo-son

§ 명명 요소

갈기비	碣記碑	Stele
국사탑비	國師塔碑	Stele of State Preceptor
기공비	紀功碑	Monument
기념비	紀念碑	Monument
당	唐	Tang China
대사탑비	大師塔碑	Stele of Buddhist Monk
매향비	埋香碑	Monument for the Incense Burial Ceremony
비	碑	Stele
사적비	事蹟碑	Stele for the Construction of
석비	石碑	Stele
석장비	石藏碑	Stele
석편	石片	Stone Fragments
선사탑비	禪師塔碑	Stele of Master

승탑비	僧塔碑	Stele
신도비	神道碑	Stele
암각 매향명	岩刻埋香銘	Epigraph for the Incense Burial Ceremony
왕사탑비	王師塔碑	Stele of Royal Preceptor
유기비	遺基碑	Stele for ~ Site
정려비	旌閭碑	Stele of for
조성비	造成碑	Stele for the Construction of
지석	誌石	Buried Memorial Tablet
탑비	塔碑	Stele
효	孝	Filial Devotion

§ 사용 용례

고구려비	高句麗碑	Goguryeobi Monument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高宗 御極 四十年 稱慶紀念碑	Monument for the 40th Anniversary of King Gojong's Enthronement
명량대첩비	鳴梁大捷碑	Monument for the Victory at Myeongnyang Battle
사택지적비	砂宅智積碑	Stele of Sataekjijeok
삼전도비	三田渡碑	Samjeondobi Monument
신라비	新羅碑	Sillabi Monument
오작비	塢作碑	Ojakbi Monument
임신서기석	壬申誓記石	Stone Tablet with Inscription of Oath of the Imsin Year
적성비	赤城碑	Jeokseongbi Monument
진흥왕 순수비	眞興王 巡狩碑	Monument Commemorating the Border Inspection by King Jinheung of Silla
진흥왕 척경비	眞興王 拓境碑	Monument Commemorating the Border Expansion by King Jinheung of Silla
청제비	菁堤碑	Cheongjebi Monument
타루비	墮淚碑	Tarubi Stele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統制李公 水軍大捷碑	Monument for the Naval Victories of Yi Sun-sin
한글영비	한글靈碑	Epitaph of ~ Written in Hangeul (Korean Alphabet)

1-J. 회화 및 서예류

† 회화 작품 국가유산의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국가유산의 명칭 안에 작품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 제목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회화 작품 제목의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는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 도서, 지도, 회화 작품 제목의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 기준이 다른 국가유산 이름에 대한 기준(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과 다른 것은 해외의 도서관, 박물관, 학술지 등에서 한국어 도서명, 작품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적용해 온 관행을 고려한 것입니다.

[보기]

· 동궐도	東闕圖	Donggwoldo (The Eastern Palaces)
· 동래부순절도	東萊府殉節圖	Dongnaebu sunjeoldo (Patriotic Martyrs at the Battle of Dongnaebu Fortress)
· 화개현구장도	花開縣舊莊圖	Hwagachyeon gujangdo (Old House of Hwagae-hyeon)
· 백악춘효	白岳春曉	Baegak chunhyo (Baegaksan Mountain in a Spring Morning)

† 명칭에 작가 이름이 포함된 경우는 전치사(by)를 이용하여 표기합니다.

[보기]

· 김정희 필 세한도	金正喜 筆 歲寒圖	Sehando (Winter Scene) by Kim Jeong-hui
· 정선 필 금강전도	鄭敼 筆 金剛全圖	Geumgang jeondo (Complete View of Geumgangsan Mountain) by Jeong Seon
· 정조 필 국화도	正祖 筆 菊花圖	Gukhwado (Chrysanthemum) by King Jeongjo

† 영문 명칭 안에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이 함께 쓰인 경우 구분을 위해 로마자 표기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기]

· 자수 초충도 병풍	刺繡 草蟲圖 屏風	Folding Screen of Embroidered <i>Chochungdo</i> (Grass and Insects)
· 김홍도 필 군선도 병풍	金弘道 筆 群仙圖 屏風	Folding Screen of <i>Gunseondo</i> (Daoist Immortals) by Kim Hong-do

§ 명명 요소

가전

家傳

Handed Down in

경수연	慶壽宴	Celebration for Longevity
궐장	几杖	Chair and Staff
금관조복	金冠朝服	Official Attire
기로연	耆老宴	Gathering of Elders
독서당	讀書堂	Dokseodang Study
모자이크 제단화	모자이크 祭壇畫	Mosaic Altarpiece
무신도	巫神圖	Paintings of Shamanistic Spirits
문인	文人	a Literatus
미원	薇垣	Censor-general
병풍	屏風	Folding Screen
사진	寫眞	Photography
서궐	西闕	Western Palace
석고상	石膏像	Plaster Statue
수작연	受爵宴	Granting Titles of Nobility
어진	御眞	Portrait
원화	原畫	Original Drawings
유지초본	油紙草本	Sketch on Oil Paper
자수	刺繡	Embroidered
자화상	自畫像	Self-portrait
초상	肖像	Portrait
총마	驄馬	Inspector-general
풍속도	風俗圖	Genre Paintings
하관	夏官	Military Officials
함	函	Storage Case
호조낭관	戶曹郎官	Fiscal Officials
화첩	畫帖	Album

§ 사용 용례

【산수화】

강산무진도	江山無盡圖	Endless Mountains and Rivers
경교명승첩	京郊名勝帖	Album of Scenic Sites in the Outskirts of the Capital City
경기감영도	京畿監營圖	Gyeonggi-do Provincial Office
고산구곡시화도	高山九曲詩畫圖	Poems and Paintings of the Nine Scenic Valleys of Gosan
금강산만물초승경도	金剛山萬物肖勝景圖	Picturesque Landscape of the Myriad Things on Geumgangsan Mountain
금강전도	金剛全圖	Complete View of Geumgangsan Mountain

도산서원도	陶山書院圖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산수화조도첩	山水花鳥圖帖	Album of Landscapes, Flowers, and Birds
삼공불환도	三公不換圖	The Most Precious Life in Nature
삼선관파도	三仙觀波圖	Three Daoist Immortals Watching the Waves
세한도	歲寒圖	Winter Scene
소상팔경도	瀟湘八景圖	Eight Scenic Spots of the Sosang River
송유팔현도	宋儒八賢圖	Eight Confucian Scholars of the Song Dynasty
여산초당도	廬山草堂圖	Hermitage in Lushan Mountain
영남기행화첩	嶺南紀行畫帖	Album of Scenic Places in the Yeongnam Region
육상묘도	毓祥廟圖	Yuksangmyo Shrine
인왕제색도	仁王霽色圖	Scene of Inwangsan Mountain After Rain
일월반도도	日月蟠桃圖	The Sun, the Moon, and Sacred Peaches
조일선관도	朝日仙觀圖	Rising Sun
청풍계도	淸風溪圖	Cheongpunggye Valley
촉잔도권	蜀棧圖卷	The Rugged Road to Shu
총석정절경도	叢石亭絶景圖	Superb Landscape of Chongseokjeong Pavilion
추성부도	秋聲賦圖	Theme of Chuseongbu, Sounds of Autumn
평양성도	平壤城圖	Pyeongyangseong Fortress
풍악내산총람도	楓嶽內山總覽圖	General View of Inner Geumgangsan Mountain
풍악도첩	楓嶽圖帖	Album of Geumgangsan Mountain
해악전신첩	海嶽傳神帖	Album of the Sea and Mountains
해악팔경	海嶽八景	Eight Scenic Views of Seas and Mountains
화개현구장도	花開縣舊莊圖	Old House of Hwagae-hyeon

【영모화조화】

국화도	菊花圖	Chrysanthemum
매화도	梅花圖	Plum Blossoms
백학도	白鶴圖	White Cranes
봉황도	鳳凰圖	Phoenixes
사계분경도	四季盆景圖	Potted Plants During the Four Seasons
삼청첩	三清帖	Album of Bamboo, Orchid, and Plum Blossoms
장니 천마도	障泥 天馬圖	Painting of Heavenly Horse on a Saddle Flap
초충도	草蟲圖	Grass and Insects
파초도	芭蕉圖	Banana Tree
화조구자도	花鳥狗子圖	Flowers, Birds, and Puppies

【인물화】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Narrative Figure Painting
-------	-------	---------------------------

과로도기도	果老倒騎圖	Zhang Guolao Riding on a Donkey
군선도	群仙圖	Daoist Immortals
동자견려도	童子牽驢圖	A Boy Pulling a Donkey
마상청앵도	馬上聽鶯圖	Listening on Horseback to a Nightingale Singing
미인도	美人圖	Portrait of a Beauty

【기록화】

가례진하도	憲宗嘉禮陳賀圖	Wedding Celebration
갑회지도	甲會之圖	Gathering of Elders of the Same Age
계회도	契會圖	Gathering of Officials
기로연·수작연도	耆老宴·受爵宴圖	Gathering of Elders and Celebration for Granting Titles of Nobility
기사계첩	耆社契帖	Album of Paintings of the Gathering of Elders
기영회도	耆英會圖	Gathering of Elders
남지기로회도	南池耆老會圖	Gathering of Elders by Namji Pond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大成至聖文宣王殿坐圖	Confucius and His Disciples
독서당계회도	讀書堂契會圖	Gathering of Officials at Dokseodang Study
동궐도	東闕圖	The Eastern Palaces
동래부순절도	東萊府殉節圖	Patriotic Martyrs at the Battle of Dongnaebu Fortress
미원계회도	薇垣契會圖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Censor-general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Royal Banquet at Bongsudang Hall
부산진순절도	釜山鎮殉節圖	Patriotic Martyrs at the Battle of Busanjin Fortress
사궐장 연회도 화첩	賜几杖 宴會圖 畫帖	Paintings of the Conferment Banquet
서궐도안	西闕圖案	Plan of the Western Palace
숙빈최씨 소령원도	淑嬪崔氏 昭寧園圖	Tomb of the Royal Lady Choe
연정계회도	蓮亭契會圖	Gathering of Officials at Lotus Pavilion
왕세자탄강진하도	王世子誕降陳賀圖	Celebration for the Birth of the Crown Prince
월중도	越中圖	Scenes of Yeongwol
이십삼 상대회도	二十三 霜臺會圖	Gathering of 23 Officials of Inspector-general
조대비	趙大妃	The 40th Birthday Celebration of Queen Dowager Jo
사순칭경진하도	四旬稱慶陳賀圖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Inspector-general
총마계회도	驄馬契會圖	Celebration for Longevity of Seven Elderly Ladies
칠태부인경수연도	七太夫人慶壽宴圖	Gathering of Military Officials
하관계회도	夏官契會圖	Gathering of Fiscal Officials
호조낭관계회도	戶曹郎官契會圖	Royal Parade to Hwaseong Fortress
화성행행도 병풍	華城行幸圖 屏風	Gathering at Huigyeongnu Pavilion
희경루방회도	喜慶樓榜會圖	

【근현대 회화】

가족도	家族圖	A Family
남향집	南向집	A House Facing South
백악춘효	白岳春曉	Baegaksan Mountain in a Spring Morning
시골소녀	시골少女	A Country Girl
신록	新綠	Verdure
운남자상	雲娘子像	Portrait of Lady Un
초동	初冬	Early Winter Scene

【만화】

고바우 영감	고바우 令監	Mr. Gobau
엄마찾아 삼만리	엄마찾아 三萬理	30,000 Ri in Search of Mother
코주부삼국지	코주부三國志	Kojubu's Three Kingdoms

1-K. 불교 회화

† 불교 회화 국가유산의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사찰 시설의 일부이거나,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 회화 작품으로서, 불화의 종류(용도나 성격), 내용 주제, 사찰의 이름 등이 조합된 국가유산 명칭은 작품의 종류와 사찰의 이름을 먼저 기술하고, 괄호 속에 내용 주제를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보기]

- | | | |
|---------------------|-------------------|--|
| · 불영사 영산회상도 | 佛影寺 靈山會上圖 | Buddhist Painting of Buryeongsa Temple (The Vulture Peak Assembly) |
| · 성주사 감로왕도 | 昌原 聖住寺 甘露王圖 | Buddhist Painting of Seongjusa Temple (The King of Sweet Dew) |
| · 갑사 삼신불 괘불탱 | 甲寺 三身佛 掛佛幀 | Hanging Painting of Gapsa Temple (Buddha Triad) |
| ·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 無爲寺 極樂殿 阿彌陀如來三尊壁畫 | Mural Painting in Geungnakjeon Hall of Muwisa Temple (Amitabha Buddha Triad) |
| · 흥국사 대웅전 후불탱 | 興國寺 大雄殿 後佛幀 | Hanging Scroll Behind the Buddha in Daeungeon Hall of Heungguksa Temple |

† 특정 사찰과의 관계가 명칭에 표시되지 않고, 내용 주제가 국가유산 이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국문 명칭 전체를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보기]

- | | | |
|----------|--------|--|
| · 수월관음도 | 水月觀音圖 | Painting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
| · 아미타여래도 | 阿彌陀如來圖 | Painting of Amitabha Buddha |
| · 영산회상도 | 靈山會上圖 | Painting of the Vulture Peak Assembly |

† 조사의 진영은 국문 명칭 전체를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보기]

- | | | |
|------------------|----------------|--|
| ·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 | 桐華寺 泗溟堂 惟政 眞影 | Portrait of Buddhist Monk Samyeongdang (Yujeong) in Donghwasa Temple |
| · 선암사 대각국사 의천 진영 | 仙巖寺 大覺國師 義天 眞影 | Portrait of State Preceptor Daegak (Uicheon) in Seonamsa Temple |
| · 송광사 십육조사진영 | 松廣寺 十六祖師眞影 | Portrait of Sixteen Patriarchs in Songgwangsa Temple |

§ 명명 요소

33조사	三十三祖師	Thirty Three Patriarchs
가리가존자	迦理迦尊者	Kalika
감로왕	甘露王	The King of Sweet Dew
고려	高麗	Goryeo Dynasty
괘불탱	掛佛幀	Hanging Painting
궤	櫃	Storage Chest
나한	羅漢	Arhat
달마대사	達摩大師	Buddhist Monk Bodhidharma
담무갈보살	曇無竭菩薩	Dharmodgata Bodhisattva
미륵불	彌勒佛	Maitreya Buddha
범천	梵天	Brahma
벽화	壁畵	Mural Paintings
부속유물	附屬遺物	Other Relics
불화첩	佛畵帖	Album of Buddhist Paintings
비로자나불도	毘盧遮那佛圖	Vairocana Buddha
사천왕	四天王	Four Guardian Kings
삼불회	三佛會	Buddha Triad
삼세불	三世佛	Buddha Triad
세존	世尊	Sakyamuni Buddha
아별다존자	阿伐多尊者	Ajita
오불회	五佛會	Five Buddhas
오여래	五如來	Five Buddhas
제석	帝釋	Indra
지주	支柱	Flagpole Supports
진영	眞影	Portrait
초본	草本	Sketch
탱화	幀畵	Painting of Buddha
후불탱	後佛幀	Hanging Scroll Behind the Buddha

§ 사용 용례

감로왕도	甘露王圖	The King of Sweet Dew
감로탱	甘露幀	The King of Sweet Dew
관음보살도	觀音菩薩圖	Avalokitesvara Bodhisattva
백의관음도	白衣觀音圖	Avalokitesvara in White Robe
범천도	梵天圖	Brahma
비로자나삼불회도	毘盧遮那三佛會圖	Vairocana Buddha Triad

비로자나삼신불회도	毘盧遮那三身佛會圖	Vairocana Buddha Triad
사불회탱	四佛會幀	Four Buddhas
사위보살도	四位菩薩圖	Four Bodhisattvas
사직사자도	四直使者圖	Four Underworld Messengers
삼세불탱	三世佛幀	Buddha Triad
삼신불도	三身佛圖	Buddha Triad
삼신불탱	三身佛幀	Buddha Triad
삼장보살도	三藏菩薩圖	Three Bodhisattvas
삼존불탱화	三尊佛幀畫	Buddha Triad
석가모니 후불탱	釋迦牟尼後佛幀	Hanging Scroll Behind the Sakyamuni Buddha
석가여래삼세불도	釋迦如來三世佛圖	Sakyamuni Buddha Triad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Avalokitesvara Bodhisattva
수월관음보살도	水月觀音菩薩圖	Avalokitesvara Bodhisattva
시왕도	十王圖	Ten Underworld Kings
신법 천문도	新法 天文圖	Celestial Charts
십육나한도	十六羅漢圖	Sixteen Arhats
십육나한탱	十六羅漢幀	Sixteen Arhats
십육조사진영	十六祖師眞影	Portrait of Sixteen Buddhist Monks
아미타삼존도	阿彌陀三尊圖	Amitabha Buddha Triad
아미타설법도	阿彌陀說法圖	Amitabha Buddha
아미타여래구존도	阿彌陀如來九尊圖	Amitabha Buddha with Eight Bodhisattvas
아미타여래설법도	阿彌陀如來說法圖	Amitabha Buddha
아미타회상도	阿彌陀會上圖	Amitabha Buddha
아미타후불탱	阿彌陀後佛幀畫	Hanging Scroll Behind the Amitabha Buddha
아미타후불탱화	泉隱寺 極樂殿 阿彌陀後佛幀畫	Hanging Scroll Behind the Amitabha Buddha
염불왕생첩경도	念佛往生捷徑圖	Rebirth Through the Recollection of the Buddha
영산회상도	靈山會上圖	The Vulture Peak Assembly
영산회상탱	靈山會上幀	The Vulture Peak Assembly
오방오제위도	五方五帝位圖	Five Emperors of the Five Cardinal Directions
오백나한도	五百羅漢圖	Five Hundred Arhats
제석도	帝釋圖	Indra
지장도	地藏圖	Ksitigarbha Bodhisattva
지장보살도	地藏菩薩圖	Ksitigarbha Bodhisattva
지장보살삼존도	地藏菩薩三尊圖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지장시왕도	地藏十王圖	Ksitigarbha Bodhisattva and Ten Underworld Kings
천불도	千佛圖	Thousand Buddhas
칠성도	七星圖	Seven Stars

팔금강도	八金剛圖	Eight Vajras
팔상도	八相圖	The Eight Great Events
팔상탱	八相幀	The Eight Great Events
화엄경변상도	華嚴經變相圖	Illustration of the Avatamsaka Sutra
화엄탱	華嚴幀	Illustration of the Avatamsaka Sutra

1-L. 불상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불상의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부처나 보살의 존명과 불상의 재질, 형태, 소장처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불상의 명칭은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부처와 보살의 영문 명칭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합니다. 「산스크리트어」의 로마자 표기에 사용되는 특별기호는 생략합니다.

[보기]

·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佛國寺 金銅阿彌陀如來坐像	Gilt-bronze Seated Amitabha Buddha of Bulguksa Temple
·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寶林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Borimsa Temple
·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Donghaksa Temple
·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灌燭寺 石造彌勒菩薩立像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of Gwanchoksa Temple
·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Dry-lacquered Seated Statue of Buddhist Monk Huirang at Haeinsa Temple

† 명문(銘文)이 포함된 불상은 유물 이름을 앞에 두고 “with Inscription of” 라는 구절을 써서 명문을 뒤에 붙이며 명문 내용은 인용 부호(“ ”) 안에 넣어서 표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문의 로마자 표기에 의미역이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보기]

· 기축명아미타불비상	己丑銘阿彌陀佛碑像	Stele of Amitabha Buddha with Inscription of “Gichuk Year”
·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金銅癸未銘三尊佛立像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iad with Inscription of “Gyemi Year”

§ 명명 요소

광배	光背	Mandorla
대좌	臺座	Pedestal
발원문	發願文	Related Document
방형대좌	方形臺座	Square Pedestal
보살	菩薩	Bodhisattva
복장유물	腹藏遺物	Excavated Relics
불감	佛龕	Portable Shrine

불비상	佛碑像	Buddhist Stele
불상군	佛像群	Buddhas
비상	碑像	Stele
사면불상	四面佛像	Buddhas in Four Directions
사보살	四菩薩	Four Bodhisattvas
사보살입상	四菩薩立像	Four Standing Bodhisattvas
삼불	三佛	Buddha Triad
삼신불	三身佛	Buddha Triad
삼존	三尊	Triad
삼존불	三尊佛	Buddha Triad
삼존불비상	三尊佛碑像	Stele of Buddha Triad
삼존상	三尊像	Triad
석굴	石窟	Grotto
석련대	石蓮臺	Stone Lotus Pedestal
석조대좌	石造臺座	Stone Pedestal
시왕	十王	Ten Underworld Kings
이불	二佛	Two Buddhas
천불	千佛	A Thousand Buddhas
천인상	天人像	Relief of Apsaras
청동불감	靑銅佛龕	Bronze Portable Shrine
출토	出土	Excavated from
칠불상	七佛像	Seven Buddhas
칠존불	七尊佛	Seven Buddhas
칠존불비상	七尊佛碑像	Stele of Seven Buddhas
탄생불	誕生佛	Sakyamuni Buddha at Birth

{재질}

건칠	乾漆	Dry-lacquered
금동	金銅	Gilt-bronze
금제	金製	Gold
마애	磨崖	Rock-carved
목조	木造	Wooden
석고	石膏	Plaster
석조	石造	Stone
소조	塑造	Clay
은제도금	銀製鍍金	Silver-gilt
철조	鐵造	Iron
청동	靑銅	Bronze

{존명}

관세음보살	觀世音菩薩	Avalokitesvara Bodhisattva
관음보살	觀音菩薩	Avalokitesvara Bodhisattva
노사나불	盧舍那佛	Rocana Buddha
대범천	大梵天	Brahma
대세지보살	大勢至菩薩	Mahasthamaprapta Bodhisattva
문수동자	文殊童子	Child Manjusri
문수보살	文殊菩薩	Manjusri
미륵보살	彌勒菩薩	Maitreya Bodhisattva
미륵여래	彌勒如來	Maitreya Buddha
보현동자	普賢童子	Child Samantabhadra
비로자나불	毘盧遮那佛	Vairocana Buddha
사천왕	四天王像	Four Guardian Kings
석가여래	釋迦如來	Sakyamuni Buddha
십육나한	十六羅漢	Sixteen Arhats
아미타불	阿彌陀佛	Amitabha Buddha
아미타여래	阿彌陀如來	Amitabha Buddha
약사여래	藥師如來	Bhaisajyaguru Buddha
여래	如來	Buddha
제석천	帝釋天	Indra
지장보살	地藏菩薩	Ksitigarbha Bodhisattva

{형태}

반가사유상	半跏思惟像	Pensive
반가상	半跏像	Buddha
의상	倚像	Seated
의좌상	倚坐像	Seated
입상	立像	Standing
좌상	坐像	Seated

§ 사용 용례

【마애불상】

마애보살반가상	磨崖菩薩半跏像	Rock-carved Bodhisattva
마애보살삼존좌상	磨崖菩薩三尊坐像	Rock-carved Seated Bodhisattva Triad
마애보살입상	磨崖菩薩立像	Rock-carved Standing Bodhisattva
마애보살좌상	磨崖菩薩坐像	Rock-carved Seated Bodhisattva

마애불상군	磨崖佛像群	Rock-carved Buddhas
마애삼존불입상	磨崖三尊佛立像	Rock-carved Standing Buddha Triad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磨崖阿彌陀如來三尊像	Rock-carved Amitabha Buddha Triad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磨崖藥師如來三尊立像	Rock-carved Standing Bhaisajyaguru Buddha Triad
마애약사여래좌상	磨崖藥師如來坐像	Rock-carved Seated Bhaisajyaguru Buddha
마애여래삼존상	磨崖如來三尊像	Rock-carved Buddha Triad
마애여래삼존입상	磨崖如來三尊立像	Rock-carved Standing Buddha Triad
마애여래의좌상	磨崖如來倚坐像	Rock-carved Seated Buddha
마애여래입상	磨崖如來立像	Rock-carved Standing Buddha
마애여래좌상	磨崖如來坐像	Rock-carved Seated Buddha
마애이불병좌상	磨崖二佛並坐像	Two Rock-carved Seated Buddhas
마애이불입상	磨崖二佛立像	Two Rock-carved Standing Buddhas
마애칠불상	磨崖七佛像	Rock-carved Seven Buddhas

【석조불상】

석조미륵보살입상	石造彌勒菩薩立像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석조반가상	石造半跏像	Stone Buddha
석조보살입상	石造菩薩立像	Stone Standing Bodhisattva
석조보살좌상	石造菩薩坐像	Stone Seated Bodhisattva
석조불상군	石造佛像群	Stone Buddhas
석조비로자나불좌상	石造毘盧遮那佛坐像	Stone Seated Vairocana Buddha
석조사면불상	石造四面佛像	Stone Buddhas in Four Directions
석조사천왕상	石造四天王像	Stone Reliefs of the Four Guardian Kings
석조삼존상	石造三尊像	Stone Buddha Triad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	Stone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석조석가여래좌상	石造釋迦如來坐像	Stone Seated Sakyamuni Buddha
석조승가대사좌상	石造僧伽大師坐像	Stone Seated Statue of Buddhist Monk Seungga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石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Stone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석조아미타여래입상	石造阿彌陀如來立像	Stone Standing Amitabha Buddha
석조아미타여래좌상	石造阿彌陀如來坐像	Stone Seated Amitabha Buddha
석조약사여래입상	石造藥師如來立像	Stone Standing Bhaisajyaguru Buddha
석조약사여래좌상	石造藥師如來坐像	Stone Seated Bhaisajyaguru Buddha
석조여래삼존상	石造如來三尊像	Stone Buddha Triad
석조여래삼존입상	石造如來三尊立像	Stone Standing Buddha Triad
석조여래입상	石造如來立像	Stone Standing Buddha
석조여래좌상	石造如來坐像	Stone Seated Buddha
석조이불입상	石造二佛立像	Two Stone Standing Buddhas

석조지장보살삼존상	石造地藏菩薩三尊像	Stone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석조지장보살좌상	石造地藏菩薩坐像	Stone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목조불상】

목조관세음보살좌상	木造觀世音菩薩坐像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목조관음보살좌상	木造觀音菩薩坐像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목조광배	木造光背	Wooden Mandorla
목조문수·보현동자상	木造文殊·普賢童子像	Wooden Child Manjusri and Samantabhadra
목조문수동자좌상	木造文殊童子坐像	Wooden Seated Child Manjusri
목조문수보살좌상	木造文殊菩薩坐像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목조보살입상	木造菩薩立像	Wooden Standing Bodhisattva
목조비로자나불좌상	木造毘盧遮那佛坐像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목조사천왕상	木造四天王像	Wooden Four Guardian Kings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목조석가여래삼존상	木造釋迦如來三尊像	Wooden Sakyamuni Buddha Triad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목조석가여래좌상	木造釋迦如來坐像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목조아미타여래좌상	木造阿彌陀如來坐像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목조제석천·대범천의상	木造帝釋天·大梵天倚像	Wooden Seated Indra and Brahma
목조지장보살삼존상	木造地藏菩薩三尊像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목조지장보살좌상	木造地藏菩薩坐像	Wooden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소조불상】

석조천인상	石造天人像	Stone Relief of Apsaras
석조희견보살입상	石造喜見菩薩立像	Stone Standing Bodhisattva
소조 사천왕상	塑造 四天王像	Clay Four Guardian Kings
소조16나한상	塑造十六羅漢像	Clay Sixteen Arhats
소조미륵여래입상	塑造彌勒如來立像	Clay Standing Maitreya Buddha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소조사천왕상	塑造四天王像	Clay Four Guardian Kings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	Clay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소조석가여래삼존상	塑造釋迦如來三尊像	Clay Sakyamuni Buddha Triad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塑造釋迦如來三尊坐像	Clay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소조시왕상	塑造十王像	Clay Ten Underworld Kings

소조십육나한좌상	塑造十六羅漢坐像	Clay Seated Sixteen Arhats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塑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Clay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소조여래좌상	塑造如來坐像	Clay Seated Buddha

【건칠불상】

건칠관음보살좌상	乾漆觀音菩薩坐像	Dry-lacquered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건칠보살반가상	乾漆菩薩半跏像	Dry-lacquered Bodhisattva
건칠비로자나불좌상	乾漆毘盧遮那佛坐像	Dry-lacquered Seated Vairocana Buddha
건칠아미타여래좌상	乾漆阿彌陀如來坐像	Dry-lacquered Seated Amitabha Buddha
건칠약사여래좌상	乾漆藥師如來坐像	Dry-lacquered Seated Bhaisajyaguru Buddha
건칠희랑대사좌상	乾漆希朗大師坐像	Dry-lacquered Seated Statue of Buddhist Monk Huirang

【금속불상】

금동관음보살입상	金銅觀音菩薩立像	Gilt-bronze Standing Avalokitesvara Bodhisattva
금동관음보살좌상	金銅觀音菩薩坐像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금동대세지보살좌상	金銅大勢至菩薩坐像	Gilt-bronze Seated Mahasthamaprapta Bodhisattva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Gilt-bronze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금동보살삼존입상	金銅菩薩三尊立像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Triad
금동보살입상	金銅菩薩立像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금동보살좌상	金銅菩薩坐像	Gilt-bronze Seated Bodhisattva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金銅毘盧遮那佛三尊坐像	Gilt-bronze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금동비로자나불좌상	金銅毘盧遮那佛坐像	Gilt-bronze Seated Vairocana Buddha
금동삼존불감	金銅三尊佛龕	Portable Shrine of Gilt-bronze Buddha Triad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金銅阿彌陀如來三尊坐像	Gilt-bronze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금동아미타여래좌상	金銅阿彌陀如來坐像	Gilt-bronze Seated Amitabha Buddha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金銅阿彌陀如來七尊坐像	Gilt-bronze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금동약사여래입상	金銅藥師如來立像	Gilt-bronze Standing Bhaisajyaguru Buddha
금동약사여래좌상	金銅藥師如來坐像	Gilt-bronze Seated Bhaisajyaguru Buddha
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Gilt-bronze Standing Buddha
금동여래좌상	金銅如來坐像	Gilt-bronze Seated Buddha
금동지장보살좌상	金銅地藏菩薩坐像	Gilt-bronze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金銅千手觀音菩薩坐像	Gilt-bronze Seated Thousand-hand Avalokitesvara Bodhisattva
금동탄생불입상	金銅誕生佛立像	Gilt-bronze Standing Sakyamuni Buddha at Birth
금동판 불상	金銅板 佛像	Gilt-bronze Buddha Plaques
금제여래입상	金製如來立像	Gold Standing Buddha

금제여래좌상	金製如來坐像	Gold Seated Buddha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銀製鍍金阿彌陀如來三尊像	Silver-gilt Amitabha Buddha Triad
철조노사나불좌상	鐵造盧舍那佛坐像	Iron Seated Rocana Buddha
철조비로자나불좌상	鐵造毘盧遮那佛坐像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철조석가여래좌상	鐵造釋迦如來坐像	Iron Seated Sakyamuni Buddha
철조아미타여래좌상	鐵造阿彌陀如來坐像	Iron Seated Amitabha Buddha
철조약사여래좌상	鐵造藥師如來坐像	Iron Seated Bhaisajyaguru Buddha
철조여래좌상	鐵造如來坐像	Iron Seated Buddha
청동보살좌상	靑銅菩薩坐像	Bronze Seated Bodhisattva

【불비상】

반가사유비상	半跏思惟碑像	Stele of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석조불비상	石造佛碑像	Stone Buddhist Stele
아미타불비상	阿彌陀佛碑像	Stele of Amitabha

1-M 석조각

† 사찰 경내의 석조각, 마을의 석상, 묘역의 석물 등 석조 조각 국가유산의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소재지, 형태, 용도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석조 조각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보기]

· 법주사 쌍사자 석등	法住寺 雙獅子 石燈	Twin Lion Stone Lantern of Beopjusa Temple
· 금산사 당간지주	金山寺 幢竿支柱	Flagpole Supports of Geumsansa Temple
· 실상사 석장승	實相寺 石장승	Stone Guardian Posts of Silsangsa Temple
· 서천리 당산	西川里 堂山	Village Guardians of Seocheon-ri
· 박중손묘 장명등	朴仲孫墓 長明燈	Stone Lanterns in Front of the Tomb of Bak Jung-son

§ 명명 요소

각석	刻石	Petroglyphs
국장생표	國長生標	Boundary Marker
귀부	龜趺	Tortoise-shaped Pedestal
노주	露柱	Stone Pillar
당간지주	幢竿支柱	Flagpole Support
당산	堂山	Village Guardians
벽수		Guardian Post
석당간	石幢竿	Stone Flagpole
석등	石燈	Stone Lantern
석련지	石蓮池	Stone Lotus Basin
석사자	石獅子	Stone Lion
석상	石像	Stone Guardian
석수	石獸	Stone Guardian
석장승	石장승	Stone Guardian Post
석조	石槽	Stone Basin
석주	石柱	Pillar
암각화	巖刻畫	Petroglyphs
입석	立石	Menhir
장명등	長明燈	Stone Lanterns

§ 사용 용례

사자 석등	獅子 石燈	Lion Stone Lantern
사천왕 석등	四天王 石燈	Stone Lantern with Reliefs of the Four Guardian Kings
석조불감	石造佛龕	Stone Shrine and Buddha
석조사리감	石造舍利龕	Stone Reliquary
쌍사자 석등	雙獅子 石燈	Twin Lion Stone Lantern
연화문 당간지주	蓮華文 幢竿支柱	Flagpole Supports with Lotus Design

1-N. 토도자 공예

† 토기, 도기, 자기 등의 토도자 공예 국가유산의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종류, 기법, 무늬, 형태, 용도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토도자 공예 국가유산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종류·기법·형태 등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문양 등이 포함된 국가유산의 명칭은 쉼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陶器 騎馬人物形 明器 Earthenware Funerary Objects in the Shape of a Warrior on Horseback
- 녹유골호 綠釉骨壺 Green-glazed Burial Urn
-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 粉靑沙器 陰刻魚文 扁瓶 Buncheong Flat Bottle with Incised Fish Design
- 백자 청화송죽인물문 항아리 白磁 靑畫松竹人物文 立壺 White Porcelain Jar with Pine, Bamboo, and Human Figure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靑磁 象嵌牡丹文 瓢形 注子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Inlaid Peony Design

† 명문(銘文)이 포함된 경우, 유물 이름을 앞에 두고 “with Inscription of” 라는 구절을 써서 명문을 뒤에 붙이며 명문 내용은 인용 부호(“ ”) 안에 넣어서 표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문의 로마자 표기에 의미역이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보기]

- 청자 음각‘상약국’명 운룡문 합 靑磁 陰刻‘尙藥局’銘 雲龍文 盒 Celadon Lidded Bowl with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and Inscription of “Sangyakguk (Bureau of Medicine)”
- 백자 ‘천’ ‘지’ ‘현’ ‘황’명 발 白磁 ‘天’‘地’‘玄’‘黃’銘 鉢 White Porcelain Bowls with Inscription of “Cheon (天),” “Ji (地),” “Hyeon (玄),” and “Hwang (黃)”

§ 명명 요소

{종류}

녹유	綠釉	Green-glazed
도기	陶器	Earthenware

백자	白磁	White Porcelain
분청사기	粉靑沙器	Buncheong
석함	石函	Stone Case
외함	外函	Case
청자	靑磁	Celadon
토기	土器	Earthenware
{기법}		
동채	銅彩	in Underglaze Copper
동화	銅畫	in Underglaze Copper
박지	剝地	Sgraffito
상감	象嵌	Inlaid
상감투각	象嵌透刻	Inlaid and Openwork
양각	陽刻	in Relief
연유	鉛釉	Lead-glazed
음각	陰刻	Incised
철채	鐵彩	in Underglaze Iron
철화	鐵畫	in Underglaze Iron
청화	靑畫	in Underglaze Cobalt Blue
청화철채동채	靑畫鐵彩銅彩	in Underglaze Iron, Copper, and Cobalt Blue
청화철화	靑畫鐵畫	in Underglaze Cobalt Blue and Iron
퇴화	堆花	Paste-on-paste
투각	透刻	Openwork
{모양}		
구룡형	龜龍形	in the Shape of a Turtle-dragon
구룡형뚜껑	龜龍形蓋	Lid in the Shape of a Turtle-dragon
기린모양	麒麟形	Girin-shaped
기린형뚜껑	麒麟形蓋	Girin-shaped Lid
기마인물형	騎馬人物形	in the Shape of a Warrior on Horseback
두꺼비모양	蟾形	Toad-shaped
말머리장식	馬頭飾	Horse Head Decoration
모자원숭이모양	母子猿形	in the Shape of Mother and Baby Monkeys
바퀴장식	車輪飾	Wagon Wheel Decoration
박산형뚜껑	博山形蓋	a Lid in the Shape of Baksan Mountain
반형	盤形	Basin-shaped
방형	方形	Square
배모양	舟形	Boat-shaped
병형	瓶形	Bottle-shaped

복숭아모양	桃形	Peach-shaped
사각	四角	Square
사각발형	四角鉢形	the Shape of a Square Bowl
사자형뚜껑	獅子形蓋	Lion-shaped Lid
서수형	瑞獸形	in the Shape of an Auspicious Animal
신발모양	履形	Shoe-shaped
쌍사자형	雙獅子形	in the Shape of Twin Lions
어룡형	魚龍形	in the Shape of a Fish-dragon
오리모양	鴨形	Duck-shaped
인물형	人物形	in the Shape of a Human Figure
정형	鼎形	Three-legged Cauldron-shaped
죽순모양	竹筍形	Celadon Bamboo Shoot-shaped Ewer
참외모양	瓜形	Melon-shaped
칠보문뚜껑	七寶文蓋	Auspicious-character Design Lid
토우장식	土偶裝飾	with Clay Figurines
통형	筒形	Tube-shaped
팔각	八角	Octagonal
팔각통형	八角筒形	Octagonal
표주박모양	瓢形	Gourd-shaped
화형	花形	Flower-shaped
{무늬}		
갈대기러기문	葦蘆文	Reeds and Wild Geese
고리문	連環文	Ring Design
국화당초문	菊花唐草文	Chrysanthemum and Scroll Design
국화모란당초문	菊花牡丹唐草文	Chrysanthemum, Peony, and Scroll Design
국화모란문	菊花牡丹文	Chrysanthemum and Peony Design
국화모란유로죽문	菊花牡丹柳蘆竹文	Chrysanthemum, Peony, Willow, Heron, and Bamboo Design
국화문	菊花文	Chrysanthemum Design
끈무늬	紐文	String Design
나비문	蝶文	Butterfly Design
당초문	唐草文	Scroll Design
도철문	饕餮文	Goblin Design
동정추월문	洞庭秋月文	Autumn Landscape Design
매국문	梅菊文	Plum and Chrysanthemum Design
매월십장생문	梅月十長生文	Plum, Moon, and Ten Symbols of Longevity Design
매조죽문	梅鳥竹文	Plum, Bird and Bamboo Design

매죽문	梅竹文	Plum and Bamboo Design
매죽양류문	梅竹楊柳文	Plum, Bamboo, and Willow Design
매죽학문	梅竹鶴文	Plum, Bamboo, and Crane Design
모란	牡丹	Peony Design
모란국화문	牡丹菊花文	Peony and Chrysanthemum Design
모란당초문	牡丹唐草文	Peony and Scroll Design
모란문	牡丹文	Peony Design
모란양류문	牡丹楊柳文	Peony and Willow Design
모란잎문	牡丹葉文	Peony Leaf Design
보상당초문	寶相唐草文	Floral Medallion and Scroll Design
보자기문	襪紗文	Wrapping Cloth Design
산수화조문	山水花鳥文	Landscape, Flower and Bird Design
삼산뇌문	三山雷文	Mountains and Lightening Design
삼엽문	蔘葉文	Ginseng Leaf Design
선문	線文	Dots and Line Design
소상팔경문	瀟湘八景文	Painting of Eight Scenic Spots of Sosang River
송죽문	松竹文	Pine and Bamboo Design
송죽인물문	松竹人物文	Pine, Bamboo, and Human Figure Design
수조문	樹鳥文	Tree and Bird Design
앵무문	鸚鵡文	Parrot Design
양류문	楊柳文	Willow Design
어룡문	魚龍文	Fish-dragon Design
어문	魚文	Fish Design
연당초문	蓮唐草文	Lotus and Scroll Design
연지어문	蓮池魚文	Lotus Pond and Fish Design in Relief
연지원앙문	蓮池鴛鴦文	Lotus and Mandarin Duck Design
연판문	蓮瓣文	Lotus Design
연화당초	蓮花唐草	Lotus and Scroll Design
연화당초문	蓮花唐草文	Lotus and Scroll Design
연화당초용문	蓮花唐草龍文	Lotus, Scroll, and Dragon Design
연화문	蓮花文	Lotus Design
연화양류문	蓮花楊柳文	Lotus and Willow Design
연화어문	蓮花魚文	Lotus and Fish Design
연화절지문	蓮花折枝文	Lotus and Branch Design
용문	龍文	Dragon Design
용봉모란문	龍鳳牡丹文	Dragon, Phoenix, and Peony Design
운룡문	雲龍文	Cloud and Dragon Design
운문	雲文	Cloud Design

운죽문	雲竹文	Cloud and Bamboo Design
운학국화문	雲鶴菊花文	Cloud, Crane, and Chrysanthemum Design
운학모란국화문	雲鶴牡丹菊花文	Cloud, Crane, Peony, and Chrysanthemum Design
운학문	雲鶴文	Cloud and Crane Design
유로매죽문	柳鷺梅竹文	Willow, Egret, Plum, and Bamboo Design
용기문	隆起文	Raised Pattern
은테	銀테	Silver Lip
음각환문	陰刻環文	Incised Ring Design
인화국화문	印花菊花文	Stamped Chrysanthemum Design
인화문	印花文	Stamped Designs
인화점문	印花點文	Stamped Dots Design
잉어문	鯉魚文	Carp Design
점문	點文	White Dot Design
죽문	竹文	Bamboo Design
죽절문	竹節文	Bamboo Design
초충문	草蟲文	Grass and Insect Design
초충조문	草蟲鳥文	Grass, Insect, and Bird Design
초화문	草花文	Floral Design
칠보난초문	七寶蘭草文	Auspicious-character and Orchid Design
태극문	太極文	Taegeuk Design
퇴화문	堆花文	Paste-on-paste Design
파도어문	波濤魚文	Wave and Fish Design
포도동자문	葡萄童子文	Grapes and Child Design
포도문	葡萄文	Grape Design
포도원숭이문	葡萄猿文	Grape and Monkey Design
화문	花文	Floral Design
화조문	花鳥文	Flower and Bird Design

{용도}

골호	骨壺	Burial Urn
나한좌상	羅漢坐像	Seated Arhat
달항아리	壺	Moon Jar
대접	大楮	Bowl
도판	陶板	Plaque
매병	梅瓶	Prunus Vase
명기	明器	Funerary Object
모자합	母子盒	Lidded Bowl Set
묘지	墓誌	Memorial Tablet

반합	飯盒	Lidded Bowl
발	鉢	Bowls
발우	鉢盂	Bowls
백자항아리	白磁壺	White Porcelain Jar
베개	枕	Pillow
벼루	硯	Inkstone
병	瓶	Bottle
붓꽂이	筆架	Brush Holder
뿔잔	角杯	Horn Cup
사옹원인	司饗院印	Seal of the Royal Cuisine Office
산뢰	山罍	Jar
승반	承盤	Saucer
연적	硯滴	Water Dropper
완	碗	Bowl
유개매병	有蓋梅瓶	Lidded Prunus Vase
유개항아리	有蓋壺	Lidded Jar
의자	墩	Stools
자라병	扁瓶	Turtle-shaped Bottle
장경병	長頸瓶	Bottle
장경호	長頸壺	Long-necked Jar
장군	獐本	Barrel-shaped Vessel
접시	碟匙	Dish
정병	淨瓶	Kundika
제기	祭器	Ritual Vessel
주전자	注子	Ewer
죽찰	竹札	Bamboo Strip
탁	托	Saucer
탁잔	托盞	Cup with Stand
태지석	胎誌石	Stone Placenta Tablet
태항아리	胎壺	Placenta Jar
필통	筆筒	Brush Container
합	盒	Lidded Bowl
항아리	立壺	Jar
향로	香爐	Incense Burner
화분	花盆	Flowerpot

§ 사용 용례

각병	角瓶	Octagonal Bottle
구룡형 주전자	龜龍形 注子	Ewer in the Shape of a Turtle-dragon
기린모양 연적	麒麟形 硯滴	Girin-shaped Water Dropper
기마인물형 명기	騎馬人物形 明器	Funerary Objects in the Shape of a Warrior on Horseback
기마인물형 뿔잔	騎馬人物形 角杯	Horn Cup in the Shape of a Warrior on Horseback
두꺼비모양 벼루	蟾形 硯	Toad-shaped Inkstone
모자원숭이모양 연적	母子猿形 硯滴	Water Dropper in the Shape of Mother and Baby Monkeys
반형 묘지	盤形 墓誌	Basin-shaped Memorial Tablet
방형 향로	方形 香爐	Square Incense Burner
배모양 명기	舟形 明器	Boat-shaped Funerary Object
병형 주전자	瓶形 注子	Bottle-shaped Ewer
복숭아모양 연적	桃形 硯滴	Peach-shaped Water Dropper
사각발형 제기	四角鉢形 祭器	Ritual Vessel in the Shape of a Square Bowl
사각편병	四角扁瓶	Square Flat Bottle
서수형 명기	瑞獸形 明器	Funerary Object in the Shape of an Auspicious Animal
신발모양 명기	履形 明器	Shoe-shaped Funerary Objects
쌍사자형 베개	雙獅子形 枕	Pillow in the Shape of Twin Lions
어룡형 주전자	魚龍形 注子	Ewer in the Shape of a Fish-dragon
오리모양 연적	鴨形 硯滴	Duck-shaped Water Dropper
오리모양 주전자	鴨形 注子	Duck-shaped Ewer
인물형 주전자	人物形 注子	Ewer in the Shape of a Human Figure
정형 향로	鼎形 香爐	Three-legged Cauldron-shaped Incense Burner
죽순모양 주전자	竹筍形 注子	Celadon Bamboo Shoot-shaped Ewer
참외모양 병	瓜形 瓶	Melon-shaped Bottle
통형 병	筒形 瓶	Tube-shaped Bottle
팔각연적	八角硯滴	Octagonal Water Dropper
팔각장경병	八角長頸瓶	Octagonal Bottle
팔각접시	八角碟匙	Octagonal Dish
표주박모양 주전자	瓢形 注子	Gourd-shaped Ewer
화형 접시	花形 碟匙	Flower-shaped Dish

1-O. 금속, 목조, 나전 공예류

† 금속, 유리, 목조, 나전 등의 장신구, 생활용구, 놀이도구, 의례도구 등 공예 국가유산의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재질, 기법, 무늬, 형태, 용도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공예 국가유산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재질·기법·형태 등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문양 등이 포함된 국가유산 명칭은 쉼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 금제 드리개 金製 垂飾 Gold Pendants
- 은제도금 화형탁잔 銀製鍍金花形托盞 Silver-gilt Flower-shaped Cup with Stand
-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青銅 銀入絲 蒲柳水禽文 淨瓶
Bronze Kundika with Silver-inlaid Willow and Waterfowl Design
- 주칠 나전가구 朱漆 螺鈿家具 Red-lacquered Furniture with Inlaid Mother-of-pearl Design
-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 명문(銘文)이 포함된 경우, 유물 이름을 앞에 두고 “with Inscription of” 라는 구절을 써서 명문을 뒤에 붙이며 명문 내용은 인용 부호(“ ”) 안에 넣어서 표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문의 로마자 표기에 의미역이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보기]

- 봉업사명 청동 향로 奉業寺銘 青銅 香爐
Bronze Incense Burner with Inscription of “Bongeopsa Temple”
- 흥왕사명 청동 은입사 향완 興王寺銘 青銅 銀入絲 香碗
Bronze Incense Burner with Inscription of “Heungwangsa Temple” and Silver-inlaid Design

§ 명명 요소

거문고	琴	Geomungo
거푸집	鑄范	Mould
건칠반	乾漆盤	Dry-lacquered Tray
경질	經帙	Sutra Wrapper
경패	經牌	Sutra Plaque
경함	螺鈿經函	Sutra Box

고대 그리스	古代 그리스	Ancient Greek
고려 먹	高麗 墨	Goryeo Inkstick
고배	高杯	High-footed Cup
공양구	供養具	Ceremonial Tools
관모	冠帽	Cap
관식	冠飾	Diadem Ornaments
국새	國璽	Seal of Emperor
귀면	鬼面	Demon Face Decoration
금관	金冠	Gold Crown
금귀걸이	金製耳飾	Gold Earrings
금동	金銅	Gilt-bronze
금동관	金銅冠	Gilt-bronze Crown
금동탑	金銅塔	Gilt-bronze Miniature Pagoda
금목걸이	金製頸飾	Gold Necklace
금반지	金製 指環	Gold Rings
금팔찌	金製 釧	Gold Bracelets
나전	螺鈿	Inlaid Mother-of-pearl
납석	蠟石	Agalmatolite
농경문	農耕文	Farming Scene
대바라	大鈸鑼	Cymbals
대한제국	大韓帝國	Korean Empire
독립협회	獨立協會	Independence Club
동검동과	銅劍銅戈	Bronze Dagger and Dagger-axe
동경	銅鏡	Bronze Mirror
동종	銅鍾	Bronze Bell
동호	銅壺	Bronze Jar
뒤꽂이	釵	Hairpin
드리개	垂飾	Pendants
띠고리	鉸具	Buckle
목걸이	頸胸飾	Necklace
문양전	文樣塼	Patterned Tiles
발받침	足座	Footrest
베개	頭枕	Headrest
병	屏	Folding Screen
보검	寶劍	Ornamented Dagger
봉황문	鳳凰文	Phoenix Design
북걸이	金鼓處	Rack
사리기	舍利器	Reliquary

사리장엄구	舍利莊嚴具	Reliquaries
사리호	舍利壺	Reliquary
사인비구	思印比丘	Buddhist Monk Sain
삼전패	三殿牌	Wooden Tablets for the Buddha Triad
상여	喪輿	Bier
서탑	西塔	West Pagoda
쇠북	金鼓	Gong
수미단	須彌壇	Buddhist Altar
수정 장식	水晶 裝飾	Crystal Ornaments
십장생	十長生	Ten Symbols of Longevity
요령	搖鈴	Handbell
유리병	琉璃瓶	Glass Ewer
유리잔	琉璃盞	Glass Cup
유제	鍮製	Brass
윤장대	輪藏臺	Rotating Sutra Case
은관	銀冠	Silver Crown
은입사	銀入絲	Silver-inlaid
은잔	銀盞	Silver Cup
은제	銀製	Silver
은제 관식	銀製 冠飾	Silver Diadem Ornament
은팔찌	銀製釧	Silver Bracelets
이층롱	二層籠	Two-tiered Chest
이화문	李花文	Pear Flower Design
인장	印章	Seal
자루술	鐏斗	Three-legged Cauldron with a Handle
자물쇠	鎖金	Padlocks
잔	盞	Cups
장신구	裝身具	Ornaments
정문경	精文鏡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
주칠	朱漆	Red-lacquered
줄		Tug-of-war Rope
철당간	鐵幢竿	Iron Flagpole
철술	鐵鑊	Iron Pot
철종	鐵鍾	Iron Bell
청동기	靑銅器	Bronze Artifacts
청동로	靑銅爐	Bronze Brazier
청동북	靑銅金鼓	Bronze Gong
초충수	草蟲繡	Embroidered with Grass and Insects

촛대	燭臺	Candlestick
칠기	漆器	Lacquered Bowl
탈		Mask
탕기	湯器	Lidded Bowl
토수	吐首	Roof Tile
포류수금문	蒲柳水禽文	Willow and Waterfowl Design
향완	香碗	Incense Burner
허리띠	銙帶	Waist Belt
호랑이모양	虎形	Tiger-shaped
호우	壺杆	Bowl
화병	花瓶	Vase

§ 사용 용례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古代 그리스 靑銅 冑	Ancient Greek Bronze Helmet
금동 자물쇠	金銅 鎖金	Gilt-bronze Padlock
금동대향로	金銅大香爐	Great Gilt-bronze Incense Burner
금동불감	金銅佛龕	Portable Shrine of Gilt-bronze Buddhas
금동사리기	金銅舍利器	Gilt-bronze Reliquary
금동요령	金銅搖鈴	Gilt-bronze Handbell
금동향로	金銅香爐	Gilt-bronze Incense Burner
금은제 그릇	金銀器	Gold and Silver Bowls
나전가구	螺鈿家具	Furniture with Inlaid Mother-of-pearl Design
납석사리호	蠟石舍利壺	Agalmatolite Reliquary
농경문 청동기	農耕文 靑銅器	Bronze Ritual Object with Farming Scene
당간 용두	幢竿 龍頭	Dragon Finial
대한국독립협회지장	大韓國獨立協會之章	Official Seal of the Independence Club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大韓帝國 高宗 皇帝御璽	Seal of Emperor Gojong of the Korean Empire
모포줄	牟浦줄	Tug-of-war Rope of Mopo-ri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목조삼존불감	木造三尊佛龕	Portable Shrine of Wooden Buddha Triad
방상시 탈	方相氏 탈	Bangsangsi Mask
별전 괴불	別錢 괴불	Ornamental Pendant with Brass Coins
병산탈	屏山탈	Byeongsan Masks
사인비구 제작 동종	思印比丘 製作 銅鍾	Bronze Bell Cast by Buddhist Monk Sain
상감 유리구슬	象嵌 琉璃玉	Glass Beads with Inlaid Design
예백장 인장	濊伯長 印章	Seal of Ye Chieftain

옥동금	玉洞琴	Yi Seo's Geomungo
용두보당	龍頭寶幢	Miniature Buddhist Flagpole with Dragon Finial
용두토수	龍頭吐首	Roof Tile in the Shape of a Dragon-head
은입사 향완	銀入絲 香垸	Incense Burner with Silver-inlaid Design
은제 팔뚝가리개	銀製	Silver Arm Guards
이성계 발원	李成桂 發願	Votive Reliquaries Offered by Yi Seong-gye
사리장엄구	舍利莊嚴具	
채화칠기	彩畵漆器	Painted Lacquered Bowl
청동 투구	靑銅冑	Bronze Helmet
청동거울	銅鏡	Bronze Mirrors
청동방울	靑銅鈴	Bronze Rattle
청동칠두령	靑銅七頭鈴	Bronze Rattle
초충수병	草蟲繡屏	Folding Screen Embroidered with Grass and Insects
포류수금문 정병	蒲柳水禽文 淨瓶	Kundika with Silver-inlaid Willow and Waterfowl Design
하회탈	河回탈	Hahoe Masks
화형탁잔	花形托盞	Flower-shaped Cup with Stand
환두대도	環頭大刀	Sword with Ring Pommel
황제어새	皇帝御璽	Seal of Emperor

1-P. 도구, 물품, 의복류

† 도구, 물품, 복식 등의 국가유산의 이름에 쓰인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종류나 용도, 제작 또는 사용 주체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합니다.

[보기]

. 청계천 수표	淸溪川 水標	Water Gauge at Cheonggyecheon Stream
.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	公丙禹 세벌식 打字機	Typewriter Invented by Kong Byung-woo
. 엄복동 자전거	嚴福童 自轉車	Eom Bok-dong's Bicycle
. 고종의 누비저고리	高宗의 縷緋저고리	Quilted Jacket Worn by King Gojong
. 한국광복군 군복	韓國光復軍 軍服	Uniform of the Korean Liberation Army

† 도구, 물품의 고유한 이름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종류나 용도를 알리는 의미역을 부가합니다.

[보기]

. 불랑기자포	佛狼機子砲	Bullanggi Japo Cannon
. 천자총통	天字銃筒	Cheonja Chongtong Gun

§ 명명 요소

【도구】

각궁	角弓	Horn Bow
간평일구	簡平日晷	Sundial
관상감	觀象監	Bureau of Meteorology
귀면문	鬼面文	Demon Design
금동천문도	金銅天文圖	Gilt-bronze Celestial Chart
금영	錦營	Chungcheong-do Provincial Office
대완구	大碗口	Large Mortar
말방아		Horse Mill
목활자	木活字	Wooden Movable Type
민간	民間	Private
발걸이	壺鐙	Stirrups
복각	複刻	Reproduction
불랑기자포	佛狼機子砲	Bullanggi Japo Cannon
비격진천뢰	飛擊震天雷	Bomb Shell

삼안총	三眼銃	Three Barrel Gun
세총통	細銃筒	Narrow Gun
소총통	小銃筒	Small Gun
수표	水標	Water Gauge
승자총통	勝字銃筒	Seungja Chongtong Gun
쌍자총통	雙字銃筒	Ssangja Chongtong Gun
안장	鞍裝	Horse Saddle
앙부일구	仰釜日晷	Hemispherical Sundial
옷칠	黑漆	Lacquered
의병장	義兵將	Righteous Army Commander
인쇄용구	印刷用具	Printing Devices
자격루	自擊漏	Clepsydra
중완구	中碗口	Medium Mortar
지구의	地球儀	Terrestrial Globe
지자총통	地字銃筒	Jija Chongtong Gun
지평일구	地平日晷	Horizontal Sundial
차승자총통	次勝字銃筒	Medium Seungja Chongtong Gun
천문도	天文圖	Celestial Chart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列次分野之圖	Celestial Chart
천자총통	天字銃筒	Cheonja Chongtong Gun
철퇴	鐵鎚	Iron Mace
측우기	測雨器	Rain Gauge
측우대	測雨臺	Rain Gauge Pedestal
칼		Knife
통방아		Water Mill
통영	統營	Navy Headquarters of Three Provinces
풍기대	風旗臺	Wind Streamer Pedestal
현자총통	玄字銃筒	Hyeonja Chongtong Gun
혼개일구	渾蓋日晷	Sundial
혼개통헌의	渾蓋通憲儀	Astronomical Clock
혼천시계	渾天時計	Armillary Clock
혼천의	渾天儀	Celestial Globe
황자총통	黃字銃筒	Hwangja Chongtong Gun
휴대용	攜帶用	Portable
【물품】		
보부상	裨負商	Peddlers
삼공신	三功臣	Three Meritorious Subjects

유물	遺物	Artifacts
유품[사용 유품]	遺品	Artifacts
유품[기념 유품]	遺品	Mementos
팔사품	八賜品	Eight Gifts from Ming Emperor
국민성금	國民誠金	Citizen Donation
디젤전기기관차	디젤電氣機關車	Diesel-electric Locomotive
미카형 증기기관차	미카型 蒸氣機關車	Mika-style Steam Locomotive
빅타레코드		Victor Records
생활 유품	生活 遺品	Daily Items
세례대	洗禮臺	Baptistry
수장	綬章	Medal of Honor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아날로그 電子計算機	Analogue Computer
유엔군사령관		UN Forces Commander
전투기	戰鬥機	Combat Plane
태극기	太極旗	Taegeukgi
학도병	學徒兵	Student Soldiers
한센인	한센人	Hansen's Disease Patients

【복식】

가사	袈裟	Monk's Outer Vestment
갑옷	甲衣	Armor
갓		Horsehair Hat
곤룡포	袞龍袍	Royal Robe
구장복	九章服	King's Ceremonial Robe with Nine Embroidered Symbols
군복	軍服	Uniform
군용 담요 코트	軍用 毯요 코트	Military Blanket Coat
금관조복	金冠朝服	Official Attire
기린홍배	麒麟胸背	Rank Badge with Girin Design
녹원삼	綠圓衫	Green Ceremonial Robe
누비저고리	縷緋저고리	Quilted Jacket
다라니주머니	陀羅尼주머니	Dharani Bag
단령	團領	Ceremonial Robe
당의	堂衣	Semi-formal Jacket
도포	道袍	Full Dress
동궁비	東宮妃	Crown Princess
면제갑옷	綿製甲옷	Cotton Armor
명주	明紬	Silk
변호사 법복	辯護士 法服	Lawyer's Robe

보	補	Insignia
복식	服飾	Clothes
상궁	尙宮	Court Lady
상복	喪服	Mourning Clothes
색복	色服	Colored Clothing
숙고사	熟庫紗	Boiled silk
양단	洋緞	Satin Brocade
양복	洋服	Western-style Suit
예복	禮服	Ceremonial Attire
오조룡	五爪龍	Five-clawed Dragon
옥색	玉色	Jade-green
옷		Clothes
왕비	王妃	Queen Consort
용문보	龍紋補	Dragon Insignia
운봉수	雲鳳繡	Embroidered Cloud and Phoenix Design
원삼	圓衫	Ceremonial Robe
원유관	遠遊冠	Crown
의대	衣帶	Clothes and Belt
의복	衣服	Clothes
익선관	翼善冠	Winged Cap
일월수	日月繡	Embroidered Sun and Moon Design
장려 깃발	獎勵 깃발	Promotion Flag
장삼	長衫	Monk's Robe
장신구류	裝身具類	Accessories
장옷		Overcoat
저고리		Jacket
저항라 적삼	紵亢羅 적삼	Loosely Woven Ramie Unlined Summer Jacket
적의	翟衣	Ceremonial Robe
적의본	翟衣本	Patterns for the Queen Consort's Ceremonial Robe
적초의	赤綃衣	Red Silk Robe
진료가운	診療가운	Hospital Gown
청석	靑烏	Blue Ceremonial Shoes
청초중단	靑綃中單	Blue Silk Inner Robe
탁의	卓衣	Monk's Mantle
토황색	土黃色	Brown
판사 법복	判事 法服	Judge's Robe
패옥	佩玉	Jade Pendant
폐슬본	蔽膝本	Patterns for Front Cloth Panel

한국광복군	韓國光復軍	Korean Liberation Army
항아	姁娥	Court Lady
향낭	香囊	Incense Bag
혈의	血衣	Blooded Clothes
혼례복	婚禮服	Wedding Dress
황원삼	黃圓衫	Yellow Ceremonial Robe
황후	皇后	Empress
회장저고리	回裝저고리	Ornamented Jacket

2. 무형유산

†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 기술 등 무형유산의 명칭에 사용된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전래 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지명에 붙은 조사는 로마자 표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2종의 국가유산을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냅니다.

[보기]

강강술래		Ganggangsullae (Circle Dance)
옥장	玉匠	Okjang (Jade Craft)
봉산탈춤	鳳山탈춤	Bongsan Talchum (Mask Dance Drama of Bongsan)
동해안별신굿	東海岸別神굿	Donghaean Byeolsingut (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
나주의 섯골나이	羅州의 섯골나이	Naju Saetgollai (Cotton Weaving of Naju)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西海岸 배연신굿 및 大同굿	Seohaean Baeyeonsingut and Daedonggut (Fishing Ritual of the West Coast)

§ 명명 요소

【음악】

가곡	歌曲	Lyric Song Cycles Accompanied by an Orchestra
가사	歌詞	Narrative Song
가야금 산조	伽倻琴散調	Free-style Gayageum Solo Music
거문고 산조	거문고散調	Free-style Geomungo Solo Music
경기민요	京畿民謠	Folk Song of Gyeonggi Area
농악	農樂	Farmers' Performance
농요	農謠	Farmers' Song
대금 산조	大笏散調	Free-style Daegeum Solo Music
대금정악	大笏正樂	Classical Daegeum Solo Music
대취타	大吹打	ClMilitary Band Music
들노래		Farmers' Song
민요	濟州民謠	Folk Song
산타령	山打令	Folk Song of the Mountain
서도소리	西道소리	Folk Song of the Western Provinces
아리랑		Arirang
종묘제례악	宗廟祭禮樂	Royal Ancestral Ritual Music in the Jongmyo Shrine

판소리		Epic Chant
피리정악	피리正樂	Classical Piri Solo
향제줄풍류	鄉制줄風流	String Ensemble
【무용】		
검무	劍舞	Sword Dance
살풀이춤		Exorcism Dance
승무	僧舞	Monk's Dance
승전무	勝戰舞	Victory Dance
처용무	處容舞	Dance of Cheoyong
태평무	太平舞	Dance of Peace
【연희】		
다시래기		Dasiraegi Play
발탈		Foot Mask Theater
별산대놀이	別山臺놀이	Mask Dance Drama
별신굿탈놀이	別神굿탈놀이	Mask Dance Drama
사자놀음	獅子놀음	Lion Mask Dance
산대놀이	山臺놀이	Mask Dance Drama
야류	野遊	Mask Dance Drama
오광대	五廣大	Mask Dance Drama
탈춤		Mask Dance Drama
【의례】		
단오제	端午祭	Dano Festival
도당굿	都堂굿	Tutelary Rite
띠벳놀이		Ttibae Boat Festival
배연신굿		Fishing Ritual
별신굿	別神굿	Village Ritual
별신제	別神祭	Village Ritua
불복장작법	佛腹藏作法	Ritual Process of Placing Objects Inside Buddhist Statues
사직대제	社稷大祭	National Rite to Gods of Earth and Grain
새남굿		Shamanic Performance
석전대제	釋奠大祭	National Rite to Confucius
소놀음굿		Shamanic Ox Performance
소놀이굿		Shamanic Ox Performance
수륙재	水陸齋	Water and Land Ceremony
씻김굿		Purification Ritual

연등회	燃燈會	Buddhist Lantern Festival
영등굿		Shamanic Performance
영산재	靈山齋	Celebration of Buddha's Sermon on Vulture Peak Mountain
종묘제례	宗廟祭禮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놀이/무예】

강강술래		Circle Dance
고싸움놀이		Loop Fight
남사당놀이	男寺黨놀이	Itinerant Troupe Performance
백중놀이	百中놀이	Baekjung Festival
쇠머리대기		Wooden Bull Fight
씨름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어방놀이	漁坊놀이	Fishing Village Festival
줄다리기		Tug-of-war
줄타기		Tightrope Walking
차전놀이	車戰놀이	Chariot Battle
택견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건축】

대목장	大木匠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번와장	翻瓦匠	Tile Roofing
제와장	製瓦匠	Roof Tile Making

【미술】

각자장	刻字匠	Calligraphic Engraving
낙죽장	烙竹匠	Bamboo Pyrography
낙화장	烙畫匠	Pyrography
단청장	丹青匠	Ornamental Painting
목조각장	木彫刻匠	Wood Sculpture
배첩장	裱貼匠	Mounting
불화장	佛畫匠	Buddhist Painting
입사장	入絲匠	Silver or Gold Inlaying
조각장	彫刻匠	Metal Engraving

【공예】

궁시장	弓矢匠	Bow and Arrow Making
궁중채화	宮中綵花	Royal Silk Flower Making
금박장	金箔匠	Gold Leaf Imprinting

금속활자장	金屬活字匠	Metal Movable Type Making
나전장	螺鈿匠	Mother-of-pearl Inlaying
두석장	豆錫匠	Metal Craft
매듭장	매듭匠	Decorative Knotting
바디		Reed
바디장	바디匠	Reed Making
백동연죽장	白銅煙竹匠	Nickel-Copper Pipe Making
사기장	沙器匠	Ceramic Making
석장	石匠	Stone Masonry
선자장	扇子匠	Fan Making
소목장	小木匠	Wood Furniture Making
소반장	小盤匠	Tray-table Making
악기장	樂器匠	Musical Instrument Making
염장	簾匠	Bamboo Blind Making
옥장	玉匠	Jade Craft
옹기장	甕器匠	Earthenware Making
완초장	莞草匠	Sedge Weaving
유기장	鍍器匠	Brassware Making
윤도장	輪圖匠	Geomantic Compass Making
자수장	刺繡匠	Embroidery
장도장	粧刀匠	Ornamental Knife Making
전통장	箭筒匠	Quiver Making
주철장	鑄鐵匠	Casting
채상장	彩箱匠	Bamboo Case Weaving
칠장	漆匠	Lacquerware Making
한지장	韓紙匠	Korean Paper Making
화각장	華角匠	Ox Horn Inlaying

【직조/복식】

갓일		Horsehair Hat Making
나이[무명짜기]		Cotton Weaving
나이[삼베짜기]		Hemp Weaving
누비장	縷緋匠	Quilting
망건장	網巾匠	Horsehair Headband Making
명주짜기	明紬짜기	Silk Weaving
모시짜기		Fine Ramie Weaving
염색장	染色匠	Natural Dyeing
침선장	針線匠	Needlework

탕건장	宕巾匠	Horsehair Hat Making
화혜장	靴鞋匠	Shoe Making

【음식】

궁중음식	宮中飲食	Royal Culinary Art
두견주	杜鵑酒	Dugyeonju Liquor
문배주	문배酒	Munbaeju Liquor
법주	法酒	Beopju Liquor

【생활문화】

김치 담그기		Kimchi Making
어살	漁箭	Fishing Weir
온돌	溫突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System
장 담그기		Korean Sauce and Paste Making
전통어로방식		Traditional Fishing
제다	製茶	Traditional Tea Making
제염	製鹽	Traditional Salt Making
해녀	海女	Women Divers

§ 사용 용례

가야금산조 및 병창	伽倻琴散調 및 併唱	Free-style Gayageum Solo Music and Singing
경기도도당굿	京畿道都堂굿	Tutelary Rite of Gyeonggi-do
남도들노래	南道들노래	Farmers' Song of Jeollanam-do
남해안별신굿	南海岸別神굿	Village Ritual of the South Coast
동해안별신굿	東海岸別神굿	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
서해안배연신굿	西海岸배연신굿	Fishing Ritual of the West Coast
선소리산타령	선소리山打令	Folk Song of the Mountain Performed in a Standing Position
아랫녘 수륙재	아랫녘 水陸齋	Water and Land Ceremony of Gyeongsang-do
조선왕조궁중음식	朝鮮王朝宮中飲食	Royal Culinary Art of the Joseon Dynasty
좌수영어방놀이	左水營漁坊놀이	Fishing Village Festival of the Left Naval Headquarters
학연화대합설무	鶴蓮花臺合設舞	Crane Dance and Lotus Flower Dance

3. 천연기념물

-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식물, 서식지, 자생지, 지형·지질, 화석산지 등의 명칭에 사용된 용어와 용례를 제시합니다.

§ 영문 명칭 표기 방법

- † 동물과 식물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영어명(English common name)으로 표기하되, 한국이 원산지이고 아직 영문명이 없는 동식물은 국문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필요한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이 동물 또는 식물의 종인 경우) 학명을 괄호 안에 표기합니다. 학명의 표기 방식은 「국제 명명 규약」을 따릅니다.

[보기]

· 두견	杜鵑	Lesser Cuckoo (<i>Cuculus poliocephalus</i>)
· 장수하늘소	將帥하늘소	Long-tailed Goral (<i>Naemorhaedus caudatus</i>)
· 긴가지해송	긴가지海松	Black Coral (<i>Antipathes lata</i>)
· 해송	海松	White Coral (<i>Antipathes japonica</i>)

- † 지역에서 부르는 별칭이나 고유한 이름이 사용된 동식물 및 지형의 이름은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 전달을 위하여 그 종류를 알게 하는 의미역 표기를 덧붙입니다.

[보기]

· 도립리 반룡송	道立里 蟠龍松	Ballyongsong Pine Tree in Dorip-ri
· 오죽헌 울곡매	江陵 烏竹軒 栗谷梅	Yulgongmae Plum of Ojukheon House
· 물장오리 오름		Muljangorioreum Volcanic Cone
· 빌레못동굴	빌레못洞窟	Billemotdonggul Lava Tube
· 성류굴	聖留窟	Seongnyugul Cave

- † 지질·지형의 장소 또는 동식물의 서식지 이름이 장소의 성격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지명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 전달을 위하여 그 종류를 알게 하는 의미역 표기를 덧붙입니다.

[보기]

·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토끼섬 文珠蘭 自生地	Natural Habitat of Poison Bulbs on Tokkiseom Island
·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白茯嶺 카르스트地帶	Karst of Baekbongnyeong Pass
·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桂承寺 白堊紀 堆積構造	Cretaceous Sedimentary Structure near Gyeseungsa Temple

§ 명명 요소

【동물 서식지/자생지】

도래지	渡來地	Sanctuary
번식지	繁殖地	Breeding Ground
서식지	棲息地	Habitat
철새 도래지	철새 渡來地	Sanctuary of Migratory Birds
회유해면	廻遊海面	Migration Site
【동물(종)】		
개구리매		Eastern Marsh Harrier (<i>Circus spilonotus</i>)
개리		Swan Goose (<i>Anser cygnoides</i>)
검독수리		Golden Eagle (<i>Aquila chrysaetos</i>)
검은머리물떼새		Eurasian Oystercatcher (<i>Haematopus ostralegus</i>)
검은목두루미		Common Crane (<i>Grus gyus</i>)
고니		Tundra Swan (<i>Cygnus columbianus</i>)
까막딱따구리		Black Woodpecker (<i>Dryocopus martius</i>)
꼬치동자개		Korean Stumpy Bullhead (<i>Pseudobagrus brevicorpus</i>)
남생이		Reeves' Turtle (<i>Chinemys reevesii</i>)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白鷺	Chinese Egret (<i>Egretta eulophotes</i>)
노랑부리저어새		Eurasian Spoonbill (<i>Platalea leucorodia</i>)
느시(들칠면조)		Great Bustard (<i>Otis tarda</i>)
독수리		Cinereous Vulture (<i>Aegypius monachus</i>)
두견	杜鵑	Lesser Cuckoo (<i>Cuculus poliocephalus</i>)
두루미		Red-crowned Crane (<i>Grus japonensis</i>)
따오기		Crested Ibis (<i>Nipponia nippon</i>)
뜸부기		Watercock (<i>Gallicrex cinerea</i>)
매		Peregrine Falcon (<i>Falco peregrinus</i>)
먹황새		Black Stork (<i>Ciconia nigra</i>)
미호종개		Miho Spine Loach (<i>Cobitis choii</i>)
반달가슴곰		Asiatic Black Bear (<i>Ursus thibetanus ussuricus</i>)
붉은박쥐(오렌지윗수염박쥐)		Korean Orange Whiskered Bat (<i>Myotis formosus tsuensis</i>)
붉은배새매		Grey Frog Hawk (<i>Accipiter soloensis</i>)
비단벌레	緋緞벌레	Jewel Beetle (<i>Chrysochroa fulgidissima</i>)
뿔쇠오리		Crested Murrelet (<i>Synthliboramphus wumizusume</i>)
사향노루	麝香노루	Musk Deer (<i>Moschus moschiferus</i>)
산골뚝나비		Sangulttuk Nabi (<i>Hippoarchia autonoe</i>)
산양	山羊	Long-tailed Goral (<i>Naemorhaedus caudatus</i>)
새매		Eurasian Sparrowhawk (<i>Accipiter nisus</i>)
소쩍새		Oriental Scops Owl (<i>Otus sunia</i>)

솔부엉이		Brown Hawk-Owl (<i>Ninox scutulata</i>)
쇠부엉이		Short-eared Owl (<i>Asio flammeus</i>)
수달		Eurasian Otter (<i>Lutra lutra</i>)
수리부엉이		Eurasian Eagle-Owl (<i>Bubo bubo</i>)
알락개구리매		Pied Harrier (<i>Circus melanoleucos</i>)
올빼미		Tawny Owl (<i>Strix aluco</i>)
원앙	鴛鴦	Mandarin Duck (<i>Aix galericulata</i>)
장수하늘소	將帥하늘소	Long-tailed Goral (<i>Naemorhaedus caudatus</i>)
재두루미		White-naped Crane (<i>Grus vipio</i>)
잣빛개구리매		Northern Harrier (<i>Circus cyaneus</i>)
저어새		Black-faced Spoonbill (<i>Platalea minor</i>)
점박이물범		Spotted Seal (<i>Phoca largha</i>)
참매		Northern Goshawk (<i>Accipiter gentilis</i>)
참수리		Steller's Sea Eagle (<i>Haliaeetus pelagicus</i>)
참부엉이		Long-eared Owl (<i>Asio otus</i>)
크낙새		White-bellied Woodpecker (<i>Dryocopus javensis</i>)
큰고니		Whooper Swan (<i>Cygnus cygnus</i>)
큰소쩍새		Collared Scops Owl (<i>Otus bakkamoena</i>)
팔색조	八色鳥	Fairy Pitta (<i>Pitta nympha</i>)
하늘다람쥐		Siberian Flying Squirrel (<i>Pteromys volans</i>)
호사도요		Greater Painted Snipe (<i>Rostratula benghalensis</i>)
호사비오리		Scaly-side Merganser (<i>Mergus squamatus</i>)
흑고니		Mute Swan (<i>Cygnus olor</i>)
황새		Oriental White Stork (<i>Ciconia boyciana</i>)
황조롱이		Common Kestrel (<i>Falco tinnunculus</i>)
흑기러기	黒기러기	Brent Goose (<i>Branta bernicla</i>)
흑두루미	黒두루미	Hooded Crane (<i>Grus monacha</i>)
흑비둘기	黒비둘기	Black Wood Pigeon (<i>Columba janthina</i>)
흰꼬리수리		White-tailed Eagle (<i>Haliaeetus albicilla</i>)

【동물】

갯벌		Tidal Flat
고니류		Tundra Swans
괭이갈매기		Black-tailed Gulls
귀신고래	鬼神고래	Gray Whales
동경이	東京이	Donggyeongi Dog
무태장어	無泰長魚	Giant Mottled Eels
물거미		Water Spiders

바다제비		Swinhoe's Storm-Petrel
바닷새류	바닷새類	Sea Birds
반딧불이		Fireflies
반딧불이와 그 먹이		Fireflies and Their Prey
백로	白鷺	Egrets
삽살개		Sapsari Dog
슴새		Streaked Shearwater
아비		Red-throated Loons
어름치		Korea Spotted Barbel
열목어	熱目魚	Manchurian Trouts
오계	烏鷄	Ogye Chicken (Gallus domesticus)
왜가리		Grey Herons
제주 흑우	濟州 黑牛	Jeju Black Cattle
제주마	濟州馬	Jeju Horse
진도개	珍島犬	Jindo Dog
칼새		Fork-tailed Swift
황쏘가리	黃쏘가리	Golden Mandarin Fish
흑돼지	黑돼지	Black Pig

【식물 서식지/자생지】

암벽식물지대	岩壁植物地帶	Rock Wall Plant Zone
자생북한지	自生北限地	Northernmost Population
자생지	自生地	Natural Habitat

【식물(종)】

긴가지해송	긴가지海松	Black Coral (Antipathes lata)
해송	海松	White Coral (Antipathes japonica)

【식물】

가침박달		Serrateleaf Pearlbush
갈참나무		Oriental White Oak
감나무		Persimmon Tree
감탕나무		Machi Tree
개느삼		Gaeneusam
개비자나무		Korean Plum-yem
개서어나무		Yeddo Hornbeam
개오동나무		Chinese Catawba
고욤나무		Date Plum

곰솔		Black Pine
굴거리나무		Macropodous Daphniphyllum
굴참나무		Cork Oak
귤나무류	橘나무류	Mandarin Orange Trees
긴잎느티나무		Long-leaf Zelkova
광광나무		Box-leaved Holly
난대림	暖帶林	Subtropical Forest
너도밤나무		Engler's Beech
녹나무		Camphor Tree
느티나무		Saw-leaf Zelkova
늪지식물		Marsh Plants
다래나무		Bower Actinidia
단풍나무		Maple Tree
담팔수	膽八樹	Elaeocarpus
동백나무	冬柏나무	Common Camellia
등나무	藤나무	Wisteria
뚝향나무	뚝향나무	Chinese Juniper Tree
망개나무		Korean Berchemia
매화	梅花	Plum
멀구슬나무		Bead Tree
모감주나무	妙敢株나무	Golden Rain Tree
모과나무		Quince
모밀잣밤나무		Cyathea Cuspidata
무궁화	無窮花	Rose of Sharon
문주란	文珠蘭	Poison Bulbs
물푸레나무		Ash Tree
미선나무	尾扇나무	White Forsythia
반송	盤松	Multi-stem Pine
밤나무		Chestnut Tree
배롱나무		Crape Myrtle
백송	白松	Lacebark Pine
병아리꽃나무		Black Jetbead
분취류	粉취類	Saussurea
불가시나무		Japanese Evergreen Oak
비술나무		Dwarf Elm
비자나무		Japanese Torreya
뽕나무		White Mulberry
사철나무		Spindle Tree

산개나리		Sangaenari
산닥나무		Diplomorpha
산돌배		Sand Pear
산돌배나무		Sand Pear
상록수림	常綠樹林	Evergreen Forest
생달나무		Japanese Cinnamon
선인장	仙人掌	Cacti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섬댕강나무		Insular Abelia
섬백리향	섬百里香	Thyme
섬잣나무		Japanese White Pine
소나무		Pine Tree
소사나무		Turczaninow Hornbeam
소태나무		Indian Quassiawood
솔송나무		Siebold Hemlock
송림	松林	Pine Forest
송악		Songak
숲		Forest
시무나무		David Hemiptelea
연산호	軟珊瑚	Soft Coral
울벚나무		Higan Cherry
왕버들		Red Leaf Willow
왕벚나무		Yoshino Cherry
왕후박나무	王厚朴나무	Machilus
원시림	原始林	Virgin Forest
은행나무	銀杏나무	Ginkgo Tree
음나무		Castor Aralia
이팝나무		Retusa Fringe Tree
전나무		Needle Fir
조각자나무	早角刺나무	Chinese Honey
주목		Spreading Yew
줄사철나무		Fortunes Creeping Spindle
참식나무		Sericeous Newlitse
처진소나무		Weeping Pine Tree
철쭉나무		Royal Azalea
청실배나무		Chinese Pear
측백나무	側柏나무	Oriental Arborvitae
탱자나무		Trifoliate Orange

털왕버들		Red Leaf Willow
파초일엽	芭蕉一葉	Spleenwort
팔손이나무		Formosa Rice Tree
팽나무		Japanese Hackberry
푸조나무		Muku Tree
한란	寒蘭	Smoothlip Cymbidium
향나무	香나무	Chinese Juniper
호두나무		Chinese Walnut
호랑가시나무		Horned Holly
항칠나무	黃漆나무	Korean Dendropanax
회양목	淮陽木	Korean Box Tree
회화나무		Pagoda Tree
후박나무	厚朴나무	Machilus

【지질/지형】

감람암포획 현무암	橄欖岩捕獲 玄武岩	Peridotite Xenolith-Bearing Basalt
구상 페페라이트	球狀 페페라이트	Orbicular Peperite
구상반려암	球狀斑竊岩	Orbicular Gabbro
구상화강암	球狀花崗岩	Orbicular Granite
구상화강편마암	球狀花崗片麻岩	Orbicular Granite Gneiss
뇌록산지	磊綠產地	Green Earth Pigment (Celadonite) Site
돌개구멍		Potholes
동굴지대	洞窟地帶	Cave Area
백악기 퇴적구조	白堊紀 堆積構造	Cretaceous Sedimentary Structure
베개용암	베개鎔巖	Pillow Lava
분화구	噴火口	Crater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화석 산지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化石 產地	Tracksite of Humans and Animals
사빈	砂濱	Sand Beach
사빈(천연비행장)	砂濱(天然飛行場)	Sand Beach (Natural Air Field)
스트로마톨라이트		Stromatolites
습곡구조	褶曲構造	Fold Structure
암괴류	岩塊流	Block Stream
용암동굴지대	熔岩洞窟地帶	Lava Tube Area
응회암	凝灰岩	Tuff
주상절리	柱狀節理	Columnar Joint
주상절리군	柱狀節理群	Columnar Joint
주상절리대	柱狀節理帶	Columnar Joint

천연비행장	天然飛行場	Natural Air Field
카르스트지대	카르스트地帶	Karst
해안단구	海岸段丘	Marine Terrace
해안사구	海岸砂丘	Coastal Dune
해안지형	海岸地形	Coastal Topography
현무암 협곡	玄武岩 峽谷	Basalt Gorge
호니토		Hornitos
홍조단괴 해변	紅藻團塊 海濱	Rhodolith Beach
화산성구조	火山性構造	Volcanogenic Structure
화산쇄설층	火山碎屑層	Pyroclastic Deposit

【천연보호구역/화석산지】

건열구조	乾裂構造	Mudcracks
공룡	恐龍	Dinosaurs
공룡알	恐龍알化石 產地	Dinosaur Eggs
공룡화석 산지	恐龍化石 產地	Dinosaur Fossil Site
나무고사리	나무고사리化石 產地	Petrified Tree Fern
늪		Wetland
발자국화석 산지	발자국化石 產地	Tracksite
백악기	白堊紀	Cretaceous
빗방울자국	빗방울자국	Rain Prints
새발자국화석 산지	새발자국化石 產地	Bird Tracksite
서귀포층	西歸浦層	Seogwipo Formation
수각류 공룡	獸脚類 恐龍	Theropod Dinosaur
익룡	翼龍	Pterosaurs
전기고생대	前期古生代 地層	Early Paleozoic Deposits
천연보호구역	天然保護區域	Natural Reserve
퇴적층	堆積層	Sedimentary Rocks
패류화석 산지	貝類化石 產地	Shell Fossils
하식지형	河蝕地形	Topography of Stream Erosion
함안층	咸安層	Haman Formation
화석 산지	化石 產地	Fossil Site

§ 사용 용례

【식물/숲 별칭】

가로숲	街路숲	Garosup Forest
-----	-----	----------------

고불매	古佛梅	Gobulmae Plum
관방제림	官防堤林	Gwanbangjerim Forest
관음송	觀音松	Gwaneumsong Pine Tree
광양읍수	光陽邑藪	Gwangyangeupsu Grove
구송	九松	Gusong Pine Tree
구포동 당숲		Village Guardian Grove in Gupo-dong
금당실 송림	金塘室 松林	Pine Forest of Geumdangsil
당송	棠松	Dangsong Pine Tree
도천숲		Docheonsup Forest
만송정 숲	萬松亭 숲	Pinewoods of Mansongjeong Pavilion
만지송	萬枝松	Manjison Pine Tree
문암송	文岩松	Munamsong Pine Tree
반룡송	蟠龍松	Ballyongsong Pine Tree
방조어부림	防潮魚付林	Windbreak Forest
부부송	夫婦松	Bubusong Pine Trees
북천수	北川藪	Bukcheonsu Grove
상림	上林	Sangnim Forest
석송령	石松靈	Seoksongnyeong Pine Tree
선암매	仙巖梅	Seonammae Plum
성밖숲	城밖숲	Seongbaksup Forest
성황림	城隍林	Tutelary Forest
수성송	守城松	Suseongsong Pine Tree
쌍향수(곱향나무)	雙香樹(곱향나무)	Pair of Chinese Juniper
오리장림	五里長林	Orijangnim Forest
울곡매	栗谷梅	Yulgongmae Plum
의암송	義巖松	Uiamsong Pine Tree
장사송	長沙松	Jangsasong Pine Tree
정이품송	正二品松	Jeongipumsong Pine Tree
천년송	千年松	Cheonnyeonsong Pine Tree
현고수(느티나무)	懸鼓樹(느티나무)	Hyeongosu (Saw-leaf Zelkova)
황목근(팽나무)	黃木根(팽나무)	Hwangmokgeun (Japanese Hackberry)
효자송	孝子松	Hyojasong Pine Tree

【지질/지형 지명】

갯바위		Gatbawi Sea Cliff and Tafoni
개인약수	開仁藥水	Gaeinyaksu Mineral Water
거문오름		Geomunoreum Volcanic Cone
고수동굴	古藪洞窟	Gosudonggul Cave
고씨굴	高氏窟	Gossigul Cave

김녕굴 및 만장굴	金寧窟 및 萬丈窟	Gimnyeonggul and Manjanggul Lava Tubes
노동동굴	蘆洞洞窟	Nodongdonggul Cave
당처물동굴	당처물洞窟	Dangcheomuldonggul Lava Tube
대림굴	大林窟	Daeringul Lava Tube
물장오리 오름		Muljangorioreum Volcanic Cone
백룡동굴	白龍洞窟	Baengnyongdonggul Cave
벵뒤굴	벵뒤窟	Bengdwigul Lava Tube
북오름굴	北오름窟	Bugoreumgul Lava Tube
분바위		Bunbawi Rock
비둘기낭 폭포	비둘기낭 瀑布	Bidulginangpokpo Falls
빌레못동굴	빌레못洞窟	Billemotdonggul Lava Tube
산호동굴	珊瑚洞窟	Sanhodonggul Cave
삼봉약수	三峰藥水	Sambongyaksu Mineral Water
섭동굴	섭洞窟	Seopdonggul Cave
성류굴	聖留窟	Seongnyugul Cave
수산동굴	水山洞窟	Susandonggul Lava Tube
얼음굴		Eoreumgol Ice Valley
오색약수	五色樂水	Osaegyaksu Mineral Water
온달동굴	溫達洞窟	Ondaldonggul Cave
용머리해안	龍머리海岸	Yongmeori Coast
용소동굴	龍沼洞窟	Yongsodonggul Cave
용천동굴	龍泉洞窟	Yongcheondonggul Lava Tube,
웃산전굴	웃山全窟	Utsanjeongul Lava Tube
천호동굴	天壺洞窟	Cheonhodonggul Cave
초당굴	草堂窟	Chodanggul Cave
콩돌해안	콩돌海岸	Kongdol Pebble Beach

【천연보호구역/화석산지】

공룡과 익룡발자국화석 산지	恐龍과 翼龍발자국化石 產地	Tracksite of Dinosaurs and Pterosaurs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恐龍발자국化石 產地	Dinosaur Tracksite
공룡알화석 산지	恐龍알化石 產地	Dinosaur Egg Site
나무고사리화석 산지	나무고사리化石 產地	Fossil Site of Petrified Tree Fern
백악기화석 산지	白堊紀化石 產地	Cretaceous Fossil Site
성산일출봉	城山日出峰	Seongsan Ilchulbong Tuff Cone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	獸脚類 恐龍알 등지 化石	Nest of Theropod Dinosaur Eggs
우포늪	牛浦 늪	Uponeup Wetland
전기고생대 지층	前期古生代 地層	Early Paleozoic Deposits
전기고생대 화석 산지	前期古生代 化石 產地	Early Paleozoic Fossil Site

[별지 5]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1]

부재 진단 시행방법 및 절차

조사 계획 수립	◆ 국가유산 주변 환경의 위험요소 및 구조적 결함요소에 대한 사전 검토 ◆ 부재 열화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기점검 등 및 훼손현황 관련 자료의 검토 ◆ 시험 장비를 활용한 비파괴 및 준파괴 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전공저항분석: 부재별 시험 위치 및 횟수, 사전 안전조치 등)
고려 사항	◆ 진단 평가를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조사 절차	부재 열화상태 진단 필요 기초조사 육안조사 재질 훼손도 생물피해 측진조사 경도 탄력 수분 타진조사 음색 판단 1차 진단 열화 추정 탄성파 시험 (응력파, 초음파) 전달속도 분석 열화 전문가 자문 전공저항 시험 내부 열화정도 분석 건전 또는 열화 열화상태 진단 건전 종합진단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안전진단기관 등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국가유산수리업자(보존과학), 안전진단기관 등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참고 사항	※ 조사 절차와 시험 결과 분석은 관련 조사·연구 자료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예시> ◆ 문화재청, 2019, 『국보, 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안전진단 추진 지침』, 12~40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석조문화재 수리기술 연구 석탑』, 244~319쪽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2022, 『목부재 비파괴 열화진단 안내서』

[별지 6]

[별표 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 분류>

구 분	업 무 내 용	비고
설계도서 검토·작성	▶ 국가유산수리 등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서 검토·승인 ▶ 국가유산 보수·정비·복원을 위한 정밀실측(기록화), 종합 정비계획 검토·승인 ▶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등을 위한 자체 설계도서 작성·검토 ▶ 지정유산 현상변경(설계승인) 검토·승인	
사업발주 및 감독	▶ 국가유산수리 등의 공사·감리 등 발주 및 감독 ▶ 국가유산수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감독	
국가유산수리 등 자문	▶ 국가유산수리 등을 위한 자문	
현장점검(안전점검)	▶ 국가유산 수리 등의 공사현장 점검 ▶ 국가유산 수리 등을 위한 실태조사(예산 및 지침) ▶ 국가유산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점검·시설의 설치·정비	
국가유산 보존처리	▶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부재(목재, 석재, 철재, 지의류 등) 보존처리 ▶ 국가유산 수리 등을 위한 재료 및 성능 분석	
수리연구·조사	▶ 국가유산 수리 등을 위한 재료, 기법, 문헌 조사·연구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 경력인정 기준>

구 분	기간인정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	100%	업무분장(부서장 확인)
국가유산수리 공사 현장근무	"	경력확인서(소속사 확인)
국가유산수리 관련 학과 졸업	50%	졸업증명서
국가유산수리 관련 해외 유학, 연수	50%	학위, 논문, 연수결과보고서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자격 소유자	100%(취득일기준)	자격증 사본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자격 소유자	50%(취득일기준)	자격증 사본

[별지 7]

[별표 1]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

국가유산수리명 : 서울 흥인지문 문루 여장 보수공사

수 리 기 간 : 2017.02.01.~2017.05.31.

해당 국가유산 :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국가유산수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수리보고서 작성비 실측조사비 과학적분석비 국가유산(유물)운송비 및 보험료 현장공개비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폐기물처리비 지급수수료 보상비 관급자재관리비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국가유산수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 국가유산수리부분의 총국가유산수리원가)×()%]				
	자문수당				

[별지 8]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Ⅰ. 국가유산 중요도	국가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시도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유형문화유산			중	
		기념물				
		시도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주변정비**						
문화유산자료			저			
Ⅱ. 국가유산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중		
	2개 이하의 공종			하		
Ⅲ. 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난이도 및 복잡성 국가유산수리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주변정비’ 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6개)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8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수장공사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국가유산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유산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0.8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국가유산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공종 : 12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추정가격 : 0.9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1. 지정유산수리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단청	· 단청	1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1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2.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석조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단청	· 단청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성곽 · 유적	유적지	· 분묘 · 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2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 · 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 · 울타리 · 배수로 · 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주 :

가. 동일 국가유산수리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국가유산수리

수리코드 : 000	
대분류	중분류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다.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라.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별지 10]

[별표 3-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5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 무경력	10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국가유산수리 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국가유산수리계획	20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지 12]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 무경력	10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 점	매 건당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 점	매 건당 △1.0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 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20 (10)	A. 200% 이상	20.0	10.0	20.0
			B. 15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주 :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2) “1)”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나.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square \text{ 평가기준 비율} = (\text{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 \text{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액}) \times 100$$

다.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라.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 산수리와 동 등이상 수리 를 수행한 환산건수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 주 :

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나.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최종 준공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sum \text{보정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frac{\text{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 기간}}{\text{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 * 보정계수 : 해당 국가유산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 등급계수 : 지정유산수리 1.2, 주변정비 1.0
- * 국가유산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3)”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 3)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실적별로 각각 제출)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1)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나) “가)”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4)”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 (3)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마.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사.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격증 1건만 인정한다.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차.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단,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 1)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4) 두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문화재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 능자로 입찰 공고일 당시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보유기능자 능력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 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Σ 경력계수 $\times$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8.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

예)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8점(= 2.0 $\times$ 10 + 1.0 $\times$ 8.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36점(=2.0 $\times$ 8 + 1.5 $\times$ 8 + 1.0 $\times$ 8)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
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
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
고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
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6개월(180일)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하되,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경력계수
로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0	A. 7년 이상	5.0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가. 수리업경력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3건 이상	0.3
		5건 이상	0.7

※ 주 :

-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해진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국가유산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

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가)”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 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 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영업정지 처분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 주 :

-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3) “최근 5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건설업’ 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이하	0.30
		40% 초과 70% 이하	0.20
		70% 초과 100% 이하	0.10

※ 주 :

- 1) 산업재해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square \text{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text{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times 100$$

- 2) 재해율 가중평균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text{ 재해율 가중평균} = [\text{최근년도 재해율} \times 0.5 + \text{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times 0.3 + \text{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 \times 0.2]$$

단,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3) 안전관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4)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 5)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 심사의 평가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 건설업의 재해율을 제시한다.
-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7) ‘최근 3년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이 발표된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입찰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나.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입찰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 주 :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바.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전문교육 이행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여부	전문교육 이수율 100% 이상	0.3
		전문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2
		전문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1

※ 주 :

1) 전문교육 이수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최근 5년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입찰자 소속 보유기술자 수}}{\text{입찰자 소속 보유기술자 수}} \times 100$$

2) 전문교육 이행실태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나)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 기술자 각각 제출)

* 전문교육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말한다.

* 교육수료증이란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 등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최근 5년간’이란 해당 전문교육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5) ‘보유기술자’란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자산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입찰자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text{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times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 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제시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별지 15]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입찰 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25.00	25.00	32.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만	26.25	26.25	34.00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만	27.50	27.50	36.00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만	28.75	28.75	38.0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29.00	29.00	38.25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 주 :

가.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 입찰가격 평가기준 =

$$\frac{\text{해당 투찰금액}}{\text{제9조제2항에 따른 균형가격}} \times 100$$

[별지 16]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20

※ 주 :

가.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국가유산 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중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 우(4.5), 미(4.0), 양(3.5), 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5), 우(4.5), 미(4.0), 양(3.5), 가(3.0)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국가유산수리 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 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 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 우(3.6), 미(3.2), 양(2.8), 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수(4), 우(3.6), 미(3.2), 양(2.8), 가(2.4)
현장공개 계획(2)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 우(1.8), 미(1.6), 양(1.4), 가(1.2)
합계		20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문화재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나. 감점대상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 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18]

[별표 10]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총괄	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실적	4	가.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5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다.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6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수리업경력	7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수리지역 전문성	8	가.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영업정지 처분	9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2 서식
안전관리	10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 이행실태	11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영상태	12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국가유산수리 계획	13	국가유산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14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별지 19]

[별표 11]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 유의사항

- 0 심사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0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0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0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0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0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0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심사점수로 합니다.
- 0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0 심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0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0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0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잘못된 부분은 심사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0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0 심사 종료 후 본인의 심사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 공지사항

- 0 오늘 참석하신 심사위원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번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0 위 내용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공고번호	
국가유산수리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종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 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 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1부. 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1부.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1. 대상 국가유산수리

공고번호	0000000000-00	입찰일시	0000-00-00
국가유산수리명	0000 보수정비		

2. 종합점수(입찰가격, 국가유산수리계획 제외)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전문교육 이행실태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	자산 및 유동비율		
계약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 계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I (대표자)	구성원 II	구성원 III
회 사 명	0000	0000	해당없음
대 표 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이행방식	공동이행	공동이행	
이행내용	대응전 보수	목부재 보존처리	
시공비율	65%	35%	
국가유산수리업 종류	보수단청	보존과학	
등록번호 및 등록일	00	00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	
FAX번호	000-000-0000	000-000-0000	
작 성 자	김 입 찰	박 입 찰	

4. 기타(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합계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수리건수	25건	10건		
	수리금액	000,000 천원	000,000 천원	천원	천원
평가기준		$\frac{\text{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text{합산금액}} \times 100$			%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배치 기술자 능력

구분		연 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최근 5년간 해당 국가 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인 국가유산 수리를 수 행한 실적	보수 제000호 홍길동 2015.00.00	1	○○○ 보수	1141	000,000	00	0
		2	○○○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3					
		4					
		5					
		6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이 름 입사일	1					
		2					
		3					
		4					
		5					
		6					
평가기준		Σ 보정계수×등급계수× $\frac{\text{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text{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건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sum$ 경력계수 $\times$ 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sum$ 경력계수 $\times$ 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sum$ 평가점수		$\sum$ 구성원별 평가점수 $\times$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2) 보유 기능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능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sum$ 경력계수 $\times$ 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sum$ 경력계수 $\times$ 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sum$ 평가점수		$\sum$ 구성원별 평가점수 $\times$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4. 수리업경력 심사

구 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국가유산수리 업 영위기간	등록일			
	시공비율			
평가점수	1. 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2. 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Σ 평가점수 $\times$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

구 분	연 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시공자	수리기간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의 소재지와 동 일한 지역에서 동 등이상 국가유 산 수리 실적	1					
	2					
	3					
	4					
	5					
평가기준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건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실적건별 제출)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

2) 영업정지 처분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3) 안전관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최근년도			
	최근년도 1년전			
	최근년도 2년전			
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A)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B)				
평가기준 = A / 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산업재해율 확인서 각 1부.		

4) 공동수급체 구성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5) 전문교육 이행실태

구 분		연 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전문교육 이수일	
입찰공고 일 당시 6 개월 이 상 근무 한 입찰 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 간 전문 교육 이수 여부	구성원 I (시공비율 %)	1	홍길동	보수	125	2016.02.16~20	
		2	홍이동	보수	135	해당없음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평가점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평가점수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2.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6. 경영상태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자기자본비율	입찰자 평균자기자본비율(A)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평가기준 = A/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유동비율	입찰자 평균유동비율 (C)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평가기준 = C/D			
	평가점수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앞 쪽)

I . 일반적인 사항				수리 코드	
수리명				발주기관 (발 주 자)	
수리위치					
수리업체 (대 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국가유산수리 기준작성)	계약일자		수리금액 (준공금액)	천원	
	착공일자				
	준공일자		수리기간 (일)	일	
수리 구분	지정번호	보물 제1호	국가유산명	서울 흥인지문	
	지정유산 수리[], 주변정비[]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해당란에 ○표				

II .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구 성 원 I (대표)	구 성 원 II	구 성 원 III
회 사 명			
대 표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공동도급 규모 및 내용			
수리 금액	천원	천원	천원

III . 배치 기술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구 분	기 술 자 I	기 술 자 II	기 술 자 III
배치 기술자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 치 기 간			
배 치 일 수	일	일	일

(뒷 쪽)

Ⅳ.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구 분	하도급자 Ⅰ	하도급자 Ⅱ	하도급자 Ⅲ
회 사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 금액	천원	천원	천원

Ⅴ. 붙임

-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

영업 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 사 명(또는 당시 소속 업체 명):

대 표 자명 (또는 신청 기술자 명): (서명 또는 인)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경유

감독관(감독부서): (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 주 :

- 1) 수리코드는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 2) 수리구분
가. 지정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나.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4)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 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7)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 8) 실적에 관련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구 분	소 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비 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연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1	보수	251	홍길동	1970.02.08	2010.03.08	2012.01.01	

[illegible]

이름
성명
성명

제 출 자 주 소 :
회사명(수리업 종류 : 00유산(보수단청업 제01-12-0001호)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발급기관명 직인

1) 입사일, 퇴사일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의 일자를 명기

[별지 26]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5년간)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연번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수	처분권자	비고
1	영업정지	2015.05.01. ~ 201 5.05.30	30일	서울특별시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발 급 기 관 경 직 인

※ 주 :

1) “최근 5년간” 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 국가유산수리명 :

□ 업 체 명 :

□ 평 가 위 원 :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가 점수
			수	우	미	양	가	
1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	5.0	4.5	4.0	3.5	3.0	
2 수리방법의 적정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5	5.0	4.5	4.0	3.5	3.0	
3 전통기법의 발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4	4.0	3.6	3.2	2.8	2.4	
4 현장관리 의 적정성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4	4.0	3.6	3.2	2.8	2.4	
5 현장공개 계획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1.4	1.0	
합 계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 입찰자 :

☐ 평가점수

평가부문	심사위원				비고
	A	B	C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방법의 적정성					
전통기법의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획					
합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 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31]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수리명					
입찰자		대표자		소재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소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소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붙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1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예시)

1. 국가유산수리 개요
 - 1.1 국가유산수리명
 - 1.2 사업개요
 - 1.2.1 사업목적
 - 1.2.2 사업내용
 - 1.2.3 사업위치
 - 1.3 공종
 - 1.3.1 국가유산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 1.3.2 국가유산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 2.1
 - 2.1.1
 - 2.1.2
 - 2.2
 - 2.3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3.1
 - 3.1.1
 - 3.1.2
 - 3.2
 - 3.3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 4.1
 - 4.1.1
 - 4.1.2
 - 4.2
 -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5.1
 - 5.1.1
 - 5.1.2
 - 5.2
 - 5.3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 6.1
 - 6.2
7. 기타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문서편집

가. 각 심사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건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1.1. 국가유산수리명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1.2.1. 사업목적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다. 문서 편집

1)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 297mm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3) 줄간격 : 160%

4) 글씨색상 : 흑색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라. 표지 작성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

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2>를 이용하여 작성

마. 제출서류의 목록

-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 2) 국가유산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
-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가. 재질

-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m²
- 2) 본문 : 백상지 80g/m², 양면 인쇄
-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 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나.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입찰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다.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라.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시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 ○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2
9
7
m
m

v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begin{array}{c} \uparrow \\ \text{297 m} \\ \downarrow \end{array}$$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

1.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 합동분과위원회 심의사항

- 가. 국가지정유산(보호물 ·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단, 문화재청장이 설계 검토,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시행하는 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 등 문화재청 예산지원 사업은 제외하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포함)
 - 국가지정유산(보호물·보호구역 포함)내에서 폭죽 또는 화기를 사용하는 행사
 - * 화기사용 행사는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외
-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신규작성 및 조정)
- 다. 문화유산 보존·정비·관리 계획
-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및 허용기준 미작성 지역내 행위)
 -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 · 관리 ·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문화유산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소위원회 미 운영분과는 분과위원회 심의)

-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및 허용기준 미작성 지역)
 - 1구역(개별심의 구역) 내에서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17m이상의 건축물 · 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200m~500m 이내 지역에서 32m이상의 건축물 · 시설물의 설치·증설 행위
 - 자체처리 사항 중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17m미만의 건축물 · 시설물 설치·증설 및 200m~500m 이내 지역에서 32m 미만의 건축물 · 시설물 설치·증설은 자체처리 후 문화유산위원회 보고(필요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나. 소음·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악취, 빛 등을 방출하는 행위(폭죽 또는 화기를 사용하는 행사 포함)
 - * 화기사용 행사는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외
 -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굴착, 토지, 임야의 형질변경 등(「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제외)
 - 라.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행위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구성권자 : 산림청장(산불방지과장)

분 야 별	구성 요건
지 휘	산불진화지휘 등에 참여한 지역 산불진화 전문가
진 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팀장 등 진화경험이 많은 자
기 상	기상청 등에 근무하는 기상 전문가
항 공	진화헬기 운영 등을 위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
연 구	산불확산예측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통 신	통신망 확보·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통신업체 관계자
국 가 유 산	국가유산관리 전문가 또는 문화재청의 관계자
기 타	산악·주요시설물 등 지역정보에 밝은 지역 주민

- 운영
 - 운영시기 :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
 - 운영방법 : 분야별 전문가(유관기관) 소집 통보 후 현장자문

2. 주요임무 및 활동

- 산불현장의 분야별 각종 정보 수집·분석 및 자료의 제공
 -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 및 예보자료, 지형 정보 등
- 산불상황의 관리 및 현장진화 지휘, 진화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현장진화 지휘의 조언 및 진화계획 수립 자문
- 투입 진화자원의 편성·운영 및 안전진화에 대한 관리
 - 산불진행 지역의 위험적 요소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개발제한구역내의</u> <u>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 <u>설립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 구역 내 <u>국가무형문화재</u> 전수교 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무형 <u>문화재</u>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한 다)」 제37조제2항·제3항에 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 기준)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에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에는 법 제37조 제2 항의 <u>무형문화재</u>의 전승·교육·	<u>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u> <u>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 ----- <u>국가무형유산</u> ----- ----- ----- ----- ----- -----. 제2조(적용대상) -- 규정은 「무형 <u>유산의</u>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 다)」 제37조제2항·제3항----- ----- ----- -----. 제3조(시설 기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u>무형유산</u>-----

공연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교육·체험 공간, 사무실, 전시관, 공연장, 휴게실, 물품보관실, 교육생 기숙시설, 구내식당, 위생 시설, 화재·도난방지 시설 등을 갖추 수 있다. ③ 전수교육관은 2항에 따른 <u>무형문화재</u>의 기능 이외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4조(시설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의 주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문화재단 또는 <u>무형문화재</u> 전승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 ----- ----- ----- -----. ③ ----- <u>무형유산</u>----- ----- ----- ----- -----. 제4조(시설의 관리) ----- ----- ----- ----- ----- <u>무형유산</u> ----- ----- -----.
--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전문가 의견) ① (생략)	제6조(전문가 의견)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단은 <u>문화재</u> ,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u>국가유산</u>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u> 제1조(목적) 이 지침은 <u>문화재보호법 제53조</u>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u>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u>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u>문화재를 이해</u>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u>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한다.</u> 제3조(일반 원칙) <u>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u>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 명칭은 그 <u>문화재의 가치와 특징</u>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한글의 표현이 <u>국가등록문화재의 의미</u>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u> 제1조(목적)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u> ----- <u>문화유산의</u> ----- ----- 문 <u>화유산을</u> ----- -----. 제2조(적용 범위)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u> 제3조(일반 원칙) <u>국가등록문화유산</u>----- -----. ① ----- <u>문화유산</u>-----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국가등록문화유산</u>----- -----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

⑤ ~ ⑧ (생략)

⑨ 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

⑩ (생략)

제4조(국가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 국가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등록 명칭은 「소재지 + 고유 명칭」으로 한다.

가. (생략)

나. 고유 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나,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등 리·동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

-- 국가등록문화유산-----

-----.

⑩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 국가등록문화유산-----
-----.

① -----

1. 국가등록문화유산-----
-----.

가. (현행과 같음)

나. -----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명칭」으로 한다.

다. ~ 마. (생략)

2. 고유 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3. 고유 명칭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문화재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4. 가옥 등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건축적 형식이나 특징, 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

② (생략)

제5조(등록 명칭의 변경)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생략)

② 등록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

+ 리·동(마을) + 문화유산 명칭-----.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 문화유산-----

-----.

3. -----
----- 문화유산의 명칭-----
----- 문화유산의 특징 -----

-----.

4. ----- 국가등록문화유산-----

----- 문화유산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 명칭의 변경) 국가등록문화유산-----

-----.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문화재</u>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u>국가등록문화재</u>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4조에 따라 부여한 <u>국가등록문화재</u>의 명칭이 해당 <u>문화재</u>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u>문화재위원회</u>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 <u>문화유산</u>----- ----- ----- ----- ----- -----. ③ <u>국가등록문화유산</u>----- ----- ----- ----- ----- -----. 제6조(기타) ----- <u>국가등록문화유산</u>----- <u>문화유산</u> 특성----- ----- <u>문화유산위원회</u>----- -----.
--	--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현행	개정안
<u>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u>	<u>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u>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u>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u>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u>문화재</u>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u>국가민속문화유산</u>----- ----- ----- ---- <u>문화유산을</u> ----- -----.
제2조(적용 범위)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가옥 등의 건조물 <u>문화재</u>의 명칭 부여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 ----- ---- <u>문화유산의</u> ----- -----.
제3조(일반 원칙) <u>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u>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 (생략) ② <u>국가민속문화재</u>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소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제3조(일반 원칙) <u>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u>----- ----- -----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민속문화유산</u> ----- ----- -----.

③ ~ ⑤ (생략)

제4조(지정 명칭 부여 원칙) 국가 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 명칭 부여 원칙은 아래와 같다.

① ~ ④ (생략)

⑤ ‘소재지’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을 사용한다. 다만 문화재가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리·동을 함께 쓸 수 있다.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는 시·도를 사용한다. 다만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재가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군·구를 함께 쓸 수 있다.

3. 4. (생략)

제5조(지정 명칭 변경) 국가지정 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의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생략)

② 지정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한 변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지정 명칭 부여 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 --- 문화유산이 ---
-----.

2. -----
-----, ---

----- 문화유산이 -----
-----.

3.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정 명칭 변경) 국가지정 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하지 않는다. 다만, <u>문화재</u> 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 명칭 을 사용하지 않으면 혼란이 우 려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역 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 . ----- <u>문화유산</u> ----- -----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기타) 제4조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u>문화재</u> 특성과 역 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u>문화</u> <u>재위원회</u> 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기타) ----- ----- <u>문화유산</u> 특성----- ----- ----- <u>문화</u> <u>유산위원회</u> ----- ----- .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u>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지정 <u>문화재(동산)</u>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동산문화재</u>"란 <u>문화재보호법 제2조</u>에서 정의한 유형의 <u>문화재</u>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류 등과 같이 보관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u>국가지정 문화재</u>를 말한다. 2. "<u>문화재명</u>"이란 <u>문화재</u>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u>문화재명칭</u>을 말한다. 3. "<u>소장처</u>"란 당해 <u>문화재가</u> 문화재청에 신고되어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u>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u> 제1조(목적) ----- <u>문화유산</u>----- ----- ----- -----. 제2조(정의) ----- -----. 1. "<u>동산문화유산</u>"이란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u>----- <u>문화유산</u> 중 ----- ----- ----- <u>국가지정문화유산을</u> ----. 2. "<u>문화유산명</u>"이란 <u>문화유산</u>----- <u>문화유산명칭</u>-----. 3. ----- <u>문화유산이</u> ----- ----- -----.

4. "수리내용"이란 세척, 보존처리, 칠, 배접, 도금(개금) 등 당해 <u>문화재</u>를 직접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리자"란 당해 <u>동산문화재</u>의 수리를 담당하는 <u>문화재수리기술자</u>, <u>문화재수리기능자</u> 또는 <u>문화재수리업자</u> 등을 말한다. 6. 7.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 지정 <u>동산문화재</u>의 보존처리 및 복제·영인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수리기 내용) ① 수리기에 는 <u>문화재명</u>, 소장처, 수리내용, 수리기간, 수리자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수리의 크기는 유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제작한다. ② <u>문화재명</u>은 <u>문화재</u>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별(국보 또는 보물) 및 지정번호, 명칭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③ (생략) ④ 소장처는 <u>문화재</u>를 보관하고 있는 시·군·구·동(리) 지번,	4. ----- ----- -- <u>문화유산을</u> ----- -----. 5. ----- <u>동산문화유산</u>----- <u>국가유산</u> <u>수리기술자</u>, <u>국가유산수리기능자</u> 또는 <u>국가유산수리업자</u> --. 6.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 <u>동산문화유산</u>----- ----- -----. 제4조(수리기 내용) ① ----- -- <u>문화유산명</u>----- ----- ----- ----- -----. ② <u>문화유산명</u>은 <u>문화유산</u>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문화유산을</u> ----- -----
--	---

소유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 및 관리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를 명확히 기재한다.

⑤ (생략)

⑥ 수리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 등 수리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실명(實名)을 기재한다.

⑦·⑧ (생략)

⑨ 기타 해당 문화재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동산문화재의 수리기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생략)

제6조(표기방법) ① (생략)

②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등 문화재의 성질이 지류인 경우, 수리기는 한지(韓紙)로 하고 묵서(墨書)로 한다.

③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 문화유산 -----

-----.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동산문화유산-----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표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문화유산-----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리자의 의무) <u>동산문화재</u> 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자는 제4조의 수리 내용을 정확히 작 성하여 적당한 위치에 부착 또 는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7조(수리자의 의무) <u>동산문화유</u> <u>산을</u> ----- ----- ----- ----- -----.
제8조(수리기의 부착방법) 수리기 의 부착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해 서는 당해 <u>문화재</u> 의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 한다.	제8조(수리기의 부착방법) ----- ----- ----- <u>문화유산</u> -----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u> 제1조(목적) <u>문화재보호법</u>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u>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u>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u>문화재</u>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u>유형문화재</u> 중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u>문화재</u>의 명칭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공통적인 부여원칙) <u>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u>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 1. <u>문화재(문화재명)</u>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u>문화재</u>에 부	<u>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u> 제1조(목적)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제23조 ----- <u>국가지정문화유산</u> ----- ----- <u>문화유산을</u> -----. 제2조(적용범위) <u>유형문화유산</u> ----- <u>문화유산</u> -----. 제3조(공통적인 부여원칙) <u>국가지정문화유산</u>----- -----. ① -----. 1. <u>문화유산(문화유산명)</u> ----- <u>문화유산에</u> -

여한다.

2. 고유명사(문화재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재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3. 시·도, 시·군·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4. 시·도, 시·군·구 + 고유명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5. 시·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도, 시·군·구와 리·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②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

-----.

2. -----문화유산명-----
----- 문화유산 : -----

----- 문화유산에 -----
--.

3. ----- 문화유산 : -----

-- 문화유산에 -----.

4. -----
--- 문화유산 : -----

----- 문화유산에 -----.

5. -----
----- 문화유산 : -----

----- 문화유산에 -----.

② -----

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재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 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

③ (생략)

④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⑧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⑨ 문화재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⑩ 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

⑪ 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 문화유산-----

③ (현행과 같음)

④ -----

----- 문화유산-----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문화유산 -----

⑨ 문화유산명칭 -----

--- 문화유산의 -----

⑩ -----

--- 문화유산 -----

⑪ -----

유형의 문화재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제4조(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명칭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목조문화재

1. (생략)
2. 지정명칭에 지역명이 대상문화재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칭은 생략한다.

② 석조문화재

1. ~ 3. (생략)
4. 원 위치가 고증(발굴 등)에 의하여 밝혀진 문화재는 원래의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5. · 6. (생략)
7. 원 지역명과 현재의 지역명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

----- 문화유산 -----

--.

제4조(건조물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

--- 문화유산 -----
-----.

① 목조문화유산

1. (현행과 같음)
2. ----- 대상문화유산 -----

--.

② 석조문화유산

1. ~ 3. (현행과 같음)
4. -----
----- 문화유산은 -----

-----.
5. · 6. (현행과 같음)
7. -----

----- 문화유산 -----

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8. 사찰 등의 고유명사가 붙지 않는 <u>문화재</u>는 원칙적으로 “리(동)”을 <u>문화재명</u> 앞에 부여한다. 다만, 석빙고 등은 시·군을 <u>문화재명</u> 앞에 부여할 수 있다. 9. 사지 등에 동일한 유형의 <u>문화재</u>(<u>석탑</u> 등)가 2개 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u>문화재명</u> 앞에 동·서·남·북 네 방위와 사방위의 중심이 되는 한 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을 명시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10. 사찰 등 건물지역 내에 위치한 <u>문화재</u>(<u>석등</u> 등)의 경우 <u>문화재명</u> 앞에 주요 건물 등의 명칭을 붙이고 앞, 뒤를 표기하여 부여할 수 있다. 11. (생략)	----- --. 8. ----- -- <u>문화유산</u>은 ----- ----- <u>문화유산명</u> ----- -----. ----- <u>문화유산명</u> ----- -----. 9. ----- <u>문화유산</u>(<u>석탑</u> 등)이 ----- ----- <u>문화유산명</u> ----- ----- ----- -----. 10. ----- -- <u>문화유산</u>----- <u>문화유산명</u> ----- ----- -----. 11. (현행과 같음)
--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u>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 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의 국 내외 소재 <u>중요문화재</u>의 긴급매 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 서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 <u>문화재</u>(이하 "긴급매입 문 화재"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u>문화재</u>로 다음 각 목에 <u>해당하는 문화재</u> 가. 국내에서 경매되는 <u>문화 재</u>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국외로 유출·반출 가능성 이 <u>있는 문화재</u> 나. 개인·법인 등 소유자가 국가에 매입을 청구한 것 으로 매입을 하지 않을 경	<u>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u> 제1조(목적) ----- 「국가유 산보호기금법」 제5조 ----- ----- <u>중요 문화유산</u>-----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 ---- <u>문화유산</u>(이하 "긴급매입 문화유산"이-----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 -- <u>문화유산</u>으로 ----- <u>해당하는 문화유산</u> 가. ----- <u>문화유 산</u>으로 ----- ----- - <u>있는 문화유산</u> 나. ----- ----- -----

우 유실·분실·훼손·철거 위험에 있는 문화재

다. 국가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재

라. 국내외 경매에 나온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재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마. 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문화재청에 매입을 건의한 문화재

바.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을 결정한 문화재

사. 경매 외의 방식으로 매입이 가능한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재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아. 부동산 형태의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재 중 철거 또는 훼손될 위험성이 있거나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문화재

자. 기타 문화재청장이 긴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가

----- 문화유산

다. -----

----- 문화유산

라. -----

----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적 -- 높은 문화유산

마. -----

----- 건의한 문화유산

바.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을 결정한 문화유산

사. -----

-----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적 -- 높은 문화유산

아. -----

국외소재문화유산 -----

높은 문화유산

자. -----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2.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향후 문화재로 보호될 가치가 높은 동산 또는 부동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 가. ~ 다. (생략) ② 삭제 ③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비"(이하 "문화재 긴급매입비"라 한다.)라 함은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 용도로 편성된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말한다. ④ (생략) ⑤ "민간대행사업자"라 함은 문화재청의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사업을 문화재청을 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원칙) 문화재청장은 긴급매입 중	----- 인정하는 문화유산 2. ----- ----- 문화유산으-----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 문화유산 긴급매입비"(이하 "문화유산 ----- 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시행령』 제4조 ----- 국가유산보호기금 용도-----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를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문화유산 긴급매입 ----- -----. 제3조(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원칙) -----
---	--

요 문화재를 매입하는 경우 공
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
다.

제2장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제4조(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
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고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
화재청에 ‘문화재 긴급매입 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운영한다.

1. 국내외 공개 경매 문화재 매
입여부
2. 개인, 법인 등 문화재 소유자
가 매입을 요구한 문화재 매
입여부
3. 매입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
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
화재 매입여부
4. 매입 필요성이 제기 된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재 매입여
부
5. 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전
문가 등이 매입을 건의한 문
화재 매입여부
6.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내외

-- 문화유산을 -----

--.

제2장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제4조(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
원회) ① -----
----- 문화유산 긴급매입
을 -----
----- ‘문화유산 -----

-----.

1. ----- 문화유산 -

2. ----- 문화유산 소유자
----- 문화유산 매
입여부
3. -----
----- 문
화유산 -----
4. -----
-- 국외소재문화유산 -----
--
5. -----
----- 문
화유산 -----
6. -----

<u>문화재</u> 긴급매입 제한 여부 7. (생략) 8. 국내 또는 <u>국외소재문화재</u> 매매계약 상한가격 9.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 위원은 매입 <u>문화재</u> 관련 외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는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u>문화재</u>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u>문화재</u>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관광·법률·종교·언론·부동산·경매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u>문화재</u>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u>문화유산</u> ----- 7. (현행과 같음) 8. ----- <u>국외소재문화유산</u>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문화유산</u> 관련 ----- ----- ----- ----- -----. -----. 1. ----- --- <u>문화유산</u> ----- ----- ----- 2. <u>문화유산</u>----- ----- ----- 3. ----- ----- ----- <u>문화유산</u>----- -----
---	--

4. <u>국외문화재</u> 긴급매입 관련 유관기관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9조(심의의결) ① 긴급매입 <u>문 화재</u> 가치여부를 "상" · "중" · " 하"로 표시하며 매입 가치에 대 하여 출석 위원 중 1명이라도 " 하"가 있으면 매입 대상에서 제 외한다. ② (생략) 제11조(간사 등) ① (생략) ② 간사는 <u>해당문화재</u> 매입 소 관부서장이 담당하고, 서기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담 당한다. ③ (생략) 제12조(수당과 여비) ① 문화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u>문화재위원회의</u>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u>문화재</u>에 대한 가치 조사 등 을 위하여 선정한 위원 또는 전 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현지 조사 등에 소요 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u>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u>	4. <u>국외문화유산</u> ----- ----- ----- 제9조(심의의결) ① ----- <u>문화 유산</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해당문화유산</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과 여비) ① ----- ----- ----- <u>문화유산위원회</u> ----- -----. ② <u>문화유산</u>----- ----- ----- ----- -----. 제13조(<u>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u>
---	---

긴급매입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긴급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매입 문화재의 매입여부, 경매 응찰 상한가격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제14조에 따른 긴급매입사무 대행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는 『국가재정법』 제80조, 「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민간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다.

③ 삭 제

④ (생략)

제14조(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①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산 긴급매입 절차) ① -----

----- 문화유산 -----

② ----- 문화유산 -----

③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① ----- 문화유산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 국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u>문화재 보존·관리</u> 및 활용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단체 5.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긴급매입 <u>대상 문화재</u>의 매입 및 정비사업 추진에 적합한 단체 제15조(<u>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재산소유권 등</u>) ① <u>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비</u>로 매입한 <u>문화재</u>는 『<u>문화재보호법</u>』 제62조에 따른 <u>국유 문화재</u>로 관리한다. ② 긴급매입 <u>문화재</u>를 취득하는 경우 『<u>국유재산법</u>』 제14조(등기·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u>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u>) ① <u>문화재 구입</u>에 관한 별도의 규정(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규정	<u>소재문화유산재단</u> 4. ----- ----- ----- <u>문화유산 보존·관리</u> ----- ----- 5. ----- ----- <u>대상 문화유산</u>----- ----- 제15조(<u>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 매입 재산소유권 등</u>) ① ----- <u>문화유산 긴급 매입비</u>----- <u>문화유산</u>은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제62조에 따른 <u>국유 문화유산</u>-----. ② ----- <u>문화유산을</u> ----- ----- ----- ----- -----. 제16조(<u>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u>) ① <u>문화유산 구입</u>----- -----
--	--

등)이나 지침에 따라,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과" 단위를 포함한다), 문화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국내외 소재 중요 <u>문화재 긴급매입비</u>를 사용할 수 있다.	----- ----- ----- ----- ----- <u>문화유산 긴급매입비</u>----- ---
--	---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기록하고, 복원·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 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 ----- ----- ----- ----- -----.
제3조 (기본원칙) ① ~ ③ (생략) ④ 단청 기록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한다. 1. ~ 5. (생략) 6. <u>문화재로</u> 새로이 지정된 건축물로 단청이 남아 있는 경우와 <u>문화재적</u>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3조 (기본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u>문화유산으로</u> ----- ----- -- <u>문화유산적</u> ----- -----.
제5조 (추진체계) ① (생략) ② 단청 기록화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u>문화재위원회</u> 및 <u>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u> 위원과 단청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제5조 (추진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문화유산위원회</u> 및 <u>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u> 제1조(목적) 이 예규는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 제1호 가·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u> 제1조(목적) -----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제58조----- ----- ----- ----- -----.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제58조----- ----- ----- -----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u>	<u>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u>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u>문화유산</u>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 <u>국가유산</u>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2장 <u>문화유산보호유공 포상</u>	제2장 <u>국가유산보호유공 포상</u>
제5조(포상대상) ①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u>문화유산</u> 보호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포상대상) ① ----- ----- <u>국가유산</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종류 및 기준 등) ① 문화재청장은 상훈법 등에 의거 <u>문화유산</u> 보존·관리·활용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정하고 그 공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훈격을 관계기관에 추천한다.	제6조(포상종류 및 기준 등) ① ----- ----- <u>국가유산</u> ----- ----- ----- -----.
②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골고루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 ----- ----- -----.

1. 보존·관리 부문 : <u>문화재</u>의 원형보존·관리와 <u>문화재</u>의 훼손·멸실 예방, 보호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2. 학술·연구 부문 : <u>문화재</u>의 <u>학술적</u> 과학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u>문화재</u>의 보존, 관리, 활용, 홍보,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3. 봉사·활용 부문 : <u>문화유산</u> <u>현장에서의</u> 각종 봉사활동과 <u>문화재</u>의 활용·홍보 및 <u>문화재</u> 관련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③·④ (생략) 제9조(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매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u>문화재</u>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u>문화재</u>의 보존·관리 및 활	1. ----- <u>국가유산</u>의 원형보존·관리와 <u>국가유산</u>----- ----- ----- 2. ----- <u>국가유산</u>의 <u>학술적</u> ----- ----- <u>국가유산</u>의 <u>보존</u>----- ----- 3. ----- : <u>국가유산</u> <u>현장에서의</u> ----- ----- <u>국가유산</u>의 ----- <u>국가유산</u> <u>관련</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u>국가유산</u>----- ----- ----- 2. <u>국가유산</u>-----
--	---

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 계획·관광·환경·법률·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u>문화재</u>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 ----- ----- ----- <u>국가유산</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추천위원회는 <u>문화재</u>의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등의 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포상대상자를 각 부문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 ----- <u>국가유산</u>의 ----- ----- ----- ----- ----- -----.
제1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제1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매년 위촉한다.	② -----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u>문화재</u>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1. ----- ----- <u>국가유산</u>----- ----- ----- -----
2. <u>문화재</u>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	2. <u>국가유산</u>----- -----

상 종사한 자 3. 인류학 · 사회학 · 건축 · 도시 계획 · 관광 · 환경 · 법률 · 언 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u>문화재</u>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 ④ (생 략)	----- 3. ----- ----- ----- ----- <u>국가유산</u>-----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u>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u>문화재</u>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u>국가등록문화재</u>를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동 지침은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u>문화재</u>의 소유자 등이 국가등록 신청한 <u>문화재</u>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u>문화재</u>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문화재</u>는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되어, 등록 신청일 현재 50년 이상이 지난 근현대 시기의 <u>문화재</u>를 말한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급격한 환경변화나 개발 등으로 멸실·훼손 우려가 있거나,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u>국가등록문화재</u> 등	<u>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u>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u>문화유산</u>에 ----- ----- -- <u>국가등록문화유산을</u> ----- -----. 제2조(적용대상) ① ----- ----- <u>문화유산</u>의 ----- <u>문화유산과</u> ----- ----- <u>문화유산을</u> -----. ② ----- <u>문화유산은</u> ---- ----- ----- ----- <u>문화유산을</u> ----- -----. ----- ----- ----- <u>국가등록문화유산</u> -

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항기 전에 건설·제작·형성되었다라도 개항기 이후 계속해서 한 국민속의 기본적 생활문화 특색이 나타나는 민속문화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국가등록 대상 문화재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절차)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 대상 문화재에 대한 조사 요청받은 전문가는 동 지침의 등록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통기준) ①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 문화유산이 역사·문화·예술·사회·정치·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다음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어느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제5호에 따른 가치를 충족하여

-----.

③ -----

----- 민속문화유산을 -----
-----.

④ ----- 문화유산은 -----

-----.

제3조(적용절차) -----

----- 문화유산에 -----

-----.

제4조(공통기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

야 한다.

1. ~ 4. (생략)

5. 원형유지 및 회소성

대상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회소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3.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문화재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

제6조(반복 또는 다량 제작·형성된 문화재) ① 인쇄·출판, 산업·과학 분야의 기술 발달 또는 외래 기술의 도입 등으로 반복 또는 다량 제작·생산·형성된

-----.

1. ~ 4. (현행과 같음)

5. -----

-- 문화유산이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문화유산적 -----

3. -----

문화유산-----

4. ----- 문화유산적 -----

---- 문화유산 등록-----

제6조(반복 또는 다량 제작·형성된 문화유산) ① -----

문화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등록 대상으로 한다.

1. (생략)
2. 산업·과학 분야 제품, 기계, 시설 등과 관련된 경우

가. (생략)

나. 국내에서 자체 생산·제조한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되어 산업 및 과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상징성이 있는 제품·기계·시설 등

다·라. (생략)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르더라도 동일·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문화재가 박물관, 도서관 등에 다수 소장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개인이 다수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잔존수량의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문화재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기념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① 국내에서 개최된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의 행사,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가치가

문화유산은 -----

문화유산을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문화유산이 -----

다·라. (현행과 같음)

② -----

---- 문화유산이 -----

문화유산은 -----

---.

제7조(기념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① -----

부여된 문화재 중 각 분야별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거나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서 국민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일반에게 널리 인정되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외에서 개최된 국제적 행사에서 우리 국민이 획득하거나 수여받은 상징물 및 관련 문화재 중 제1항에 따른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등록 대상 상징물 및 관련 문화재는 해당 행사와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문화재) ① 항일독립운동 등 우리나라의 독립과 사회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문화재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거주·사용한 이력 등이 문헌 기록,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문화유산 중 -----

국가등록문화유산-----
--.

② -----

----- 문화
유산 중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문화유산은 -----

-----.

제8조(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문화유산) ① -----

----- 문
화유산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유
산-----.

-----.

② 일제강점기 수탈, 친일 논란 인물 등과 관련된 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와 해당 인물의 공과(功過), 역사적 교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제4조제2항 제4호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제9조(동일인이 설계·제작한 문화재) ① 각 분야에서 대표적 예술가, 건축가, 제작자 등 동일인이 설계·제작한 시설·건축물, 동산 문화재 등이 다수 현존할 때에는 가장 대표적이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전수 조사나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등록 평가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해당 문화재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생존인물 관련 문화재) 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 시 생존해 있는 인물이 설계·제작한 시설·건축물이나 예술작품 등

② -----
-----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적 -----

-----.

제9조(동일인이 설계·제작한 문화유산) ① -----

----- 문화유산 -----

-----.

② -----
----- 문화유산-----

-----.
-----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유산 -----
-----.

제10조(생존인물 관련 문화유산) ① 국가등록문화유산 -----

의 문화재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등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면 멸실·훼손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문화재의 일괄·추가 등록) ① 유사한 성격의 문화재가 한 곳에 집중하여 소재하고 있거나 역사적 인물 등과 관련된 문화재가 복수인 경우,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로 국가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개별 문화재는 각각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식의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으로 소재한 경우 면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이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와 동일한 성격의 문화재가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은 -----
-----.

② -----
----- 문화유산
은-----

-----.

제11조(문화유산의 일괄·추가 등록) ① ----- 문화유산이 한 -----

문화유산이 복수-----

--. ----- 문화유
산은 -----
-----.

② -----
민속문화유산이 -----

-----.

③ -- 국가등록문화유산은-----
----- 문화유산과 -----
--- 문화유산이 -----

-----.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 보호법」 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u>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문화재 방재시설, 문화재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 현황, 문화재 안전관리 인력 현황, 문화재 방재예보 등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② “문화재 방재시설”이라 함은 문화재 현장에 설치되어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하는 소화·방범·경보설비를 말한다. ③ “문화재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이라 함은 문화재	<u>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 <u>국가유산 방재정보</u> -----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유산 방재시설,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 현황, 국가유산 안전관리 인력 현황, 국가유산 방재예보 등 국가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 ----- 국가유산 현장----- -----. ③ “국가유산 ----- ----- <u>국가유산</u>

방재시설의 사용 및 점검 요령, 비상신고 요령, 평상시 예방활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④ “문화재 안전관리 인력”이라 함은 문화재 현장에서 사전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안전경비원을 말한다.

⑤ “문화재 방재예보”라 함은 기상청 기상정보, 산림청 산불 위험정보 등을 활용하여 목조문화재 개별지역의 화재, 풍수해 등 재난 위험정도 및 현황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활용 범위) 시스템의 활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활동
2. 문화재 방재예보의 주기적 제공을 통한 문화재 지역별 위험정도 파악 및 신속한 초기대처
3.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사업의 기초자료
4. 기타 문화재 재난안전 관련

방재시설의 사용 및 -----

-----.

④ “국가유산 -----

--- 국가유산 현장-----

-----.

⑤ “국가유산 -----

----- 목조문
화유산 -----

-----.

제3조(활용 범위) -----

-----.

1. -----

-- 국가유산 -----

2. 국가유산 방재예보-----

----- 국가유산 지역별

3. 국가유산 -----

4. --- 국가유산 -----

예방·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제2장 문화재 방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조(시스템의 구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방재정보를 지자체 문화재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재 방재정보의 제공)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방재정보를 온라인 및 메시지(MMS), FAX, 유선전화(VMS) 등을 통해서·도 및 시·군·구와 문화재청 소속기관 등에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운영조직도)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제8조(운영조직별 역할) ① 문화재청 안전기준과는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및 교육 등을 총괄 담당한다.

②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은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을 지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 소

--

제2장 국가유산 방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조(시스템의 구축) -----
-- 국가유산 방재정보를 지자체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부서
-----.

제5조(국가유산 방재정보의 제공) ----- 국가유산 방재정
보-----

--.

제7조(운영조직도) 국가유산 ---

-----.

제8조(운영조직별 역할) ① ----
----- 국가유산 방재
정보 -----
-----.

② -----
국가유산 방재정보 -----

-----.

③ -----

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문화재 방재정보 등을 토대로 관할지역의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예방 및 대응활동

2. (생략)

제12조(개인정보보호)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따른다.

제13조(소유권)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에 활용되거나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수요기관은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DB 등을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 예방과 대응활동 등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교육) 문화재청장은 교육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운

-----.

1. ----- 국가유산 방재정보 -----
----- 국가유산 피해예방 -----

2. (현행과 같음)

제12조(개인정보보호) 국가유산 방재정보 -----

-----.

제13조(소유권)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
----- 국가유산 피해 -----
-----.

제15조(교육) -----

----- 국가유산 방재정보 -----

영할 수 있다.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u> 제1조(목적) 이 지침은 <u>문화재를</u> 보존·관리·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u>문화재의</u>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주체 및 민간주체가 <u>문화재를</u> 보존·관리·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2호에 따른 <u>문화재 주변</u> 시설물의 경관적·미적·기능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2. ‘<u>문화재주변시설물</u>’이라 함은 <u>문화재를</u> 보존·관리·활용	<u>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u> 제1조(목적) ----- <u>국가유산</u>을 ----- ----- ----- ----- <u>국가유산의</u> ----- ----- --. 제2조(용어정의) ----- ----- -----. 1. ----- ----- <u>국가유산</u>을 ----- ----- -- <u>국가유산 주변</u> ----- ----- ----- --. 2. ‘<u>국가유산주변시설물</u>’이라 함은 <u>국가유산</u>을 -----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 중 ‘별표 1’에 정의된 시설물과 ‘별표 1’에 정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기타 시설물을 말한다.

3. ‘면단위문화재’라 함은 궁궐·사찰·왕릉·민속마을 등과 같이 일정 공간 안에 다수 문화재가 형성되어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4. ‘점단위문화재’라 함은 당간지주·비석 등과 같이 단일 또는 일부 시설물이 소규모로 설치되는 문화재를 말한다.

5. ‘자연유산’이라 함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같은 자연상태 그대로 형성된 문화재를 말한다.

6. ‘인문유산’이라 함은 유적 및 건조물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공된 문화재를 말한다.

7.·8.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지정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를 포함한다)와 그 보호구역 또는

----- 국
가유산에 -----
-----.

3. ‘면단위국가유산’이-----

----- 다수의 국
가유산이 ----- 국가유
산을 --.

4. ‘점단위국가유산’이-----

----- 국가유산을 ----.

5. -----

----- 국가유산
을 --.

6. ‘인문국가유산’-----

-- 국가유산을 --.

7.·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시·도지정문화재 (그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와 그 외 미지정문화재 주변지역의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에 준용할 수 있다.

③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훈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향)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품격을 지키고 한 국적 공간철학을 담은 디자인 이어야 한다.
2.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는 절 제된 디자인이어야 한다.
3. 문화재를 모든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범용 디자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기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을 포함한다)과 ---.

② ----- 시·도지정유산-----

비지정국가유산 -----

-----.

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기본방향) -----
-----.

1. 국가유산-----
-----.
2. 국가유산-----
-----.
3. 국가유산을 -----
-----.

제5조(기본원칙) -----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응하는 디자인: 문화재의 형태·재료·색채·양식을 반영하여 문화재와 어우러지며 돌출되지 않는 순응하는 디자인을 한다.

2. 간결한 디자인: 복잡한 디자인 요소를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문화재가 강조되는 간결한 디자인을 한다.

3. 비우는 디자인: 문화재의 품격을 저해하는 위해(危害)시설물은 가리거나 숨겨 비우는 디자인을 한다.

4. 절제 있는 디자인: 문화재를 압도하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한 절제된 디자인을 한다.

5.·6. (생략)

제6조(공간특성별 기준) ① 면단 위문화재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위상을 저해하지 않고 문화재에 순응하는 규모·형태의 디자인을 연출한다.

2. 공공시설물은 해당 문화재의

-----.

1. ----- 국가유산의

---- 국가유산과 -----

-----.

2. -----

-- 국가유산이 -----

-----.

3. ----- 국가유산-----

-----.

4. ----- 국가유산

을 -----

-----.

5.·6. (현행과 같음)

제6조(공간특성별 기준) ① 면단

위국가유산-----

---.

1. 국가유산의 -----

-- 국가유산에 -----

-----.

2. ----- 국가유산-

정체성을 반영한 형태·재료
· 색채의 공통된 디자인 요소
를 담아 통일성을 유지한다.

3.·4. (생 략)

② 점단위문화재의 공공디자인
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
려하여야 한다.

1. 왜소한 점단위문화재를 돋보
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이
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물
의 설치를 최소화한다.

2. (생 략)

제7조(문화재별 기준) ① 인문유
산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품격을 거스르지
않도록 복잡하거나 과도한 장
식적인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
고 문화재가 돋보이게 간결한
요소로 디자인한다.

2. (생 략)

3. 문화재와 인접한 시설물의
색채는 문화재 색채를 추출하
여 저채도의 배색으로 이미지
가 연계되도록 한다.

② (생 략)

제8조(관리주체별 기준) ① 공공

-----.

3.·4. (현행과 같음)

② 점단위국가유산-----

-----.

1. ----- 점단위국가유산을 ---

-----.

2.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유산별 기준) ① 인문
국가유산-----
-----.

1. 국가유산의 -----

-- 국가유산이 -----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산과 -----
---- 국가유산 색채-----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주체별 기준) ① -----

주체가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행에 영향을 덜 받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공공주체 간에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담아 문화재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을 한다.

2. 관리주체가 다른 공공시설물
간에 이질감을 없애고 문화재
와 조화되는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주체의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에 따
르도록 계몽·유도한다.

1. (생 략)

2. 민간시설의 무분별한 배치,
과도한 규모, 다양한 형태 등
으로 문화재가 왜소화되거나
품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시설물별 공공디자인 기준)

제2조 제2호 따른 시설물의 개
념 및 배치·규모·형태·재료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준은
‘별표 2’의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에 따른
다.

제4장 문화재 유형별 공공디자인

-----.

1. -----

----- 국가유산 -----
-----.

2. -----
----- 국가유
산과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국가유산이 -----
-----.

제9조(시설물별 공공디자인 기준)

----- “국가유산 -----

--.

제4장 국가유산 유형별

상세 기준

제10조(유형별 상세 기준 개발·보급) ① 공공디자인 관리주체가 문화재 성격상 문화재 유형별로 특성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상세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리주체(문화재청은 제외한다)가 문화재 유형별 상세 기준을 설정하거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의견이나 행정지도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① 문화재청장은 이 지침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계획 또는 설계 등을 자문하기 위해 '문화재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공공디자인 관리) ① 공공주체가 문화재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

공공디자인 상세 기준

제10조(유형별 상세 기준 개발·보급) ① -----

-- 국가유산 성격상 국가유산

-----.

② -----

국가유산 유형별 -----

-----.
-----.

제11조(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① -----

----- '국가유산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공디자인 관리) ① ----

---- 국가유산 주변에 -----

계획단계에서 ‘별표 3’의 <u>문화재</u>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체는 민간주체가 <u>문화재</u>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시설물을 계획·설계·시공·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공공주체에게 ‘별표 3’의 <u>문화재</u>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u>국가유산</u> 주변 시설물 ----- -----. ② ----- <u>국가유산</u> ----- ----- ----- ----- -----. ③ ----- ----- <u>국가유산</u> 주변 ----- ----- ----- -----.
---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문 <u>문화재 명칭</u>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u>문화재 지식</u>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u>문화재 관리</u>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u>문화재 영문 명칭</u>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 명칭”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등록 시 부여된 문화재의 이름을 말한다. 2.·3. (생략) 4. “명명 요소(命名要素)”라 함은 <u>문화재 명칭</u>을 구성하고	<u>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u> 제1조(목적) ----- <u>국가유산 명칭</u>----- ----- <u>국가유산 지식</u>----- ----- -- <u>국가유산 관리</u>----- ----- -- <u>국가유산 영문</u> ----- ----- -----.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국가유산 명칭”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 유산의 지정 또는 등록 시 부여된 국가유산의 이름을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 4. ----- -- <u>국가유산</u> -----

있는 낱말을 말함.

5. “단일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하나의 개념·용어 또는 고유한 이름에서 오거나 명명 요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문화재 명칭을 말함.

6. “복합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해당 문화재의 속성을 표시하는 2개 이상의 명명 요소가 조합된 문화재 명칭을 말함.

7.·8. (생략)

제3조(적용) 이 규칙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영문 명칭 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 원칙)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문화재 명칭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
2. 우리 문화재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

5. -----

----- 국가유산 산 -----.

6. -----
-- 국가유산의 -----

-- 국가유산 명칭-----.

7.·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유산”과 “등록유산”의 영문 명칭 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 원칙) 국가유산 -----
-----.

1. --- 국가유산의 -----
----- 국가유산 명칭-----.
2. --- 국가유산-----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

3. 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문화재 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

4. (생략)

제5조(일반 원칙)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띄어쓰기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도서, 회화 등 작품의 고유한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띄어 쓸 수 있음.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

제3장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제6조(단일 구성 명칭) 단일 구성 명칭으로 된 문화재 명칭 중 보

-----.

3. -----
----- 국가유산 -----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일반 원칙) 국가유산 -----

-----.

1. ~ 6. (현행과 같음)

7. ----- 국가유산 -----

-----.

----- 국가유산 -----

-----.

-----.

제3장 국가유산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제6조(단일 구성 명칭) -----
----- 국가유산 -----

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역 표기를 덧붙이거나, 고유한 이름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제7조(복합 구성 명칭) 복합 구성 명칭으로 된 문화재 명칭의 영문 표기는 각 유형별 표기 기준에 따른다.

제8조(고유한 문화재 이름의 표기) ① 고유명사로 쓰이는 문화재 명칭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덧붙인다. 후부 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괄호 없이 사용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문화재 영문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가. 도로 표지판 등 표시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곳의 영문 표기와 같이 문화재 영문명칭을 사용하는 목적 및

-----.

제7조(복합 구성 명칭) -----
----- 국가유산 -----

-----.

제8조(고유한 국가유산 이름의 표기) ① ----- 국가유산 -----

-----.

② -----
----- 국가유산 -----
-----.

가. -----

----- 국가유산 -----

사용 환경에서 제 ②항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사용상의 불편이 있는 경우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우리 문화재를 영문으로 소개하는 자료 등에서 문화재 명칭에 함축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문명칭 전체의 의미역을 전체의 로마자 표기와 병행할 수 있다.

제9조(전통 건조물) 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건조물의 이름은 고유의 문화재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② 건조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를 지명, 인명 등의 고유한 이름에 부가하여 만든 문화재 명칭은 고유한 이름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용어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제10조(불교 건조물) ① 사찰, 암자, 사찰의 전각 등 용도나 종류

-----.

나. -- 국가유산을 -----
----- 국
가유산 명칭-----

-----.

제9조(전통 건조물) ① -----

국가유산 -----

-----.

② -----

----- 국가유산 -----

-----.

제10조(불교 건조물) ① -----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불교 건조물의 이름은 고유의 문화재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② 형태, 층수, 재질 등을 나타내는 용어와 사찰 이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불탑 문화재의 이름 및 승려의 존호와 사찰 이름의 조합으로 지어진 승탑 문화재의 이름은 국문 명칭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역을 같은 방식으로 조합하여 표기한다.

제11조(근현대 건조물) ①·② (생략)

③ 이미 통용되고 있는 영문 명칭이 있는 건조물의 경우, 문화재 명칭에서도 그 이름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12조(유적지, 성, 도요지 등) 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유적지의 이름은 고유의 문화재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 국가유산 -----

-----.

② -----

----- 국가유산의
이름 및 -----
----- 국
가유산의 이름은 -----

-----.

제11조(근현대 건조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가
유산 -----
-----.

제12조(유적지, 성, 도요지 등) ① -----

----- 국가유산 -----

-----.

② 유적지의 성격이나 유래에 대한 설명이 문화재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제13조(능묘) ① 고유한 이름과 함께 성격이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능묘의 이름은 고유의 문화재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② 능묘의 성격이나 피장자에 대한 설명이 문화재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제15조(전적류 문화재) ① · ② (생략)

③ 도서류 문화재의 명칭에 저자 이름이 포함된 경우, 영문 표기 명칭에서는 전치사(by)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④ (생략)

제17조(비석류문화재) ① · ② (생략)

제18조(회화 및 서예류 문화재)

① 문화재의 명칭 안에 작품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② -----
----- 국가유산 -----

-----.

제13조(능묘) ① -----

----- 국가유산 -----

-----.

② -----
----- 국가유산 -----

-----.

제15조(전적류 국가유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 -----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비석류 국가유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회화 및 서예류 국가유산)

① 국가유산 -----

있는 경우 제목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회화 작품 제목의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는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②·③ (생략)

제19조(불교 회화) ① 사찰 시설의 일부이거나,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 회화 작품으로서, 불화의 종류(용도나 성격), 내용 주제, 사찰의 이름 등이 조합된 문화재 명칭은 작품의 종류와 사찰의 이름을 먼저 기술하고, 괄호 속에 내용 주제를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② 특정 사찰과의 관계가 명칭에 표시되지 않고, 내용 주제가 문화재 이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국문 명칭 전체를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③ (생략)

제21조(석조각류 문화재) (생략)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불교 회화) ① -----

국가유산 -----

-----.

② -----

국가유산 -----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석조각류 국가유산) (현행과 같음)

제22조(토도자 공예류 문화재) ①

종류, 기법, 무늬, 형태, 용도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토도자 공예 문화재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종류·기법·형태 등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문양 등이 포함된 문화재 명칭은 쉼표(.)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금속, 목조, 나전 공예류 문화재) ①

재질, 기법, 무늬, 형태, 용도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공예 문화재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재질·기법·형태 등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문양 등이 포함된 문화재 명칭은 쉼표(.)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4조(도구, 물품, 의복류 문화재) ①

종류나 용도, 제작 또는 사용 주체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도구, 물품, 의복류 문화재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제22조(토도자 공예류 국가유산)

① -----

----- 국가유산 -----

-----.

----- 국가유산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금속, 목조, 나전 공예류 국가유산) ①

----- 국가유산 -----

-----.

----- 국가유산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 ①

----- 국가유산 -----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② 도구, 물품의 고유한 이름이 문화재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종류나 용도를 알리는 의미역을 부가한다.

제25조(무형 문화재) 전래 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지명에 붙은 조사는 로마자 표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2종의 문화재를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낸다.

제3절 지명이 포함된 문화재 명칭

제27조(공통 사항) 국문 문화재 명칭이 지명을 포함하는 경우 그 지명이 고유명사화된 문화재 명칭의 일부인지 또는 소재지의 표시를 위하여 부가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도로 표지판, 문화재 안내판 등의 영문 표

-----.

② -----
국가유산 -----

-----.

제25조(무형유산) -----

-----.

----- 국가유산을 -----

-----.

제3절 지명이 포함된 국가유산 명칭

제27조(공통 사항) ----- 국가유산 명칭 -----
----- 국가유
산 명칭 -----

-----.
----- 국가유산 -----

기에는 소재지의 표시를 위하여
부가된 지명은 상황에 따라 생
략할 수 있다.

제28조(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
하는 문화재) 국문 문화재 명칭
이 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
는 경우의 영문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이 부가된 경우: “문화재명+행
정구역명”의 순으로 표기

제29조(상하 행정구역명이 있는
문화재) 국문 문화재 명칭에 상
· 하위 관계로 이어지는 두 행
정구역명이 나란히 있는 경우의
영문 표기는 “문화재명+하위 행
정구역명+상위 행정구역명”의
순으로 한다.

제30조(유적지명이 있는 문화재)
국문 문화재 명칭에 유적지명이
포함된 경우의 영문은 “문화재
명+유적지명” 순서로 표기한다.
상·하위 관계를 이루는 2개 이
상의 유적지명이 나열된 경우의
영문은 “문화재명+하위 지명+
상위 지명”순으로 표기한다.

-----.

제28조(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
하는 국가유산) -- 국가유산 --

-----.

1. (현행과 같음)
2. -----
----- “국가유산명+
행정구역명”-----

제29조(상하 행정구역명이 있는
국가유산) -- 국가유산 명칭--

-----국가유산명+하위

-----.

제30조(유적지명이 있는 국가유
산) --- 국가유산 명칭-----
----- “국가유
산명+유적지명” -----

----- “국가유산명+하위 -----
-----.

제4절 인명이 포함되는
문화재 명칭

제31조(공통 사항) 국문 문화재 명칭에 특정인의 ‘호’, ‘시호’, ‘성명’(이하 “인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영문 표기는 국문 명칭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것을 선택한다. 단 대상 인물의 고유한 이름의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호’, ‘시호’ 대신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32조(인명, 문화재명의 순서로 된 문화재 명칭) 국문 문화재 명칭이 “인명+문화재명”순으로 된 경우 영문 표기는 “문화재명+인명”순으로 한다. 단, 영문 표기에서 인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인명+문화재명”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인명에 시대명, 지명이 복합된 문화재 명칭) 국문 문화재 명칭이 “지명(행정구역명/유적지명)+인명+문화재명”순으로 된 경우에는 “문화재명+인명+지명”순으로 표기한다. 단, 영문 표기에서 인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인명+문화재명+

제4절 인명이 포함되는
국가유산 명칭

제31조(공통 사항) ----- 국가유산

-----.

제32조(인명, 국가유산명의 순서로 된 국가유산 명칭) -- 국가유산 명칭이 “인명+국가유산명”순----- “국가유산명+인명”순-----
----- “인명+국가유산명”으로 -----.

제33조(인명에 시대명, 지명이 복합된 국가유산 명칭) -- 국가유산 명칭이 “지명(행정구역명/유적지명)+인명+국가유산명”순----- “국가유산명+인명+지명”순-----
----- “인명+국가유산명+

지명“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영문 표기 자문위원회) ① 이 규칙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국가자문위원회’를,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는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시·군·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문화재와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④ (생략)

제35조(문화재위원회 검토와 자문) ①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별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명칭을 부여할 때 영문 명칭도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시되지 않은 영문 표기는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정한 영문 표기에 따른다.

제36조(문화재 명칭 명명 요소 목

지명“-----.

제34조(영문 표기 자문위원회) ① -----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 -----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국가자문위원회’를-----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시·군·구 ----- -----.

② ----- 국가유산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문화유산위원회 검토와 자문) ① 문화유산위원회 -----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 -----.

② ----- 문화유산위원회-----.

제36조(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

록) 제2조제4호에 따른 <u>문화재</u> 명칭 명명 요소에 대한 목록은 “별표”와 같다. 단, “별표” 목록 이외의 다른 용어의 사용이 의 미 전달에 더 효율적일 경우 이 를 사용할 수 있다.	목록) ----- <u>국가유산</u> ----- ----- ----- ----- -----.
---	--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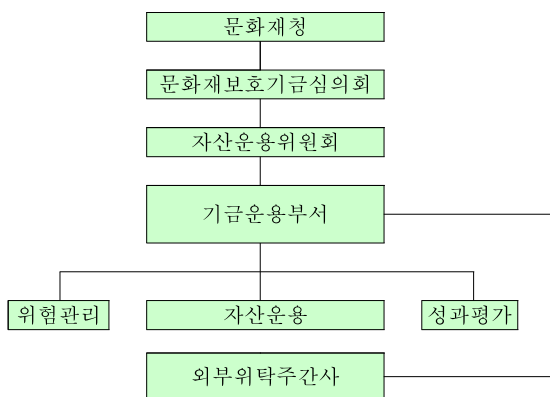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u>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u>	<u>국가유산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u>
1. 개요	1. ----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1.1 -----
1) 본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라 <u>문화재보호기금</u> 자산운용에 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이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 ----- <u>국가유산보호기금</u> ----- ----- ----- -----.
2) 본 자산운용지침은 기금관리주체인 문화재청이 작성하고 <u>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의</u> 심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2) ----- ----- -- <u>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3 기금 개요	1.3 -----
1) <u>문화재보호기금</u> 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u>문화재정책기반구축</u> , <u>문화유산 교육연구</u> , <u>문화재보호</u>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u>문화재보호기금법</u> 에 의해	1) <u>국가유산보호기금</u> 은 국가유산 ----- <u>국가유산정책기반구축</u> , <u>국가유산 교육연구</u> , <u>국가유산보호</u> 등 ----- ----- ---- <u>국가유산보호기금법</u> ---

2010년에 최초로 설치하였다.	-----.
2)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출연금, 복권기금전입금, <u>지정문화재</u> 관람료에 대한 납부금출연 또는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이다.	2) ----- ----- <u>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u> ----- ----- -----.
2.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u>문화재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금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u>	2. ----- <u>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u> ----- ----- ----- ----- -----.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 -----
3.1 자산운용의 목적 <u>문화재보호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손실위험의 최소화와 이익의 극대화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한다.</u>	3.1 ----- <u>국가유산보호기금의 -----</u> --- <u>국가유산을</u> ----- ----- ----- ----- ----- -----.
3.2 자산운용의 원칙	3.2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기금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
 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
 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운용
 정책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
 다.

4. 자산운용 체계

4.1 자산운용조직 및 기능



1)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가)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고 한다.)
 는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
 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 ④ (생략)

나) (생략)

2)·3)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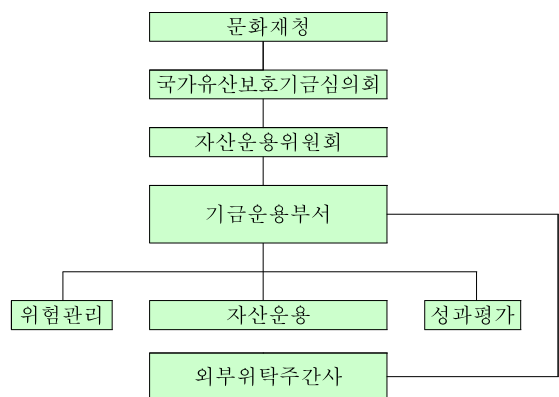
4) 기금운용부서

가) 문화재보호기금의 주무부

----- 국가유산보호기금
법 시행령 -----

4. -----

4.1 -----



1)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가)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

① ~ ④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

가) 국가유산보호기금-----

서인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에서 수행하며,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
행한다.

① ~ ⑥ (생략)

나) (생략)

5) (생략)

5. 자금운용계획 수립

5.1 자금수지 항목의 분류

문화재보호기금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수입항목	지출항목
정부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주요사업비,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5.2·5.3 (생략)

6. 적정유동성 규모

6.3 적정 유동성 규모 반영 자금배 분안

문화재보호기금의 적정 유동성
규모를 반영한 자금배분안은 연
간 자산운용계획에 명시한다.

7.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7.1 목표수익률

문화재보호기금의 목표수익률
은 “기금의 목적 또는 자산운용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
배분에 앞서 사전적으로 설정하

-----.

① ~ ⑥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5. -----

5.1 자금수지 항목의 분류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수입항목
과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
성된다.

수입항목	지출항목
정부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의 관람료 납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주요사업비,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5.2·5.3 (현행과 같음)

6. -----

6.3 -----

국가유산보호기금의 -----

-----.

7. -----

7.1 -----

국가유산보호기금의 목표수익
률은 -----

는 지표”로서 <u>문화재보호기금</u>의 사업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u>문화재보호기금</u>의 목표수익률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및 수치는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명시한다. 7.2 (생략) 8. 자산배분 8.1 투자가능자산 1) (생략) 2) 다만,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충족될 때까지 연기금 투자폴에 자산운용을 위탁한다. 가) 연기금 투자폴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정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u>문화재보호기금</u>이 투자한 연기금 투자폴 거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상품은 연기금 투자폴의 지침(규정)을 따른다. 8.2 자산배분의 원칙 및 방법	----- <u>국가유산보호기금</u>의 사업목적을 ----- -----. <u>국가유산보호기금</u>의 ----- -----. 7.2 (현행과 같음) 8. ----- 8.1 ----- 1) (현행과 같음) 2) -----. 가) -----. <u>국가유산보호기금</u>----- -----. 8.2 -----
--	--

<u>문화재보호기금의</u> 자산배분 비중은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위임하고, 연간 자산운용계획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8.3 (생략) 9.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9.1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정책 <u>문화재보호기금은</u> 내부 인력을 통한 직접운용 또는 외부 전문운용사를 통한 위탁운용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위탁운용 시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위탁운용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9.2 ~ 9.5 (생략) 11. 위험관리 11.4 연기금 투자폴에 관한 예외 조항 연기금 투자폴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위험관리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u>문화재보호기금이</u> 투자한 연기금 투자폴 상품의 위험관리는 연기금 투자	<u>국가유산보호기금의</u> ----- ----- ----- ----- -----. 8.3 (현행과 같음) 9. ----- 9.1 ----- <u>국가유산보호기금은</u> ----- ----- ----- -----. ----- ----- ----- ----- ----- -----. 9.2 ~ 9.5 (현행과 같음) 11. ----- 11.4 ----- ----- ----- ----- ----- ----- <u>국가유산보호기금이</u> ----- -----
---	--

풀 위험관리 지침(규정)을 따른다.	----- --.
14.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u>문화재보호기금의</u> 모든 자산운용 담당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4. ----- <u>국가유산보호기금의</u>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문화재보호법에 따른</u> <u>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u> <u>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u>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 보호법」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u>문화재교육지원센터</u> 처분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문화재보호법」 제22조 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 제1호 나·다에 따라 가 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u> <u>법률에 따른</u> <u>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u> <u>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u> <u>지침</u> 제1조(목적) ----- 「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22조의4----- ---- <u>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u> ---- ----- ----- -----.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 ----- ----- -----.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u>문화재수리 기술지도</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u>문화재수리의 품질</u>을 향상시킴으로써 <u>문화재의 원형보존</u>과 <u>민족문화의 계승</u>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의 정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설계도서”란 <u>문화재수리에 관한 도면</u>, <u>시방서</u>, <u>내역서</u>, <u>현황 사진첩</u>, 그 밖에 <u>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서류</u>를 말한다. 3. (생략) 4. “기술지도”란 <u>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u> 등 당해 사업목적을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u>문화재수리과정</u>	<u>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규정</u> 제1조(목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 ----- --- <u>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u> --- ----- <u>국가유산수리의</u> ----- <u>국가유산의</u> ----- ----- ---. 제2조(정의) ----- -----. 1. “국가유산수리”의 정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 <u>국가유산수리에 관한</u> ----- ----- <u>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u> -----. 3. (현행과 같음) 4. ----- <u>국가유산수리의 품질</u> ----- ----- <u>국가유산수리과</u>

에서 당해 문화재의 고증·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술지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술지도가 요구되어 문화재청장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6. “기술지도단”이란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술지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부 수리

정에서 당해 국가유산의 고증·양식, 국가유산수리-----

-----.

5. -----

----- 국가유산 보존·관리-----

-----.

6. ----- 국가유산수리-----

-----.

제3조(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① -----

----- 국가유산의 -----

-----.

1. 국가지정유산(동산문화유산은 -----

2.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기술지도단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기술지도단은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위촉되었던 자

2.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분야와 관련된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위촉되었던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4. 기타 건축·성곽·고고학·보존과학 등의 분야에서 문화재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업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술지도단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

2.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 국가유산수리 -----

문화유산위원 또는 -----

3. -----

-- 국가유산수리 -----

4. -----

----- 국가

유산수리 -----

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u>문화재수리</u>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⑤ (생략) 제5조(기술지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u>문화재수리</u> 착수단계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 과정에서 기술지도를 요청한 경우 또한 이와 같다. ② ~ ④ (생략) 제7조(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 ① (생략) ② 기술지도위원은 당해 <u>문화재</u>의 특성·연혁·수리경력 등 관련 문헌, 설계도서,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도위원은 임의로 관계 법령이나 <u>문화재수리</u>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u>문화재수리업자</u>의 의무와 책임을 증감시키는 기술	----- 5. ----- ----- -- <u>국가유산수리</u> -----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기술지도의 실시) ① ---- ----- ----- <u>국가유산수리</u>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국가유산</u>----- ----- ----- ----- ----- ③ ----- ----- <u>국가유산수리</u> 계약조건 ----- <u>국가유산수리업자</u>----- -----
---	--

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해 문화재수리 또는 관련 용역사업(“설계용역”을 제외한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2. 당해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임직원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3. (생략)

제8조(해촉)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2. 3. (생략)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및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

④ -----

--.

1. --- 국가유산수리 -----

2. --- 국가유산수리업자-----

3. (현행과 같음)

제8조(해촉) -----

-----.

1. ----- 국가유산 -----

2. 3.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회의 -----

지급할 수 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u> 제1조(목적) 이 지침은 <u>문화재 수리</u>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u>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u>지정문화재</u> 중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u>문화재의 수리</u>에 적용한다. ② 발주자는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u>지정문화재</u> 주변의 시설물 정비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u>문화재 수리의 기본방향</u>) <u>문화재 수리</u>는 다음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u>문화재의 원형</u>이 변형·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u>문화재</u>를 수리하여야 한다. 2. <u>문화재</u>는 <u>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u> 가치 외에 지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u> 제1조(목적) ----- <u>국가유산수리</u>----- ----- <u>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u>----- ----- --. 제2조(적용범위) ① ----- <u>지정유산</u> ----- ----- <u>국가유산의</u> ----- -----. ② ----- ----- <u>지정유산</u> ----- ----- -----. 제3조(<u>국가유산 수리의 기본방향</u>) <u>국가유산</u> ----- ----- --. 1. <u>국가유산의</u> ----- ----- -- <u>국가유산을</u> -----. 2. <u>국가유산</u>은 <u>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u> -----

역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u>건조물문화재</u>는 있는 그곳에 그대로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u>문화재별</u> 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사·연구와 평가를 근거로 하여 <u>문화재</u>를 수리하여야 한다. 4. <u>문화재</u> 수리로 인하여 고고학적 유물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5. <u>문화재</u> 수리는 최소한으로 하되 가역적이어야 한다. 6. <u>문화재</u> 수리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도 원래의 구조와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u>문화재</u>를 구성하는 부재가 훼손된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 보강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생략) 9. <u>문화재</u>에 간직된 증거나 흔적은 실측하여 기록으로 남겨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u>문화재</u> 시대 적용 원칙) <u>문화재</u> 수리는 현재의 <u>문화재</u>에	----- <u>건조물</u> <u>국가유산</u>은 ----- -----. 3. <u>국가유산별</u> ----- ----- <u>국가유산</u>을 ----- -----. 4. <u>국가유산</u> ----- -----. 5. <u>국가유산</u> ----- -----. 6. <u>국가유산</u> ----- -----. 7. <u>국가유산</u>을 ----- -----. 8. (현행과 같음) 9. <u>국가유산</u>----- -----. 제4조(<u>국가유산</u> 시대 적용 원칙) <u>국가유산</u> 수리---- <u>국가유산</u>에
--	---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요소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수리 중 부가된 상태보다 그 이전의 상태가 역사적·고고학적·미학적 측면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이전 시대의 상태로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문화재 수리의 절차) 문화재 수리의 절차는 실측설계, 시공 순서로 진행하되, 모든 문화재 수리과정을 기록화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문화재 수리 필요성 검토) ① 문화재수리를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7조(실측전조사) ①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수리 필요성 검토에 따른 수리 내용과 범위를 확인

-----.

-----.

제5조(국가유산 수리의 절차) 국가유산 수리의 -----
----- 국가유산 수리과정-----
-----.

제6조(국가유산 수리 필요성 검토) ① 국가유산수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측전조사) 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하고 사전에 고증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증조사와 현황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증조사 : 문화재의 연혁·가치·특성 등에 관한 사료와 대상 문화재의 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수리 및 관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 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문화재 주변현황, 지형의 고저차, 진입도로, 배수관계 등을 조사한다.

제8조(구조적 결함의 조사) ① 문화재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변위가 확인되면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적합한 보수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부재의 조사 및 진단) ① 실측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문화재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부재의 상태를 조사·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육안 조사와 시험 장비를 이용

-----.

② -----
-----.

1. ----- 국가유산의 연혁·가치·특성 -----
-- 국가유산의 특징-----

-----.

2. ----- 국가유산의 -----

-- 국가유산 주변현황-----

-----.

제8조(구조적 결함의 조사) ① 국가유산에 -----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부재의 조사 및 진단) ① ----- 국가유산으-----

한 조사를 통해 부재의 훼손 현황 및 위험 요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0조(실측설계도서의 작성) ① 문화재 수리 중 보수에 실측설계도면은 고증조사, 현황조사 및 실측조사를 근거로 현황도면과 보수계획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지정문화재를 해체 보수하는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재 실측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 또는 재현된 건축물, 현대적 시설물 등은 발주자 판단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시방서의 작성) ① 시방서에는 실측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문화재 수리를 위한 기법 및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시방서는 당해 문화재의 시대별 특성, 지역별 특성, 수리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실측설계도서의 작성) ① 국가유산수리 -----

-----.

② 지정유산을 -----

-----.

제11조(시방서의 작성) ① -----

----- 국가유산수리 -----

-----.

② ----- 국가유산 -----

법 등을 고려하여 공중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재료의 표기)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할 수 있다.

제15조(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실측설계를 하였으면 관계기술자도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승인) ① (생략)

② 설계승인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적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료의 표기) 국가유산수리-----

-----.

제15조(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국가유산수리-----

-----.

제16조(설계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국가유산 -----

합한 방법과 기술의 사용

2. (생략)

3.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
고려

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문화재수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할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도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자는 설계도서 보완 요청 내용이 제18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보완에 상당기간 소요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보완 이행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설계도

2. (현행과 같음)

3. --- 국가유산-----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유산수리-----

-----.

⑤ -----

--- 국가유산수리 -----

-----.

-----.

⑥ ----- 국가유

산수리 -----

-----.

⑦ -----

서를 보완하여야 하고,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문화재수리(시공)

제17조(현장조사)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 수리 전에 다음사항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 · 2. (생략)
3. 문화재의 보호 및 안전, 관람 등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생략)

제18조(관계전문가 자문)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를 원형대로 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문화재 고증 및 양식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생략)

----- 국가유산수리 -----

제4장 국가유산수리(시공)

제17조(현장조사)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 -----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산-----

4. (현행과 같음)

제18조(관계전문가 자문) -----
----- 국가유산을 -----

1. 국가유산 -----
2. 국가유산수리-----
3.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재의 해체)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문화재를 해체하려면
원형훼손 및 부재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 5. (생략)

6. 문화재수리업자는 부재 실측
조사표를 바탕으로 해체 중
새롭게 조사된 부재 현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한
다.

제20조(해체부재의 보관) 문화재
수리 중 해체된 부재를 보관하
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생략)

2. 상량문, 현판 등 문화재적 가
치가 높은 부재 등에 대하여
는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하
여 훼손되지 않도록 잘 수습
하여 별도 보관한다.

3. ~ 6. (생략)

제21조(해체부재의 분류 결정) ①

· ② (생략)

③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하며, 그 구성은 건축, 구조공

제19조(부재의 해체) 국가유산 수
리과정에서 국가유산을 -----

-----.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유산수리업자-----

-----.

제20조(해체부재의 보관) 국가유
산수리 -----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적 -

-----.

3. ~ 6. (현행과 같음)

제21조(해체부재의 분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학, 재료과학, 보존과학 등 <u>문화재</u> 수리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1. (생략) 2. 관련 전공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u>문화재수리</u>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u>국립문화재연구소</u>,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의 직원 4. 「<u>문화재수리</u>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에 따른 기술지도 위원 ④ (생략) 제22조(해체부재의 처리) ①·② (생략) ③ 해체부재 중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부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존 조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 <u>문화재</u>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	----- <u>국가유산</u> ----- ----- ----- -----. 1. (현행과 같음) 2. ----- ----- <u>국가유산수리</u> ----- ----- 3. ----- <u>국립문화재연구원</u>----- ----- 4. 「<u>국가유산수리</u>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해체부재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u>국가유산</u> ----- ----- -----
--	--

④ 해체부재 중 자체 활용 결정된 부재는 부재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문화재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거나,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과정에서 분리보존 결정된 부재를 보존하고 있는 소유자 및 관리단체는 부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20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부재의 교체 및 보강)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부재를 교체하거나 보강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재는 가능한 한 원래의 부재를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보강하지 않으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다.

④ -----

----- 국가
유산-----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지정유산-----

-----.

제23조(부재의 교체 및 보강) 국가유산 -----

-----.

1. -----

-----.

-- 국가유산이 -----

--.

2. ~ 4. (생략) 5. 보충되는 부재의 함수율 등 물리적인 특성은 <u>문화재</u>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 4. (현행과 같음) 5. ----- ----- <u>국가유산</u>----- ----- --.
6. · 7. (생략) 제25조(부재의 설치) ① <u>지정문화재</u>의 수리 중 부재의 설치는 기존의 양식과 기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 7. (현행과 같음) 제25조(부재의 설치) ① <u>지정유산</u> ----- ----- -----. ----- -----.
② (생략) 제27조(과학기술의 활용) <u>문화재</u> 수리에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도 되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학기술의 활용) <u>국가유산수리</u>----- ----- ----- ---.
제28조(보고서 작성) <u>지정문화재</u>의 수리 시에는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과정, 수리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한 <u>문화재수리보고서</u>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서 작성) <u>지정유산</u>----- ----- ----- ----- ----- ----- <u>국가유산수리 보고서</u>----- --.
제29조(보고서 작성범위) <u>문화재</u>	제29조(보고서 작성범위) <u>국가유산</u>

수리보고서에는 문화재 연혁, 주변환경, 문화재수리의 이력, 문화재수리의 내용, 기술지도 자문회의, 관계전문가 자문내용, 상량문, 목서명, 수리전·후의 사진, 설계도면,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결과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제30조(보고서 작성지침) 문화재 수리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문화재 수리의 단계별로 기존 현황과 문제점 또는 보수전·후를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생략)
4. 문화재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5. (생략)

제31조(보고서의 제출) ① 문화재 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전자문서화한 파일과 수리정보 등을 문화재수리종합정보

산수리 보고서에는 국가유산 ----- 국가유산수리의 이력, 국가유산수리-----

-----.

제30조(보고서 작성지침)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수리 -----

-----.
5. (현행과 같음)

제31조(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

<u>시스템</u>에 등록하고, 발주자(해당 지방자치단체)는 <u>문화재 전자행정</u> 시스템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② 작성된 <u>문화재수리보고서</u>는 제1항과 함께 문화재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u>국립문화재연구소</u>,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다. 제32조(보고서의 공개) <u>문화재수리보고서</u>는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u>보시스템</u>----- ----- <u>국가유산</u> <u>전자행정</u> ----- ----- -----. ② ----- <u>국가유산수리 보고서</u> ----- ----- <u>국립문화재</u> <u>연구원</u>----- ----- -----. 제32조(보고서의 공개) <u>국가유산수리 보고서</u>----- ----- -----.
--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그 세부 업무 등은 [별표 1]과 같다. 2. 3. (생략) 제6조(설계심사관)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5년	<u>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 ----- ----- -----. 제3조(용어의 정의) ----- ----- -----. 1.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 -----. 2. 3. (현행과 같음) 제6조(설계심사관) ----- ----- ----- -----. 1. 국가유산수리 -----

이상 종사했을 것 2. (생략) 제7조(예비 설계심사관) 예비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u>문화재수리</u>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제7조(예비 설계심사관) ----- ----- ----- -----. 1. <u>국가유산수리</u> ----- ----- 2.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u>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u>문화재수리 공사</u>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문화재수리</u>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	<u>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u> 제1조(목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u>국가유산수리 공사</u>----- ----- -----. 제2조(적용) ----- ----- <u>국가유산수리</u>----- ----- ----- ----- ----- ----- ----- ----- ----- ----- -----. 제3조(정의) 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 국가

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② “수리보고서”란 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
록화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말
한다.

제4조(원가계산 비목 및 가격결정
의 원칙) ① 공사로 발주된 문
화재수리의 원가(이하 “문화재
수리원가”라 한다)는 문화재수
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
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 ⑤ (생략)

제6조(문화재수리원가) 문화재수
리원가라 함은 문화재수리 과정
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
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7조(작성방법) ① 문화재수리원
가 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문화재수리원가계산
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
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유산실측설계업의 ----- 국
가유산실측설계업을 -----
-----.

② -----
-----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

제4조(원가계산 비목 및 가격결정
의 원칙) ① ----- 국
가유산수리의 원가(이하 “국가유
산수리원가”라 한다)는 국가유
산수리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유산수리원가) 국가유
산수리원가라 함은 국가유산수
리 -----
-----.

제7조(작성방법) ① 국가유산수
리원가 계산-----
----- 국가유산수리원가계
산서-----

-----.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문화재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원형보존 및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수당(이하 ‘자문수당’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문화재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동법 제71조에 따른 시·도 문화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재료비) 재료비는 문화재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생략)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해당 문화재수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 --

-----.

② ----- 국가유산원형보존 -- 국가유산수리품질향상----- 분야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 -----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 시·도문화유산위원회-----

----.

제8조(재료비) ----- 국가유산수리원가-----

--.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수리-----

호를 말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문화재수리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
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문화재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문화재수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
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
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 4. (생략)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문화재수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참여하는
노무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산수리 -----

-----.

제9조(노무비) ----- 국가유산수리원가-----

-----.

① ----- 국가유산수리현장-----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현장-----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
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
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문화
재수리 공정별로 투입인원, 작
업시간, 작업량을 기준으로 해
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노무
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별표
2]의 문화재수리 간접노무비 계
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
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문화재
수리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
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① 경비는 문화재수
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문화재수
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
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
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
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

③ ----- 국가유
산수리 공정별-----

-- 국가유산수리에 -----

-----.

④ -----
--- 국가유산수리 -----
-----.

⑤ -----

----- 국가유
산수리 -----

-----.

제10조(경비) ① ----- 국가유산수
리를 ----- 국가유산
수리원가-----

-----.

② 경비는 해당 문화재수리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수리보고서 작성비는 수리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기 위한 비용(재료비를 포함하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실측조사비(학술적 고증·연구를 위한 조사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생략)

4. 문화재(유물)운송비 및 보험료는 해당 문화재수리를 위해 해당 문화재 또는 내부 유물을 이전·보관·재설치하기

② ----- 국가유산수리 -----

-----.

③ -----
-----.

1. -----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

2. -----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유물)운송비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 또는 -----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

5. 영상촬영비(제작비를 포함한다)는 문화재수리 과정의 기록보존 등을 위해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

6. 현장공개비는 문화재수리의 현장을 공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

7. 전력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8. ~ 10. (생략)

11. 기술료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

--.

5. -----
--- 국가유산수리 -----

-----.

6. ----- 국가유산수리-----

-----.

7. ----- 국가유산수리-----.

8. ~ 10. (현행과 같음)

11. ----- 국가유산수리-----

으로 배분계산한다.

12. 연구개발비는 해당 문화재
수리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
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
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
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
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
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
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13. 품질관리비는 해당 문화재
수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
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
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
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
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가설비는 계약목적물의 실
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치목장, 가설창

-----.

12. ----- 국가유산
수리-----

-----.

13. ----- 국가유산
수리-----

-----.

14. -----

고, 임시유물보관소(유물 등의 임시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수리안내판, 화장실 등 해당 문화재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5. 지급임차료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6. (생략)

17. 보관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8. (생략)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0. 폐기물처리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 국가유산수리안내판
----- 국가유산수리
를 -----

-----.

15. ----- 국가유산수리-----

-----.

16. (현행과 같음)

17. ----- 국가유산수리-----

-----.

18. (현행과 같음)

19. ----- 국가유산수리 -----

-----.

20. ----- 국가유산수리-----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1. 지급수수료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문화재수리로 인해 수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관급자재 관리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

21. ----- 국가유산수리-----

-----.

-----.

22.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
-----.

23. ----- 국가유산수리 -----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기타경비는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비용은 [별표 3]의 문화재수리 기타경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수도광열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나. 복리후생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 보통인부 · 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여비 · 교통비 · 통신비는

-----.

24. -----

----- 국가유산수리 -----
-----.

가. ----- 국가유산수리 -----
-----.

나. -----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보통인부 · 현장사무소직원 -----

-----.

다. -----
- 국가유산수리 -----

-----.

라. -----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
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
료를 말한다.

마. 세금과 공과금은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해당 문화
재수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
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
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바. (생략)

25. (생략)

제11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
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으로서 문화재수리원가에 속하
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임원
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
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
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
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
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국가유산수리 -----

-----.

마. ----- 국가유산
수리 현장----- 국가유
산수리와 -----

-----.

바.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반관리비) ① -----

----- 국가유산수리원가-----

-----.

② -----

[별표 4]의 문화재수리 일반관리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이윤) ①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문화재수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 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② (생략)

제13조(손해보험료) ① 손해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문화재수리의 총문화재수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②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대상 문화재수리 부분의 총문화재수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

----- 국가유산수리 -----

--.

제12조(이윤) ① -----
----- 국가유산수리원가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손해보험료) ① -----

----- 국가유산수리의 총국가유산수리원가 -----

-----.

② -----

-- 국가유산수리 부분의 총국가유산수리원가 -----

액에 손해보험료를 곱하여 반영한다. ③ (생략) 제1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생략) ② <u>문화재수리의 원가계산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제정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u>에 따라 제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타분야(건축, 토목, 조경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셈 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해당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유산수리의</u> ----- ----- 「<u>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u>」----- ----- ----- ----- ----- ----- ----- -----.
--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u> <u>심사기준</u>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u>문화재수리</u>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u>문화재수리</u>를 대상으로 <u>문화재</u>의 중요도 및 <u>문화재수리</u>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u>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u> <u>심사기준</u> 제1조(목적) ----- ----- ----- ----- ----- ---- <u>국가유산수리</u>----- ----- ----- --. 제2조(정의) ----- ----- ---.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2. ----- -- <u>국가유산수리</u>를 대상으로 <u>국가유산</u>----- <u>국가유산수리</u>의 ----- -----.

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생략)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생략)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3. -----
----- 국가유산수리계획-----

-----.

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말한다.

6. ----- 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수리업의 -----
-----.

7. (현행과 같음)

8. -----

-----.
----- 국가유산수리-----

-----.

9. (현행과 같음)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문화재수리의 입찰등급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

----- 「국가유산수리 등
에 관한 법률」-----
-----.

제3조(적용대상) -----
----- 국가유산수리
-----.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과 국가유산-----

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
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
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입찰방식) ①·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
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의 특수
성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계획 심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
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94
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를 받아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
준」의 공사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은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
준」(문화재청 예규)을 따른다.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야 한다.

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

2. --- 국가유산수리-----

-----.

제5조(입찰방식)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 국가유산수리계획 ----

---. -----

-----.

제6조(원가계산 기준) -----

-----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은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
준」-----.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

1. 국가유산수리 -----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2. [별표 2]의 <u>문화재수리 분류표</u> 에 따른 해당 <u>문화재수리 코드번호</u>	2. ----- <u>국가유산수리 분류표</u> ----- <u>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u>문화재수리 현장</u> 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7. ----- ---- 「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8조제3항 ----- <u>국가유산수리 현장</u> ----- -----
8. <u>문화재수리계획</u>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 (<u>문화재수리계획</u> 심사 대상 <u>문화재수리</u> 에 한한다)	8. <u>국가유산수리계획</u> 심사와 -- ----- ----- -- <u>국가유산수리계획</u> ----- <u>국가유산수리</u> 에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u>문화재수리계획</u> 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 ----- <u>국가유산수리계획</u>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
1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
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0]의 문화재수리 종합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기관(이
하 “관련 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
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생략)

②·③ (생략)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 -----

3. 국가유산수리 -----

4. 국가유산수리 -----

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

6.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 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생략)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2]

2.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

-----.

----- 국
가유산수리 -----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국가유
산수리계획-----

2. (현행과 같음)

② ----- 국가
유산수리-----

-----.

③ (생략)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 ④
(생략)

⑤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5인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문화재수리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14조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화재 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유산수리계획 -----
----- 국가유산수리 계획
서-----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 국가유산수리가 「국
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업-----

② ----- 국가유
산수리의 -----
 ----- 국가유
산수리-----

가 큰 문화재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
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
정가격은 전체 문화재수리 추정
가격을 말한다.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
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4조에 따른 부대 문화재수리만
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
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
에 따라 심사한다.

가. ~ 다. (생략)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

--- 국가유산수리 -----

-----.

----- 국가유산수리 ---
-----.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유산수리

만-----
-----.

②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생략)

마. (생략)

2. (생략)

3.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③ (생략)

제15조(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문화재수리계획 점수(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 -----

--- 국가유산수리업자 ---

---.

1) (현행과 같음)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
-----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

3)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국가유산수리계획 ---
국가유산수리에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종합점수 산정) ① -----

-----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국가유산수리계획 -----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계약신
퇴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
점수를 산정한다.

②·③ (생략)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2. ~ 4. (생략)

③·④ (생략)

제18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문화재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
한다.

②·③ (생략)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제12조제5항에 따
른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국가유산수리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
-- 국가유산수리에 -----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결격사유 등) ① -----

-----국가유산수리업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

-- 국가유산수리계획 -----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③ ~ ⑦ (생략)

제22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생략)

제23조(위원의 심사기피) 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

② -----
----- 국가유산수리계획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심사위원의 자격) -----

-----.

1. -----
-- 국가유산-----

2. 국가유산-----

3.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의 심사기피) ① ----

-----.

1. -----
----- 국가유산수리-----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 --
2. 해당 <u>문화재수리</u> 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 우(대리관계 포함)	2. --- <u>국가유산수리</u>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u>문화재수리계획</u>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 사위원 유의사항과 제1항의 내 용을 공지하기 위해 [별표 11] 의 심사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 다.	② <u>국가유산수리계획</u> -----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u>문화재수리계획</u> 심사 결과 공개) ① (생략)	제24조(<u>국가유산수리계획</u> 심사 결 과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 개하는 경우에는 <u>문화재수리계 획</u>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 와 같이 심사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② ----- ----- <u>국가유산수리 계획</u> ----- ----- ----- -----.
제25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 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 터 <u>문화재수리계획</u>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 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제25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 에 대한 감점) ① ----- -- <u>국가유산수리계획</u> 심사일-- ----- -----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문화재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수리계획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 ④ (생략)

제2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

----- 국가유산수리 -----

-----.

② ----- 국가유산수리계획 -----

-----.

제27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게 사업의 특
성, 문화재수리의 개요, 중점 심
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문화재수
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
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문
화재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
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회에게 배부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문
화재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
원은 [별표 9]에 따라 입찰자 각

제27조(심사 실시) ① -----

-- 국가유산수리-----
-----.

② -----
----- 국가유산
수리계획-----
-----.

③ ----- 국가
유산수리 -----

-----.

-----.

④ ----- 국
가유산수리 -----

-----.

제28조(평가점수 산출) ① -----

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u>문화재수리계획</u> 심사표(별지 제 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u>문화재수리계획</u>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생략) 제29조(기타사항)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u>문화재수리</u>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u>국가유산수리계획</u> ----- -----. ② <u>국가유산수리계획</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기타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국가유산수리</u>----- ----- ----- -----.
--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 ----- -----.
제12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① ----- -----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간사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	제14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집·조사·연구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u>문화</u> <u>재수리기술위원회</u>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 ----- -----. ② ----- ----- <u>국가</u> <u>유산수리기술위원회</u>----- -----.
---	---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u> 제1조(목적) 이 지침은 <u>문화재옴부즈만의</u>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 <u>문화재옴부즈만</u> (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현상변경, <u>매장문화재</u>, <u>문화재수리</u>, <u>무형문화재</u>, <u>관람서비스</u> 등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u>문화재옴부즈만의</u>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직무 및 권한)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u>문화재</u> 보존·관리 및 활용에	<u>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u> 제1조(목적) ----- <u>국가유산옴부즈만</u>----- ----- ----- -----. 제2조(구성) ① <u>국가유산옴부즈만</u> ----- ----- ---. ② ----- <u>매장유산</u>, <u>국가유산수리</u>, <u>무형유산</u>----- ----- -----.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u>국가유산옴부즈만</u>-----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직무 및 권한) ----- ----- ---. 1. 2. (현행과 같음) 3. <u>국가유산</u> -----

관한 문제점 진단, 보완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옴부즈 만 활동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은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 ----- ----- ----- -----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u>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 ② (생략) ③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문화재청 훈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2]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자료 공개)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u>문화재위원회</u>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u>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u> 제1조(목적) -----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u>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u>----- ----- ----- -----.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국가지정유산</u>----- ----- ----- ----- -----. 제3조(회의자료 공개) ① ----- ----- <u>문화유산위원회</u> ----- ----- ----- -----.

1. · 2. (생 략)

② (생 략)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과별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단, 제2항에 따라 개별 분과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 [별표 1]

④ 간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를 1회에 한한다.

제4조의2 (의견진술) 분과위원장은 문화재현상변경,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시 신청인의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 [별표 1]

④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
----- 문화유산 현상변경, 「매장유산 및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제4조의2 (의견진술) -----
-- 문화유산 현상변경-----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안전 구분) ① (생략) ② 안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전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 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3. (생략)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u>문화재위원회</u>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u>문화재위원회</u>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 -----. 제5조(안전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2. 3.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 ----- ----- <u>문화유산위원회</u> 심의-----.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① ----- ----- <u>문화유산위원회</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	---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② ~ ⑤ (생략)

제11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 국
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지급) ① -----
----- 법
위 내에서 문화유산위원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

----- 문화유산위원 -----

-----.

② -----
----- 문화유
산위원 -----

있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u>문화재위원회</u>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u>문화재위원회</u>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13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 <u>문화유산위원회</u> ----- ----- ----- ----- -----. ② ----- ----- ----- <u>문화유산위원회</u>----- ----- --- ③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생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예산회계 및 <u>문화재</u>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 이상	6. ----- <u>국가유산</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방호원근무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임무) 방호원은 소속기관 관할내의 <u>문화재</u> 및 재산에 대한 경비보호와 방문자 또는 관람객의 안내, 질서유지, 풍기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임무) ----- ----- <u>국가유산</u> ----- ----- -----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 ----- ----- ----- ----- -----.
제5조(지정명칭 변경) 사적 지정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한다. 1. ~ 5. (생략) 6. 지정 당시의 명칭이 "지"로 되어 있는 사적의 복원·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원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지"를 <u>문화재위원회</u> 의 검토를 받아 삭제할 수 있다.	제5조(지정명칭 변경)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u>문화유산위원회</u> ----- -----.
제8조(지정명칭 변경절차) 제2조에서부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사적의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u>문화재위원회</u> (사적분과)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제8조(지정명칭 변경절차) ----- ----- ----- ----- ----- ----- <u>문화유산위원회</u> ----- -----

있다.

---.

(문화재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이라 함은 산불상황의 분석·판단,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정보의 제공, <u>문화재</u> 의 보호, 진화계획의 수립, 진화자원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에게 자문·조언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자문단을 말한다.	7. ----- ----- ----- --- <u>국가유산</u> ----- ----- ----- ----- ----- -----.
8. ~ 12. (생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① (생략)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문화재</u> 보호에 관한 사항 등	7. <u>국가유산</u> -----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	② -----

선순위에 따라 실행한다. 1. (생 략)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u>문화재</u>의 보호 3. ~ 5. (생 략)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문화재청 가. <u>문화재보호구역</u> 및 인근 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u>문화재 보호대책</u>의 강구 나. <u>문화재</u>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 1. (현행과 같음) 2. ----- -- <u>국가유산</u>--- 3.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 ----- -----. 1. ~ 6. (현행과 같음) 7. ----- 가. <u>문화유산보호구역</u>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 <u>국가유산 보호대책</u>--- 나. <u>국가유산</u> ----- ----- -----
--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문화재보호법」 제19조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 ----- ----- ----- ----- ----- ----- ----- ----- ----- -----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진정성 및 완전성 요건을 충족하되, <u>문화재보호법</u>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 ----- ----- ----- ----- ----- ----- ----- ----- ----- ----- <u>국가유산기본법</u> ----- ----- ----- -----

1. ~ 10. (생 략)

제5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양식으로 갈
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조사는 문화재위원
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및 전문
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
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의 규정
에 따른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한다.

② · ③ (생 략)

제9조(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
정)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문화유
산위원회 -----
-----.

④ ----- 문화유산위원
회 -----

-----.

제6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

① -----
----- 문화유산위원
회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
정) ① -----

----- 문화유산위원
회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9조의1(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 선정) ① ~ ④ (생 략)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비평가 신청서류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31일까지 1개의 유산을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의 2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유산 중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의 등재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1(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 선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문화유산위원회 -----

-----.

제10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 ① -----

----- 문화유산위원회 -----

-----.

② -----

----- 문화유산위원회 -----

-----.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u>문화재위원회</u> 세계유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기 등재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① ~ ④ (생략) ⑤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반려(Deferral)인 경우에는 <u>문화재위원회</u>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잠정목록 또는 우선등재목록 등 등재신청 단계를 결정한다. 다만 운영지침 제160항에 따라 제9조의1과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평가는 생략되며,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및/또는 세계유산센터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⑥ · ⑦ (생략)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 ----- ----- <u>문화유산위원회</u> ----- ----- ----- ----- -----. 제12조(기 등재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문화유산위원회</u> ----- ----- ----- -----. ----- ----- ----- ----- -----. ⑥ · ⑦ (현행과 같음)
---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9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문화재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 ----- ----- ----- 무형유산의 ----- ----- ----- -----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국가목록"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 ----- ----- 무형유산 목록-----.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무형문화재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무형유산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정에서 "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의 명칭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범주
3. 해당 무형문화재의 개념 및 정의
4.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
5.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
6. 해당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
7.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호조치 방안

③ (생략)

② -----

----- 무형유산 중 -----
----- 무형유산 목록-----.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
----- 무형유산 중 -----

무형유산에 -----
-----.

② -----

-----.

1. --- 무형유산-----
2. --- 무형유산-----
3. --- 무형유산-----
--
4. --- 무형유산-----

5. --- 무형유산-----

6. --- 무형유산-----

7. --- 무형유산-----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 ② (생략)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① ----- ----- ----- 무형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구성) ① ~ ③ (생략)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 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 이상, <u>문화재분야</u> 에서 2명 이상, 문화재청 관계자 1명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④ ----- ----- ----- ----- ----- <u>국가유산분야</u> ----- ----- ----- -----.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 이상, <u>문화재분야</u> 에서 2명 이상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⑤ ----- ----- ----- ----- ----- <u>국가유산분야</u> -----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